

2023년 시설퇴소청년의 생활 실태 및 정책개발

백혜정 · 김지연 · 김승경 · 노혜진

연구보고 23-일반05-0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8-02



보고서 표지 디자인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AI 보고서 디자인 콘테스트』의 당선 작품을 카카오톡 이모티콘 작가(작가명 모지)로 활동하고 있는 직원이 실사한 것입니다.

***당선작 프롬프트**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청소년, 청소년들을 지지하는 어른들,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다문화, 기후변화, 인공지능, 미디어, 권리”

AI 디자인 _ 곽진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행정원)

실사 디자인 _ 변지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인턴)

협동연구총서 23-88-02

연구보고23-일반05-01

2023년 시설퇴소청년의 생활 실태 및 정책개발

저 자 백혜정, 김지연, 김승경, 노혜진

연구진 연구책임자_백혜정(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_김지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_김승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_노혜진(강서대학교 교수)
연구보조원_조양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청년종합연구Ⅱ: 정책소외계층 청년 실태 및 정책개발”

1. 협동연구 총서 시리즈

협동연구 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23-88-01	청년종합연구Ⅱ: 정책소외계층 청년 실태 및 정책개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3-88-02	2023년 시설청소년의 생활 실태 및 정책개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3-88-03	청년의 금융취약 및 정책소외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3-88-04	발달장애청년의 정책소외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복지인재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 연구 기관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백혜정 선임연구위원 (총괄책임자)	김지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승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이배(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 노혜진(강서대학교 교수) 조양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원)
협력 연구 기관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김성아 부연구위원	김문길(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나원희(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한영섭(갈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 강예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협력 연구 기관	한국보건복지 인재원	박광옥 교수	김용득(성공회대학교 교수) 이복실(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센터장) 이은영(강동대학교 교수) 이동림(성공회대학교 외래교수) 성명진(발달장애여성연구원 원장) 우리진(한국보건복지인재원 대리)

보고서를 펴내며

우리사회에는 아직도 일반 청년정책, 심지어 취약청년을 위한 정책 대상에도 미처 포함되지 못하는 청년, 즉 '정책소외계층 청년'이 존재한다. 이 연구는 이들의 유형과 정책소외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한 3개년 협동연구의 일환이며 작년에 이어 올해 2차 년도 연구를 수행하였다.

지난 1차 년도에 이어 올해 2차 년도에서도 아동·청소년·보호시설을 퇴소한 자립준비청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면접 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기존에 조사참여자의 진술에만 의존하던 자료 수집에서 행정 데이터를 활용하여 가명정보 결합 분석을 통해 자료의 정확성을 제고하였다. 수집된 자료들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해 이들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일반 청년과 격차가 발생하는 지점들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격차 완화 및 소외 예방을 위한 정책 추진의 기본 방향과 핵심과제들을 제안하였다.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의 유형과 실태 분석에서 확인된 취약성을 근거로 이들에 대한 지원제도를 강화하는 접근으로는 아동기부터 누적된 불평등과 격차를 일소할 수는 없다. 또한 연구대상자를 세 가지 유형의 시설에만 국한한 것 역시 가정의 보호나 지원 없이 자립준비 중인 청년들을 모두 포괄했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이 연구가 자립을 준비 중인 청년 안에는 여러 유형의 시설퇴소청년들이 있으며 이들 모두 제도를 통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할 우리 사회의 '청년'이라는 인식을 제고하고 이들을 위한 제도적 개입 지점을 제시하고 정책개발을 건언하여 우리 사회 모든 청년의 삶의 질 개선에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연구요약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청년정책의 대상으로 포섭되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임으로 인해 정책소외 계층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은 ‘시설퇴소청년’들이 지니고 있는 공통적인 취약성, 즉 시설퇴소 후 자립기반 부족이라는 상황을 근거로 이들을 모두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으로 정의하고 이들에 대한 생활 실태를 파악하고자 함.
- 시설퇴소청년들이 퇴소한 시설들은 유형에 따라 각기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고 지원내용 및 체계 역시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 내용이나 범위에서 격차가 발생한다. 이에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들의 취약성을 보완하여 건강한 청년기 이행을 위한 지원과 세대 내 격차 완화에 있으며 이를 위한 이들에 대한 실증적 자료를 생산하고 이를 근거로 정합적인 정책 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 연구내용

- 지난 1차 년도 연구에 이어 올해 2차 년도에서도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들의 정책소외 실태를 파악하고 일반 청년과의 격차를 실증적으로 확인함.
-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들에 대한 실태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정책으로서의 시설퇴소청년 정책의 기본 방향과 개인별 맞춤 지원을 위한 영역별 정책 추진과제를 도출함.

■ 연구방법

-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 2차 자료 분석, 가명정보처리 공공데이터 결합 분석을 포함한 실태조사, 면접조사, 전문가 자문,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콜로키움, 정책포럼 등 다각적인 연구방법을 활용함.

■ 연구결과

주요 연구결과

-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의 현황과 특성에 대한 문헌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시설퇴소청년에 대한 지원은 시설 유형에 따라 다르며 이로 인해 자립기반에 대한 격차가 발생함.
 - 신청주의에 기반한 지원제도로 인해 제도에 대한 정보나 이해가 부족한 취약청년들이 지원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음.
-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의 실태조사 및 가명정보처리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시설퇴소청년들은 교육·훈련, 고용, 경제, 주거, 건강, 심리·정서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일반 청년들에 비해 상당히 열악한 측면이 많았음.
 - 청소년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 퇴소청년들은 아동복지시설 퇴소청년들에 비해 더 열악한 실태를 보임.
 -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중에는 사회보장제도 이용 여부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음.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경험 여부,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수급 및 디딤씨앗통장 등에서 수급 경험이 있는 청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년들에 비해 심리·정서상태가 상대적으로 양호하였음.
 - 시설퇴소 후에는 자립 초반에 비해 연차가 높아질수록 심리·정서적인 어려움이 심화되었으며 중도퇴소보다는 연장종료 청년들의 심리·정서상태가 상대적으로 양호하였음.
-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면접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시설퇴소청년들은 청년기와 퇴소 직후라는 취약함의 교집합 상태에서 가족과 시설 모두 그들에게 든든한 지원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립을 시작하지만 그 과정에서 다양한 관계망의 도움을 받고 공동체에 기여하거나 누군가에게 의지가 될 만한 사람이 되려는 바람을 보임.
 - 자립지원 과정은 일방적인 수혜가 아니라 서로가 평생에 걸쳐 돕고 돕는 관계를 만들어주는 과정으로 변화되어야 함.

■ 핵심 정책제언

핵심 정책제언

-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음.
 - 청년정책으로서의 지원정책 수립
 -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의 정책조정 및 총괄 기능 강화
 - 정책 수립·집행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참여 강화
 - 자립준비청년 지원제도의 자격기준 개선
 - 아동양육시설 퇴소청년 외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격심의 제도 도입
 - 무의탁 소년원 퇴소청년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강화
 - 통합적이고 단계적인 개인 맞춤형 자립지원
 - 지역 기반 지원체계 구축 및 지역 격차 해소
- 영역별 핵심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음.

진로·고용 영역	지역 기반 진로탐색 지원체계 마련 및 기초근로훈련 프로그램 제공 산학 연계를 통한 양질의 직업 훈련-고용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경제 영역	시설퇴소청년 자립(지원)수당제도 운영 개선 관계기반 금융생활 지원제도 신설
주거영역	전세임대 지원 대상 확대 지역 기반의 주거지원사업 추진 및 주거지원 대상 확대
건강영역	건강행동 증진을 위한 아침밥 사업 및 청년식당,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사업 확대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의 개선 및 확대
참여영역	고립·은둔 청년의 발굴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및 모임의 활성화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들의 당사자 활동 확대

2023년 시설퇴소청년의 생활 실태 및 정책개발

협동연구총서 23-88-02

연구보고23-일반05-01

I.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2. 연구추진체계	6
3. 연구내용	6
4. 연구방법	8

II.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의 현황과 특성

1.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의 개념	15
2. 유형별 현황 및 특성	16
3. 영역별 자립 수준	27
4. 소결 및 시사점	31

III.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대상 지원정책 현황

1. 영역별 지원정책 현황	35
2. 지원정책의 쟁점	50

IV.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실태조사

- 1. 2차 년도 실태조사 55
- 2. 1차 년도 실태조사-행정데이터 가명정보 결합 분석 .. 125

V.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면접조사

- 1. 조사 개요 155
- 2. 연구결과 158
- 3. 소결 194

VI. 정책제언

- 1. 정책의 기본방향 201
- 2. 영역별 정책과제 211

참고문헌 237

부 록 247

Abstract 277

표 목차

표 I-1. 2023년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실태조사 개요	9
표 I-2.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면접조사 개요(안)	10
표 I-3. 전문가 자문회의 개요	11
표 I-4.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요	11
표 I-5. 콜로키움 및 정책 포럼 등 개요	12
표 II-1.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입퇴소자 수(순인원)	20
표 II-2. 최근 3년간 (단기, 중장기)쉼터 18세 이상 청소년 주 퇴소사유(순인원)	20
표 II-3. 청소년자립지원관 주 퇴소 사유	21
표 II-4. 소년원 출원 후 3년 이내 재입원 현황(2016~2019년)	23
표 II-5. 자립생활관 및 창업비전센터 연도별 입주 및 입교 현황	24
표 II-6. 각 시설퇴소청년 유형별 타 시설 이용률	26
표 III-1.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 비교 표	39
표 IV-1. 조사 대상 선정 기준	56
표 IV-2. 조사 참여자 특성	57
표 IV-3. '23년도 조사 영역별 내용과 문항: 일반 사항, 교육·훈련	60
표 IV-4. '23년도 조사 영역별 내용과 문항: 고용	61
표 IV-5. '23년도 조사 영역별 내용과 문항: 경제	62
표 IV-6. '23년도 조사 영역별 내용과 문항: 주거	62
표 IV-7. '23년도 조사 영역별 내용과 문항: 건강 및 심리·정서	63
표 IV-8. '23년도 조사 영역별 내용과 문항: 참여 및 사회·미래 인식	64
표 IV-9. 시설퇴소 후 자립지원 받은 기간	65
표 IV-10. 맞춤형 급여 수급 여부	66
표 IV-11. 주거지에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67
표 IV-12. 거주지역별 돌봄 노동 참여 정도	69
표 IV-13. 학력	71
표 IV-14. 취업을 위한 별도의 교육 및 훈련 경험	72
표 IV-15. 지난 일주일 동안 가졌던 일자리 개수	74
표 IV-16. 지난 일주일 동안의 주된 일자리(직업유형)	75

표 IV-17. 직장 규모	76
표 IV-18. 전일제 일자리에 대한 학력요인 검증	77
표 IV-19. 직장 규모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성·주휴수당 수령 여부 ..	78
표 IV-20. 직장 규모에 따른 4대 보험 가입 여부	79
표 IV-21. 주당 근로 시간	80
표 IV-22. 야근·주말·초과 근무 경험 및 관련 수당 수령 여부	80
표 IV-23. 직종별 근로 안전 관련 경험률	82
표 IV-24.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낸 기간이 일주일을 넘긴 적이 있는지 여부	83
표 IV-25. 월 평균 소득(세전)	84
표 IV-26. 월 평균 지출	85
표 IV-27. 채무(빚, 대출) 액수	86
표 IV-28. 최근 1년간 집이 아닌 장소에서 한 달 이상 생활한 청년들의 거주지(중복응답)	88
표 IV-29.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선택한 이유	89
표 IV-30.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점유형태	89
표 IV-31.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주거비 마련 방법	90
표 IV-32.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유형	91
표 IV-33. 경제적 이유로 냉난방 어려움 경험 여부	92
표 IV-34. 임대 관련 어려움 경험률	93
표 IV-35. 주거지원 제도 이용 경험	94
표 IV-36. 최근 2년간 건강검진 및 최근 1년간 구강검진 경험 여부	95
표 IV-37. 경제적 수준에 따른 식생활 실태	97
표 IV-38. 평소 운동 횟수(일주일 기준)	98
표 IV-39. 스마트폰 사용 시간 조절의 어려움 정도	99
표 IV-40. 고립감 정도	101
표 IV-41. 우울증상 유무	103
표 IV-42. 삶의 만족도	104
표 IV-43. 고립감 및 우울 유무와 삶의 만족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105
표 IV-44. 최근 1년간 자해 경험 및 자해 일수	106
표 IV-45. 최근 1년간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경험 ·	107
표 IV-46. 최근 1년간 심리·정서적인 어려움으로 약물 사용 경험 ·	108
표 IV-47. 장애 여부	109
표 IV-48. 현재 신체·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일상·사회생활 어려움 여부	110

표 IV-49.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미납 또는 연체 경험	111
표 IV-50. 건강 상태	112
표 IV-51. 정치·사회 활동 여부	113
표 IV-52. 참여 효능감	115
표 IV-53. 공정성에 대한 의견	116
표 IV-54. 각 영역에서 자신의 인권을 존중받는 정도	118
표 IV-55. 개인정보 보호법 제 28조의2	126
표 IV-56. 개인정보 가명처리 단계	126
표 IV-57.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단계	127
표 IV-58.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절차	128
표 IV-59. 조사대상 및 결합 대상 데이터	129
표 IV-60. 가명정보처리 데이터 특징	133
표 IV-61. 결합활용변수 개요	134
표 IV-62. 생계급여 수급여부의 정합성	136
표 IV-63. 주거급여 수급여부의 정합성	136
표 IV-64. 의료급여 수급여부의 정합성	137
표 IV-65. 디딤씨앗통장 이용여부의 정합성	138
표 IV-66. 국가장학금 수혜여부의 정합성	138
표 IV-67. 장애등록여부의 정합성	139
표 IV-68. 자립수당 수급여부	140
표 IV-69.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기준에 따른 퇴소시설별 수급여부	141
표 IV-70. 생계급여 수급경험에 따른 심리·정서 상태 차이	142
표 IV-71. 의료급여 수급경험에 따른 심리·정서 상태 차이	142
표 IV-72. 주거급여 수급경험에 따른 심리·정서 상태 차이	143
표 IV-73. 자립정착금 수급여부에 따른 심리·정서 상태 차이	144
표 IV-74. 자립수당 수급여부에 따른 심리·정서 상태 차이	145
표 IV-75. 디딤씨앗통장 이용여부에 따른 심리·정서 상태 차이	145
표 IV-76. 자립수당연차에 따른 심리·정서 상태 차이(미수급 제외)	147
표 IV-77. 보호종료 유형에 따른 심리·정서 상태 차이	148
표 V-1. 면접 참여 청년	157
표 V-2.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과정 촉코딩	192
표 VI-1.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추진과제(안)	235

그림 목차

그림 Ⅰ-1. 2차 년도 연구 추진체계	6
그림 Ⅰ-2.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연차별 조사 표본 규모(안)	9
그림 Ⅱ-1.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의 개념 및 유형	16
그림 Ⅱ-2. 2017~2021년 자립준비청년 현황 추이(명)	17
그림 Ⅱ-3. 최근 5년간 보호소년, 위탁소년 현황	22
그림 Ⅱ-4.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률 및 보호관찰기간별 재범률(%)	23
그림 Ⅱ-5. 자립생활관 및 창업비전센터 평균 거주 기간(일, 월)	25
그림 Ⅱ-6. 시설퇴소청년의 시설 이동 경로	27
그림 Ⅳ-1. 조사지 개발 과정	58
그림 Ⅳ-2. 맞춤형 급여 종류별 수급률	67
그림 Ⅳ-3. 주거지에 함께 살고 있는 사람(중복 응답)	68
그림 Ⅳ-4. 가구 내 돌봄 필요 구성원 현황	69
그림 Ⅳ-5. 이주배경 여부	70
그림 Ⅳ-6. 정부(지자체) 제공 취업관련 교육 및 훈련 수강 의향	72
그림 Ⅳ-7. 지난주 및 지금까지 일자리 경험 여부	73
그림 Ⅳ-8. 가장 최근에 일을 그만 둔 이유	74
그림 Ⅳ-9. 고용 및 근로시간 형태	77
그림 Ⅳ-10. 급여 지급 주체 및 근로계약서 작성·주휴수당 수령 여부	78
그림 Ⅳ-11. 4대 보험 가입 여부	79
그림 Ⅳ-12.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	81
그림 Ⅳ-13. 구직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81
그림 Ⅳ-14. 근로안전 관련 경험 여부	82
그림 Ⅳ-15. 채무 여부 및 돈을 빌린 곳(중복 응답)	85
그림 Ⅳ-16. 금융채무불이행 여부 및 신용회복 지원제도 이용 여부 ·	86
그림 Ⅳ-17. 최근 1년간 집이 아닌 장소에서 한 달 이상 생활한 경험	87
그림 Ⅳ-18.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위치	91

그림 IV-19. 정부지원 주택 입주 경험 및 도움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	94
그림 IV-20. 1일 식사 횟수 및 식생활 행태	96
그림 IV-21. 평소 운동을 하지 않는 이유	98
그림 IV-22.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사람 유무	100
그림 IV-23. 6개월 이상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지 않은 경험(은둔) 및 그 이유	100
그림 IV-24.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낀 기간	102
그림 IV-25. 우울로 인한 어려움 정도	103
그림 IV-26. 전문가의 상담(진료)를 받지 못한 주된 이유	107
그림 IV-27.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은 주된 이유	109
그림 IV-28. 최근 1년간 앓았던 질병·질환	110
그림 IV-29. 병원 치료 여부 및 치료 받지 않은 이유	111
그림 IV-30. 청년 활동 참여율	114
그림 IV-31. 복지 및 사회 신뢰에 대한 의견	117
그림 IV-32. 다양한 이유에 따른 차별 경험률	117
그림 IV-33. 시설퇴소청년들의 경제수준별 다양한 이유에 따른 차별 경험률	118
그림 IV-34. 각 영역별 원하는 미래를 위해 중요한 정도	119
그림 IV-35. 향후 결혼 및 자녀 계획	120
그림 IV-36. 자녀 계획이 없는 주된 이유	120
그림 IV-37. 자신이 원하는 미래의 실현 가능성	121
그림 IV-38. 홈페이지 개인정보 처리방침(가명정보의 처리) 게시 내역	130
그림 IV-39. 파일송수신 업무절차	132
그림 IV-40. 가명처리 대상 정보	133
그림 V-1.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과정	160
그림 VI-1. 정책의 기본방향	202
그림 VI-2.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정책수립체계(안)	204
그림 VI-3. 시설퇴소청년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절차 개선(안)	207
그림 VI-4. 지역 기반 시설퇴소청년 진로지원체계(안)	214
그림 VI-5. 정신건강 증진을 개입 단계별 개입(안)	229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2. 연구추진체계
- 3. 연구내용
- 4. 연구방법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청년기에 빈곤을 비롯한 취약한 환경에 장기간 노출되었던 개인은 중·장년기 뿐 아니라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에 청년들이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안전망을 구축하고 그 안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청년 개인의 현재 삶의 질 제고 뿐 아니라 이후 불필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듯 2020년 「청년기본법」 제정 이후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21~25)’이 수립되면서 청년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들이 수립·집행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제시되어 온 청년정책은 다수의 청년, 즉 가정에서 생활하며 사회적 안전망 안에 있는 청년들을 주요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좀 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지만 안전망이 충분히 설정되어 있지 않은 취약계층 청년들’은 그 대상에서 한걸음 벗어나 있는 것이 현 상황이다. 다행히 현 정부에서는 핵심 어젠다 중 하나로 ‘청년’을 설정하고 자립준비청년을 비롯하여 소외청년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통해 미래 희망복원, 공정기회 보장을 위한 희망의 다리 농기를 청년정책의 목표로 제시하였다(국무조정실 보도자료, 2022.10.26²⁾).

이 연구에서는 취약계층으로 공공 지원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 즉 공공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정책소외계층’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정책소외계층 중에서도 청년기에 속한 이들, 즉 ‘성공적인 성인기 진입을 위해 요구되는 과업을 이루

1) 이 장은 백해정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다.

2)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추진계획. 국무조정실 홈페이지. <https://www.opm.go.kr/opm/news/press-release.do?mode=view&articleNo=151716&article.offset=10&articleLimit=10&srPeriodEnd=2022-10-28&srPeriodStart=2022-10-24>에서 2023년 2월 13일 검색.

기 위해서는 공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제도가 필요하지만 그 지원 대상에서 비자발적으로 배제되거나 편입되기 어려운 청년 집단'을 '정책소외계층 청년'으로 정의하였다(김지연 외, 2022). 이들이 정책 대상에서 배제되는 배경에는 첫째, 말 그대로 그 규모가 작은 소수집단으로 정책대상으로 사회적 주목을 받기 어려웠고 둘째,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기회조차 갖기도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소외계층 청년 안에는 아동·청소년기에 일정 기간 이상 가정 외 시설에서 생활 후 퇴소하여 자립을 해나가는 청년들인 시설퇴소청년들이 포함될 수 있다. 현재 시설퇴소청년 중 가장 큰 집단은 과거 '보호종료아동'이라 불리던 '자립준비청년'으로 「아동복지법」상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생활하다 보호조치가 종료된 후 5년 이내의 기간에 속한 청년들을 의미한다. 그러나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외에도 이들과 비슷한 수준의 취약성을 가지고 있어 공공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해당 시설에서 18세 이전에 퇴소하였거나 다른 유형의 시설에서 생활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자립준비청년의 범주에서 제외되면서 여러 지원정책에서도 배제된 청년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체계 안에서 지원을 받아왔던 자립준비청소년들, 그리고 법무부 산하 소년보호시설에서 출원 후 청소년자립생활관의 보호 및 지원을 받는 청년들이다. 이들은 자립준비청년과 유사한 취약성, 즉 자립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으나 실제 자립기반은 빈약하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이는 원가정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물리적·심리적 지원이 매우 부족하지만 공식적인 서류상으로 원가정으로부터 분리가 되어 있지 않거나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 등을 이유로 공공지원체계로부터의 제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몇 년 새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아동보호시설 퇴소청년에 대한 공공 및 민간 지원은 점차 확대·강화되어왔다. 그 단적인 예가 2021년과 2022년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정부대책으로(관계부처 합동, 2021. 7.13; 2022.11.17.) 아동보호체계에서 퇴소한 청년들에 대한 지원정책은 대폭 확대되었고 또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 여가부의 경우는 가정 밖 청소년에게 2021년 자립수당을 첫 지급(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1.5.4)한데 이어 2023년에는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과 동일하게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지원요건을 완화한 바 있다(대한민국 정부, 2023). 그러나 그 외의 다양한 지원 영역에서는 여전히 담보 상태로 그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법무부 시설퇴소청년에 대한 공공 및 민간 지원은 여전히 매우 미흡한 상태이다. 따라서 부처 간 실제 지원의

격차 해소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청년정책의 대상으로 포섭되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임으로 인해 정책소외계층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은 ‘시설퇴소청년’들의 생활 실태를 그 유형에 따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들이 지니고 있는 공통적인 취약성, 즉 시설퇴소 후 자립기반 부족이라는 상황을 근거로 이들을 모두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³⁾이라는 범주에 포함시키고 이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들은 앞서도 언급했듯이 어느 시설을 퇴소했는지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들을 크게 세 집단, 「아동복지법」상 아동양육시설의 보호종료(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자립지원 대상 청년, 「소년법」상 소년보호시설 출원 후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년으로 나누었다. 근거법령에 따라 이들의 유형을 나눈 이유는 이들이 퇴소한 시설들이 유형별로 각기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각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지원내용 및 체계 역시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 내용이나 범위에서 격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들의 취약성을 보완하여 건강한 청년기 이행을 위한 지원과 세대 내 격차 완화에 있으며 이를 위한 이들에 대한 실증적 자료를 생산하고 이를 근거로 종합적인 정책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3) 이들을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으로 명명하였으나 편의상 ‘시설퇴소청년’이란 용어도 혼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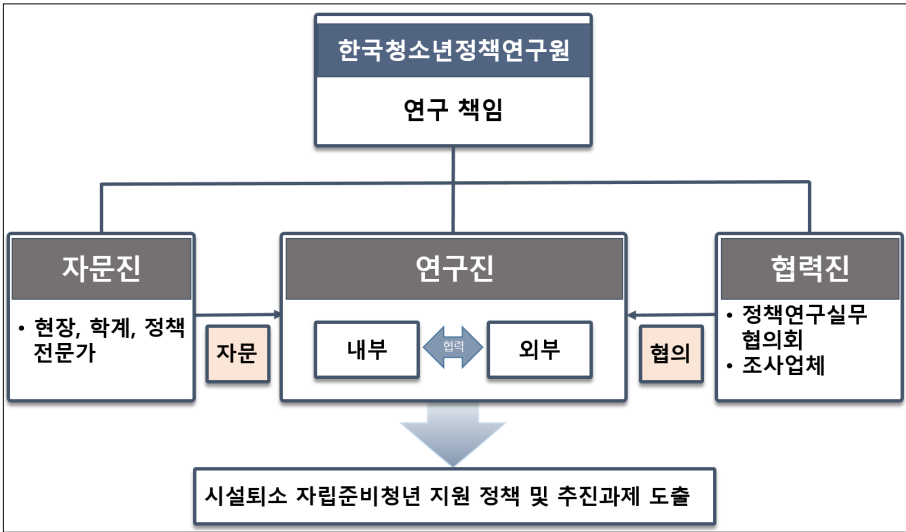


그림 I -1. 2차 년도 연구 추진체계

2. 연구추진체계

올해 연구는 작년의 1차 년도 연구에 이어 2차 년도 연구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2차 년도 연구추진체계는 그림 I-1로 도식화하여 제시하였다.

3. 연구내용

1) 2023년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생활 실태 분석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2차 년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자립과정과 취약성 정도, 자립지원에 대한 요구도 등을 파악하였다. 실태조사는 두 가지 조사방법,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활용하였다. 조사 대상은 1차 년도와 동일하게 퇴소시설을 기준으로 크게 세 집단, “①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②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인 자립준비청소년, ③ 「소년법」상 소년보호시설을 퇴소 한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지원하는 기관의 자립지원을 받거나 받은 경험이 있는 19세 이상 청년”(김지연 외, 2022:8)으로 나누었다. 이들 세 집단은

모두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 대상이며 앞의 두 집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거한 사회복지시설 퇴소자로 자립(지원)수당 수급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주무부서가 달라 자립준비청년은 최대 5년까지, 자립준비청소년은 최대 3년 동안 수당(월 40만 원)이 지급된다.

설문조사는 1차 년도와 마찬가지로 자립준비청년 약 2,500명(「아동복지법」상 자립준비청년 1,950명,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400명, 「소년법」상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150명)을 목표 표본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실제 조사에서는 총 2,498명(「아동복지법」상 자립준비청년 1,827명,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554명, 「소년법」상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117명)이 최종대상으로 확정되었다. 주요 조사 영역은 총 7개 영역-일반사항, 교육·훈련, 고용, 경제, 주거, 건강 및 심리·정서, 참여 및 사회인식·미래설계-이며 각 영역에서는 청년들의 경험과 인식 정도, 인구·사회학적 특성 등에 관한 문항이 포함되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일반청년과의 비교 뿐 아니라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하위 집단 간 비교, 그 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비교, 변인 간 관련성 등을 알아보기 위해 분석되었다.

면접조사는 자립준비에 적극적인 청년당사자 10명에게 최소 1회 이상의 개별 면접을 실시하였다. 주요 면접 내용으로는 과거와 현재의 생활 실태, 주요 생애사건과 위기 경험 대비 자립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 사회참여와 권리·차별에 대한 인식과 경험, 자립과 미래에 대한 전망, 청년정책에 대한 요구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면접 내용은 근거이론 방법을 통해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들의 경험과 과정에 대한 분석을 위해 활용되었다.

설문 및 면접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된 실증 자료들은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내 다층성, 영역별 취약성 등을 파악하는데 활용되었고 2차 자료와의 비교 등을 통해 일반청년 대비 취약성도 규명하였다. 또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퇴소청년들을 위한 지원 과제 및 청년정책 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2) 가명정보처리 공공데이터 결합 분석 및 정보시스템 기반 지원방안 모색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의 공적지원 수혜 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공적지원 수급의 정합성 및 공적지원 수혜여부가 자립수준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하고자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들의 행정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행정데이터 활용을 위해서는 1차 년도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표본과 공공데이터(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범정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간 결합을 시도하였다. 데이터 간 결합에 앞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우선적

으로 1차년도 표본을 가명처리하였다. 데이터 결합 후에는 개인별 위기 및 취약성 정도와 급여 및 서비스 수급 여부, 수요와 지원의 정합성 등에 대한 다면적 분석을 실시하였다.⁴⁾ 이 연구에서 수행한 설문조사 참여자의 자료와 공공데이터 간 결합은 설문조사 특성 상 참여자들이 정확하게 응답하기 어려운 사회보장제도 이용 현황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고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간 제도이용의 편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연구결과는 시설 퇴소 자립준비청년 지원제도 개선,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향상을 목적으로 정책 재설계를 위한 정책 추진방향과 추진과제를 제안의 근거 자료로 활용되었다.

3) 현안별 정책제언

이 연구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들의 실태 및 욕구를 반영하여 지원정책과 관련하여 정책 수립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영역별 정책과제(안)를 제안하였다.

4. 연구방법

1) 문헌 연구 및 2차 자료 분석

시설퇴소청년들을 위한 국내·외 제도 및 정책 동향 파악을 목적으로 행정자료, 연구보고서 및 학술 논문 등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 또한 일반청년 대비 시설퇴소청년들의 취약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2차 자료와의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2차 자료는 ‘청년 삶 실태조사(국무조정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3년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조사(김기현, 장근영, 신인철, 임성근, 2023)’ 등이다. 이 두 조사의 일부 문항은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설문조사에서도 활용하였는데 이는 동일 문항에 대한 일반청년과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의 응답을 비교하여 후자의 취약성 정도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4)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및 개별 정보의 생산 담당 부처와 협의 후 추출 변수를 확정하고 일련의 절차를 거쳐 분석하였다.

2) 실태조사

2023년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생활 실태조사의 표본 선정(안) 및 개요는 각각 그림 I-2, 표 I-1과 같다. 실태조사 참여자들은 작년(1차 년도) 조사에 참여한 청년들과 올해 신규로 참여한 청년들로 구분 가능하다. 작년 참여자들 중 2차 년도 조사참여 동의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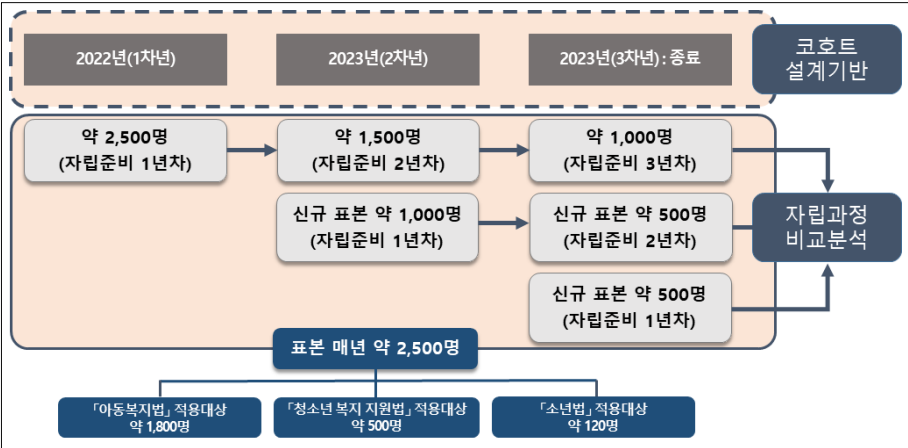


그림 I-2.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연차별 조사 표본 규모(안)

표 I-1. 2023년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실태조사 개요

주요 요소	내 용
조사대상	- 전국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2,498명 ※ 각 유형별 모집단 규모와 조사 가능성을 고려하여 조사규모 할당 - 「아동복지법」상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약 1,827명 -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자립준비청소년 약 554명 - 「소년법」상 소년원 출원 후 자립준비 중인 청년 약 117명
대상자 선정방법	- 1차 년도 조사표본 가운데 2차 년도 조사참여 동의자 선정(1,565명) - 자립지원전담기관,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자립생활관, 소년보호교육기관 등 관련기관 담당자 추천을 통해 1차 년도 표본 유실분 총원(933명)
2차 년도 조사영역	- ① 일반사항 ② 교육·훈련 ③고용 ④경제 ⑤ 주거 - ⑥ 건강 및 심리·정서 ⑦ 참여 및 사회·미래 인식
조사방법	- 웹조사
조사시기	- 5~7월(약 10주간)
비 고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 대상(승인)

한 경우는 올해 2차년도 설문조사 참여를 요청하였다. 단 주거지 및 연락처를 자주 변경하는 이들의 특성상 패널 유지 목표율을 최소 60%로 정하고 유실된 표본은 그 규모만큼 신규 인원으로 충원하였다. 그 결과,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설문에 참여한 이들은 총 1,565명으로 실제 패널 유지율은 62.7%였으며 신규 참여자는 933명이다. 기관별 참여자 규모를 살펴보면 「아동복지법」상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약 1,827명(1차년도 1,866명 대비 39명 감소),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자립준비청소년 약 554명(1차년도 467명 대비 87명 증가), 「소년법」상 소년원 출원 후 자립준비 중인 청년 약 117명(1차년도 124명 대비 7명 감소)이다.

3) 면접조사

면접조사는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당사자를 대상으로 개별 면접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면접은 일대일 면접을 원칙으로 하여 회당 면접시간은 약 1시간 30분 내외로 소요되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1회 면접으로 충분치 않다고 판단되어 2회로 나누어 진행하기도 하였다. 주요 면접 내용으로는 과거·현재 생활 실태, 주요 생애사건과 위기 경험 대비 자립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 사회참여와 권리·차별에 대한 인식과 경험, 자립과 미래에 대한 전망, 청년정책에 대한 요구사항 등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을 확인하였다. 모든 면접은 참여자의 동의 아래 녹음 후 전사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표 I-2).

표 I-2.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면접조사 개요(안)

주요 요소	내 용
조사대상	- 「아동복지법」상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5명 -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3명 - 「소년법」상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2명
선정방법	- 현장전문가 등으로부터 자립 성공사례 또는 자립에 적극적인 청년으로 추천받은 청년당사자를 중심으로 선정
조사내용	- 아동·청소년·청년기 생활 실태와 주요 생애사건 - 자립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 사회참여와 권리·차별에 대한 인식과 경험, 자립과 미래에 대한 전망, 청년정책에 대한 요구사항 등
조사방법	- 1:1 개별면접(일인당 1~2회 면접)
조사시기	- 6월
비 고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 대상(승인)

4) 전문가 자문

연구 설계와 방향 설정, 시설퇴소청년 관련 현안 진단, 조사표 개발, 자료 분석 결과에 대한 시사점 도출 등 연구 과정 전반에 걸쳐 온·오프라인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표 I-3). 자문회의에서는 현장, 학계, 정책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에 반영하였다.

표 I-3. 전문가 자문회의 개요

번호	주요 내용	참석자(자문진)	개최시기
1	사회보장시스템 데이터 결합 방안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외 4명	23.1.30
2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생활 실태조사 문항 검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명	23.2.16
3	가명정보처리 및 내부관리계획 수립 관련 컨설팅	한국인터넷진흥원 외 4명	23.4.7
4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 현안과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외 2명	23.5.25
5	시설별 퇴소청년 지원정책 현황	한국소년보호협회 외 2명	23.6.7
6	정책소외계층 청년을 위한 추진과제	청년재단 중앙청년지원센터 외 3명	23.10.24

5) 기타 연구방법

(1)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연구과정 상 업무협조가 필요한 경우 정부부처 담당자, 유관기관 실무자 등이 참석하는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5회 개최하였다(표 I-4).

표 I-4.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요

번호	주요내용	참석자	개최시기
1	전년도 조사결과 공유 및 2차 설문조사 협조를 위한 업무 협의	법무부 소년보호과 3명	23.3.14
2	공공 데이터 결합을 위한 업무 협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가명정보결합분석센터 3명	23.3.20
3	전년도 조사결과 공유 및 2차 설문조사 협조를 위한 업무 협의	여가부 청소년자립지원과 3명	23.4.6
4	가명정보활용을 위한 업무 협의	복지부 해당부서 6명	23.5.3
5	결합데이터 검토 및 추가 가명처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5명	23.9.20

(2) 콜로키움·정책 포럼 등

행정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명정보처리의 목적 및 절차, 관련 법령 등 가명정보 결합 및 활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제고를 위해 콜로키움 등을 개최하였다. 또한 연구성과 확산을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주관하는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아이디어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우수사례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정책포럼에서는 협동연구기관 연구성과 보고와 함께 정책 추진과제 검토 및 의견 수렴을 진행하였다(표 I-5).

표 I-5. 콜로키움 및 정책 포럼 등 개요

번호	주요내용	발표자 및 참석자	개최시기
1	콜로키움 “행정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명정보처리의 이해”	발제자: 김윤중(유피에스데이터) 참석자: 연구진 및 원내 전 직원	23.4.19
2	2023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아이디어 경진대회」 참가	발표자: 김승경(선임연구위원)	23.8.24~9.1
3	정책포럼 “협동연구기관 연구성과 보고”	발제자: 각 협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석자: 연구진 및 원내 전 직원	23.11.14
4	콜로키움 “가명정보 활용과정의 효율적 운영 방안 모색”	발제자: 김윤중(유피에스데이터) 참석자: 연구진 및 원내 전 직원	23.11.16

○ — 제2장 시설퇴소 자립준비 청년의 현황과 특성

- 1.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의 개념
- 2. 유형별 현황 및 특성
- 3. 영역별 자립 수준
- 4. 소결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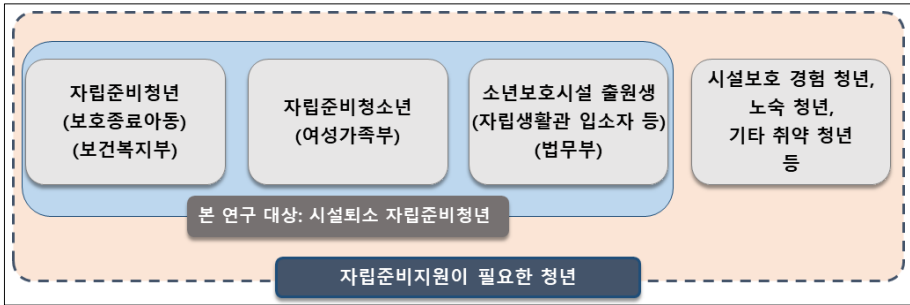
1.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의 개념

현재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법」상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생활하다 보호종료 종료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청년들로 이전의 ‘보호종료아동’의 정의와 동일하다. 그러나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과 발생 배경 및 자립준비정도가 비슷하지만 단지 아동보호체계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로 자립준비청년의 범주에서 배제된 청년들이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여가부 산하 청소년보호시설 퇴소 청소년 및 법무부 산하 소년보호시설 출원 후 자립준비를 하는 청년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자립준비청년의 범위를 좀 더 확장하여 사용하고자 하였다. 즉 이 연구에서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청소년기에 원가정에서 벗어나 공적 지원을 받으며 생활하였으나 자립기반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하여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을 의미한다.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청소년기 중 일정 기간 이상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다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로 정의하였다. 보호시설이란 보호력이 없는 원가정으로 인해 가정에서 생활하지 못하는 아동·청소년들에게 일정 기간 이상 보호 및 지원을 제공하는 시설 및 기관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시설로는 복지부 산하 아동양육시설, 여가부 산하 청소년복지시설, 법무부 산하 소년보호시설 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으로 「아동복지법」상 아동양육시설에서 퇴소한 보호종료 청년, 「청소년복지지원법」상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등에서 자립지원 중인 청년(자립준비청소년), 「소년법」상 소년보호시설 출원 후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을 포함하였다(그림 II-1).⁶⁾

5) 이 장은 백해정 선임연구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다.

6) 이들을 통틀어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으로 명명하고, 편의 상 ‘시설퇴소청년’이란 용어를 혼용하였으며 유형에 따라 ‘○○시설 퇴소청년’으로 지칭하기도 하였다.



* 출처: 김지연 외(2022). p.79 수정.

그림 II-1.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의 개념 및 유형

2. 유형별 현황 및 특성

이 절에서는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들을 퇴소시설 유형별로 나누어 이들의 현황 및 특성을 살펴보았다.

1) 아동양육시설 퇴소청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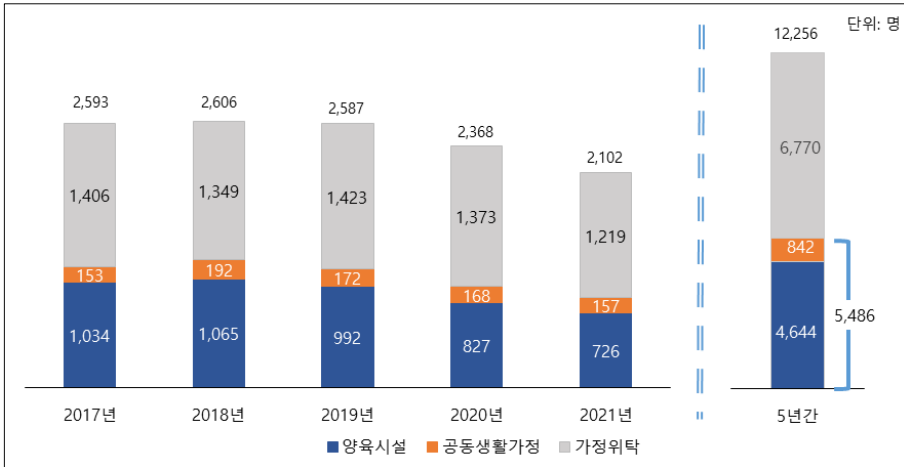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가 종료된 후 자립을 시작한 청년들은 2017~2019년까지 연간 약 2,600명 수준이었으나 이후 그 수가 점차 감소하면서 2021년에는 2,102명으로 집계되었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2) (그림 II-2). 이 중 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퇴소청년은 2021년 기준 883명으로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에 근거하여 18세 이후 또는 보호기간 만료⁷⁾ 후 시설을 퇴소하여 5년간 자립지원을 제공받는 청년은 가정위탁을 제외⁸⁾하고 약 5,500명 수준이다.

2021년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2)에 따르면 2,102명 중 대학 입학 이상의 학력을 지닌 경우는 총 1,175명(55.9%)이고 대학생들의 학비조달 방법의 대부분은 국가장학금(84.7%)이었으며 대학장학금(2.5%)이나 자자체지원금(3.1%)을 활용하기도 하였다. 2021년 자립준비청년들 중 취업자는 39.2%(825명)로 그 중 정규직은 52.7%, 비정규직은 37.2%였으며 가장 많이 종사하는 직종으로는 전문직

7) 「아동복지법」 제16조의3에 근거하여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라도 25세까지 보호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최근 조사에는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2)

8)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된 후 5년간 자립지원을 받은 청년(6,770명)까지 합하면 총 12,256명이다.



* 출처: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2022), p.117.

그림 II-2. 2017~2021년 자립준비청년 현황 추이(명)

(25.1%), 서비스직(22.7%), 기계조작·조립(13.1%)과 단순노무직(13.1%), 사무직(9.6%)⁹⁾ 순이었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2). 주거지에 대한 응답을 보면 자립준비청년의 39.5%(양육시설 65.8%, 공동생활가정 64.3%, 가정위탁 20.6%¹⁰⁾)가 LH를 비롯하여 정부지원의 주거지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2).

「아동복지법」 제38조의2(자립지원 실태조사)¹¹⁾에 근거하여 2020년 보호종료아동¹²⁾ 3,1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이상정 외, 2020)에 따르면 이들의 가정외보호기간은 평균 11.8년이며 보호종료아동의 48.6%는 부모가 있다고 응답했으나 그 중 10.9%만 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고 22.9%는 부모를 만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세후 월 평균 소득은 127만 원¹³⁾으로 결코 높다고 할 수 없는 수준이며 응답자의 35.8%는 최근 1년간 질병을 앓은 경험이 있었지만 그 중 치료를 받은 경우는 43.3%에 불과하였고

9) 이는 2020년 보호종료아동실태조사(이상정 외, 2020)에서 서비스직(25.9%), 전문직 및 관련업(19.3%), 사무직(15.7%), 정치·기계 조작 및 조립(10.5%), 단순 노무직(7.6%)으로 응답한 순서와 다소 차이를 보인다.

10) 가정위탁에서 보호가 종료된 청년들의 정부지원 주거지에서 생활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이들 중 39.9%가 여전히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11)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지원, 생활 및 정서적·신체적 건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12)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가 종료된 이들로 현재는 자립준비청년으로 부른다.

13)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전체 응답자의 월 평균 소득이며 이들 중 취업자의 월 평균 보수액은 182.2만 원이다.

46.7%는 일부만 치료받았거나 전혀 받지 못했다고 응답하였다. 이들이 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 가장 큰 이유는 ‘치료비가 없어서’(37.7%)였다(이상정 외, 2020). 전체 응답자의 9.7%가 건강보험료 체납 경험이 있었으며 보호종료 연차가 높을수록, 자립수당 대상이 아닐 경우 체납 경험이 많았고 그 이유로는 ‘돈이 없어서(39.2%)’, ‘건강보험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26.2%)’ 등의 순이었다(이상정 외, 2020). 한편 이들의 건강보험 종류를 살펴보면 의료급여 수급자가 전체의 57%로 나타났는데(이상정 외, 2020) 이는 이들이 기초생활 보장수급자임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보호종료아동의 50%는 경제나 가정 문제, 정신 질환 등을 이유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5.3점에 불과하였다(이상정 외, 2020).

한편 2021년 현재 18세 이전에 보호가 종료된 경우는 총 243명(양육시설 137명, 공동 생활가정 70명, 가정위탁 36명)으로 보고되었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2). 이들의 보호종료 사유를 살펴보면 원가정 복귀(44.4%)가 가장 많았고 두 번째 많은 사유는 다른 시설로의 전원이 (40.1%)이었다.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도중에 ‘통고제도’¹⁴⁾를 통해 소년보호시설이나 다른 시설로 전원되어 중간에 보호가 종료되면 사실상 아동복지시설 재입소가 매우 어렵게 되어 이후 자립준비청년으로서 받을 수 있는 지원에서도 배제되기 쉽다(김지연 외, 2022).

2017년에서 2021년까지 최근 5년 동안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18세 이후 퇴소한 청년 중에서도 24.7%(12,081명 중 2,983명)는 지원기관과 연락이 끊긴 것으로 나타났다.¹⁵⁾ 이는 다시 말해 이들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자립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지자체의 자립지원전담인력의 부족을 이유로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에 이들의 정보를 등록하는 사람이 자립지원전담인력이 아닌 이들을 보호하던 시설 내 인력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호시설에서 시설퇴소청년을 사후관리대상으로 등록하지 않

14) 통고제이란 특별히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아동·청소년이라도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이 우범소년, 즉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을 통하지 않고 사건을 법원에 직접 접수시키는 절차이다. 1차년도 연구(김지연 외, 2022)에서 아동복지시설 아동 중 통고제도를 통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입소하고 퇴소 후 청소년복지시설 등을 전전하는 사례가 보고되기도 하였다. 최근 통고제도에서 장기 보호관찰(5호) 및 소년원 송치처분(10호)의 폐지(법무부 보도자료, 2022. 10. 26)에 대한 보도가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진행된 바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15) 경향신문(2022.10.19). 보육원·그룹홈 나온 청년 4명 중 1명 ‘소재 불명’...1명이 135명 관리.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210191131001?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ial&utm_campaign=sharing에서 2023년 5월 11일 검색.

았거나 연락처 변경으로 인해 보호시설과 연락이 끊긴 경우 지자체에서 이들의 현황을 파악하여 사후관리를 하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은 사후관리의 부실로 지적될 수 있는 문제이고 그 주된 이유는 지자체 내 자립지원전담인력의 부족을 들 수 있다.

이상과 같은 통계결과를 종합해 볼 때 양육시설 퇴소청년들은 주거, 경제, 심리·정서 영역 등 전반에서 충분한 자립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특히 중간에 시설을 퇴소했거나 보호종료 후 연락이 끊긴 경우는 자립기반이 더욱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여러 자립 영역 중 특히 취약하여 지원이 필요한 부분과 지원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자립준비청년 개개인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자립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2)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¹⁶⁾

청소년쉼터는 2013년 현재 전국에 137개소(일시 32개소, 단기 67개소, 중장기 39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¹⁷⁾ 최근 3년간 중복대상자를 제외한 순인원을 기준으로 단기 및 중장기 청소년쉼터 입소자는 매년 4천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표 II-1). 그 중 18세 이상인 입소자는 대략 1,500~2,000명 선이다.

청소년자립지원관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19~2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2018년 국비 지원이 시작된 이래 개소 수가 점차 증가하면서 현재 전국 11개소가 운영 중으로¹⁸⁾ 지원 대상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순인원을 기준으로 2020년 이용자 수 320명이던 것이 2022년에는 515명으로 약 1.5배 이상 증가하였다(표 II-1).

이들의 퇴소 이후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는 사후 추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현재 시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 경기도 지역의 청소년시설 퇴소청소년 대상 조사를 바탕으로 청소년시설 퇴소청년의 삶에 대한 어느 정도의 추측이 가능하다.

16) 편의상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이라 명명하였으나 청소년쉼터 퇴소청년 외에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사례관리를 받는 청년도 포함한다.

17)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sp/yth/sp_yth_f014.do에서 2023년 4월 26일 검색.

18)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sp/yth/sp_yth_f014.do에서 2023년 4월 26일 검색.

표 II-1.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입퇴소자 수(순인원)

(단위: 명)

구분		청소년쉼터				청소년 자립 지원관 ²⁾	합계	
		단기		중장기				
		전체	18세 이상	전체	18세 이상		전체	18세 이상
입소 순인원 ¹⁾	2020년	3,997	1,727	585	339	320	12,482	2,386
	2021년	3,779	1,293	581	294	464	14,335	2,051
	2022년	3,655	1,354	554	278	515	20,132	2,147
퇴소 순인원 ¹⁾	2020년	3,442	1,307	341	192	320	4,103	1,819
	2021년	3,322	962	345	165	464	4,131	1,591
	2022년	3,239	994	323	163	515	4,077	1,672

* 출처: 여성가족부(2023). 내부자료.

* 주: 1) 순인원: 연간 이용 및 입소 인원에서 중복 대상자를 제외한 인원(면담사례는 포함)

2)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원칙적으로 19세부터 입소 가능함.

우선 전국 단위의 단기 및 중장기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이용한 18세 이상 청소년들의 주요 퇴소 사유 중 경제적 자립인 경우를 살펴보면 쉼터의 경우는 6% 내외로 그 비율이 매우 낮다(표 II-2). 한편 쉼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립의지가 있는 청년들의 입소가능성이 높은 자립지원관의 경우는 자립여건 마련 및 자립욕구에 의한 합의 종결을 주요 퇴소 사유로 응답한 이들이 전체 이용자의 2021년 기준 약 34.7%, 2022년 기준 약 57.8%로 그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2021년에 비해 2022년에 그 비율이 약 23%p나 증가하였다(표 II-3). 그러나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한 경우 외에도 쉼터에서는 보호기간 만료, 강제 및 무단 퇴소 등을 이유로 퇴소한 경우가 8% 내외, 자립생활관에서는

표 II-2. 최근 3년간 (단기, 중장기)쉼터 18세 이상 청소년 주 퇴소사유(순인원)

(단위: 명, %)

연도	총계	기간만료 및 연계, 합의에 의한 퇴소								강제 및 무단퇴소			
		소계	가정 복귀	경제적 자립	기숙 (대안) 학교	타 시설 연계	입대, 입원 등	보호 기간 만료	기타 퇴소	소계	법률형 집행	강제 퇴소	무단 퇴소
2020년	1,499	92.8	44.4	6.1	0.5	11.1	8.4	1.9	20.3	7.2	0.7	2.5	4.1
2021년	1,127	93.9	45.9	5.5	1.1	12.1	7.0	1.6	20.8	6.1	0.2	1.8	4.2
2022년	1,157	93.3	45.7	6.5	1.5	11.7	4.1	2.2	21.7	6.7	0.2	2.0	4.5

* 출처: 여성가족부(2023). 내부자료.

* 주: 7일 이내 긴급·일시보호시설인 일시쉼터는 제외(실인원 기준)

표 II-3. 청소년자립지원관 주 퇴소 사유

(단위: 명, %)

연도	총계	자립 여건 마련	취업/ 창업	학원, 대안 학교, 기숙사 입학	자립 생활 욕구에 의한 합의 종결	자진 퇴소 요청	자립 의지 부족	연락 두절 (무단 퇴소)	타 시설 연계	타 지역 이주	가정 복귀	기타
2021년 ^{*)}	190	28.9	0.5	0.5	5.8	6.8	8.4	11.1	5.8	7.4	9.5	23.7
2022년	218	42.2	2.3	0.5	15.6	2.8	2.8	6.9	4.1	4.1	3.7	15.1

* 출처: 여성가족부(2023). 내부자료.

* 주: 2021년은 중복응답으로 합이 100% 이상임.

자립의지 부족, 무단 퇴소 등을 이유로 퇴소한 경우가 10% 내외로 나타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자립 여건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은 청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로 내몰릴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자들의 특성을 간략히 살펴보면 이들 중 부모의 방임이나 가정폭력 및 학대를 경험한 경우가 일반 청소년은 물론 다른 유형의 위기청소년에 비해 많았으며 이러한 가정 내 갈등은 가출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황여정, 임희진, 정은주, 유설희, 정윤미, 2022). 또한 같은 조사에서 자살생각 및 시도를 한 비율은 각각 58.4%와 32.3%로 다른 유형의 위기청소년에 비해서도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주요 이유로는 심리적 불안이나 우울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황여정 외, 2022). 이러한 결과는 상당수의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자들의 심리·정서 상태가 불안정한데 이는 이들 가정환경과의 밀접한 관련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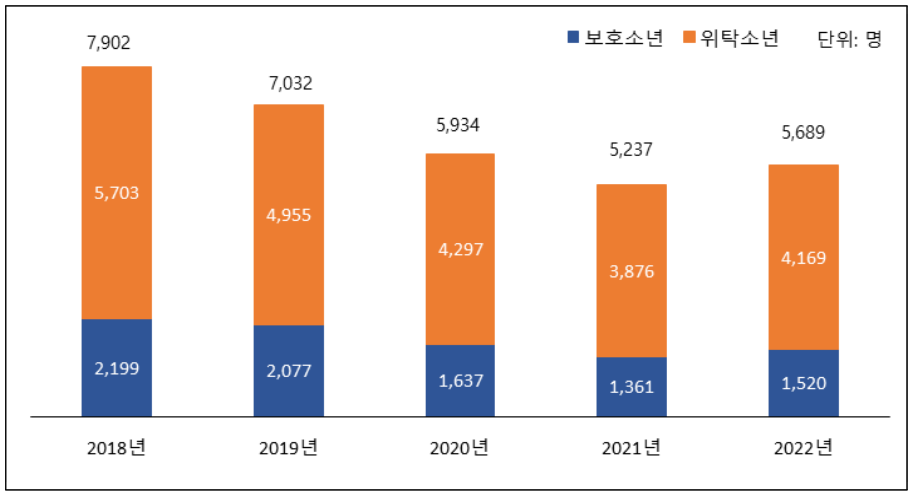
경기도 내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거주 경험이 있는 18세 이상 청년 34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전민경, 2020)에 따르면 자신의 건강보험 종류를 모르는 경우가 절반 이상(53.4%)이었으며 응답자의 약 11%는 인지 부족이나 경제적인 이유로 보험료를 체납하기도 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90.7%가 아르바이트의 경험이 있었으나 조사 시점에서 취업자는 37.9%에 불과하였고 이들 중 비정규직(55.1%)이 절반 이상이었으며 취업자의 월 평균 소득은 157만 원이었다(전민경, 2020). 이러한 결과는 이들의 취업상황이 열악함을 보여준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36.2%는 부채(평균 액수는 718만 원)가 있었는데 부채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는 ‘생활비 마련’(71%), ‘주거마련’(26.6%), ‘직업대출 사기’(20.2%), ‘학자금 마련’(16.1%) 순으로 나타났다(전민경, 2020). 이 결과는 경기도

내 청소년복지시설 거주 및 퇴소자의 분석 결과이나 타 지역의 청소년복지시설 거주 및 퇴소청년의 경우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다는 가정 아래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자들의 자립기반이 정서나 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열악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청소년시설 퇴소청년들은 양육시설 퇴소청년들과 마찬가지로 부모의 충분한 지원이 없이 자립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주거, 경제, 심리·정서 영역 등 전반에서 자립기반이 매우 부족함을 보인다.

3) 소년원 퇴소청년

최근 5년간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¹⁹⁾에 송치 및 위탁된 (23세 이하) 소년의 규모를 살펴보면 그림 II-3과 같다. 2018년 약 8천 명에서 점차 감소하여 2020년 이후 5천 명대로 보고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전년도보다 다소 증가한 5,689명이다.

이들 소년보호기관(시설)은 재비행 방지를 지원하고 있지만 2020년 소년원 출원 후



* 출처: e-나라지표 홈페이지.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38에서 2023년 5월 16일 검색.

- * 주: 1) 신수용인원: 당해연도 법원 소년부 결정에 따라 소년보호교육기관에 송치/위탁된 인원과 새로 입소한 인원
- 2) 보호소년: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7호부터 제10호의 규정에 의해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
- 3) 위탁소년: 「소년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비행 원인과 자질 규명을 위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

그림 II-3. 최근 5년간 보호소년, 위탁소년 현황

19) 보호소년은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 위탁소년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을 의미한다.

표 II-4. 소년원 출원 후 3년 이내 재입원 현황(2016~2019년)

(단위: 명, %)

	출원인원	재입원인원					
		1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	
		명	%	명	%	명	%
2017	2,174	181	8.3	370	17.0	416	19.1
2018	2,225	148	6.7	344	15.5	400	18.0
2019	1,832	113	6.2	281	15.3	-	-
2020	1,468	91	6.2	-	-	-	-

* 출처: 법무연수원(2023). p.527

* 주: 1)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통계, 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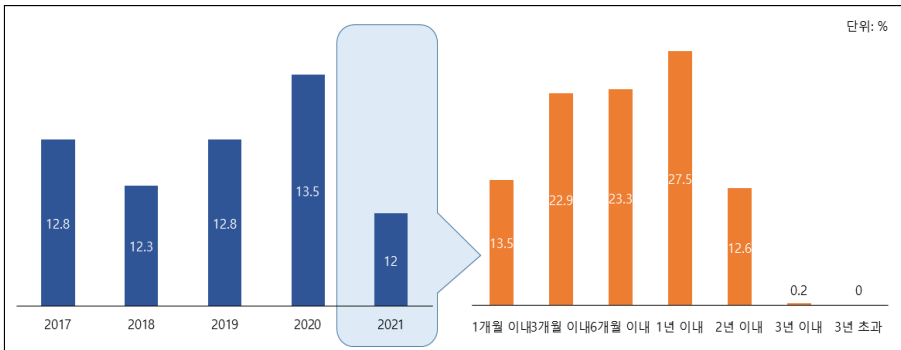
2) 해당연도 소년원 출원자 중 1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 소년원에 재입원한 인원.

3) 통계산출 기준: 이송, 처분변경, 이탈, 사망 등으로 출원 처리된 자 제외.

4) 2회 이상의 재입원생은 중복 처리하였으며 임시퇴원 취소자, 유죄판결, 재처분자는 제외.

1년 이내에 재범률은 6.2%였으며(표 II-4), 2020년 소년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률은 12%로 보고되었다(법무연수원, 2023). 소년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 현황을 보호관찰기간 경과시점별로 살펴보면 보호관찰 시작 1년 이내의 재범률이 87.2%로 나타났다(그림 II-4). 이러한 결과는 미성년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재범의 원인을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보호관찰 1년 이내에 집중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소년보호처분은 소년법 제32조 제5항에 의거하여 형사처벌과 달리 소년원 송치



2016~2020년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률(%)

2020년 보호관찰기간별 재범률(%)

* 출처: 법무연수원(2023). p.534의 내용을 재구성함.

그림 II-4.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률 및 보호관찰기간별 재범률(%)

처분을 받았더라도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소년원 입소기록은 형사재판 수사기록을 확인해야만 알 수 있다(김지연 외, 2022). 그러나 실제로는 보호처분 중 1~4호 처분(감호 위탁, 수강·사회봉사 명령, 단기 보호관찰)을 받았더라도 남아있는 재판기록으로 인해 해당 소년이 향후 장기보호관찰(5호 처분)이나 소년보호시설 위탁 및 소년원 송치(6~10 호)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 재판기록 확인 가능 제도는 이들의 취업 시 고용주 측에서 기록 확인을 통해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 이에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우범조항 자체를 폐지하도록 권고하였다.²⁰⁾

소년원 퇴소청년이 모두 자립지원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무의탁, 양육불량, 극빈가정 등 열악한 생활환경으로 인해 공공 차원의 자립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2021년 기준 19세 미만 범죄소년 54,017명 중 부모가 없는 경우는 1.7%(802명), 생활정도가 하류인 경우는 47.8%로 보고되었다(법무연수원, 2023). 또한 보호처분을 받은 24,383명 중 6호 처분은 가정의 보호력이 낮은 경우에 주로 내려지는데 2021년 6호 처분을 받은 소년은 1,436명(약6.5%)이다(법무연수원, 2023).

시설퇴소 후 가정의 보호 및 지원이 불가능하여 자립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22세까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보호소년법) 제45조의2(사회정착지원)에 의거하여 법무부 산하 한국소년보호협회에서 운영 중인 시설들을 통한 부분적인 지원이 가능하다. 그 대표적인 시설로는 청소년자립생활관(전국 8개소)과 청소년의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는

표 II-5. 자립생활관 및 창업비전센터 연도별 입주 및 입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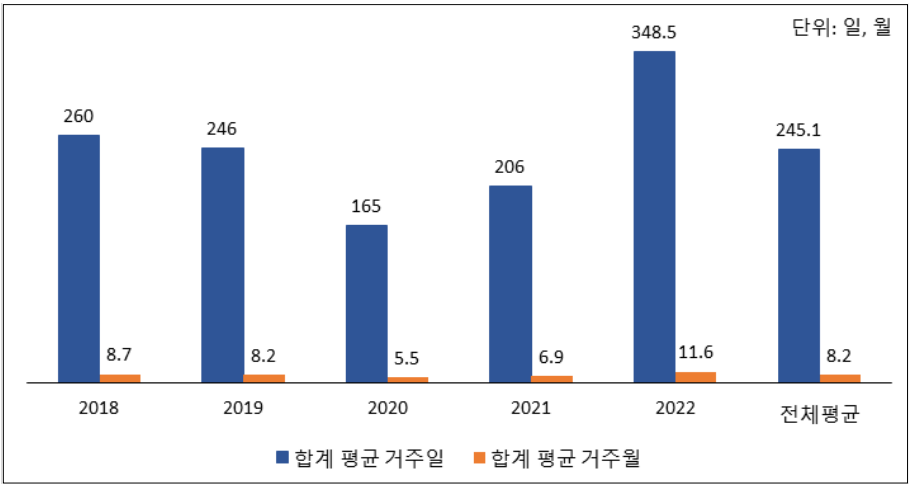
(단위: 명, 월)

연도	입주(입교) 현황		퇴거(퇴교) 현황	
	입주 및 입교	입주 및 입교 월 평균	퇴거 및 퇴교	퇴거 및 퇴교 월 평균
2018	156	13.0	152	12.7
2019	127	10.6	131	10.9
2020	147	12.3	134	11.2
2021	127	10.6	129	10.8
2022	81	6.8	85	7.1
합계	638	10.7	631	10.5

* 출처: 법무부(2023). 내부자료.

20)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2021.9.30). 우범소년 규정 삭제 등 소년사법제도 전면적 개선 필요.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boardtypeid=24&boardid=7607280&menuid=001004002001#>에서 2023년 5월 11일 검색.

시설인 청소년창업비전센터(전국 8개소) 등이 있다.²¹⁾ 청소년자립생활관은 각 시설 당 12~22세 무의탁 출원생 12~20명씩 총 130명을 정원으로 운영 중이다. 최근 5년간 자립 생활관 및 창업비전센터에 입주(입교)한 청소년은 총 638명으로 연평균 약 128명, 월 평균 입주(입교) 인원은 10.7명이며 퇴거(퇴교) 청소년은 총 631명으로 연평균 약 126명, 월 평균 퇴거(퇴교) 인원은 10.5명이다(표 II-5). 자립생활관 및 창업비전센터에서의 연도 별 평균 거주기간은 약 245.1일(8.2개월)로 나타났는데 특히 2022년에는 평균거주기간이 거의 1년(348.5일) 정도로 그 기간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그림 II-5). 자립생활관 등에서는 숙식제공 및 취업훈련 등을 자립기반을 제공하고 있으나 22세 이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최대 2년까지 입주가 가능하며 퇴소 후 이들에 대한 지원은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소년원 퇴소청년들 중 일부는 가정의 지원이 매우 부족한 상태에서 자립을 해야 하지만 이들 역시 주거, 경제, 심리·정서 영역 등 전반에서 자립기반은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 출처: 법무부(2023). 내부자료.

그림 II-5. 자립생활관 및 창업비전센터 평균 거주 기간(일, 월)

21) 한국소년보호협회 홈페이지. <https://www.kjpa.or.kr/51>에서 2023년 5월 8일 검색.

4) 복수시설 퇴소청년

시설퇴소청년들은 하나의 보호체계 안에서 장기간 생활 후 퇴소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나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다. 즉 2가지 이상의 보호체계를 넘나들며 여러 시설을 전전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예를 들어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하다 통고제도²²⁾로 인해 보호처분을 받고 소년보호시설(소년분류심사원, 6호시설, 7호시설, 8~10호에 해당하는 소년원)에 입소하거나 다른 시설로 전원 조치되는 경우 이후에라도 아동양육시설에서 다시 받아 주는 경우가 드물어 청소년복지시설이나 법무부 산하 자립생활관에서 퇴소하는 경우가 보고되었다(김지연 외, 2022). 또한 1차년도 실태조사(김지연 외, 2022)에 따르면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 중 18.8%가 평균 약 5년간, 소년보호시설 퇴소청년 중 28.2%가 평균 약 10년간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아동복지시설 퇴소청년 중 청소년복지시설(쉼터, 회복지원시설) 거주경험은 7.4%(평균 기간 약 13개월), 자립지원관이나 생활관 거주경험은 18.2%(평균 기간 약 15개월)였다(김지연 외, 2022)(표 II-6). 게다가 아동시설 퇴소청년의 10.8%, 청소년시설 및 소년보호시설 퇴소청년은 각각 약 42%가 고시원, 모텔 등 숙박시설에 거주한 경험(집단별 평균 거주기간 4~9개월 이상)이 있었다.²³⁾ 시설퇴소청년들의 시설 이동 경로를 도식화하면 그림 II-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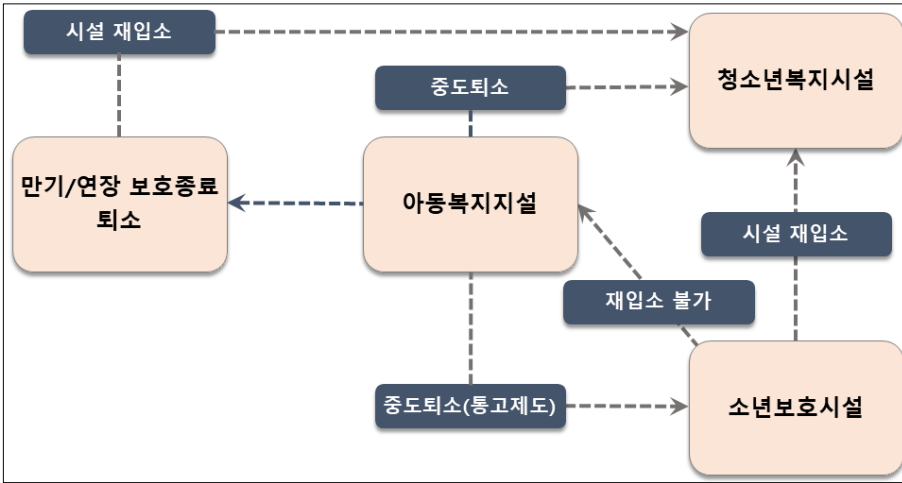
표 II-6. 각 시설퇴소청년 유형별 타 시설 이용률

(단위: %)

유형	아동시설 퇴소청년	청소년시설 퇴소청년	소년보호시설 퇴소청년
아동양육시설	87.7	18.8	28.2
청소년시설(쉼터, 회복지원시설)	7.4	80.3	36.3
자립지원관·생활관	18.2	33.6	50.0
미혼모·성폭력피해자·노숙인 시설	0.8	4.1	1.6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교도소·구치소	1.2	7.5	78.2
숙박시설(고시원, 모텔 등)	10.8	42.0	41.9
기타	4.4	30.0	26.6

* 출처: 김지연 외(2022). p.106의 내용을 재구성함.

- 22)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지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이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건을 법원에 접수시키는 절차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우범소년도 그 대상에 포함된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https://help.scourt.go.kr/nm/min_19/min_19_7/index.html에서 2023년 7월 5일 검색.)
- 23)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 따르면 고시원, 모텔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경우는 주거취약계층으로 인정되어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다.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000000021079>에서 2023년 7월 5일 검색.)



* 출처: 김지연 외(2022). p.116

그림 II-6. 시설퇴소청년의 시설 이동 경로

이상과 같은 결과는 한 개인이 청년기에 이르기까지 여러 시설을 옮겨 다니며 성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아동·청소년기에 원가정을 벗어나 국가 및 지자체 등에서 관리·운영하는 시설의 보호를 받은 경험이 있는 청년들을 최종 퇴소시설 유형별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것은 지원 대상자 입장에서 결코 바람직한 접근이 아닐 수 있다.

3. 영역별 자립 수준²⁴⁾

시설퇴소청년들의 자립수준은 교육, 근로 및 경제, 주거, 신체 및 정신 건강, 사회적 관계와 같이 몇 가지 주요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각 영역에 따른 시설퇴소 자립준비 청년들의 자립수준을 1차년도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교육 및 훈련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의 전체 대학 진학률은 61.2%로 일반청년(75.8%)에 비해 그 진학률이 낮았다. 시설별 차이를 보면 아동시설 퇴소청년 69.3%, 청소년시설 퇴소청년 38.1%, 소년보호시설 퇴소청년 25.8%로 시설별 고등교육 경험률에서 격차를 확인할 수

24) 이 절은 1년도 연구결과(김지연 외, 2022)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있었다. 현실적으로 대학 진학은 일자리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 학력이 낮은 경우 양질의 일자리를 얻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자립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학 미진학자의 경우 그 주요 이유로는 돈을 벌기 위해서가 45.8%로 가장 많았고, 경제적 어려움(15%), 공부에 대한 흥미 부족(14.2%) 순으로 나타나 대학 진학의 걸림돌은 경제적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

2) 근로 및 경제

자립의 주요 영역 중 하나는 경제적 자립이다. 경제적 자립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설퇴소청년들의 근로 및 경제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시설퇴소청년들의 67.1%는 ‘지난 일주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들의 평균 근로시간은 28.85시간, 월 소득 평균은 158.5만 원이었다. 이는 정규직 근로자로 주40시간 근로를 하는 경우가 적음을 의미한다.

실제 이들의 일자리 형태를 살펴보면 일주일 동안 두 개 이상의 일자리에 종사한 경우는 15.3%, 단순노무종사자비율은 16.9%, 배달대행앱 기사 등으로 대표되는 플랫폼 노동 경험률은 12% 등으로 일자리의 질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특히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김기현, 배정희, 2021)에 참여한 청년 중 30세 이하 만의 응답을 재분석한 결과를 보면 일주일 동안 두 개 이상의 일자리에 종사한 경우는 1.3%, 단순노무종사자 비율은 2.5%, 플랫폼 노동 경험률은 3.8%로 일반청년들에 비해 시설퇴소청년들의 일자리가 많이 열악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시설퇴소청년 중 약 11%는 15세 이후 1년 이상 NEET 경험, 즉 학교나 직장 등에 다니지도 않으면서 진학·취업 준비도 하지 않은 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채무와 관련해서는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중 채무가 있는 경우는 36.2%(일반청년 14.7%), 부채 평균은 약 1,200만 원이었다. 부채 사유로는 주거비(평균 약 480만 원), 생활비(평균 약 145만 원), 학자금(평균 약 112만 원), 가족으로 인한 채무(평균 약 93만 원)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범죄피해로 인한 채무(평균 약 70만 원)도 보고되었다.

3) 주거

시설퇴소청년 중 절반 이상(54.3%)은 공공임대 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었고 민간임대 12.7%, 원룸 11%, 자립지원관생활관 1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시설 퇴소청년들의 60.5%는 공공임대에 거주하는데 반해 청소년시설과 소년보호시설 퇴소청년들 중에서는 각각 37.2%와 23.1%만이 거주하여 이들의 공공임대 거주율이 상대적으로 많이 낮았다. 또한 청소년 및 소년보호시설 퇴소청년들은 공공임대 거주율이 낮았을 뿐 아니라 주거지 보증금 금액(각각 평균 약 1,733만 원, 1,759만 원) 역시 아동시설 퇴소청년(평균 약 3,040만 원)에 비해 낮았는데 이는 그만큼 열악한 거주지에서 생활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퇴소시설별 주요 주거비 마련 방법(복수 응답)을 살펴보면 LH 등의 지원을 받은 경우가 아동시설 퇴소자 중에는 52.9%인데 반해 청소년시설은 29.8%, 소년보호시설 퇴소자는 7.7%에 불과하였다. 이에 따라 청소년시설 및 소년보호시설 퇴소청년들은 저축이나 근로소득을 통한 주거비 마련 비율(각각 46.1%, 44.6%)이 아동시설 퇴소자(28.1%)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근로소득 및 저축을 통한 주거비 마련 비율이 높을 경우 그만큼 자산형성과 그에 따른 경제적 자립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4) 신체 및 정신 건강

건강은 자립의 중요한 조건 중 하나이지만 시설퇴소청년들 중 자신의 건강이 나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21.2%로 결코 낮은 편이 아니었다. 특히 아동 및 소년보호시설 퇴소청년 보다는 청소년시설 퇴소청년에게서 그 응답률이 높았다.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우울 정도를 살펴본 바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25.7%는 경도 우울, 17.8%는 중등도 우울, 5.3%는 심한 우울로 나타났다. 이를 시설별로 나누어 보았을 때 청소년시설, 소년보호시설, 아동시설 퇴소청년 순으로 우울 정도가 심하였다. 또한 우울·불안으로 인해 일상생활의 어려움 정도를 파악하였을 때 (매우) 많이 어렵다고 응답한 경우는 9%, 조금 어렵다고 응답한 경우는 35.3%였는데 특히 청소년시설 퇴소청년에게서 많이 어려움 이상을 호소하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자살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있는 경우는 43.4%, 실제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는 경우는 21.8%(자살을 생각한 사람 중 50.2%)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청소년시설 퇴소청년 중

42.6%, 전체 시설퇴소청년 중 33.1%가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그만큼 이들의 정신 건강문제가 심각함을 시사한다.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19.9%가 체납 경험이 있고, 23%는 체납여부를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여 전체 응답자의 42.9%가 건강보험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 특히 청소년시설 및 소년보호시설 퇴소청년에게서 그 응답률이 높았다. 한편 보험 체납이 유로는 돈이 없어서(47.7%), 건강보험에 대해 잘 몰라서(보험료 내는 방법을 몰라서 등)(35%), 귀찮아서(13.5%), 병원에 갈 일이 없을 것 같아서(11.9%)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시설 퇴소청년들 중에서는 돈이 없어서(73.2%)란 응답이, 소년보호시설 퇴소청년들 중에서는 건강보험에 대해 잘 몰라서(57.9%)라는 응답이 가장 높아 이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 지원 및 정보 제공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5) 사회적 관계

자립에 대한 정의를 할 때 과거에는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독립적인 생활하는 것을 강조하였다면 최근에는 독립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 형성 역량 등도 자립 요소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형태로 변화하였다(김정연, 하지선, 김인숙, 2011). 따라서 건강한 사회적 관계 형성 역량은 자립 수준 측정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하지만 시설퇴소청년들의 대인관계 및 사회활동에 대해 살펴보면 시설퇴소청년들은 일반청년에 비해 외출 횟수가 적고, 그만큼 고립감을 느끼는 비율도 높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시설퇴소청년들 중 자신의 집이나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 경우는 3.6%, 인근 편의점 등에만 외출하는 경우는 6.8%로 나타났다. '21년 일반청년 조사 결과에서는 각각의 비율이 0.3%와 2.6%로 시설퇴소청년들에 비해 그 비율이 훨씬 낮았다. 즉 시설퇴소청년들은 사회적 관계를 맺지 않는 비율이 일반청년에 비해 높았다. 또한 집에 있으면서 가끔씩 외출하거나 거의 외출을 하지 않는 이유(복수응답)로는 돈이 없어서(38.5%), 인간관계의 어려움(31.3%), 취업이 잘 되지 않아서(23.0%)라는 응답이 많았다.

시설퇴소청년들 중 15.9%는 다른 사람들로 부터 고립되어 있다는 느낌을 가끔 또는 항상 갖는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고립감을 느낀다고 응답한 경우 중 30.2%는 3년 이상이라고 응답하여 청년들이 오랜 기간 고립감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4. 소결 및 시사점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의 특성과 현황을 간략히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결론 및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시설퇴소청년들은 어느 시설을 퇴소했는가에 상관없이 원가정의 보호와 지원이 매우 부족한 상태이며 그에 따라 일반청년에 비해 개인의 자립기반도 취약한 경우가 많았다. 이는 다시 말해 이들의 자립을 위해서는 공적 자립지원제도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시설퇴소청년 중에는 두 가지 유형 이상의 시설에서 생활한 경우가 보고되었다. 아동기에 아동보호체계로 진입한 청년이 소년보호체계를 거쳐 20대 초반에 청소년보호체계에서 나와 자립을 시작하는 경우가 그 단적인 예이다. 청소년시설 퇴소청년의 약 19%, 소년보호시설 퇴소청년의 약 28%가 아동양육시설에서의 생활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이들 중 상당수가 보호체계 유형을 넘나들고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시설퇴소청년들의 자립수준은 학업, 근로 및 경제 영역, 신체 및 정신건강 영역이나 사회적 관계망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 만족할만한 수준을 보이지 못했다. 그 중에서도 퇴소 시설 간 격차가 보고되어 비교적 장기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한 양육시설 보다는 청소년시설 퇴소청년들의 자립역량이 더 낮게 평가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종합해 본다면 시설퇴소청년들의 건강하게 자립하기 위해서는 여러 영역에서 통합적인 자립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시설퇴소청년들의 자립 상황이 퇴소시설 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이러한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뿐더러 특정 시설을 퇴소했다고 해서 지원제도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 — 제3장 시설퇴소 자립준비 청년 대상 지원정책 현황

- 1. 영역별 지원정책 현황
- 2. 지원정책의 쟁점

앞 장에서 퇴소시설 유형에 따른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들의 특성과 자립준비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퇴소시설 유형별로 이들에게 지원되는 제도들을 몇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지원제도 상의 차이가 발생하는지 살펴보았다.

1. 영역별 지원정책 현황

1) 경제·일자리 영역

시설퇴소청년 중 아동복지시설 퇴소청년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자립정착금 1천만원, 자립수당 최대 5년까지 월40만 원으로 타 유형 시설퇴소청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관계부처 합동, 2022.11.17). 뿐만 아니라 시설생활 경험 여부와 상관없이 저소득 및 취약계층에 해당되면 청년지원제도 이용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은데 보호종료아동은 대부분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면서부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보면 일부 몇몇 지자체를 제외하고 자립정착금 지원은 없으나 2021년 하반기부터 청소년쉼터 퇴소자 중 자격요건을 갖춘 이들에게는 자립지원수당(23년 기준 월 40만 원 최대 3년)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그 대상자도 '21년 27명에서 '22년 97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여성가족부, 2023). 그러나 이러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연간 쉼터 퇴소인원을 고려한다면 그 수급인원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이는 많은 쉼터 이용자들이 수급 요건, 즉 총 2년 이상 쉼터 거주 및 퇴소 직전 한 시설에서 6개월 연속 거주하는 경우에만 수급이 가능하다는 요건을 맞추기 어려운

25) 이 장의 1절은 백해정 선임연구위원과 김승경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절은 백해정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다.

것과 더불어 아직은 자립수당에 대한 인지도가 낮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소년 자립지원관을 퇴소한 청소년의 경우는 자립지원 수당 수급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복지시설은 보장시설이 아닌바, 이 시설들을 퇴소한 청년은 저소득 및 취약계층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수급 신청에 대한 정보나 이해의 부족, 불가피한 개인 사정²⁶⁾ 등으로 수급 신청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이 보고되기도 한다. 즉 아동복지시설과 달리 보장시설에서 제외되는 청소년 복지시설 퇴소청년들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자립지원 및 청년지원의 대상으로 선정되기가 상대적으로 까다롭다. 최근에는 민간기업의 지원을 받아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민간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신한은행 연계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적금' 지원, SK기업의 '행복도시락' 배송, 이디야 커피의 커피전문가 양성 교육프로그램 및 인턴십 제공 등이다(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3.6.9). 시설퇴소청년들에 대한 민간지원은 여전히 아동복지시설 퇴소청년에 대한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소규모나마 자립지원관에서 생활하는 청년들을 포함, 자립준비 증인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제공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년보호시설 퇴소청년들에게 제공되는 중앙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자립수당이나 자립 정착금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 다만 한국소년보호협회 본부 또는 소속 생활관에서 민간 후원금을 바탕으로 소년보호협회 임주생 퇴소 시, 교통비(약20만 원)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²⁷⁾ 이들을 위한 후원금의 액수가 많지 않다보니 지원금 등의 수준은 아동보호 시설이나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에게 지급되는 것과 비교하여 현격히 적다. 일자리 지원에서도 아동양육시설이나 청소년쉼터 퇴소청년의 경우는 국민취업제도, 청년도전지원사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의 제도에서 지원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소년보호시설 퇴소청년의 경우는 청년도전지원사업에서만 포함 가능하다.²⁸⁾ 이처럼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부족이나 후원금 모집이 여의치 않은 것은 부분적으로는 소년보호시설이 갖는 특수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들도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과 마찬가지로 저소득 및 취약계층의 조건에 충족하는 것을 증명한다면 그에 따른 청년정책의 혜택은 받을 수 있다.

26) 일례로 청소년쉼터 퇴소청년이 세대분리를 하여 기초수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학대 등을 증명하기 위한 신고와 이후의 과정, 원가정의 수급비가 줄어들어서 원가정의 생활비 부족, 원가정이 이전에 수급하던 것이 부정수급이라는 것이 밝혀지는 등에 대한 염려로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등이 보고되기도 한다(자문회의(2023.5.25.) 결과).

27) 자문회의(2023.6.7.) 결과

28)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 <https://www.youthcenter.go.kr/main.do>에서 2023년 5월 24일 검색.

2) 주거지원

시설시설별 주거지원과 관련하여 양육시설이나 청소년쉼터 퇴소청년들은 일정 기준을 통과하면 공공임대주택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청소년쉼터 퇴소청년의 경우는 자립지원수당과 마찬가지로 쉼터 이용기간이 2년 이상이거나 퇴소 후 5년 이상 무주택자인 것을 증명해야 하므로(여성가족부, 복권위원회,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2)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가 아동양육시설 퇴소청년만큼 용이하지 않다. 소년원 퇴소청년들은 한국소년보호협회 차원에서 LH와 계약을 통해 임대주택을 운영하면서 일부 주거지가 필요한 소년원 출원생 및 소년보호협회 퇴소생에게 주거지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으나²⁹⁾ 개인자격으로는 입주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3) 교육지원

시설퇴소청년에 대한 교육지원은 이들의 연령대를 고려하여 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다.³⁰⁾ 아동양육시설 및 청소년쉼터 퇴소청년들은 대학 진학 시 국가장학금 II유형으로 분류되어 지원 가능하며 행복기숙사의 우선 선발 및 기숙사비 지원 대상이다.³¹⁾ 다만 아동양육시설 퇴소청년들은 커리어넷(온라인 진로정보망)을 통해 보호아동 전용 상담창구를 활용한 진로지도 등이 가능한 반면 청소년쉼터 퇴소청년들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소년원 퇴소청년의 경우는 이러한 지원 대상에서 대부분 제외되어 있다. 다만 저소득 및 취약계층의 조건에 충족하는 것을 증명한다면 그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소년보호협회차원에서 후원금을 바탕으로 대학생에게 100만 원의 격려금이 지급되는 등 적으나마 자체적인 지원이 제공된다.³²⁾

29) 자문회의(2023.6.7.) 결과

30) 청년의 나이이지만 고등학교 졸업 미만의 학력을 가진 경우는 시설퇴소 여부 및 유형에 상관없이 24세까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제도를 통해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 취득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cs/opf/cs_opf_f941.do에서 2023년 7월 14일 검색.)

31)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 <https://www.youthcenter.go.kr/main.do>에서 2023년 5월 24일 검색.

32) 자문회의(2023.6.7.) 결과

4) 정보 제공

시설퇴소청년 대상 자립지원정보 제공은 이들의 자립생활에 반드시 필요하다. 복지부에서는 양육시설 퇴소청년들을 위해 통합적 자립지원 정보안내체계를 구축하여 온라인 플랫폼과 콜센터 운영을 통해 자립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2.11.17). 여성가족부에서도 모바일 앱인 '자립해냄'을 운영하면서 자립정보를 제공하고 있다(여성가족부 외, 2022). 반면 소년보호시설 퇴소청년들을 위해서는 소년보호협회 홈페이지에 자립지원 정보 제공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는 정도이며 정보안내체계를 구축하고 있지는 못하다. 이는 모바일 앱 등의 체계를 구축할 만큼 자립지원 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것과도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5) 의료 및 심리 지원

양육시설 퇴소청년들은 기본적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는 보호종료 후 5년간 의료급여 2종 수준으로 본인부담금 경감해주고 있고 심리지원과 관련해서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의 우선 지원 및 본인 부담금 면제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2.11.17). 이에 반해 청소년쉼터나 소년보호시설 퇴소청년들은 이러한 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의 경우 지원을 받을 수는 있으나 아동양육시설 퇴소청년들처럼 우선 지원 및 본인 부담금 면제 대상은 아니다.

6) 사회적 지지체계 및 기타

사회적 지지체계와 관련하여 양육시설 퇴소청년들을 위해서는 자립지원전담인력 확충 및 자조모임 활성화 등으로 자립준비를 위한 사회적 연결망 구축을 위한 노력이 정부부처 차원에서 제공되고 있으나(관계부처 합동, 2022.11.17) 청소년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 퇴소청년들을 위한 정부부처 차원의 지원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여성가족부에서 가정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국제교류 프로그램 참가 신청시 가산점 부여 및 참가비 전액 지원 정도가 제공되고 있다(여성가족부 외, 2022).

표 III -1.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 비교 표

구분	아동양육시설 퇴소청년	청소년쉼터 퇴소청년	소년원 출신 청년	청년 전체
자립지원 수당 및 경제적 지원, 의료지원	☐ 자립수당 ☐ 지원 대상: 보호종로 5년 이내의 자립준비청년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보호가 종료된 자 - 보호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 보호받은 자 ☐ 월 40만 원 (최대 5년)	☐ 자립지원수당 ☐ 지원 대상: 쉼터(자립지원관 제외) 퇴소일로부터 3년 이내 - '21년 1월 이후 만 18세 이후 퇴소자 - 퇴소일 기준,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직전 6개월은 연속 보호받은 자) ☐ 월 40만 원(최대 3년)	-	-
	☐ 자립정착금 ☐ 1,000만 원 이상 지급 권고 ☐ 금융교육* 이수 여부를 고려해 분할 지급(예: 1회 1,000만 원 → 2회 각 500만 원)방안 권고	☐ 자립정착금 ☐ 일부 광역 지자체(부산 1,000만 원, 울산, 제주 500만 원)만 지급	☐ 협회 자립정착금(민간) ☐ 지원 대상: 소년보호협회 임주생 퇴소 시, 대상자 상황에 따라 협회 본부 또는 소속 생활관에서 교통비 (약20만 원) 지급	-
의료지원	☐ 자산형성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통장)) ☐ 후원 등을 통해 일정금액 저축 시 국가(지자체)가 월 10만 원 내에서 1:2 매칭 지원 ☐ 만 18세부터 특정 자립 용도로 인출 가능, 만 24세부터는 자유롭게 인출 가능 ☐ 만 18세 이후 청년 명의 통장과	☐ 자산형성지원: 국비 투여 없음 ☐ 단 신한은행 연계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착금' 지원 (규모: 2억 7천만 원) - 50명 대상 납입액 기준 1:1매칭 (월 최대 15만 원)	-	☐ 자산형성지원 ☐ 청년희망키움통장 - 생계급여(중위소득 30% 이하) 가구의 근로 청년에게 근로소득 공제금(매월 10만 원)+일정 비율 근로소득 장려금 지급 - 3년 후 평균 1,500만 원 적립 ☐ 청년내일저축계좌 - 15~39세

구분	이동양육시설 퇴소청년	청소년쉼터 퇴소청년	소년원 출원 청년	청년 전체
	연결, 별도 하지 절차 없이 만 24세가 되면 자동으로 인출(만 18~24세 자립용도 인출은 유지) 추진('23)			-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이 적립금(10만 원) 저축 시 근로소득장려금(월 30만 원) 지원 - 중위소득 50~100% 이하 가구 청소년 월 10만 원 내 1:1 매칭
	☐ 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재산 공제 수준 확대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시 보호연장 기간부터 보호종료 후 5년간 근로·사업소득 공제(60만 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자립수당 및 자립장착금은 소득 및 재산기액 산정 시 제외	-	-	-
	☐ 의료비 지원사업 ☐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에게 보호종료 후 5년간 의료급여 2종 수준*으로 본인부담금 경감 * 의료급여 2종 본인부담금: 1차 병원 외래 1,000원, 2·3차 병원 외래 급여비 총액의 15%, 입원 급여비 총액의 10%, 약국 이용 500원	-	☐ 협회 긴급 의료비 지원(민간) ☐ 소년보호협회 임주생 중 자해, 사고 등 긴급의료지원 필요시 후원금으로 의료실비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검사 및 치료 비용 지원(본인 일부 부담) ☐ 처상·위반·부담경감대상자 지원 ☐ 건강보험 경감 ☐ 만 21세 미만 저소득 소년소녀 가정 대상 소득·재산 수준별 건강보험료 경감(10~30%)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 9~24세 위기청소년 ☐ 건강지원(진찰·검사, 약제·치료

구분	이동양육시설 퇴소청년	청소년선택 퇴소청년	소년원 출원 청년	청년 전체
	☐ 공공임대주택 ☐ 자립준비청년(연장아동 포함) 공공임대주택(전세·건설·매입임) 지원 중이며, 공공임대 거주율 약 48%(‘20 자립실태조사) -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만 20세 이전까지는 무상지원, 전세임대 거주 5년 동안 임대료 50% 감면 ☐ 전세임대 무상지원 기간을 만 20세 이하에서 만 22세 이하로 확대 추진(‘23)	☐ LH공공임대주택 ☐ 지원 대상: 2년 이상 선택 이용한 청소년으로 퇴소 예정 또는 퇴소 후 5년 이내* 무주택자 * 24세 퇴소 시 29세까지 신청 가능 - (매입·전세임대) 18세 이상 미혼 - (건설임대) 나이 및 결혼 여부 관계 없음 ☐ 지원내용: 매입·전세·건설임대주택 우선 공급	☐ 협회 LH임대주택(민간) ☐ 지원 대상: 소년원 출원생 및 소년보호협회 퇴소생 최장 6년(만 29세까지) ☐ 단 이 경우 입주자 개인이 아닌 소년보호협회 차원에서 계약·운영	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 연 200만 원 이하), 생활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상담지원, 법률지원, 활동지원 등 ☐ 행복주택 (청년을 위한 공적 임대 주택) ☐ 공공임대: 사회초년생, 대학생, 취업준비생 ☐ 공공자립민간임대: 무주택 청년 ☐ 청년 전세임대 ☐ 19~34세 미취업자 ☐ 임대보증금: 기준에 따라 100~200만 원 ☐ 월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1~2%이자 해당액 ☐ 최초 임대기간은 2년, 자격요건 충족시 2회 재계약(2년 단위) 가능 ☐ 청년 매입임대주택 ☐ 계약기간 2년, 최대 6년 ☐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공급, 임대보증금 100만 원
주거지원				

구분	이동양육시설 퇴소청년	청소년쉼터 퇴소청년	소년원 출원 청년	청년 전체
				☐ 청년 사회적 주택 ☐ 19~39세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 일정 기준 충족 ☐ 청년월세 특별지원 ☐ 19~34세 독립가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중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서 전입신고한 거주주택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며 월세가 60만 원 이하인 경우 1년간 월 최대 20만 원 지원
교육지원	☐ 국가근로장학금 우선 선발 ☐ 학기당 520시간 근로 가능	좌동		☐ 국가근로장학금 ☐ 지급금액(시급단가): - 교내근로 9,620원 - 교외근로 11,150원
	☐ 국가장학금: II 유형 우선 선발	좌동	☐ 협회 장학사업(민간) ☐ 상·하반기 민간사업비 및 후원금으로 소년원 재·출원생 및 협회 입소생 중 선정하여 생활 장학금 지급 ☐ 중·고교생(50만 원),	☐ 국가장학금(I, II 유형) ☐ (유형)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국내 대학생 중 성적기준을 충족한 자 -지급금액: 지원구간에 따라 연간 최대 350만 원~전액

구분	이동양육시설 퇴소청년	청소년쉼터 퇴소청년	소년원 출원 청년	청년 전체
			대학생(100만 원), 취업준비생(학원실비), 검정고시 합격 격려금(30만 원), 각종 자격증 취득 시 격려금(10~20만 원)	○ (이유형) 국가장학금 II 유형 대학 참여재학생 중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로 대학별 산발기준 충족한 자 -지급금액: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 *경제사정 관련자의 경우, 지원구간, 성적요건 등을 완화하여 지원 가능
	☐ 행복기숙사 ○ 우선 선발 및 기숙사비 지원	좌동	-	☐ 행복기숙사 ○ 저렴한 비용의 기숙사 제공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무이자 지원		-	☐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부생(만 35세 이하) 및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대학원생(만 40세 이하)
	☐ 파란사다리 사업 대상에 포함	좌동	-	☐ 파란사다리 사업 ○ 국내 대학 재학생 중 경제적·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해외연수 및 진로탐색 경험 제공
	☐ 교육기회 제공 ○ 커리어넷(온라인 진로정보망)에 보호아동 전용 상담창구 운영 ○ 커리어넷 진로상담위원 연수 과정·보호아동·지립준비청년	-	-	-

구분	이동양육시설 퇴소청년	청소년쉼터 퇴소청년	소년원 출원 청년	청년 전체
	맞춤형 진로교육 내용 포함 ○ 자립지원 종사자 대상 진로지도 교육 시 강사 지원			
일자리, 취업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 II유형에 포함 ○ 고용센터 내 자립준비청년 전담자 지정, 발굴·홍보·사례관리 등 소과정에 자립지원전담기관과 협업 강화 -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특화 상담매뉴얼 마련	☐ 국민취업지원제도 ○ II유형에 청소년 쉼터 입/퇴소 (보호기간 1년 이상) 청년 포함	☐ 협회 상생드림카페(민간) ○ 지원내용: 보호처분 대상자 중 바리스타 현장 경험이 필요한 사람 ○ 훈련비, 교통비, 학습교재 및 바리스타 시험 응시료 등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 지원 내용: 일 경험·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 지원, 참여기구축진수당(유형)이나 취업활동비용(II유형) 지급 -구직촉진수당: 6개월 간 월 50만 원씩 지급 -취업활동비용: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84천 원 ○ 지원 대상 - (1유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가구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자 중 취업경험이 있는 자(요간심사형, 청년(18~34세) 중 요간심사형 미해당자이며 가구 기준 재산 합계액이 5억 원 이하이고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로 취업경험 무관(선발형)

구분	이동양육시설 퇴소청년	청소년선택 퇴소청년	소년원 출원 청년	청년 전체
	☐ 청년도전지원사업 ☐ 지원 대상에 아동복지시설 퇴소 5년 이내 또는 보호연장 청년 포함	☐ 청년도전지원사업 ☐ 지원 대상에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보호한 만 18세 이상의 청년	☐ 청년도전지원사업 ☐ 지원 대상에 보호시설(보육원, 보호관찰소 등) 독립 후 개인적 사정 등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서비스 참여가 어려운 청년 포함	- (2유형)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장계층 청년 지원 ☐ 청년도전지원사업 ☐ 지원 내용: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참여 시 참여수당 250만 원, 인센티브(50만 원) 지급 → (이수 시)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 (취업 시)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연계 지원 ☐ 지원 대상: 구직단념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선택 입·퇴소청년 등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일반적 지원기준(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과 달리 실업기간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청소년 선택, 자립지원관, 화북지원시설 입·퇴소(이용, 사례관리 포함) 청년은 일반적 지원기준(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과 달리 실업기간과 관계 없이 지원 가능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지원내용: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취업예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 ☐ 지원 대상: 취업예로청년* *취업예로청년: 만 15~34세의 6개월 이상 실업상태 청년, 고졸 이하

구분	이동양육시설 퇴소청년	청소년쉼터 퇴소청년	소년원 출원 청년	청년 전체
	☐ 청년 일경험 지원 ☐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기업탐방 등 특화과정 설계·운영	☐ 사회적기업 취업 ☐ 지원 대상: 쉼터 입·퇴소 청소년(1년 이상) 중 만 34세 이하인 자 ☐ 지원내용: 착약계층에 포함하여 사회적기업 취업 기회 및 사회서비스 제공		학력이 청년, 자립지원필요 청년 등
	☐ 국민내일배움카드 ☐ 훈련비지원 우대대상에 자립준비청년 포함	☐ 이디야커피 6개월 유급 인턴(SK와 이디야 지원)	-	-
자립지원 정보 제공	☐ 통합적 자립지원 정보안내체계 구축 ☐ 보호 전·후 자립지원 정보 제공을 위해 이동관리보장원 내 창구 마련 - (온라인 플랫폼) 공공·민간사업을 한 번에 볼 수 있고 청년 간 소통·멘토링이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자립정보 on) 구축 ☐ (콜센터 운영) 각종 자립 정보 문의 등 도움 필요 시 연락 가능한 자립준비청년 전용 콜센터 운영 및 전문상담사 배치	☐ 내 손안의 자립지원 정보 ☐ '자립해남' 모바일 앱 운영 - 취업지원제도, 복지서비스 등 정부 지원정책과 주택임대계약 절차,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등 자립에 필요한 정보 제공 - 이용자의 현재 위치에 기반하여 청소년쉼터를 검색하고 해당 청소년쉼터의 상세정보와 입소가능 여부 확인 가능 - 자립 및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 협회 홈페이지를 통한 자립 안내 ☐ 전국 소년원, 보호관찰소를 통한 자립지원 정보 제공	-

구분	이동양육시설 퇴소청년	청소년쉼터 퇴소청년	소년원 출원 청년	청년 전체
		11개* 유형으로 제공하고 자립준비 수준 자가 진단 가능 * 11개 요인: 자립의지, 주거관리, 일상생활기술, 음식관리, 직업준비, 직장적응, 경제관리, 사회기술, 자원활용, 건강관리, 성보호 - 온라인 채팅, 전화, 문자, 카카오톡팅 바로가기 기능을 통해 상담이 필요한 경우 실시간으로 전문가 상담 가능 ☐ '멘토멘티 게시판' 개설 - 멘토는 자립 관련 문의 답변, 성공담 공유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자원센터에 대한 검색기능 추가 등 관련 기관과의 서비스 연계 강화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 대상: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소독(재산)기준 없음 ○ 지원내용: 등록된 제공기관에 방문하여 3개월(10회)간 주 1회의 전문심리상담(맞춤형 일대일)
상담지원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 우선지원 대상 1순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 본인 부담금 면제	-	-	

구분	이동양육시설 퇴소청년	청소년쉼터 퇴소청년	소년원 출원 청년	청년 전체
				서비스 원칙, 회당 50분)과 사전·사후감시(각 1회 90분) -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 12개월 지원
사회적 지자체 강화	☐ 자립지원전문인력 확충 ☐ 자립지원전문인력 확충('22년 120명→'23년 180명) 및 차우개선(1인당 담당 청년 수 약 100명→70명)	-	-	-
	☐ 자조모임 활성화 ☐ '바람개비 서포터즈' 구성, 보호대상아동 방문교육, 멘토링 등 ☐ 서포터즈 활동비(120명 대상 월 10만 원)제공 ☐ 시·도 자립지원전문기관 중심 지역별 모집·활동 지원* * (아동권리보장원) 신규 서포터즈 예비학교 및 관역별 서포터즈 워크숍 개최, 지역별 자조모임 운영 지원, 우수사례 활동집 발간 등	-	☐ 협회 소속기관(민간) ☐ 소속기관별 자원봉사자 연계 또는 멘토링 운영으로 입주생 대인관계 기술 지원 및 사회화 지원	-
기타	☐ 민간지원 발굴, 확산 ☐ 자립지원활동 참여를 위해 다양한 주제별 가이드라인 배포 및	☐ 청소년국제교류 ☐ (신청 시) 가정 밖 청소년에게 가산점 부여	-	-

구분	아동양육시설 퇴소청년	청소년쉼터 퇴소청년	소년원 출원 청년	청년 전체
	우수사례 확산 지원 ○ 민간지원 연계 - 전문기관(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 전문기관)이 민간기관-자립준비청년 간 연계 역할 수행 - 멘토링, 법률지원, 경제·금융교육	청소년쉼터 퇴소청년 ○ (참가 시)참가비 전액 지원 ☐ 행복도시락 ○ 자립지원관 이용 청소년 대상 주3식 도시락 배송(SK 후원)		
* 출처: 관계부처 합동(2022.11.17). 부모의 마음으로, 따뜻한 동행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보건복지부(2023). 2023년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안내.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2.6.10).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내 손 안의 자립지원 정보'.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10810에서 2023년 10월 2일 검색. 여성가족부(2023). 내부자료 여성가족위원회,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22). 자립이 필요할 때 읽어보는 서책.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 https://www.youthcenter.go.kr/main.do에서 2023년 9월 20일 검색 한국소년보호협회 홈페이지. https://www.kipa.or.kr/에서 2023년 5월 24일 검색				

* 주: 소년원 출원 청년 대상 지원 중 음영처리 부분은 국비 및 지자체 지원 없이 민간 후원금을 바탕으로 협회 자체 지원 내용임.

2. 지원정책의 쟁점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설 유형에 따라 지원의 내용과 수준에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각 유형별 시설들이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소년법」 등 제각기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각 법률들은 저마다 상이한 지원체계와 내용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설퇴소청년 지원정책의 주무부처 역시 시설유형별로 나뉘어 있다. 즉 양육시설 퇴소청년에 대한 정책은 보건복지부에서, 청소년시설 퇴소청년에 대한 정책은 여성가족부에서, 소년보호시설 퇴소청년에 대한 정책은 법무부에서 주로 담당한다. 그러나 시설퇴소청년의 상당수는 퇴소시설 유형에 상관없이 상당히 빈약한 자립기반을 갖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들이 자립을 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며 이러한 지원이 개인의 자립기반 수준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같이 퇴소시설 유형에 기초해서는 형평성의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일례로 주거지원에 있어서도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 퇴소청년의 경우는 퇴소 예정 또는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무주택자에게 별도 소득이나 자산 기준 없이 LH 임대주택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만³³⁾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은 2년 이상 시설 이용이라는 조건³⁴⁾이 명시되어 있다. 아동시설 퇴소청년은 입소부터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으며 2019년부터는 만 30세 미만 자립준비청년 수급자 가구에 대한 부양의 무자 기준이 폐지³⁵⁾되어 부모와 상관없이 수급자로 선정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 그러나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은 그 자격기준에서 제외되어 있다.

더욱이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아동복지시설 퇴소청년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에 이들의 자립기반은 상대적으로 더욱 약할 것으로 짐작된다. 실제로 앞에서 청년들의 자립준비 수준에 대한 1차년도 연구결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짐작의 상당 부분이 증명되었다. 청소년시설 퇴소청년들의 자립기반이 열악한 이유 중

33) 마이홈포털. <https://www.myhome.go.kr/hws/portal/sch/selectRsdtRcritNtcDetailView.do?pbldncId=12816>에서 2023년 4월 26일 검색.

34)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3&bbtSn=709594에서 2023년 4월 26일 검색.

35) 보건복지부(2019.12.18) 보도자료. 보호종료아동의 물음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답하다!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299&CONT_SEQ=351938에서 2023년 5월 16일 검색.

하나는 보호종료 후 5년간 사후 서비스가 제공되는 아동양육시설 퇴소청년들과 달리 시설을 퇴소하면 거의 모든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박현동, 2022). 물론 이러한 배경에는 이들의 다양한 상황으로 인해 대상자 지원 기준을 수립하기 어려워 시설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데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 언급되고 있다(박현동, 2022). 게다가 이들에 대한 익명성 보장, 정보시스템 미구축 등을 이유로 시설을 이용하는 개인지원에 대한 정보이력이 관리되지 않아³⁶⁾ 지원 대상의 기준을 충족함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할뿐더러 양육시설 퇴소청년과 달리 쉼터퇴소청년들은 자립지원 수당이나 기초생활 수급, LH 임대주택 신청 등에 제한이 있어 자립기반이 더욱 열악할 수 있다.

소년보호시설 퇴소청년들은 아동양육시설 퇴소청년은 물론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들에 비해서도 더욱 부족한 지원을 제공받고 있다. 시설퇴소 후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원이 절실한 경우라도 국가적 지원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소년원 출신생의 자립을 돕기 위해 운영 중인 시설들의 대부분 법무부 산하 한국소년보호협회³⁷⁾에서 운영 중인 시설들이며 이들 시설에서 제공하는 현금·현물 지원은 거의 대부분 민간 후원금에 의존하고 있다. 이처럼 이들을 위한 지원제도가 열악한 것은 부분적으로 우범이나 비행, 범죄 이력 등 이들이 지닌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실태조사에서는 소년원 출신생들은 주거가 불안정할수록 재범률이 증가하는 반면 취업 또는 구직 활동 중인 경우는 재범률이 낮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김혁, 2020 재인용). 즉 이들의 성공적인 사회정착과 자립, 재범 예방 등을 위해서는 이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주거 및 취업지원이 반드시 제공될 필요가 있다. 또한 궁극적으로 시설퇴소청년들에 대한 자립지원제도가 현행과 같이 특정 시설에서의 보호종료 여부에 따라 그 대상을 한정하거나 내용상의 격차가 크다면 제도상의 한계, 즉 사각지대 발생 및 형평성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현재 시설퇴소청년 지원정책의 주무부처가 시설유형별로 나뉘어 있고 제각각의 정책추진 체계는 지원 대상별 정책의 격차를 발생시키지만 그 사이에서 각 부처를 아울러 정책조

36) 여성가족부는 2023년 사실 이용 청소년들을 비롯, 위기청소년들의 정보연계 및 서비스 이력 조화가 가능하도록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개통 중에 있다(여성가족부, 2023). 그러나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과 복지부 산하 행복e음, 희망e음 시스템과는 상호 연계되어 있지 않다.

37)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와 동법 시행규칙 제81조에 의거하여 한국소년보호협회에서 희망드림 프로젝트란 이름으로 자립지원이 필요한 이들에게 장학, 주거, 취·창업, 원호(의료 및 생계비) 지원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소년보호협회 홈페이지. <https://www.kjpa.or.kr/80>에서 2023년 5월 30일 검색.)

정 및 총괄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가 정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정책대상을 ‘자립지원이 필요한 시설퇴소청년’, 또는 취약계층청년이라는 동일 집단으로 보고 각 부처를 아우르는 정책조정 및 총괄 기능을 담당할 부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행 지원제도는 퇴소시설 유형 간 형평성 문제 외에도 대부분이 신청주의에 기반한 다 데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즉 신청주의에 기반한 상황에서 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신청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 등 정보 수집 및 활용 능력 등이 부족한 청년들은 지원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게 된다.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들 중 상당수가 낮은 학력이나 심리·정서 문제로 인한 의욕 저하, 장애 등의 문제로 자신에게 필요한 지원에 대한 정보 획득 및 활용 역량이 부족한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이들에게는 지원 서비스에 대한 쉬운 안내와 신청 절차의 간편성 등이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지만 현행 제도 상 이러한 서비스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시설퇴소청년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청년들은 그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제4장 시설퇴소 자립준비 청년 실태조사

- 1. 2차 년도 실태조사
- 2. 1차 년도 실태조사-행정데이터
가명정보 결합 분석

1. 2차년도 실태조사

1) 조사개요

이 조사의 목적은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의 생활 실태 및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자립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성 및 지원제도의 효과성 등을 파악하는 데 있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이들의 건강한 자립을 위한 정책 개선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조사는 총 3개년으로 계획되었다. 지난 제1차 조사(2022년)에서는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2,457명을 대상으로 ‘자립준비 1년차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코호트’를 구성하였다. 제2차 조사인 올해(2023년) 조사에서는 작년 1년차 코호트를 대상으로 자립준비 2년차 조사를 실시하였다. 다만 각 년도의 표본의 규모를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제1차 표본 중 유실된 인원에는 신규 표본으로 대체하여 조사였다.

내년 제3차 조사(2024년도)에도 1, 2년차 코호트를 대상으로 자립준비 3년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총 3개년의 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자립연차에 따른 자립과정과 지원효과를 비교 분석하여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정책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8) 이 장의 1절은 백해정 선임연구위원, 김지연 선임연구위원, 김승경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공동집필하였으며 2절은 김승경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다.

2) 조사 참여자

(1) 조사 참여자 집단

조사 참여자는 시설퇴소 후 자립준비를 하고 있는 34세 이하³⁹⁾ 청년들이다. 이 연구에 서는 이들을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으로 규정하고 크게 세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세 집단에 대한 각각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보호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준비청년
-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자립지원의 대상인 자립준비청소년
- 「소년법」상 소년보호시설 퇴소 후 정부 및 지자체에서 운영 또는 지원하는 시설 및 기관 (예: 자립생활관)에서 자립지원을 받는 청년

각 집단별 조사 참여자들 선정을 위해서는 좀 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였다(표 IV-1). 이들은 거의 대부분 「청년기본법」 제3조의1에서 정의한 청년의 연령(19~34세)에 해당되면서 국가 및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에서 생활하거나 이용 후 현재 자립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 집단은 각각의 근거 법령에 따라 자립지원 내용과 지원체계에서 상호 간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들에 대한 실질적인 수혜나 그에 따른 효과, 자립과정 등에서의 차이를 가져 올 것으로 판단되어 세 집단의 청년들을 본 조사에 포함하고 집단 간 차이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표본 수 선정에 있어서는 조사대상의 특성 상 모집단 규모와 그에 따른 표집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제한점을 반영하여 작년 제1차 조사 표본 선정과정에서 학계 및 현장 전문가와

표 IV-1. 조사 대상 선정 기준

관련 법령	담당 기관	조사 대상
아동복지법	자립지원전담기관 아동양육시설 등	해당 기관에서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보호종료 5년차 이내 자립준비청년 - 우선 순위: 보호종료 연차가 적은 청년, 자립수당 수급 청년
청소년 복지지원법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쉼터 등	해당 기관을 이용한 적이 있거나 현재 이용 중인 자립준비청소년 - 사례/사후 관리 청년, 자립지원수당 수급 청년 포함
소년법	청소년자립생활관 창업비전센터 등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을 출원 후 자립준비 중인 청년 자립생활관을 이용한 적이 있거나 현재 이용 중인 청년

* 출처: 김지연, 백혜정, 김미향(2022). p.4.

39) 만 16~17세에 속하지만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소수(총 13명) 포함되어있다.

수차례에 걸친 협의를 통해 조사 예산과 기간 등을 고려하여 목표 표본 수를 2,500명으로 설정하였다. 하위 집단별로는 「아동복지법」상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은 1,950명,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은 400명, 「소년법」상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은 150명으로 목표 표본 수를 할당하였다(김지연, 백혜정, 김미향, 2022). 이를 바탕으로 실제 조사에 참여한 이들은 총 2,514명이며 이중에서 비동일인, 중복참여, 불성실 응답 등 총 16명을 제외하고, 최종 2,498명을 대상으로 2차 조사 참여자를 확정하였다. 이중 1차와 2차 년도 조사에 모두 참여한 이들은 총 1,565명(표본 유지율62.7%)이다.

(2) 응답자 특성

최종 2차 조사 참여자로 확정된 이들은 총 2,498명이고 이중 1차 년도 조사에 이어 2차 년도 조사에도 참여한 이들은 총 1,565명으로 표본 유지율은 62.7%이다. 시설 유형별 규모를 살펴보면 「아동복지법」상 보호종료아동은 1,827명,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시설 퇴소 자립준비청년은 554명, 「소년법」상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은 117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들은 모두 중앙지원기관 및 전담기관, 자립준비청년 단체, 지원기관 및 시설 등을 통해 모집되었으며 조사 시작 전 조사 참여에 동의하였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22.43세로 남자 1,243명, 여자 1,214명이다(표 IV-2).

표 IV-2. 조사 참여자 특성

구분		명	%	구분		명	%
전체		2,498	100.0	전체		2,498	100.0
성별	남자	1,217	48.7	거주 지역	수도권	1,061	42.5
	여자	1,281	51.3		비수도권	1,437	57.5
연령 (만 나이)	19세 이하	334	13.4	지역 규모	대도시	1,152	46.1
	20~24세	1,684	67.4		중소도시	1,266	50.7
	25~29세	466	18.6		읍면지역	80	3.2
	30세 이상	14	0.6	퇴소 시설	아동시설	1,827	73.1
학력	고졸이하	864	34.6		청소년시설	554	22.2
	대재이상	1,633	65.4		소년보호시설	117	4.7
경제 수준	상	139	5.6	자립 지원 기간	3년 미만	2,048	82.0
	중	834	33.4		3년 이상	436	17.5
	하	1,525	61.0		결측	14	0.6

3) 조사지 개발 및 문항

(1) 조사지 개발과정

조사지의 개발과정은 그림 IV-1에 제시하였다. 가장 먼저 작년도 조사 문항 및 기존의 청년 자립 및 생활 실태 관련 조사 문항을 검토한 후 이를 바탕으로 조사지 초안을 작성하였다. 조사지의 문항의 구성은 시설퇴소청년들의 자립실태를 면밀히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간 비교 뿐 아니라 이들과 일반청년 간 비교도 가능하도록 일부 영역에서는 청년 삶 실태조사 등 일반청년 대상 조사 문항을 적극 활용하였고 본 연구원에서 수행한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조사와도 문항을 공유하였다. 그 밖에 연구진 회의를 통해 작년 조사 문항 중에서도 반복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문항은 올해 제2차 조사에도 동일하게 포함시켰으며 그렇지 않다고 판단된 문항은 제외하는 한편 별도의 보완이나 추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영역이나 내용의 문항은 신규로 포함하였다.

초안 작성 후에는 수차례에 걸친 전문가 자문회의와 연구진 회의를 통해 조사지를 수정하였다. 그 다음 단계로 연구원 내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사 계획 및 내용에 생명윤리 관련 문제가 없음을 승인받았다(202305-HR-고유-009). 이와 같은 일련의 절차를 통해 최종적으로 조사지를 확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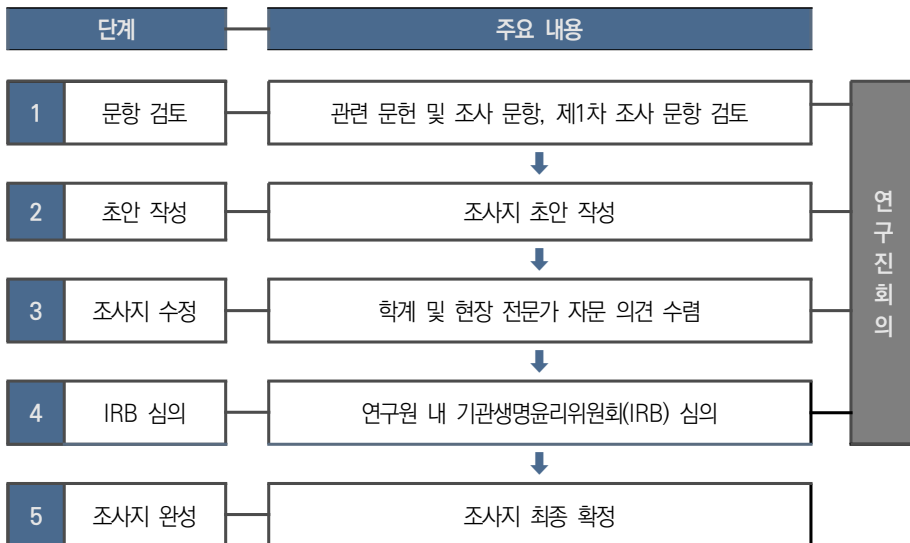


그림 IV-1. 조사지 개발 과정

(2) 조사 영역 및 문항

지난 제1차 년도 조사에서는 성인의 의미, 교육 및 훈련, 경제와 고용, 주거, 건강 및 심리·정서, 관계 및 참여, 서비스 이용 및 요구 등 총 7개 영역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들의 교육과 훈련 경험, 경제 및 근로 현황, 신체·정신적 건강과 사회적 관계, 청년 대상 정책지원 경험 정도 등에 대한 집단 간 비교를 통해 이들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특히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들이 경험한 교육과 훈련, 경제 및 고용과 관련하여 정부 및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청년지원사업 참여 정도, 스트레스와 자살 경험, 성장과정에서의 부정적 생활사 경험 및 코로나19 상황 경험, 자립서비스 이용 여부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⁴⁰⁾

올해 제2차 년도 조사에서는 선행조사 연구를 바탕으로 교육·훈련, 고용, 경제, 주거, 건강 및 심리·정서, 참여 및 사회·미래 인식 등 7개 영역에서 총 70문항을 조사하였다. 지난 제1차 조사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가족돌봄 정도, 주거지원 제도 참여 정도, 식생활 건강, 다양한 청년 활동 참여 및 사회·미래에 대한 인식 등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본 조사의 영역별 주요 문항은 표 IV-3~표 III-8에 제시하였다.

40) 이와 같은 내용은 제2차 년도 조사에서는 제외되었다.

표 IV-3. '23년도 조사 영역별 내용과 문항: 일반 사항, 교육·훈련

영역	세부영역	문항 내용	문항 번호	출처
I. 일반 사항	인적 사항	• 생년월일	• 문1-2	기존 선문1 수정
		• 성별	• 문2	기존 배문1
		• 거주 지역	• 문3	기존 배문2
	자립지원 기간 및 급여 수급 여부	• 자립지원 기간	• 문4, 4-1	기존 문65-1 수정
		• 맞춤형 급여 수급 여부	• 문5 • 문5-1	청년살 문A9, 문A9-1 수정
	가구 구성원	• 현재 동거 가족 및 지인	• 문6~문6-2	종료 문22~문22-1 수정
		• 맞벌이 여부	• 문6-3	첫출발 문6 수정
	돌봄 가족	• 돌봄 필요 가구원 여부	• 문7~문7-2	청년살 문A11~ 문A12 수정
		• 돌봄 필요 가구원에 대한 책임 정도	• 문7-3	연구진 개발
	이주배경	• 이주 배경 여부	• 문8	연구진 개발
II. 교육 · 훈련	학력	• 최종학력	• 문9, 9-1	기존 문2 수정
	교육·훈련 경험 및 의향	• 학교 교육 외 취업 교육·훈련 여부 및 도움 정도	• 문10, 문10-1	청년살 문D9 수정 문D9-1 수정
		• 향후 취업 관련 교육 훈련 받을 생각 여부 및 이유	• 문11, 문11-1	연구진 개발
		• 취·창업을 위한 희망 교육·훈련 영역	• 문12	청년살 문D6 수정

* 출처:

1. 기존: 김지연 외(2022). 청년종합연구 I : 정책소외계층 청년 실태 및 정책 개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 종료: 이상정 외(2020).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첫출발: 김기현 외(2023).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I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4. 청년살: 정세정 외(2021). 청년 살 실태조사 추진방향 수립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IV-4. '23년도 조사 영역별 내용과 문항: 고용

영역	세부영역	변수/문	문항 번호	출처
Ⅲ. 고용	근로 경험	• 지난 주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경험	• 문13	첫출발 문28 수정
		• 지난 주 일자리 개수	• 문14	기존 문24-3 수정
		• 지난 주 주된 일자리 상세	• 문15	기존 문25 수정
		• 고용형태, 근로시간 유형	• 문15-1 • 문15-2	기존 문25-3 첫출발 문29 수정
		•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 문15-3	청년살 문E3-2 수정
		• 주휴수당 수령 여부	• 문15-4	청년살 문E4 수정
		• 급여 지급 주체	• 문15-5	청년살 문E3-4 수정
		• 4대 보험 가입 여부	• 문16	연구진 개발
		• 직장의 규모(종사자 수)	• 문17	청년살 문E6 수정
		• 야간·주말·초과근무 경험 및 그에 따른 수당 수령 여부	• 문18 • 문18-1	청년살 문E8 수정
		• 현재 본인의 주당 노동시간	• 문19	기존 문28-1
	구직	• 지금까지 일자리를 가져 본 경험	• 문20	기존 문29 수정
		• 일을 그만둔 시기 및 그 이유와 일을 그만 둔 후 어려웠던 점	• 문20-1 • 문20-2 • 문20-3	청년살 문E18-1 청년살 문E18-2~ 문18-3 수정
		• 한 달 간 구직 경험 여부	• 문21	기존 문29-1
		• 구직 시 중요 기준	• 문21-1	청년살 문E17 수정
		•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주된 이유	• 문21-2	기존 문30-1 수정
	직장 내 경험	• 직장 내 산업안전 경험	• 문22	기존 문32 수정
	NEET 경험	• NEET 경험 여부	• 문23, 23-1	기존 문31 수정
		• NEET 경험 기간	• 문23-2, 23-3	기존 문31-1 수정
	무소득 실직	• 소득 없이 쉰 경험 여부	• 문24	청년살 문E20

* 출처:

1. 기존: 김지연 외(2022). 청년종합연구 I : 정책소외계층 청년 실태 및 정책 개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 첫출발: 김기현 외(2023).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I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 청년살: 정세정 외(2021). 청년 살 실태조사 추진방향 수립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IV-5. '23년도 조사 영역별 내용과 문항: 경제

영역	세부영역	변수/문	문항 번호	출처
IV. 경제	소득	• 현재 소득이 있는 가구원	• 문25	연구진 개발
		• 개인(가구) 월 평균 소득	• 문26	청년삶 문H2 수정
		• 한 달 평균 항목별 지출액	• 문27	기존 문13-2, 수정 청년삶 문H1
	채무	• 현재 갚아야 할 채무 여부	• 문28, 28-1	기존 문14 수정
		• 채무발생 이유 및 금액	• 문28-2	기존 문14-1 수정
		• 채무 대출 기관	• 문28-3	기존 문14-2
		• 금융채무불이행자 여부	• 문28-4	청년삶 문H3-1-1
		• 신용회복 지원제도 이용 여부	• 문28-4-1	기존 문16
	저축	• 월 평균 저축 금액	• 문29	연구진 개발
	소득수준	• 가구 소득 수준	• 문30	기존 배문3

표 IV-6. '23년도 조사 영역별 내용과 문항: 주거

영역	세부영역	변수/문	문항 번호	출처
V. 주거	주거 유형 경험	• 항목별 장소에서 생활 여부	• 문31	청년삶 문B17 수정
	현재 주거 여건	• 현재 주택 선택 이유	• 문32	청년삶 문B1-2-2
		• 현재 주택 점유 형태	• 문33	청년삶 문B4 수정
		• 현재 주거비용 마련 방법	• 문33-1	기존 문37-6
		• 현재 주거 유형	• 문34	청년삶 문B6 수정
		• 현재 주거 위치	• 문35	청년삶 문B7 수정
		• 경제적 이유로 냉난방 어려움 경험 여부	• 문36	건강권 문39
		• 경제적 이유로 임대 관련 어려움 경험 여부	• 문37	청년삶 문B16 수정
	주거지원 제도	• 공동주거 의향 여부	• 문38	첫출발 문49 수정
		• 현재 주거상향 지원사업 참여 여부 및 미이용 이유	• 문39 • 문39-1	연구진 개발 기존 문38-1 수정
		• 청년 지원주택 입주 경험 여부	• 문40	첫출발 문50 수정
		• 청년 지원주택 입주 경험의 도움 여부 및 도움 되지 않는 이유	• 문40-1 • 문40-1-1	첫출발 문50-1 수정 첫출발 문50-2 수정
		• 주택지원사업 향후 참여 의향	• 문40-2	첫출발 문50-3 수정

* 출처:

1. 건강권: 임희진, 황여정, 유성렬(2022).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III: 후기청소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 기존: 김지연 외(2022). 청년종합연구 I: 정책소외계층 청년 실태 및 정책 개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 첫출발: 김기현 외(2023).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I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4. 청년삶: 정세정 외(2021). 청년 삶 실태조사 추진방향 수립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IV-7. '23년도 조사 영역별 내용과 문항: 건강 및 심리·정서

영역	세부영역	변수/문	문항 번호	출처
VI. 건강 및 심리·정서	건강검진	• 최근2년 동안 건강검진 수검 여부	• 문41	기존 문41
		• 최근1년 동안 구강검진 수검 여부	• 문42	기존 문42
	식생활 건강	• 하루 평균 식사 횟수	• 문43	연구진 개발
		• 식생활 상태	• 문44	건강권 문7
		• 식비 부족에 따른 결식 경험	• 문45	건강권 문10
	신체활동	• 평소 운동 횟수	• 문46	청년살 문C3 수정 문C3-1
		• 운동을 하지 않는 이유	• 문46-1	
	스마트폰 사용	• 스마트폰 과다 사용	• 문47	청년살 문C8
	만족도	• 삶의 만족도	• 문48	기존 문49 수정
	우울	• 우울	• 문49	기존 문47
		• 우울불안으로 인한 어려움 정도	• 문49-1	기존 문47-1
	고립	• 고립감 정도	• 문50	첫출발 문71
		• 고립감을 느낀 기간	• 문50-1	첫출발 문72
		• 곤란할 때 도와줄 주변 사람	• 문51 • 문51-1	첫출발 문73 수정 연구진 개발
	은둔	• 은둔 경험 여부 및 기간, 은둔 이유	• 문52	첫출발 문74 수정
			• 문52-1	첫출발 문74-1
			• 문52-2	기존 문52-2 수정
	자해	• 자해 시도 여부	• 문53	연구진 개발
		• 자해 횟수(일)	• 문53-1	
	정신 건강 상담·치료	• 정신 건강 상담(진료) 여부 및 진료를 받지 못한 이유	• 문54 • 문54-1	청년살 문C12 청년살 문C12-1 수정
		• 심리·정서 문제 약물 복용 여부 및 의사처방 여부	• 문55 • 문55-1	청년살 문C13 수정 청년살 문C13-1
	장애	• 장애 여부	• 문56, 56-1	기존 문44 수정
		• 장애 등록을 하지 않은 이유	• 문56-2	기존 문44-1
	질병치료	• 최근 1년 동안 건강 문제 여부	• 문57	청년살 문C15 수정
		• 최근 1년 동안 앓았던 질병	• 문57-1	청년살 문C15-1 수정
		• 최근 1년 동안 질병 치료 유무	• 문57-2	기존 문43-1
		•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	• 문57-2-1	기존 문43-2 수정
		• 건강보험료 미납·연체 여부	• 문57-3	연구진 개발
	주관적 건강	• 신체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 문58	기존 문46

* 출처:

1. 건강권: 임희진 외(2022).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III: 후기청소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 기존: 김지연 외(2022). 청년종합연구 I: 정책소외계층 청년 실태 및 정책 개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 첫출발: 김기현 외(2023).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I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4. 청년살: 정세정 외(2021). 청년 살 실태조사 추진방향 수립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IV-8. '23년도 조사 영역별 내용과 문항: 참여 및 사회·미래 인식

영역	세부영역	변수/문	문항 번호	출처
Ⅶ. 참여 및 사회 · 미래 인식	참여	• 정치·사회 문제 활동 경험 정도	• 문59	청년삶 문F3 수정
		• 청년활동 경험 정도	• 문60	첫출발 문88
		• 참여 효능감	• 문61	청년삶 문F4 수정
	사회인식	• 공정한 사회의 의미	• 문62	청년삶 문G13 수정
		• 정부나 개인의 생계·복지 책임 정도	• 문63	청년삶 문G10 수정
		• 사회에 대한 신뢰 정도	• 문64	청년삶 문G4
	존중·참여	• 차별 경험 정도	• 문65	첫출발 문85 수정
		• 인권 존중을 받은 경험 정도	• 문66	첫출발 문84 수정
	미래계획	• 바라는 미래의 실현 정도	• 문67	청년삶 문G15 수정
		• 항목별 미래를 위한 중요도 정도	• 문68	청년삶 문G16 수정
	결혼 및 자녀 계획	• 향후 결혼 계획 여부	• 문69	청년삶 문G18
		• 향후 자녀계획 여부	• 문70	청년삶 문G19 수정
		• 자녀를 갖지 않는 이유	• 문70-1	청년 문11-1 수정

* 출처:

1. 첫출발: 김기현 외(2023).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Ⅲ.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 청년: 김기현, 배정희(2021),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 청년삶: 정세정 외(2021). 청년 삶 실태조사 추진방향 수립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 분석방법

실태조사 자료 분석은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의 생활 실태 등을 영역별로 파악하는데 주 목적이 있다. 응답 자료들에 대해서는 항목 특성에 기초하여 항목별 응답률, 평균과 표준편차 등을 기본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통계검증을 위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교차분석(χ^2 검정), 평균비교분석(t-test, One-way Analysis of Variance),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여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기도 하였다.

항목에 따라서는 이들의 상황이 시설생활 경험이 없는 일반청년들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확인하였다. 일반청년들과의 비교를 위해 활용한 일반청년의 자료는 크게 2가지이다. 첫째는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정세정 외, 2022)에 참여한 청년들 중 29세 이하 청년들의 응답값으로 통계청 MDIS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활용하였다. 다만 이들의 연령이 세 집단, 즉 19~24세, 25~29세, 30~34세으

로 구분되어 있어 본 실태조사 응답자의 평균 연령을 고려하여 29세 이하의 자료(총 11,744명)만 선택하여 활용하였고 자료 분석시에는 개인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두 번째는 2023년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조사(김기헌 외, 2023)에 참여한 청년들의 응답값으로 문항 개발 단계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시설퇴소청년 실태조사와 공동으로 사용한 문항에 한해 응답값을 비교하였다. 이 조사에서도 역시 본 실태조사 응답자의 평균 연령을 고려하여 18~29세 이하에 해당하는 1,433명의 자료만 선택하여 활용하였다. 단 자료 분석 시에는 표본크기 기준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5) 조사결과

(1) 일반 사항

① 자립지원 기간

시설퇴소청년들의 자립지원 기간 평균은 19개월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퇴소시설별로는 아동시설 퇴소청년이 평균 21.38개월로 가장 길었고 청소년시설과 소년보호시설 퇴소청년은 모두 1년 정도이다(표 IV-9).

② 맞춤형 급여 수급 현황

시설퇴소청년 중 현재 맞춤형 급여를 수급 중인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46.5%로 '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에 참여한 29세 이하 청년의 응답률(1.0%)에 비해 매우 높았다. 시설별로는 아동시설 퇴소청년의 51.5%가 현재 수급 중인데 반해 청소년시설 퇴소청년은 34.7%, 소년보호시설 퇴소청년은 24.8%만이 수급 중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반면 맞춤형 급여를 한 번도 수급한 적이 없는 경우는 아동시설 퇴소청년 중에는 12.3%에 불과하였으나 청소년

표 IV-9. 시설퇴소 후 자립지원 받은 기간

(단위: 개월)

구분		사례 수 (명)	t/ F 검증 ¹⁾		
			평균(개월)	표준편차	유의도
전체		2,484	19.01	23.485	-
퇴소 시설	아동시설 ^a	1,815	21.38	25.378	35.428*** c,b<a
	청소년시설 ^b	552	12.90	14.431	
	소년보호시설 ^c	117	11.15	20.431	

* 주: *p < .05, **p < .01, ***p < .001

표 IV-10. 맞춤형 급여 수급 여부

(단위: %)

구분		사례 수(명)	①	②	③	χ^2 검정 ¹⁾
'22년 청년(29세 이하) ³⁾		6,996,219	1.0	2.1	96.9	-
'23년 시설퇴소청년		2,498	46.5	34.1	19.4	-
퇴소 시설	아동시설 ^a	1,827	51.5	36.2	12.3	232.698***
	청소년시설 ^b	554	34.7	28.9	36.5	
	소년보호시설 ^c	117	24.8	25.6	49.6	
자립 지원기간	3년 미만	2,048	46.0	33.1	20.9	17.206***
	3년 이상	436	47.9	39.4	12.6	
경제 수준	상 ^a	139	37.4	39.6	23.0	58.186***
	중 ^b	834	36.9	39.4	23.6	
	하 ^c	1,525	52.5	30.7	16.8	

*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① 현재 수급 중이다, ② 과거에 수급하였으나 현재는 수급하지 않고 있다,

③ 수급한 적이 한 번도 없다

3) '22년 청년 자료의 결측값은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정세정 외, 2022) 원자료에 제시된 가중치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값임.

년시설 퇴소청년은 36.5%, 소년보호시설 퇴소청년은 49.6%였다. 한편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수급률이 높았는데 경제수준이 하라고 응답한 이들 중에서 현재 맞춤형 급여를 수급 중인 경우는 52.5%, 한 번도 수급한 적이 없다는 응답은 16.8%였다. 이는 다시 말하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청년 중 맞춤형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가 있음을 시사한다. 자립지원기간에 따른 차이를 보면 수급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응답은 지원기간이 3년 미만(20.9%)인 경우가 3년 이상(12.6%)인 경우보다 더 많았다. 한편 과거 수급하였으나 현재 수급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률은 3년 미만(33.1%)인 경우보다 3년 이상(39.4%)인 경우에서 다소 높았다(표 IV-10).

이들의 맞춤형 급여 종류별 수급률을 보면 교육급여를 제외하고 생계, 의료, 주거급여의 수급률은 전체 응답자의 30~40%선이다. 의료급여는 총 31.2%의 수급률 중 1종이 17.6%, 2종은 13.6%로 보고되었다(그림 IV-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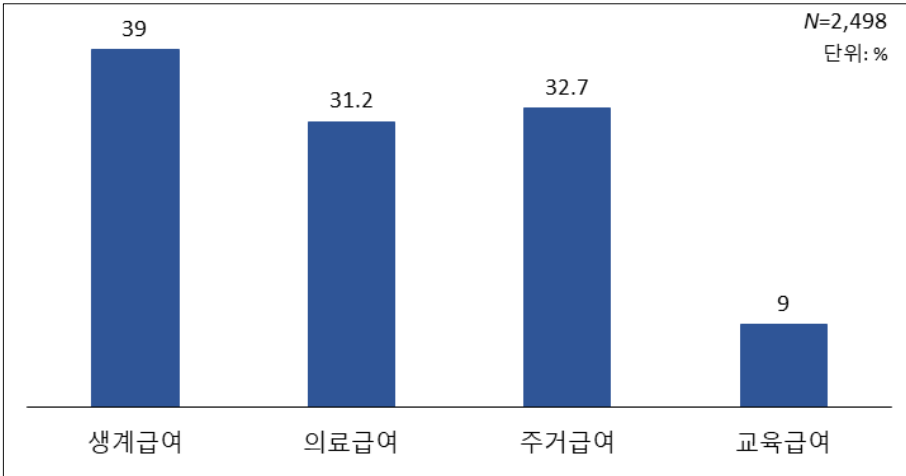


그림 IV-2. 맞춤형 급여 종류별 수급률

③ 가구 구성원 현황

시설퇴소청년 73.7%는 혼자 살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22년 일반청년의 응답률 21.4%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시설퇴소청년들의 하위 집단별 차이를 보면 대도시나 중소도시에서 사는 경우에서, 그리고 아동시설에서 퇴소한 경우에서 혼자 사는 비율이 높았다(표 IV-11).

표 IV-11. 주거지에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단위: %)

구분		사례 수(명)	①	②	χ^2 검증 ¹⁾
'22년 청년(29세 이하) ³⁾		6,996,219	21.4	78.6	-
'23년 시설퇴소청년		2,498	73.7	26.3	-
지역 규모	대도시 ^{a)}	1,152	77.3	22.7	28.424***
	중소도시 ^{b)}	1,266	71.8	28.2	
	읍면지역 ^{c)}	80	52.5	47.5	
퇴소 시설	아동시설 ^{a)}	1,827	78.1	21.9	84.481***
	청소년시설 ^{b)}	554	65.2	34.8	
	소년보호시설 ^{c)}	117	46.2	53.8	

*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① 혼자 살고 있다, ② 함께 살고 있다

3) '22년 청년 자료의 결맞음은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정세정 외, 2022) 원자료에 제시된 가중치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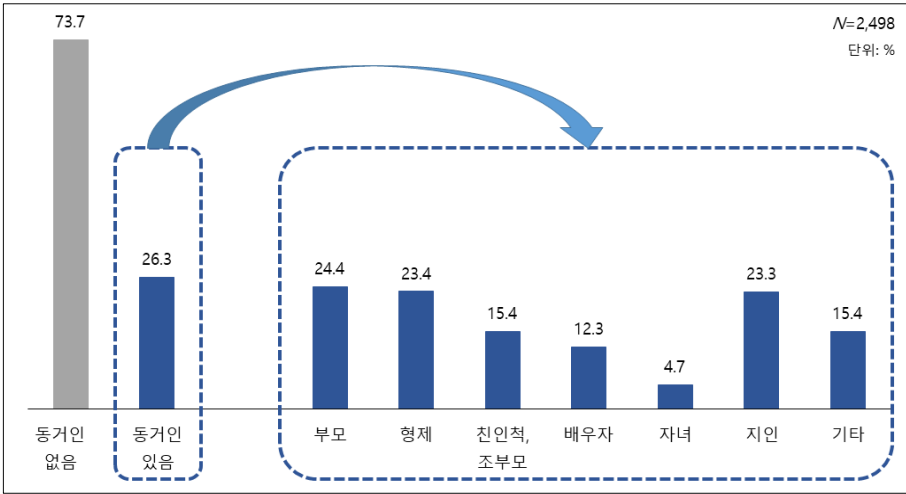


그림 IV-3. 주거지에 함께 살고 있는 사람(중복 응답)

한편 다른 사람과 함께 살고 있다고 응답한 이들은 전체 응답자의 26.3%로 그 중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는 24.4%(전체 응답자의 6.4%), 배우자(사실혼 포함)가 있는 경우는 12.3%(전체 응답자의 3.2%), 자녀가 있는 경우는 4.7%(전체 응답자의 1.2%)였고 친구나 선후배, 직장동료 등 지인과 함께 사는 경우는 23.3%(전체 응답자의 6.1%)였다(그림 IV-3). 이러한 응답을 바탕으로 2인 가구인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14.3%, 3인 가구는 4.8%, 4인 이상의 가구는 7.3%이다. 또한 배우자가 있는 경우 60%는 맞벌이를 하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6.3%는 둘 다 별이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가구 내 신체·정신적 문제나 노령 등으로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구성원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6.3%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돌봄이 필요한 가구 구성원을 자신이 주로 돌보고 있다는 응답은 그 중 41.1%이며 이는 전체 응답자의 2.6%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일반 청년 중 돌봄 역할을 하는 청년의 비율이 0.6%에 비하면 거의 3배 이상이라 할 수 있다. 돌봄 역할을 하는 시설퇴소청년들이 돌보는 이들을 살펴보면 친인척이나 조부모인 경우가 48.5%로 가장 많았고 부모를 돌보는 경우는 21.2%로 그 뒤를 이었다(그림 IV-4). 돌봄 노동 여부를 집단별로 비교한 결과 거주지역이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인 경우에, 그리고 아동시설퇴소의 경우에 돌봄 노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표 IV-12). 비록 가정 내 돌봄 노동을 하는 청년이 많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러한 상황에 대한 면밀한 조사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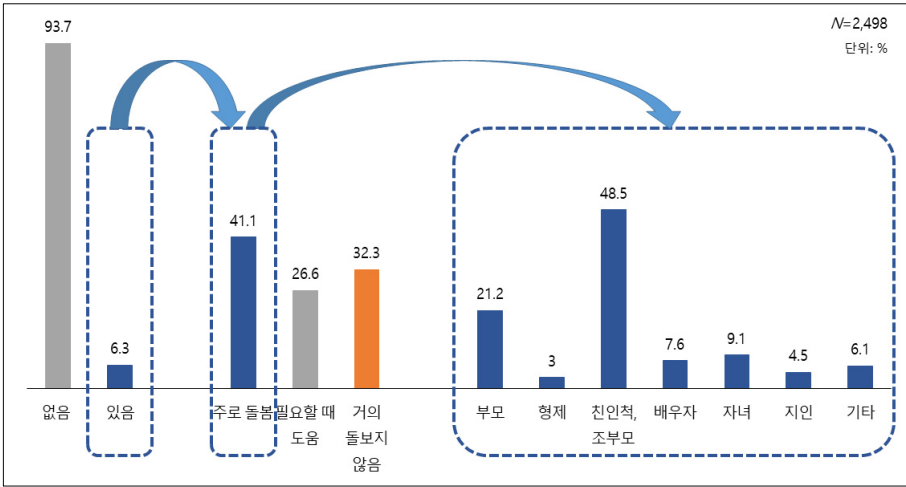


그림 IV-4. 가구 내 돌봄 필요 구성원 현황

표 IV-12. 거주지역별 돌봄 노동 참여 정도

(단위: %)

구분		사례 수(명)	①	②	③	χ^2 검증 ¹⁾
'22년 청년(29세 이하) ³⁾		6,996,219	(0.6)	(0.0)	(99.4)	-
'23년 시설퇴소청년		158 (2,498)	41.1 (2.6)	26.6 (1.7)	32.3 (95.7)	-
거주 지역	수도권	57	36.8	14.0	49.1	13.519**
	비수도권	101	43.6	33.7	22.8	
퇴소 시설	아동시설 ^{a)}	99	44.4	31.3	24.2	9.587*
	청소년시설 ^{b)}	43	39.5	18.6	41.9	
	소년보호시설 ^{c)}	16	25.0	18.8	56.3	

*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① 내가 주로 돌본다, ② 나는 필요할 때 도와주고 주로 다른 사람이 돌본다, ③ 나는 거의 돌보지 않는다
 3) '22년 청년 자료의 결과값은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정세정 외, 2022) 원자료에 제시된 가중치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값이며 응답자의 책임 유무를 기준으로 "① (책임 있음)"과 "③ (책임 없음)"에 대한 응답만 있음.
 4) () 안의 값은 전체 사례 수에 대한 응답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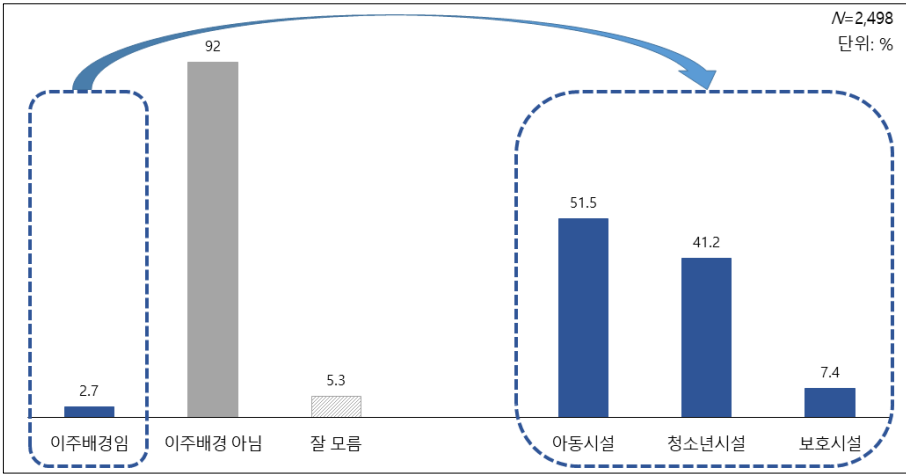


그림 IV-5. 이주배경 여부

④ 이주배경

시설퇴소청년 중 이주배경을 가지고 있는 청년은 전체 응답자의 2.7%(68명)였다. 이들의 퇴소시설 유형을 보면 아동시설 51.5%(35명), 청소년시설 41.2%(28명), 소년보호시설 7.4%(5명)로 나타났는데 전체 응답자의 73.1%가 아동시설, 22.2%가 청소년시설, 4.7%가 소년보호시설 퇴소자인 것을 감안할 때 청소년시설 퇴소청년 중 이주배경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그림 IV-5).

(2) 교육·훈련

① 학력

시설퇴소청년들의 학력을 살펴보면 대학 진학을 한 이들은 전체 응답자의 65.3%였다. 퇴소시설별로 보면 양육시설 퇴소청년의 진학률은 73.2%로 청소년시설(46.5%) 및 소년보호시설(32.5%) 퇴소청년에 비해 그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대학 진학률은 1차년도 조사결과(61.2%)에 비해 모든 시설유형에서 다소 증가하였다. 그러나 '22년 일반청년의 대학 진학률(88%)과 비교해 볼 때 시설퇴소청년들의 진학률은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표 IV-13).

한편 대학에 진학한 경우 청소년시설 및 소년보호시설 퇴소자는 4년제 이상의 대학교(대학원 포함)(각각 22.5%, 12%)보다는 2~3년제의 대학(각각 24%, 20.5%)으로 진학한

표 IV-13. 학력

(단위: %)

구분	사례 수 (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χ^2 검증 1)
'22년 청년 (29세 이하) ⁴⁾	6,996,219	0.1	0.0	0.2	11.8	2.6	1.6	11.5	25.9	6.2	37.0	1.8	0.0	1.4	-
'23년 시설퇴소청년	2,497	0.5	0.8	3.5	29.8	8.2	7.6	16.3	13.9	5.0	13.7	0.4	0.0	0.2	-
아동시설 ^{a)}	1,826	0.3	0.4	0.9	25.2	8.6	6.7	20.0	15.4	4.1	17.5	0.5	0.1	0.3	460.595 ***
청소년시설 ^{b)}	554	0.9	1.4	7.8	43.3	7.9	9.2	6.9	10.8	8.1	3.4	0.2	0.0	0.0	
소년보호시설 ^{c)}	117	1.7	4.3	23.9	37.6	4.3	14.5	1.7	4.3	4.3	3.4	0.0	0.0	0.0	

*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① 중학교 이하, ② 고등학교 재학 중(미인가 대안학교 포함), ③ 고등학교 중퇴/휴학 중, ④ 고등학교 졸업(고등 검정고시 취득 포함), ⑤ 전문대학(2~3년제) 재학 중, ⑥ 전문대학(2~3년제) 중퇴/휴학 중, ⑦ 전문대학(2~3년제) 졸업, ⑧ 대학교(4~6년제) 재학 중, ⑨ 대학교(4~6년제) 중퇴/휴학 중, ⑩ 대학교(4~6년제) 졸업, ⑪ 대학원 재학 중, ⑫ 대학원 중퇴/휴학, ⑬ 대학원 졸업 이상

3) 대학원 관련 보기는 올해 신규 학생으로 1차년도('22년 자립) 자료에는 값이 존재하지 않음.

4) '22년 청년 자료의 결측값은 2022년 청년 살 실태조사(정세정 외, 2022) 원자료에 제시된 가중치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값임.

경우가 좀 더 많았던 반면 양육시설 퇴소자들 사이에서는 4년제 이상의 대학교 및 대학원에 진학한 비율이 37.9%로 2~3년제 대학 진학률(35.3%)보다 조금 더 높았다.

고등학교 졸업(재학 중 제외)을 하지 못한 경우는 소년보호시설 퇴소청년의 경우 25.6%로 타 시설 퇴소청년(양육시설 1.2%, 청소년시설 8.7%)에 비해 상당히 높았다. 학력은 향후 양질의 일자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고졸 중퇴 이하의 학력을 가진 이들을 대상으로 학력 신장을 위한 별도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② 학교 교육 외 취업을 위한 교육 및 훈련

취업을 위해 별도의 비용을 들여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36%였다. '22년 일반청년의 경우는 이 문항에 대해 대학 진학자들만 응답을 하였는데 그 중 있다는 응답은 31.4%였다. 같은 조건으로 시설퇴소청년 중 대학 진학자들만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그렇다는 응답은 38.9%였다. 즉 취업을 위해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교육 및 훈련을 받는 경우는 시설퇴소청년에게서 그 비율이 다소 높았다.

한편 이러한 교육이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물음에 시설퇴소청년의 64.7%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그 중 대학 진학자는 68.5%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집단 간 응답률에 다소 차이를 보였다. 참고로 일반청년의 경우는 72.9%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시설퇴소청년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들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할

표 IV-14. 취업을 위한 별도의 교육 및 훈련 경험

(단위: %, 점)

구분	사례 수 (명)	없다	있다	도움 정도					t/F 검증 ¹⁾		
				①	②	③	④	⑤	평균	표준편차	유의도
'22년 청년 (29세 이하) ³⁾	5,982,239	31.4	68.6	0.8	5.2	21.2	44.9	28.0	3.94	0.874	-
'23년 시설퇴소청년	2,498	36.0	64.0	2.1	5.5	27.7	35.9	28.8	3.84	0.974	-
학력	고졸이하	864	30.6	69.4	2.7	6.8	34.8	28.0	27.7	3.71	1.028
	대재이상	1,633	38.9	61.1	1.9	4.9	24.7	39.2	29.3	3.89	0.946

*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① 전혀 도움이 안 된다, ② 별로 도움이 안 된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도움 된다, ⑤ 매우 도움 된다

3) '22년 청년 자료의 결괏값은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정세정 외, 2022) 원자료에 제시된 가중치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값이며 대학생 및 대졸자만 응답하였음.

필요가 있다(표 IV-14).

③ 정부(지자체) 제공 취업관련 교육 및 훈련 수강 의향

시설퇴소청년들 중 56.6%는 정부(지자체)가 제공하는 취업관련 교육 및 훈련을 수강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IV-6). 이들이 가장 받고 싶은 교육은 특정 직종과 관련된 직업 훈련(56.3%)이 가장 많았다.

반면 수강 의향이 없는 이들은 약 43.4%였는데 그 이유로는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가 33.8%로 가장 많았고 “시간이 없어서”가 25.2%로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아무리 양질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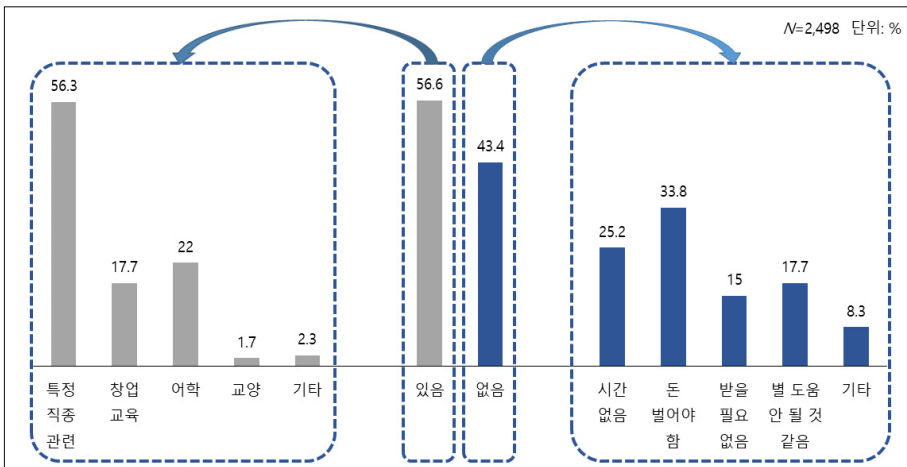


그림 IV-6. 정부(지자체) 제공 취업관련 교육 및 훈련 수강 의향

취업 교육·훈련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경제적·시간적 제약이 따른다면 높은 참여도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라는 응답도 17.7%로 나타나 정부(지자체) 제공 교육·훈련에 대한 효용성에 의심을 갖는 경우도 적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고용

① 근로 여부

지난 일주일간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66.6%, 일자리가 있었으나 일을 하지 않은 경우는 3.4%로 응답자의 70.1%는 결과적으로 일자리가 있었던 것으로 응답하였다. 지난 주 일자리가 있었던 1,750명 중 91.4%는 하나의 일자리에 종사하였으나 8.6%는 2개 이상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었으며 최대 5가지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보고되었다. 한편 지난주에 일자리가 없었던 이들 748명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일자리가 있었는지 알아본 결과 79.8%(전체 응답자의 23.9%)가 일자리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전체 응답자의 94%가 일을 해 본 경험이 있었으며 한 번도 일한 경험이 없었던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6%에 불과하였다(그림 IV-7). 이와 관련하여 '22년 일반청년 중 미취업자의 경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일자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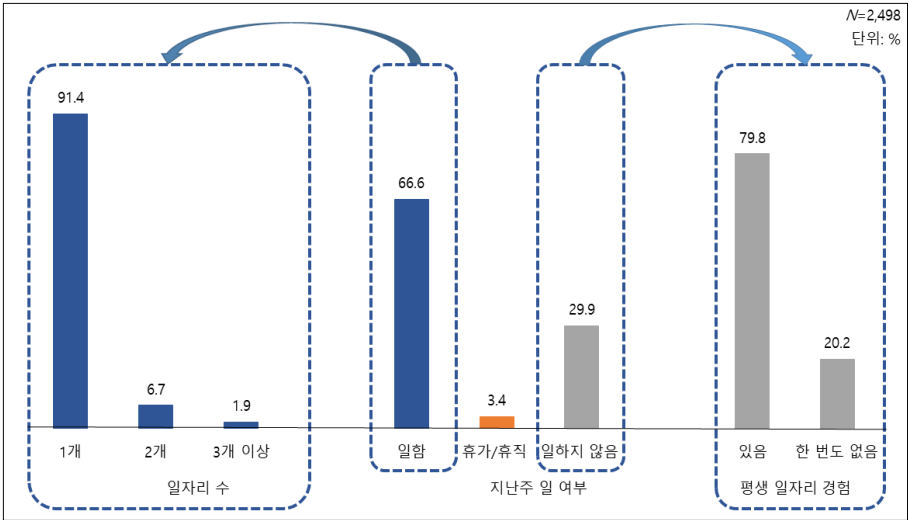


그림 IV-7. 지난주 및 지금까지 일자리 경험 여부

표 IV-15. 지난 일주일 동안 가졌던 일자리 개수

(단위: %)

구분		사례 수(명)	1개	2개 이상	χ^2 검증 ¹⁾
'22년 청년(29세 이하) ²⁾		4,343,265	95.5	4.5	-
'23년 시설퇴소청년		1,750	91.4	8.6	-
퇴소 시설	아동시설 ^{a)}	1,272	93.6	6.4	28.300***
	청소년시설 ^{b)}	388	85.8	14.2	
	소년보호시설 ^{c)}	90	84.4	15.6	
경제 수준	상 ^{a)}	114	92.1	7.9	8.890*
	중 ^{b)}	663	93.8	6.2	
	하 ^{c)}	973	89.6	10.4	

*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22년 청년 자료의 결락값은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정세정 외, 2022) 원자료에 제시된 가중치율을 적용함.

가져 본 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59.2%로 이는 전체 응답자의 약 22.3%로 시설퇴소청년들과 16.3%p의 차이를 보인다. 이는 일반청년들과 달리 시설퇴소청년의 대부분은 가정의 뒷받침이 부족한 만큼 본인의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일찍부터 일자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취업자 중 지난 일주일 간 2개 이상의 일자리에 종사했던 경우도 일반청년은 4.5%인 반면 시설퇴소청년은 8.6%로 나타났으며 특히 청소년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 퇴소청년들에게서, 그리고 경제적으로 하층인 경우에 그 응답률이 특히 높아 이들의 일자리 상황이 상대적으로 열악함을 알 수 있다.(표 IV-15).

일해 본 경험이 있으나 지난주에 일자리가 없었던 이들이 최근 일자리를 갖지 않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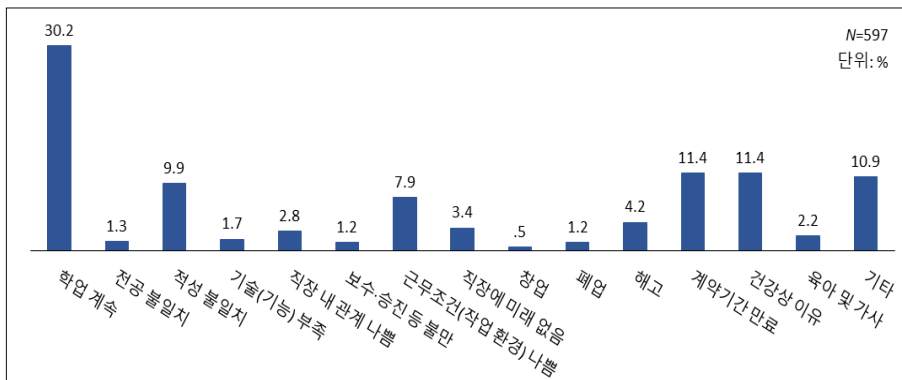


그림 IV-8. 가장 최근에 일을 그만 둔 이유

기간은 평균 11.84개월이었으며 최근 일을 그만 둔 가장 주된 이유로는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30.2%로 가장 많았고 계약기간 만료와 건강 문제(각 11.4%)가 그 뒤를 이었다. 그 외에 근무조건이나 작업환경이 나빴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7.9%로 나타났다(그림 IV-8). 이러한 응답에서 불안정하고 열악한 근무환경은 시설퇴소청년들에게 근로의 저해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② 일자리 경험

지난 주 일자리가 있었다고 응답한 이들이 가장 많이 종사한 일자리는 서비스직(31.9%)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전문가 및 관련직 16.9%, 사무직 14.9%, 단순노무직 14.5% 순으로 나타났다. 하위 집단별 차이를 보면 성별이나 학력, 퇴소시설, 경제수준 등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표 IV-16).

이들이 일하는 직장의 규모를 살펴보면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5~29명인 경우가 32.3%로 가장 많았으며 5명 미만인 경우가 24.4%로 그 뒤를 이었다. 즉 시설퇴소청년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30명 미만의 소규모 직장을 다니고 있었다(표 IV-17).

이들의 고용형태를 보면 근로자의 절반 이상(53.1%)이 상용근로자였으며 임시근로자

표 IV-16. 지난 일주일 동안의 주된 일자리(직업유형) (단위: %)

구분	사례 수 (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χ ² 검증 ¹⁾
전체	1,728	0.6	16.9	14.9	31.9	9.5	0.2	5.0	4.1	14.5	1.4	1.0	-
성별	남자	851	1.1	13.0	8.5	27.8	8.5	0.4	8.3	6.3	22.0	2.7	227.974
	여자	877	0.1	20.6	21.2	35.9	10.5	0.1	1.7	1.9	7.2	0.1	***
학력	고졸이하	655	1.4	7.8	10.2	35.6	9.8	0.2	6.9	6.0	20.5	0.9	127.944
	대재이상	1,073	0.1	22.5	17.8	29.7	9.3	0.3	3.8	3.0	10.8	1.7	***
퇴소 시설	아동시설 ^{a)}	1,256	0.5	19.9	16.6	29.9	7.8	0.2	5.3	4.7	12.8	1.2	87.405 ***
	청소년시설 ^{b)}	383	0.8	9.1	11.0	38.9	15.1	0.5	3.1	2.1	17.0	2.1	
	소년보호시설 ^{c)}	89	1.1	7.9	9.0	31.5	9.0	0.0	7.9	4.5	27.0	1.1	
경제 수준	상 ^{a)}	113	0.0	18.6	8.8	25.7	7.1	0.0	9.7	12.4	15.0	0.0	73.066 ***
	중 ^{b)}	654	0.9	19.3	13.9	31.0	6.7	0.2	5.8	5.2	14.8	0.8	
	하 ^{c)}	961	0.4	15.1	16.3	33.3	11.7	0.3	3.9	2.4	14.2	2.0	

* 주: 1) **p* < .05, ***p* < .01, ****p* < .001
 2) ① 관리자,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③ 사무 종사자, ④ 서비스 종사자, ⑤ 판매 종사자, ⑥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⑧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⑨ 단순노무 종사자, ⑩ 직업군인, ⑪ 기타

표 IV-17. 직장 규모

(단위: %)

구분		사례 수 (명)	①	②	③	④	⑤	χ^2 검증
'22년 청년(29세 이하) ²⁾		4,343,265	21.4	39.8	24.7	14.1	0.0	-
'23년 시설퇴소청년		1,750	24.4	32.3	17.1	10.5	15.8	-
퇴소 시설	아동시설 ^a	1,272	23.3	31.2	17.9	12.2	15.3	33.410***
	청소년시설 ^b	388	24.5	37.9	13.7	6.4	17.5	
	소년보호시설 ^c	90	38.9	23.3	20.0	3.3	14.4	
경제 수준	상 ^a	114	18.4	32.5	12.3	24.6	12.3	56.659***
	중 ^b	663	20.4	34.1	19.0	13.0	13.6	
	하 ^c	973	27.9	31.0	16.3	7.1	17.7	

*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① 5명 미만(1~4명), ② 5~29명, ③ 30~299명, ④ 300명 이상, ⑤ 잘 모르겠다

3) 일반 청년의 경우 보기 중 "⑤ 잘 모르겠다"가 없음.

는 28.2%, 일용근로자는 13.5%였다. 또한 시간제 근로자(54.2%)가 전일제 근로(45.8%)보다 많았는데 고등학교 및 대학교(대학원 제외)에 재학 중인 경우는 대략 10명 중 8명(81.4%)이 시간제 근로를 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한편 고졸자 중 전일제 근로자는 46.8%인 반면 대졸자(전문대 졸 포함) 중 전일제 근로자는 61.5%였다(그림 IV-9).

표 IV-18은 시설퇴소자 중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을 제외하고 휴학생, 자퇴생, 졸업생 및 대학원 재학 이상의 학력자들을 대상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연령을 통제한 후 학력(고졸 미만-고졸-(전문)대 중퇴/휴학-전문대졸-4년제 대졸이상)과 전일제 일자리 여부(전일제=1, 시간제=2) 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이다. 그 결과 대졸 이상의 학력을 제외하고 그 미만의 학력은 전일제 일자리 여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Nagelkerke R^2 값은 .089이다. 전일제 일자리가 시간제보다 좀 더 안정적인 일자리라고 가정하였을 때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학력 신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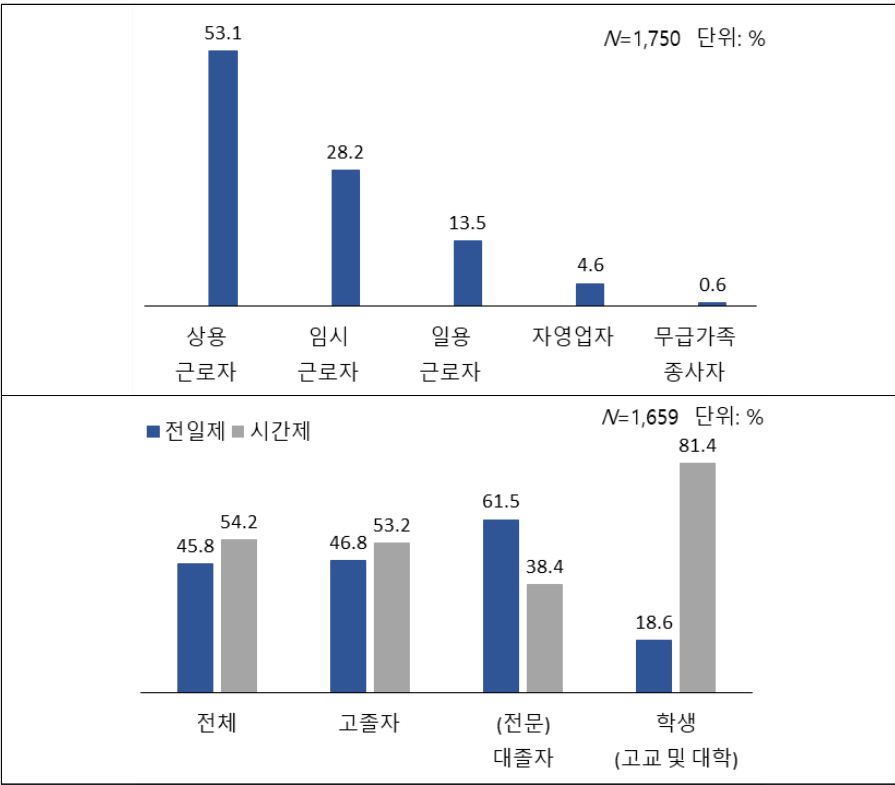


그림 IV-9. 고용 및 근로시간 형태

표 IV-18. 전일제 일자리에 대한 학력요인 검증

N=1,390					
변수		B	Exp(B)	표준오차	Wald값 ⁽¹⁾
연령		-.165	.848	.027	38.221***
학력	고졸 미만				16.463**
	고졸	.820	2.271	.305	7.253**
	(전문)대 중퇴/휴학	.358	1.430	.178	4.020*
	전문대졸	.722	2.058	.207	12.137*
	(4년제)대졸 이상	.191	1.211	.182	1.101
상수항		3.401	29.986	.677	25.262***

* 주: *p < .05, **p < .01, ***p < .001

③ 급여 지급 주체 및 근로계약서 작성·주휴수당 수령 여부

주요(첫번째) 일자리에서 근로자들은 대부분(79.3%) 직장으로부터 급여를 받는다고 응답했으며 파견(용역)업체나 용역업체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는 4.5%,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6.2%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83.1%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주휴수당을 받은 경우는 48.7%였다. 주당 15시간 이상 일을 했음에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은 5.4%였다(그림 IV-10).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주휴수당 미수령은 직장의 규모가 작을수록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표 IV-19). 이는 부분적으로 근로환경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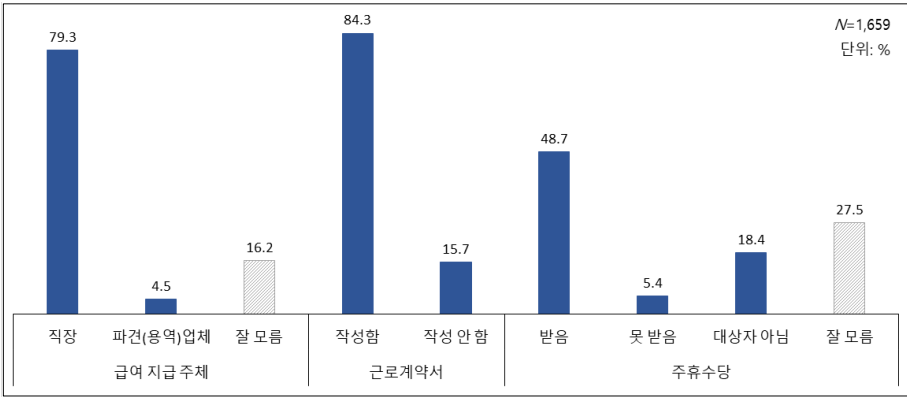


그림 IV-10. 급여 지급 주체 및 근로계약서 작성·주휴수당 수령 여부

표 IV-19. 직장 규모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성·주휴수당 수령 여부

(단위: %)

구분		사례 수 (명)	①	②	③	④	⑤	χ ² 검증
근로 계약서	작성	1,378	20.2	34.3	19.4	12.1	13.9	68.748***
	미작성	281	35.6	26.7	8.9	5.0	23.8	
주휴 수당	받음	808	16.2	32.8	23.4	15.5	12.1	146.506***
	받지 못함	89	37.1	40.4	9.0	7.9	5.6	
	대상자 아님	306	36.9	31.4	8.8	2.6	20.3	
	잘 모름	456	22.1	33.1	15.1	9.0	20.6	

*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① 5명 미만(1~4명), ② 5~29명, ③ 30~299명, ④ 300명 이상, ⑤ 잘 모르겠다

④ 4대 보험 가입 여부

직장에서 제공하는 4대 보험과 관련해서 고용보험 가입률은 56.9%, 건강보험 가입률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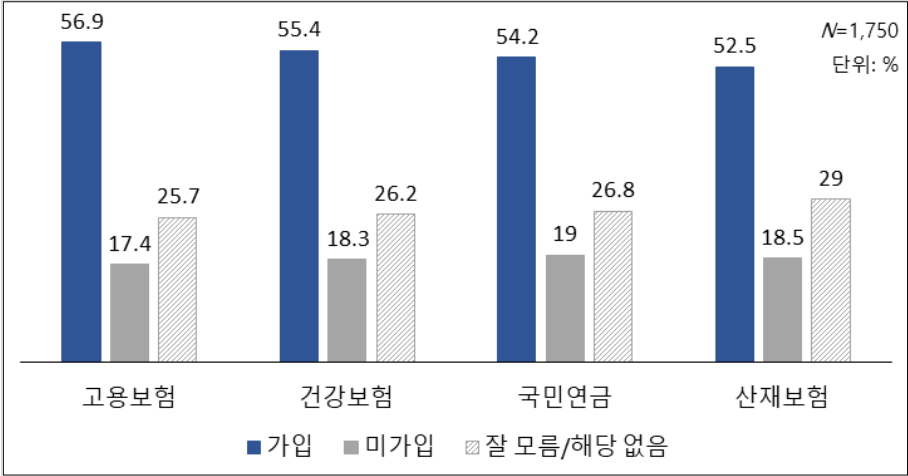


그림 IV-11. 4대 보험 가입 여부

표 IV-20. 직장 규모에 따른 4대 보험 가입 여부

(단위: %)

구분		사례 수 (명)	①	②	③	④	⑤	χ^2 검증
고용 보험	가입	995	12.7	35.4	24.8	15.6	11.6	341.799***
	미가입	305	51.1	24.9	6.2	2.0	15.7	
	잘 모름/해당 없음	450	32.2	30.4	7.3	4.9	25.1	
건강 보험	가입	970	12.6	35.1	25.2	16.0	11.2	336.316***
	미가입	321	48.6	25.5	6.9	2.8	16.2	
	잘 모름/해당 없음	459	32.5	31.2	7.2	4.1	25.1	
국민 연금	가입	949	12.5	35.2	25.1	15.8	11.4	315.657***
	미가입	332	47.6	26.5	6.3	3.9	15.7	
	잘 모름/해당 없음	469	32.0	30.5	8.5	4.3	24.7	
산재 보험	가입	918	11.4	35.3	25.6	15.1	11.5	305.816***
	미가입	324	49.4	25.6	6.2	3.1	15.7	
	잘 모름/해당 없음	508	30.1	31.1	8.7	6.7	23.4	

*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① 5명 미만(1~4명), ② 5~29명, ③ 30~299명, ④ 300명 이상, ⑤ 잘 모르겠다

55.4%, 국민연금 가입률은 54.2%, 산재보험 가입률은 52.5%로 대략 절반 이상이 4대 보험에 가입하였다(그림 IV-11). 4대 보험 미가입자의 기준은 1개월 미만 일용 근로자 또는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인 경우로 한정되는데 상용근로자(정규직, 무기계약직, 계약 기간 1년 이상인 자) 또는 전일제 근로자 중 4대보험 미가입율을 살펴보면 약 6~8% 사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대보험 미가입율 역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주휴수당 미수령과 마찬가지로 직장의 규모가 작을수록 높았다(표 IV-20).

⑤ 근무시간

지난 주 근로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을 대상으로 주당 평균 근무시간을 살펴본 결과 평균 30.75시간을 근무하였다. 이들 중 전일제 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36.77시간, 시간제 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25.66시간이었다(표 IV-21).

표 IV-21. 주당 근로 시간

(단위: 시간)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검증 ¹⁾
전일제	759	36.77	16.858	13.101***
시간제	898	25.66	17.615	
계	1,657	30.75	18.134	

* 주: ***p <.001

또한 야간·주말·초과 근무 경험 정도를 살펴보면 밤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84.7%로 매우 높았고 그 외 저녁 근무나 8시간 이상 초과근무, 주말·휴일 근무는 각각 67.1%, 61%, 50.6%로 보고되었다(표 IV-22). 이 같이 근무한 경우 평균적으로 10명 중 3~5명 정도는 관련 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근로 환경 감독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IV-22. 야간·주말·초과 근무 경험 및 관련 수당 수령 여부

(단위: %, 일)			
구분	경험률(%)	평균 근무일 ¹⁾	수당 받음(%)
1. 밤 근무(22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	84.7	1.23	68.7
2. 저녁 근무(18시부터 22시까지)	67.1	3.00	52.5
3. 하루에 8시간 초과 근무	61.0	3.94	63.4
4. 주말(토·일요일) 및 휴일(공휴일) 근무	50.6	2.13	58.6

* 주: 전체 응답자 1,750명(비근무자 포함) 중 경험률 및 평균 근무일임.

⑥ 구직 경험

지난 일주일동안 일자리가 없었던 이들(748명)을 대상으로 구직활동 여부를 알아 본 결과, 27.4%는 구직활동을 한 반면 72.6%는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후자의 경우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로는 “재학 중이어서”라는 응답이 34.3%로 가장 많았다. 게다가 진학 준비(4.1%)와 직업훈련 등(5.9%)까지 포함한다면 44.3%가 학업 및 훈련을 이유로 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당분간 쉬고 싶어서”(13.1%)라는 응답이 많았고 “일을 하면 수급비가 끊겨서”라는 응답(9%)이 그 뒤를 이었다(그림 IV-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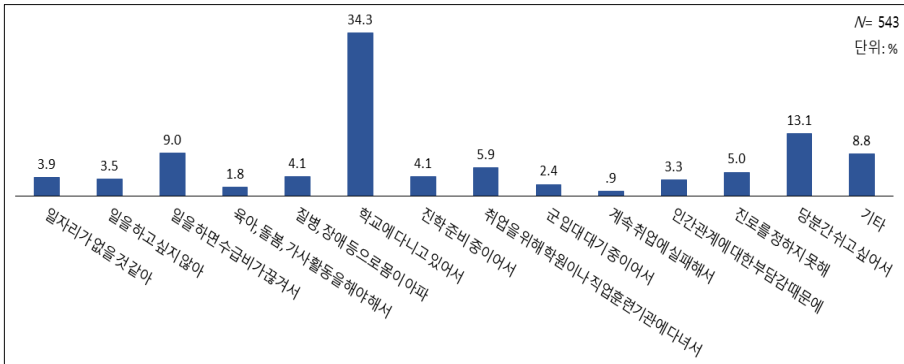


그림 IV-12.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

한편 구직활동을 한 이들(205명)을 대상으로는 구직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임금(27.3%)과 근로시간(20.5%)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적성 및 흥미(13.2%)라고 응답하였다(그림 IV-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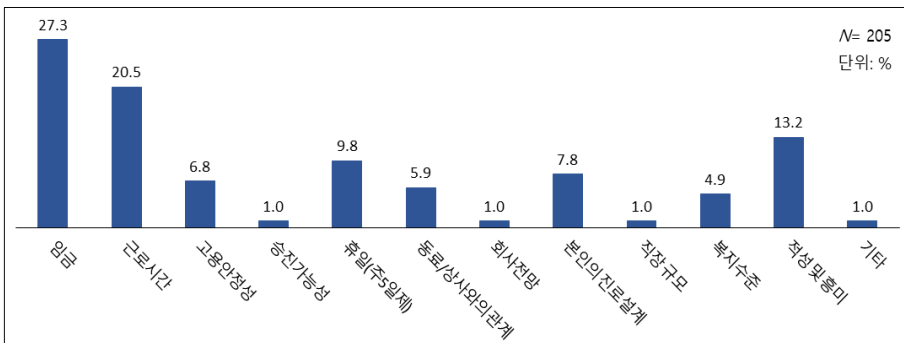


그림 IV-13. 구직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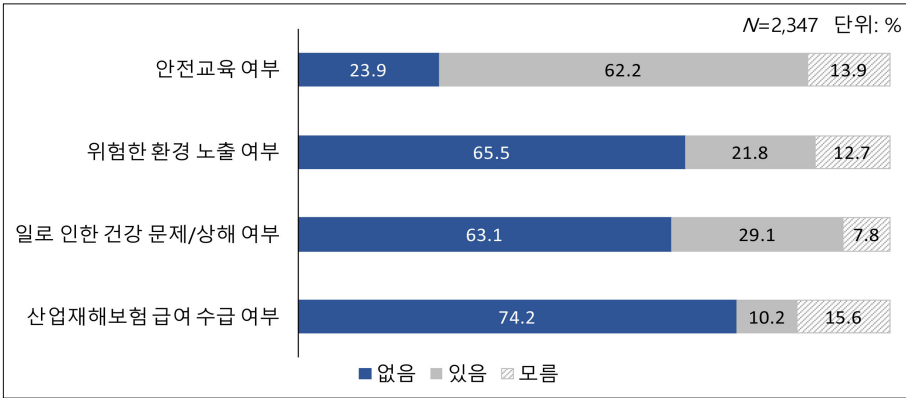


그림 IV-14. 근로안전 관련 경험 여부

⑦ 직장 내 산업안전 경험

산업안전과 관련하여 근로 중 위험이나 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았다는 응답률은 62.2%로 절반 이상이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험한 근로환경에 자주 노출된 경험은 21.8%, 일로 인해 건강문제나 부상이 발생했던 경험은 29.1%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병원비, 요양기간 중 휴업급여, 보상금 등 산업재해보험 급여를 받은 경험은 10.2%였다(그림 IV-14).

근로 중 안전 문제는 응답자들이 종사하는 직종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직종별 응답률을 보면 서비스 종사자나 단순노무종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게서 안전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다는 응답률이 특히 높게 나타났다(표 IV-23).

표 IV-23. 직종별 근로 안전 관련 경험률

(단위: %)

구분	사례 수(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1	1,728	0.7	17.4	15.4	27.4	6.7	0.3	6.9	5.5	16.8	1.6	1.3
2	1,728	1.0	16.5	8.9	28.3	6.5	0.5	10.2	3.9	19.6	2.6	1.8
3	1,728	0.2	17.0	10.9	32.8	8.1	0.2	6.7	3.4	18.4	1.2	1.2
4	1,728	0.0	12.6	10.1	29.3	7.1	0.5	10.6	5.1	20.7	0.5	3.5

* 주: 1) ① 관리자,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③ 사무 종사자, ④ 서비스 종사자, ⑤ 판매 종사자, ⑥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⑧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⑨ 단순노무 종사자, ⑩ 직업군인, ⑪ 기타

1. 일하는 동안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이나 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았다
2. 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한 근로환경에 자주 노출되었다
3. 일하는 동안 일로 인해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다친 적이 있다
4. 산업재해보험 급여(병원비, 요양기간 중 휴업급여, 보상금 등)를 받은 적이 있다

표 IV-24.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낸 기간이 일주일을 넘긴 적이 있는지 여부

(단위: %)

구분	사례 수 (명)	없음	있음	기간				χ^2 검증 ¹⁾
				①	②	③	④	
'23년 청년 ⁴⁾	1,410	91.4	8.6	5.8	42.1	27.3	24.8	-
'23년 시설퇴소청년	2,498	83.3	16.7	27.0	51.4	12.4	9.1	-
경제 수준	상 ^{a)}	139	92.1	7.9	27.3	45.5	0.0	37.486***
	중 ^{b)}	834	88.4	11.6	25.8	57.7	14.4	
	하 ^{c)}	1,525	79.7	20.3	27.4	49.7	12.3	

*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① 1개월 미만, ② 1개월 이상, ③ 1년 - 2년 미만, ④ 2년 이상

3) χ^2 검증은 NEET 여부(있음-없음)에 대한 검증이며 기간별 차이에 대한 검증이 아님.

4) '23년 청년 자료의 결맞음은 2023년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조사(김기현 외, 2023)에 참여한 29세 이하 청년들의 응답에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⑧ NEET 경험

현재 근로를 하지 않고 있는 청년 중 15세 이후부터 지금까지, 학교도 다니지 않고 일도 하지 않으면서 진학 준비나 취업 준비 등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낸 기간이 일주일 이상인 경우를 분석한 결과⁴¹⁾ 전체 응답자의 약 16.7%가 NEET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NEET 경험률 자체는 높았으나 NEET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는 경제생활이 상인 경우에서 더 많았다. 다만 이들 중 27%(전체 응답자의 약 4.5%)는 그 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고 응답하여 21.5%, 즉 전체 응답자의 약 3.6%만이 1년 이상 NEET를 경험하였다(표 IV-24). 이는 일반 청년 중 1년 이상 NEET를 경험한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약 4.5%(니트 경험자의 52.1%)인 것과 비교하면 그 비율에서 큰 차이가 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경제

① 소득

응답자(또는 응답자 부부)의 월 평균 근로/사업소득은 약 122만 원이었고, 이자 등 재산소득은 약 7만 원이었다. 가족으로부터 받는 지원은 월 평균 약 3만 원인 반면 국가와 지자체, 시설/기관 등 가족을 제외한 외부의 지원은 월 평균 약 38만 원으로 12배 이상

41) 응답자가 이 문항에서 NEET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라도 앞선 문항에서 구직활동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등에 한해서는 NEET 경험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표 IV-25. 월 평균 소득(세전)

(단위: 만 원)

구분 ¹⁾		사례 수(명)	평균	표준편차
'23년 시설 퇴소 청년	1. 근로/사업소득 ²⁾	2,471	122.61	119.907
	2. 재산소득 ³⁾	2,477	7.81	32.339
	3. 이전소득 ^{①4)}	2,493	2.98	14.304
	4. 이전소득 ^{②5)}	2,493	38.49	39.600
	5. 월 평균 총 소득	2,413	170.20	121.763
'22년 청년(29세 이하) ⁶⁾ 월 평균 총 소득		385,070	365.10	237.024

* 주: 1) 배우자가 있는 경우 본인, 배우자 합산 소득기준

2)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 중 순소득기준(총 매출에서 사업비용 제외)

3) 이자소득 등(대출이자 제외)

4) 비동거가족이 지원하는 현금(현물 환산가 포함)

5) 국가, 지자체, 기관/시설 등이 지원하는 현금(현물 환산가 포함, 코로나 19 지원금 제외)

6) '22년 청년 자료의 결구값은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정세정 외, 2022) 원자료에 제시된 가중치율을 적용한 값이며 청년(개인) 소득임.

많았다. 응답자의 월 평균 총 소득은 약 170만 원으로 소득 항목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IV-25). 한편 '22년 청년들의 월 평균소득은 365만 원으로 약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② 지출

저축성 지출을 제외한 응답자의 월 평균 총 생활비는 약 116만 원으로, 지출액이 상대적으로 가장 큰 항목은 식비로 약 38만 원이었다. 그 다음은 기타 생활비(약 19만 원), 주거비(약 13만 원) 오락문화비(약 12만 원), 통신비(약 10만 원), 주거관리비(약 8만 원), 교통비(약 8만 원), 비동거가족에 대한 지원비(약 3만 원) 순이었다. 이와 함께 시설퇴소청년들의 월 평균 저축액은 약 29만 원이었다(표 IV-26).

③ 채무

현재 본인이 갚아야 할 채무(빚, 대출)가 있다는 응답률은 36.4%로 '22년 청년 삶 실태 조사에 참여한 29세 이하 청년들 중 채무액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16.3%)⁴²⁾보다 20.1%p 높았다. 시설퇴소청년들이 돈을 빌린 곳은 은행이 과반으로 가장 많았고(57.4%). 그 다음은 기타(25.5%), 제2금융권(24.6%), 친구/지인(9.5%), 대부업체(4.6%) 순이었다(그림 IV-15).

42)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정세정 외, 2022) 원자료 중 29세 이하 청년만을 대상으로 가중치율을 적용한 후 재분석한 수치이다.

표 IV-26. 월 평균 지출

(단위: 만 원)

구분	사례 수(명)	평균	표준편차
1. 식비 ¹⁾	2,496	38.25	28.480
2. 주거비(월세)	2,496	13.41	17.336
3. 주거관리비 ²⁾	2,494	8.38	8.328
4. 통신비	2,498	9.58	10.083
5. 교통비	2,496	8.17	11.533
6. 오락문화비	2,497	12.40	15.650
7. 비동거가족 지원비 ³⁾	2,496	2.72	9.351
9. 기타 생활비 ⁴⁾	2,496	18.92	23.602
10. 저축	2,476	28.57	42.875
11. 총 생활비	2,486	115.99	70.187

* 주: 1) 주·부식비, 외식·간식비 포함

2) 일반관리비, 전기비, 가스비, 상하수도 요금 포함

3) 용돈, 생활비(현물 환산가 포함)

4) 생활용품, 피복비 등(재산 증식을 위한 지출, 보험료, 대출원금 및 이자 제외)

5) 저축(보험, 연금 등)을 제외한 1~9 항목 합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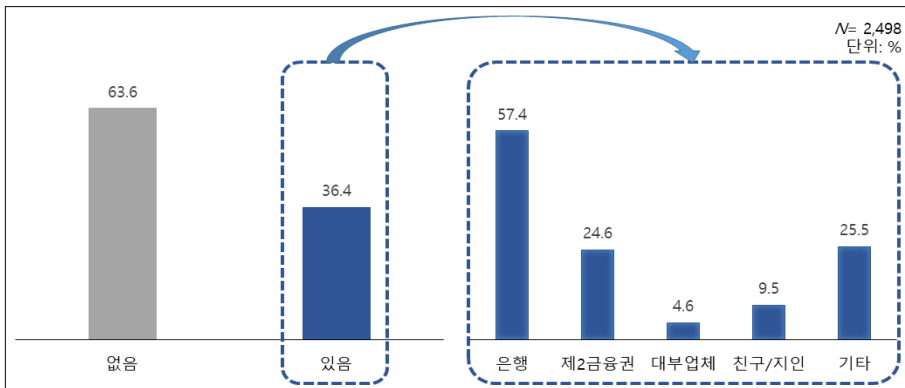


그림 IV-15. 채무 여부 및 돈을 빌린 곳(중복 응답)

채무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 채무액 평균은 약 1,366만 원이었는데, 일반청년의 개인 채무액 평균(약 514만 원)보다 약 852만 원가량 많았다. 채무 발생 사유별로 액수가 가장 많은 항목은 주거비(약 631만 원)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생활비(약 246만 원), 기타(약 178만 원), 학자금(약 162만 원), 범죄 피해로 인한 채무(약 94만 원), 가족의 빚을 넘겨받

표 IV-27. 채무(빚, 대출) 액수

(단위: 만 원)

	구분	사례 수(명)	평균	표준편차
시설 퇴소 청년	1. 학자금	907	162.94	403.858
	2. 주거비(전·월세, 관리비)	909	631.03	2,701.984
	3. 생활비 ¹⁾	906	246.27	508.464
	4. 창업 자금 마련	909	31.70	586.589
	5. 내 명의의 가족 빚	909	85.39	492.196
	6. 범죄 피해 ²⁾	908	93.97	543.318
	7. 기타 채무 ³⁾	906	178.08	599.632
	8. 합계	898	1,366.31	2,504.220
'22년 청년(29세 이하) ⁴⁾ 채무 합계		6,996,219	513.96	2,307.494

* 주: 1) 식비, 교통비, 통신비 등(햇살론, 유스대출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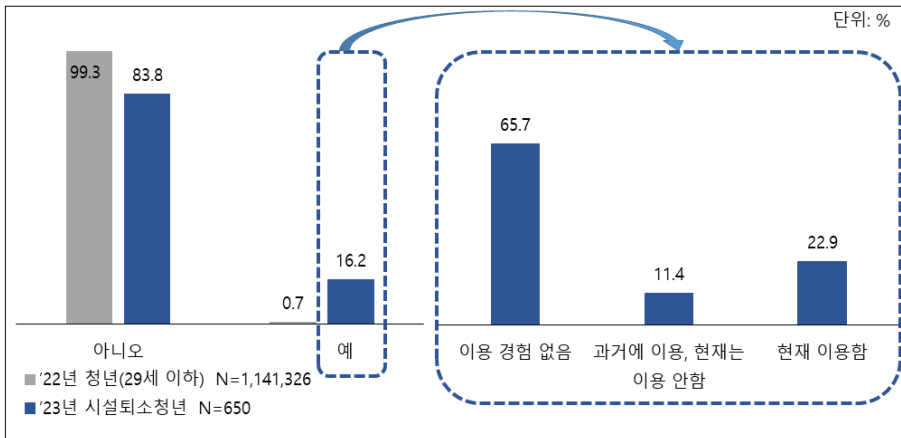
2) 보이스피싱, 명의 도용, 소액 결제 등

3) 주식, 가상자산 투자 목적의 채무 포함

4) '22년 청년 자료의 결괏값은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정세정 외, 2022) 원자료에 제시된 가중치율을 적용한 값이며 청년(개인) 부채임.

거나 내 명의의 빚(약 85만 원), 창업 자금 마련(약 32만 원) 등의 순이었다(표 IV-27).

한편 시설퇴소청년들 가운데 '금융채무불이행자'에 해당한다는 응답률은 16.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에 참여한 29세 이하 청년들의 금융채



* 주: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여부는 2022년 12월 31일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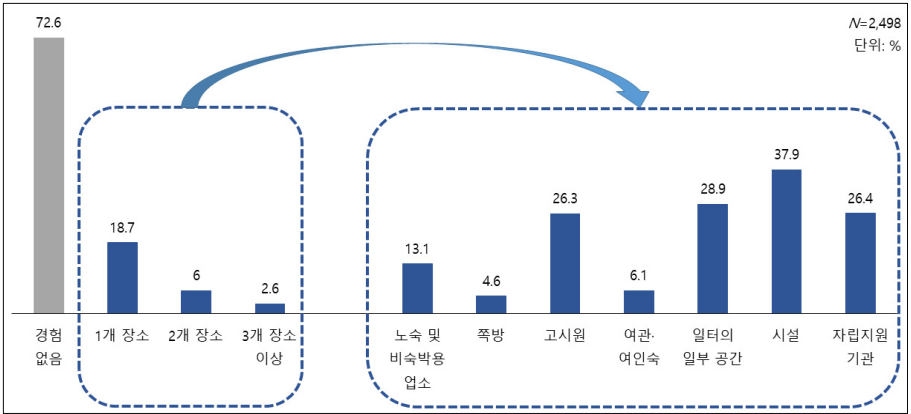
그림 IV-16. 금융채무불이행 여부 및 신용회복 지원제도 이용 여부

무불이행자 비율(0.7%)⁴³⁾보다 매우 높은 수치이다. 시설퇴소청년 응답자 중 신용불량자 임에도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이용한 적이 없다는 응답률이 과반을 넘었고(65.7%), 현재 이용하고 있다는 응답률은 22.9%에 불과하였으며, 과거에는 이용한 적이 있지만 현재 이용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률은 11.4%였다(그림 IV-16).

(5) 주거

① 주거 유형 경험

최근 1년간 집이 아닌 곳에서 한 달 이상 살았던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시설퇴소청년 응답자의 72.6%는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노숙 및 비숙박용 다중이용업소, 쪽방, 고시원, 여관·여인숙, 일터 및 아는 사람 집, 시설, 자립지원기관 등 자신의 집이 아닌 장소에서 한 달 이상 지낸 경험 중 1개 장소를 이용한 경우는 18.7%, 2개 장소를 이용한 경우는 6.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개 이상의 장소에서 각각 한 달 이상 지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도 2.6%에 이르렀다. 이에 최근 1년 간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았던 경험이 있는 시설퇴소청년들이 약 30%에 달하는 것을 볼 수 있다(그림 IV-17). 이렇게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았던 청년들 중에는 쉼터, 양육시설 등의 시설이나 자립지원 기관과 같은 보호 및 복지시설을 이용한 청년들도 있었으나, 일터의 일부 공간(28.9%)이



* 주: 각 장소에 대한 응답은 중복응답임.

그림 IV-17. 최근 1년간 집이 아닌 장소에서 한 달 이상 생활한 경험

43)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정세경 외, 2022) 원자료 중 29세 이하 청년만을 대상으로 가중치율을 적용한 후 재분석한 수치이다.

표 IV-28. 최근 1년간 집이 아닌 장소에서 한 달 이상 생활한 청년들의 거주지(중복응답)
(단위: %)

구분	'22년 청년 (29세 이하) ³⁾ (N=6,996,219)	'23년 시설퇴소청년(N=2,498)			
		전체	아동시설	청소년시설	소년보호시설
노숙 및 비숙박용 다중이용업소 ¹⁾	0.2	3.2	1.9	7.0	6.0
쪽방	0.1	1.0	0.8	2.2	0.0
고시원	0.7	5.0	2.0	15.9	1.7
여관·여인숙	0.1	1.4	1.1	2.5	1.7
일터의 일부 공간	0.5	7.6	5.6	13.7	10.3
시설(양육시설, 그룹홈, 쉼터 등)	0.0	13.6	8.5	31.6	8.5
자립지원기관 ²⁾	-	9.7	7.4	15.0	20.5

* 주: 1) 비숙박용 다중이용업소는 PC방, 만화방, 찜질방 등을 말함

2) 자립지원기관은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자립생활관, 희망디딤돌 센터 등을 말하며 '22년 청년 대상 조사에
서는 해당 항목이 없음.

3) '22년 청년 자료의 결측값은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정세정 외, 2022) 원자료에 제시된 가중치율을
적용한 값임.

나 고시원(26.3%), 노숙 및 비숙박용 다중이용업소(13.1%) 등에서 한 달 이상 중복적으로
비적정 주거 상태에 놓여 있었던 청년들이 과반 이상이었다.

전체 시설퇴소청년들 중 최근 1년 간 비적정 주거 공간 및 시설 등에서 한 달 이상
거주한 적이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표 IV-28), 일터의 일부 공간을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7.6%, 고시원 이용은 5.0%, 노숙 및 비숙박용 다중이용업소 이용 경험은
3.2%에 달하여 '22년 일반청년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의 불안정한 거주 상황을 경험하
였음을 시사한다. 특히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들의 거주상황은 타 시설 퇴소청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하였다.

② 현재 주거 여건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선택한 이유를 살펴보면 시설퇴소청년들은 주거비가 저렴해서
(48.4%), 통학 및 통근하기 좋은 위치여서(31.6%), 개인공간이 보장되어서(26.1%), 주택
내부 환경이 좋아서(22.9%)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IV-29). 이에 비해 일반청년들은 통학
및 통근하기 좋은 위치여서(70.3%), 주거비가 저렴해서(46.8%), 주택 내부 환경이 좋아서
(18.9%), 이 지역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18.3%) 등의 순으로 나타나 두 집단 간 주거지
선택의 주된 이유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시설퇴소청년들은 일반청년들에
비해 주거비와 개인공간 보장 정도를 더 중요시 여기지만 통학 및 통근의 편이성은 상대적

표 IV-29.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선택한 이유

(단위: %)

	'22년 청년(29세 이하) ¹⁾	'23년 시설퇴소청년
사례 수(명)	2,127,806	2,498
주거비가 저렴해서	46.8	48.4
주택 내부 환경이 좋아서	18.9	22.9
통학, 통근하기 좋은 위치여서	70.3	31.6
개인공간이 보장되어서	16.6	26.1
이 지역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18.3	19.9
자연환경이 좋아서	4.7	4.3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17.1	21.3
자산 가치를 고려해서	4.9	12.9
기타	2.6	12.7

* 주: '22년 청년 자료의 결락값은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정세정 외, 2022) 원자료에 제시된 가중치율을 적용한 값임.

으로 덜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을 보였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점유형태에 대해 일반청년들은 자가(59.3%), 보증금이 있는 월세(19.3%), 전세(17.6%) 등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시설퇴소청년들은 전세(42.0%), 보증금이 있는 월세(31.1%), 무상거주(12.5%) 등의 순으로 나타나(표 IV-30), 자가 비율이 현저

표 IV-30.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점유형태

(단위: %)

구분	'22년 청년 (29세 이하) ³⁾	'23년 시설 퇴소청년	퇴소시설			χ^2 검증 ¹⁾
			아동시설	청소년시설	소년보호시설	
사례 수(명)	6,996,219	2,498	1,827	554	117	217.262 ***
자가(본인이나 가족 소유)	59.3	10.0	9.1	10.6	21.4	
전세	17.6	42.0	50.0	22.2	10.3	
보증금 있는 월세	19.3	31.1	28.1	39.0	41.9	
보증금 없는 월세	1.1	3.2	2.3	5.4	7.7	
연세	0.8	0.9	0.7	1.8	0.9	
일세	0.0	0.2	0.2	0.2	0.9	
무상거주	0.9	12.5	9.7	20.8	17.1	

* 주: 1) * $p < .05$, ** $p < .01$, *** $p < .001$ (퇴소시설 유형별 차이에 대한 검증임.)

2) '22년 청년 자료의 결락값은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정세정 외, 2022) 원자료에 제시된 가중치율을 적용함.

히 낮고, 전세 및 월세, 무상거주 등의 비율이 높음을 볼 수 있다. 특히 아동복지시설 퇴소청년들은 전세가 50%로 가장 많은 것에 비해 청소년시설 및 소년보호시설 퇴소청년의 경우 보증금 있는 월세의 비율이 가장 높고, 보증금이 없는 월세와 무상거주의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청소년시설 및 소년보호시설 퇴소청년들의 경제적 상황과 주거 상태가 일반청년은 물론 아동복지시설 퇴소청년들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임을 추측해볼 수 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주거비를 마련한 방법으로는 LH 등의 지원(주거지원통합서비스 등)을 받은 경우가 60.6%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저축 및 근로소득(26.8%), 자립수당/자립지원수당(20.8%)이었다(표 IV-31). 퇴소시설 유형에 관계없이 LH 등의 지원을 통해 주거비를 마련하는 경우가 가장 많기는 하지만 청소년시설 및 소년보호시설 퇴소청년들이 LH 등의 지원을 받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한 아동복지시설 퇴소청년들은 자립수당 및 자립지원수당을 통해 주거비를 마련(24.7%)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자립수당 및 자립지원수당을 받는 비율이 낮은 청소년시설 및 소년보호시설 퇴소청년들은 저축 및 근로소득을 통해 주거비를 충당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앞서 주택 점유형태에 대한 응답과 종합해 볼 때 청소년시설 및 소년보

표 IV-31.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주거비 마련 방법 (단위: %)

구분	전체	퇴소시설		
		아동시설	청소년시설	소년보호시설
사례 수(명)	1,941	1,488	381	72
LH 등의 지원	60.6	66.7	42.3	31.9
자립정착금	17.4	21.4	4.5	2.8
아동발달지원계좌	7.0	8.6	1.8	1.4
자립수당/자립지원수당	20.8	24.7	8.7	2.8
주거급여	16.5	16.7	16.8	12.5
자립지원관/자립생활관에서 지원	6.9	4.7	15.5	6.9
금융기관에서 대출	4.4	4.0	5.8	5.6
부모/가족/친척에게 빌려서	7.0	4.7	13.9	16.7
민간단체에서 지원	1.0	0.7	1.8	2.8
저축 또는 근로소득	26.8	21.7	44.9	36.1
기타	2.7	2.4	2.6	8.3

표 IV-32.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유형

(단위: %)

구분	'22년 청년 (29세 이하) ²⁾	'23년 시설 퇴소청년	퇴소시설			χ^2 검증 ¹⁾
			아동시설	청소년시설	소년부호시설	
사례 수(명)	6,996,219	2,498	1,827	554	117	108.394 ***
주택 또는 아파트, 오피스텔	98.8	89.6	92.6	80.5	85.5	
비거주용 건물(상가, 공장, 여관 등)	0.4	0.6	0.3	1.3	2.6	
고시원	0.2	1.7	0.7	5.1	1.7	
판잣집,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0.0	0.1	0.0	0.4	0.0	
기숙사, 향토학사	0.6	3.7	3.4	4.3	5.1	
기타	0.0	4.4	3.1	8.5	5.1	

* 주: 1) * $p < .05$, ** $p < .01$, *** $p < .001$ (퇴소시설 유형별 차이에 대한 검증임.)

2) '22년 청년 자료의 결락값은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정세정 외, 2022) 원자료에 제시된 가중치율을 적용함.

호시설 퇴소청년들이 주거마련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고충을 겪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유형을 살펴보면(표 IV-32)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주택 또는 아파트, 오피스텔 등 적정 거주시설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은 한편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일반청년의 경우 비거주용 건물, 고시원, 판잣집, 비닐하우스, 움막 등 비적정 거주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1%가 채 되지 않는 것에 비해 시설퇴소청년들의 경우 2.4%에 달하고, 특히 청소년시설 퇴소청년의 경우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이 5.1%에 달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설퇴소청년들이 현재 살고 있는 집은 대부분 지상에 위치하고 있으나, 반지하(또는 지하)나 옥상(옥탑방)에 거주하는 일반청년이 1%인데 비해 시설퇴소청년들 중 4.0%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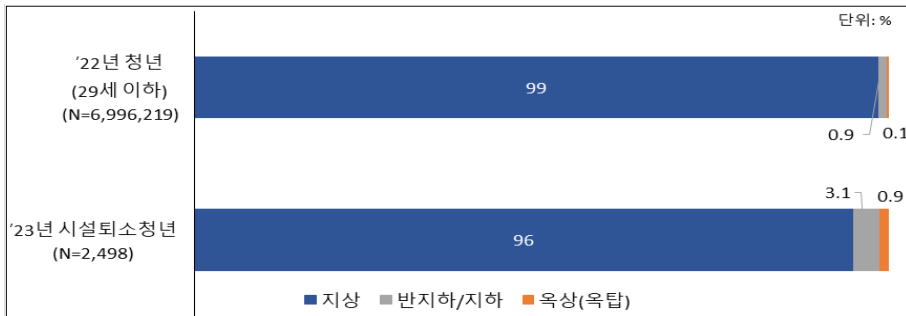


그림 IV-18.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위치

표 IV-33. 경제적 이유로 냉난방 어려움 경험 여부

(단위: %)

구분		사례 수(명)	한 번도 없었다	거의 없었다	몇 번 있었다	자주 있었다	χ^2 검증 ¹⁾
경제적 어려움으로 난방 못함	전체	2,498	55.0	22.5	16.9	5.6	—
	아동시설	1,827	57.2	22.4	15.8	4.6	27.737***
	청소년시설	554	47.3	24.0	20.0	8.7	
	소년보호시설	117	56.4	17.1	19.7	6.8	
경제적 어려움으로 냉방 못함	전체	2,498	54.0	24.1	15.6	6.4	—
	아동시설	1,827	56.5	24.7	13.8	5.0	52.243***
	청소년시설	554	45.8	23.3	19.7	11.2	
	소년보호시설	117	53.0	17.9	23.9	5.1	

* 주: * $p < .05$, ** $p < .01$, *** $p < .001$

반지하나 옥상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거지가 열악한 상태에 놓인 시설퇴소청년이 일반청년의 약 4배에 이르렀다. 특히 이러한 특성은 비수도권(1.8%)에 비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시설퇴소청년들(7.1%)에게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그림 IV-18).

최근 1년간 주거취약 상황 여부를 살펴본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냉·난방을 하지 못한 경험이 자주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6% 내외로 나타났다(표 IV-33). 특히 이러한 응답은 타 시설에 비해 청소년시설 퇴소청년들에게서 높은 비율로 나타나 청소년 시설 퇴소청년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주거취약 상황에 놓이는 비율이 높음을 볼 수 있다.

시설퇴소청년들은 일반청년들에 비해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인해 임대와 관련한 어려움을 경험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개월 이상 공과금이나 관리비가 연체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년은 13.5%로 일반청년에 비해 12배 이상 많았다(표 IV-34). 또한 2개월 이상 월세를 연체한 적이 있거나 3개월 이상 주택담보대출 이자 또는 원리금을 연체한 비율도 일반청년에 비해 7~9배 이상 높아 시설퇴소청년이 주거 자립을 하는데 있어 경제적 어려움이 있음을 시사한다.

표 IV-34. 임대 관련 어려움 경험률

(단위: %)

구분	'22년 청년(29세 이하) ¹⁾ N=6,996,219	'23년 시설퇴소청년 N=2,498
2개월 이상 월세 연체	1.6	12.2
3개월 이상 공과금이나 관리비 연체	1.1	13.5
3개월 이상 주택담보대출 이자 또는 원리금 연체	0.5	4.5
이사 또는 계약 갱신에 필요한 임대보증금 부족	3.9	9.1
가구원 중 아동, 장애인 등이 있어서 집을 구하기 어려움	0.6	1.5
주택 압류, 재개발,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 등으로 집에서 쫓겨나거나 쫓겨날 위기에 처함	0.4	1.7
집주인과 수리, 관리비 문제로 갈등을 겪음	1.9	7.7
보증금이나 월세를 5% 이상 인상해 달라는 요구를 받거나, 재계약 요구를 거절당함	0.9	3.4

* 주: '22년 청년 자료의 결핍값은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정세정 외, 2022) 원자료에 제시된 가중치율을 적용함.

③ 주거지원 제도

주거와 관련한 정부의 지원제도를 이용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시설퇴소청년 중 16.6%는 청년주택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 제도를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서 이용경험이 많았다. 주거급여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의 주거지원 제도를 이용한 경험에 대해 응답자 중 14.3%가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 제도의 이용경험은 청소년시설 퇴소청년들에게서 특히 높았다. 시설퇴소청년의 주택마련지원 제도 이용경험은 11.1%, 주택금융 이용경험은 7.4% 수준이었으며, 모두 수도권 지역의 청년들에게서 이용경험이 많았다(표 IV-35). 이와 관련하여 비수도권 지역에서 민간임대나 주택마련지원, 주택금융 등의 주거관련 지원제도의 활용 기회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표 IV-35. 주거지원 제도 이용 경험

(단위: %)

구분		사례 수(명)	이용경험 있음	이용경험 없음	χ^2 검증 ¹⁾
주거지원제도 ²⁾	전체	2,498	14.3	85.7	-
	아동시설	1,827	12.9	87.1	17.747***
	청소년시설	554	19.7	80.3	
	소년보호시설	117	10.3	89.7	
청년주택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	전체	2,498	16.6	83.4	-
	수도권	1,061	19.6	80.4	11.909**
	비수도권	1,437	14.4	85.6	
주택금융 ³⁾	전체	2,498	7.4	92.6	-
	수도권	1,061	9.3	90.7	9.508**
	비수도권	1,437	6.1	93.9	
주택마련지원 ⁴⁾	전체	2,498	11.1	88.9	-
	수도권	1,061	13.7	86.3	12.428***
	비수도권	1,437	9.2	90.8	

*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주거지원제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취약 주거지 개선 등

3) 주택금융: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 청년 보증부 월세 대출,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등

4) 주택마련지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혼희망타운, 공공자가주택, 민영주택 특별공급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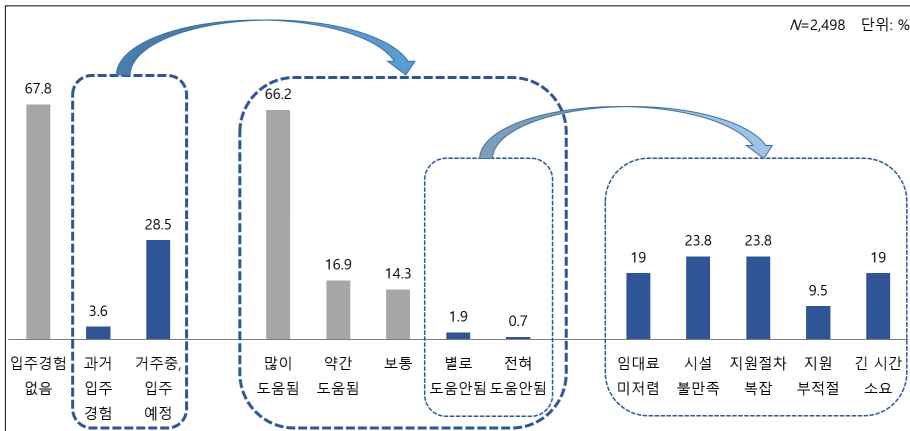


그림 IV-19. 정부지원 주택 입주 경험 및 도움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

정부지원 주택에 입주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32.2%는 현재 거주 중(혹은 입주 예정)이거나 과거에 입주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그림 IV-19). 이러한 정부지원 주택지원사업이 시설퇴소청년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살펴본 결과, 많은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전체의 66.2%로 가장 많았고, 도움이 된다(약간 도움이 된다+많이 도움이 된다)는 의견은 전체의 83.1%로 나타났다. 이로써 주택지원사업이 시설퇴소청년의 주거안정에 효과적인 제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록 일부이긴 하나 정부지원 주택지원사업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시설퇴소청년들의 이유를 살펴보면 주택의 시설이나 질이 만족스럽지 않고(23.8%), 지원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23.8%)이라는 응답률이 높아 임대주택의 시설 개선 및 지원 절차의 간소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6) 건강 및 심리·정서

① 건강검진

설문조사에 참여한 시설퇴소청년 중 최근 2년간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는 56.4%, 최근 1년간 구강검진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는 53%였다(표 IV-36). 국가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매 2년마다 받을 수 있음에도 검진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건강관리에 소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일반적으로 청년기는 건강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만큼 건강검진을 등한시 할 가능성이 높다. 일반 후기청소년을

표 IV-36. 최근 2년간 건강검진 및 최근 1년간 구강검진 경험 여부

(단위: %)

구분	사례 수(명)	건강검진			구강검진		
		있다	없다	χ^2 검증 ¹⁾	있다	없다	χ^2 검증 ²⁾
전체	2,498	56.4	43.6	-	53.0	47.0	47.0
퇴소 시설	아동시설 ^a	1,827	56.3	43.7	55.6	44.4	22.484 ***
	청소년시설 ^b	554	59.0	41.0	47.7	52.3	
	소년보호시설 ^c	117	46.2	53.8	37.6	62.4	
경제 수준	상 ^a	139	69.8	30.2	66.2	33.8	15.090 **
	중 ^b	834	61.4	38.6	55.3	44.7	
	하 ^c	1,525	52.5	47.5	50.6	49.4	

* 주: * $p < .05$, ** $p < .01$, * $p < .001$

대상으로 한 조사(임희진 외, 2021)에서도 최근 2년간의 건강검진 수검률이 32.9%로 시설퇴소청년들의 수검률보다도 훨씬 낮았다. 이에 비해 시설퇴소청년들의 수검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그만큼 시설퇴소청년들이 자신의 건강에 대해 신경 쓰고 있다고도 볼 수 있으므로 한편으로는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시설퇴소청년들은 가족의 지원 없이 스스로 건강을 챙겨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경우가 많은 만큼 건강검진에 보다 적극적인 필요가 있다. 하위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면 청소년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소년보호시설 순으로, 그리고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검진율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들의 국가건강검진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홍보 강화를 위시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경제수준이 낮은 경우나 소년보호시설 퇴소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② 식생활

하루 식사 횟수를 살펴보면 3끼를 모두 챙겨먹는 이들은 15.2%에 지나지 않았으며 더 나아가 10명 중 1명 이상은 하루에 한 끼만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 명 중 한 명꼴로 식사시간이 불규칙하거나 식사를 통해 제공받는 영양에 균형이 잡혀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최근 1년간 식비 부족으로 식사량이 줄거나 식사를 거른 적이 있다는 응답도 43.4%로 나타나 식사를 통한 영양 공급에 어려움을 있음을 시사한다(그림 IV-20).

이들의 한 달 식비와 식사 횟수, 식비 부족 등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식비 액수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관련이 있거나 집단 간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다만 전체적으로 경제적 수준이 낮다고 응답한 이들은 일일 식사 횟수가 적거나 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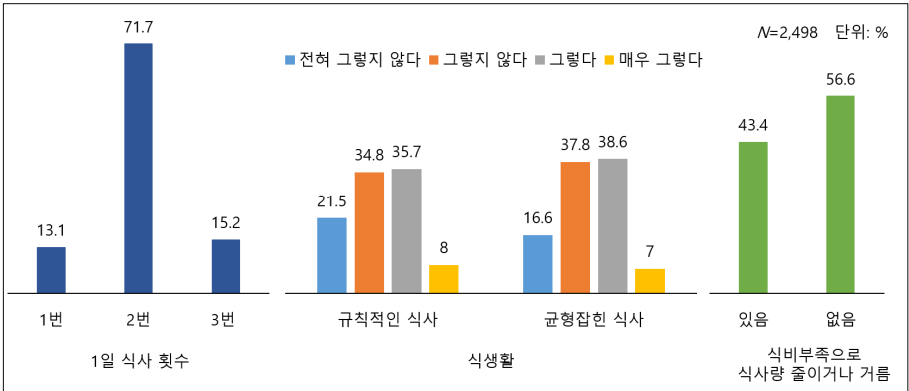


그림 IV-20. 1일 식사 횟수 및 식생활 행태

표 IV-37. 경제적 수준에 따른 식생활 실태

(단위: %, 점)

구분		전체	경제적 수준			χ^2 검증 ¹⁾
			상	중	하	
사례 수(명)		2,498	139	834	1,525	-
일일 식사 횟수	1회	13.1	8.6	10.9	14.8	19.588**
	2회	71.7	68.3	71.9	71.9	
	3회 이상	15.2	23.0	17.1	13.4	
식비 부족	예	43.4	20.9	29.3	53.2	156.044***
	아니오	56.6	79.1	70.7	46.8	
구분		평균(표준편차)				t/F 검증 ¹⁾
		전체	상 ^a	중 ^b	하 ^c	
규칙적인 식사시간		2.30(0.895)	2.52(0.904)	2.45(0.900)	2.20(0.877)	25.298*** c(b,a)
식사의 영양		2.36(0.839)	2.63(0.819)	2.50(0.819)	2.26(0.835)	31.479*** c(b,a)

* 주: * $p < .05$, ** $p < .01$, *** $p < .001$

잡힌 식사 부족, 식비 부족 등을 경험한 비율이 높았다(표 IV-37). 이에 시설퇴소청년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건강한 식습관 형성 및 영양 섭취를 위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③ 신체활동

평소 건강관리를 위해 일주일에 3번 이상 운동을 하는 경우는 29.4%였으며 일주일에 1번 미만으로 운동을 한다는 응답은 37.8%로 나타났다. 일반청년과 비교해 볼 때 시설퇴소청년들이 일주일에 3번 이상 운동을 하는 경우가 다소 적었으며 시설퇴소청년들 내 집단별 차이를 보면 남자보다는 여자가, 대재 이상보다는 고졸 이하에서 운동 횟수가 주 1번 미만이라는 응답률이 높았다(표 IV-38).

주 1회 미만 운동을 한 이들을 대상으로 평소에 운동을 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면 “귀찮아서”라는 응답이 37.1%로 가장 많았으며 “시간이 없어서”가 22.3%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비용에 대한 부담을 언급한 경우도 19.9%로 나타났다(그림 IV-21).

표 IV-38. 평소 운동 횟수(일주일 기준)

(단위: %)

구분	사례 수(명)	①	②	③	④	χ^2 검증 ¹⁾
'22년 청년(29세 이하)	6,996,219	38.2	28.4	21.6	11.7	-
'23년 시설퇴소청년	2,498	37.8	32.8	19.5	9.9	-
성별	남자	1,217	30.6	32.5	23.4	83.177***
	여자	1,281	44.6	33.2	15.8	
학력	고졸이하	864	42.9	29.6	17.4	16.675**
	대재이상	1,633	35.0	34.5	20.7	
퇴소 시설	아동시설 ^{a)}	1,827	35.2	34.9	20.4	31.880***
	청소년시설 ^{b)}	554	45.5	28.5	16.1	
	소년보호시설 ^{c)}	117	41.0	20.5	23.1	

*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① 일주일에 1번 미만, ② 일주일에 1~2번, ③ 일주일에 3~4번, ④ 일주일에 5번 이상

3) '22년 청년 자료의 결락값은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정세정 외, 2022) 원자료에 제시된 가중치율을 적용한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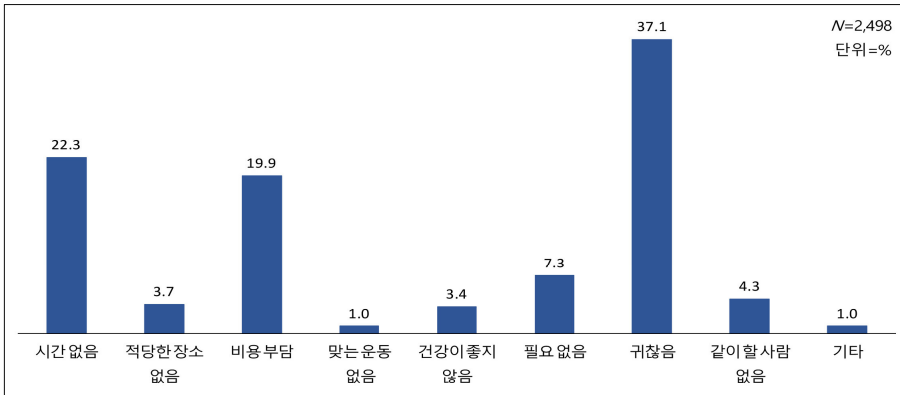


그림 IV-21. 평소 운동을 하지 않는 이유

④ 스마트폰 과다사용

평소 스마트폰 사용 시간 조절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스마트폰으로 인해 학업이나 직장 일 등 다른 일에 집중하는데 어려움을 느낀 적이 있는지 알아 본 결과, 시설퇴소청년의 19.2%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응답율은 일반청년의 응답률(21.9%)보다 낮은 수준이다. 한편 시설퇴소청년들 간 집단별 차이를 보면 남자(15.9%)보다는 여자(22.4%)에게서, 고졸 이하(14.4%)보다는 대재 이상(21.8%)에게서, 아동시설(17.6%)보다

표 IV-39. 스마트폰 사용 시간 조절의 어려움 정도

(단위: %, 점)

구분	사례 수 (명)	①	②	③	④	t/F 검증 ¹⁾		
						평균	표준편차	유의도
'22년 청년(29세 이하)	6,996,219	29.1	48.9	19.4	2.5	1.95	0.765	-
'23년 시설외소청년	2,498	38.8	42.0	15.9	3.3	1.84	0.808	-
성별	남자	1,217	41.9	42.2	12.9	3.0	1.77	-4.158***
	여자	1,281	35.8	41.8	18.7	3.7	1.90	
학력	고졸이하	864	42.6	43.1	12.2	2.2	1.74	-4.452***
	대재이상	1,633	36.7	41.5	17.9	3.9	1.89	
퇴소 시설	아동시설 ^{a)}	1,827	39.7	42.7	15.1	2.5	1.80	6.782**
	청소년시설 ^{b)}	554	35.2	40.6	18.6	5.6	1.95	
	소년보호시설 ^{c)}	117	40.2	38.5	15.4	6.0	1.87	
경제 수준	상 ^{a)}	139	46.0	38.8	12.9	2.2	1.71	10.711*** a<c
	중 ^{b)}	834	43.4	40.5	13.7	2.4	1.75	
	하 ^{c)}	1,525	35.5	43.1	17.4	3.9	1.90	

*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3) '22년 청년 자료의 결괏값은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정세정 외, 2022) 원자료에 제시된 가중치율을 적용한 수치임.

는 타 시설(청소년시설 24.2%, 소년보호시설 21.4%) 퇴소청년에게서 긍정응답률이 높았다(표 IV-39). 그러나 이 항목은 응답자 개인의 인식에 기초한 것으로 그렇다고 응답한 이들의 실제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이들에 비해 반드시 길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⑤ 고립·은둔

시설퇴소청년들에게 아는 사람들 중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기댈 수 있고 자신의 곤란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에 그렇다는 응답은 80.1%,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19.9%였다. 이는 10명 중 2명은 어려운 상황에서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의미한다. 반면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은 의지 가능한 이들이 평균 4.86명 정도 있다고 응답하였다(그림 IV-22). 기댈 수 있는 사람들의 유형(중복 응답)을 보면 지인(친구, 선후배, 직장동료 등)이 49.5%로 가장 많았고 가족(친척) 28.4%, 민간 기관(사회복지 및 종교 시설·단체 등) 12.4%, 공공 기관(주민센터, 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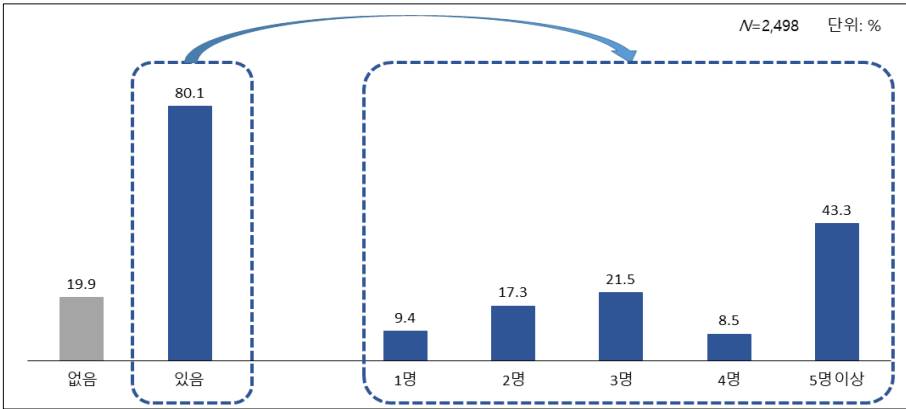


그림 IV-22.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사람 유무

등) 7.7% 순이었다.

다음으로 현재까지 6개월 이상 특별한 이유(학업, 업무, 장애 및 건강문제, 출산, 육아 등) 없이 방이나 집에서 주로 머물면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거의 맺지 않은 채 생활한 경험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7.3%에 해당하는 이들이 현재 그렇다고 응답하였는데 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가 45.1%였다. 한편 그 이유로는 인간관계가 힘들어서라는 응답이 37.4%로 가장 많았다(그림 IV-23).

고립감과 관련하여 4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4점: 항상 그렇다) 4문항에 대한 평균점수를 바탕으로 시설퇴소청년들의 고립감 정도를 살펴보았다. 전체 시설퇴소청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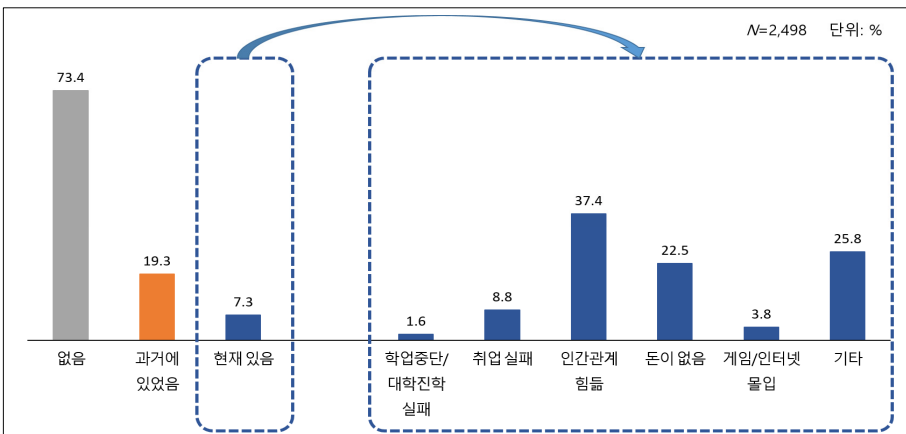


그림 IV-23. 6개월 이상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지 않은 경험(은둔) 및 그 이유

표 IV-40. 고립감 정도

(단위: 점)

구분		사례 수(명)	평균	표준편차	t/ F 검증 ¹⁾
'23년 청년(29세 이하) ²⁾		1,433	1.30	0.515	-26.019***
'23년 시설퇴소청년		2,498	1.89	0.906	
성별	남자	1,217	1.80	0.868	-5.264***
	여자	1,281	1.99	0.932	
학력	고졸이하	864	1.96	0.952	2.268**
	대재이상	1,633	1.86	0.879	
거주 지역	수도권	1,061	1.96	0.927	3.077**
	비수도권	1,437	1.85	0.887	
퇴소 시설	아동시설 ^a	1,827	1.79	0.852	52.374*** b)a,c
	청소년시설 ^b	554	2.23	0.993	
	소년보호시설 ^c	117	1.86	0.913	
경제적 수준	상 ^a	139	1.54	0.731	61.491*** c)a,b
	중 ^b	834	1.67	0.799	
	하 ^c	1,525	2.05	0.940	

*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23년 청년 자료의 결핍값은 2023년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조사(김기현 외, 2023)에 참여한 29세 이하 청년들이 응답한 수치임.

응답자의 고립감 평균은 1.89점이며 일반청년들(평균 1.30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평균값이 높았다(표 IV-40). 문항별 응답률을 보면 총 4문항 중 최소 1문항 이상에서 항상 그렇다고 응답한 이들은 전체 응답자의 67.8%였으며 4문항 모두에서 항상 그렇다고 응답한 이들은 전체 응답자의 30.6%로 상당히 많은 이들이 심한 고립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고립감과 관련하여 4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4점: 항상 그렇다) 4문항에 대한 평균점수를 바탕으로 시설퇴소청년들의 고립감 정도를 살펴보았다. 전체 시설퇴소청년 응답자의 고립감 평균은 1.89점이며 일반청년들(평균 1.30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평균값이 높았다(표 IV-40). 문항별 응답률을 보면 총 4문항 중 최소 1문항 이상에서 항상 그렇다고 응답한 이들은 전체 응답자의 67.8%였으며 4문항 모두에서 항상 그렇다고 응답한 이들은 전체 응답자의 30.6%로 상당히 많은 이들이 심한 고립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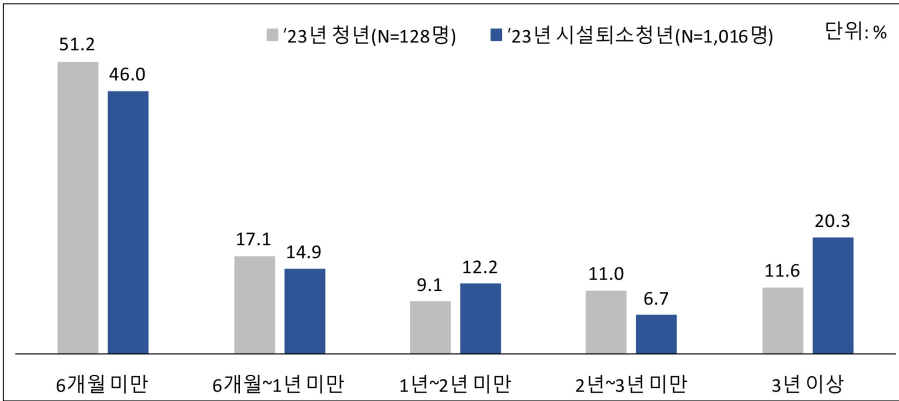


그림 IV-24.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낀 기간

한편 시설퇴소청년 중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낀 응답자들을 살펴보면 시설퇴소청년의 40.7%(1,016명)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일반청년 중에는 8.9%(128명)만이 그렇다고 응답하여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상당함을 드러내었다. 또한 그러한 감정을 느낀 기간을 보면 1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고립감을 느끼는 경우 역시 일반청년보다는 시설퇴소청년에게서 그 비율이 높았다(그림 IV-24). 이러한 결과는 시설퇴소청년들의 고립감이 일반청년들에 비해 중요하게 해결되어야 할 문제임을 시사한다.

⑥ 우울

우울 관련 척도를 바탕으로 우울 증상 유무⁴⁴⁾를 살펴본 결과 시설퇴소청년 중 24.5%가 우울증상이 있었다. 일반청년의 경우 우울 증상이 있는 비율이 5.9%인 것과 비교해 볼 때 약 4배 정도 높은 수치이다. 시설퇴소청년들 내 집단별 차이를 보면 남자보다는 여자에게서, 대재 이상보다는 고졸 이하인 경우에, 비수도권보다는 수도권 거주자에게서,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청소년시설-소년보호시설-아동시설 순으로 우울 증상이 나타나는 비율이 높았다. 특히 청소년시설 퇴소자의 경우 우울증상을 지닌 경우가 41.2%로 나타나 조속한 대처가 마련될 필요가 있는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표 IV-41).

한편 우울 증상에 따른 어려움 정도를 살펴본 결과 우울 증상이 있는 집단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더 높았다. 우울 증상이 있는 집단에서는 28.6%가 우울로 인해 많이 또는 매우 많이 어렵다고 응답했으며 조금 어렵다는 응답은 49.3%로 나타났다. 이에

44) 우울에 대한 9개 문항(문 49)의 총점(27점)이 10점 이상인 경우는 우울증상 있음에 해당한다.

반해 전혀 어렵지 않다는 응답은 22.2%에 불과하였다(그림 IV-25).

표 IV-41. 우울증상 유무

(단위: %)

구분		사례 수(명)	없음	있음	χ^2 검증 ¹⁾
'22년 청년(29세 이하) ²⁾		6,996,219	94.1	5.9	-
'23년 시설퇴소청년		2,498	75.5	24.5	-
성별	남자	1,217	78.8	21.2	14.296***
	여자	1,281	72.3	27.7	
학력	고졸이하	864	68.5	31.5	34.274***
	대재이상	1,633	79.1	20.9	
거주 지역	수도권	1,061	72.8	27.2	7.255**
	비수도권	1,437	77.5	22.5	
퇴소 시설	아동시설 ^a	1,827	81.0	19.0	115.525***
	청소년시설 ^b	554	58.8	41.2	
	소년보호시설 ^c	117	68.4	31.6	
경제 수준	상 ^a	139	89.9	10.1	81.982***
	중 ^b	834	84.3	15.7	
	하 ^c	1,525	69.3	30.7	

*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22년 청년 자료의 결괏값은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정세정 외, 2022) 원자료에 제시된 가중치율을 적용한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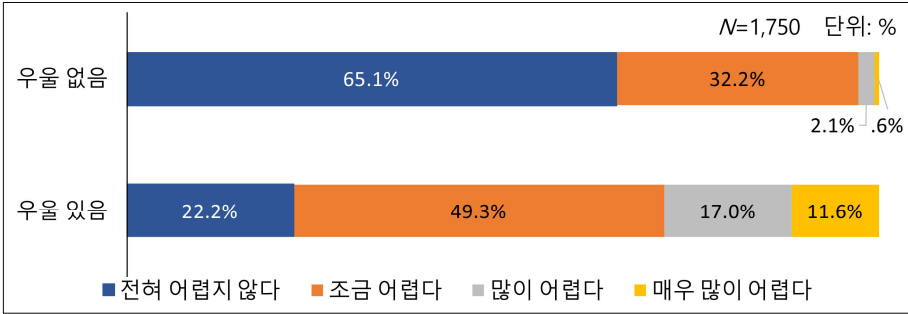


그림 IV-25. 우울로 인한 어려움 정도

표 IV-42. 삶의 만족도

(단위: %, 점)

구분	사례 수 (명)													t/F 검증 ¹⁾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평균	표준 편차	유의도		
'22년 청년 (29세 이하) ³⁾	6,996,219	0.7	0.7	1.8	3.9	4.5	13.0	14.6	23.6	21.4	9.3	6.4	6.71	1.956	-	
'23년 시설퇴소 청년	2,498	6.6	2.8	8.1	10.1	7.9	28.1	9.4	12.0	8.2	2.5	4.4	4.93	2.473	-	
학력	고졸이하	864	8.7	3.7	8.7	10.0	8.1	30.2	7.9	9.1	6.0	2.3	5.3	4.68	2.572	-3.663 ***
	대재이상	1,633	5.5	2.3	7.8	10.2	7.8	26.9	10.2	13.5	9.3	2.6	3.9	5.07	2.410	
퇴소 시설	아동 ^a	1,827	5.1	2.4	7.3	9.7	7.6	29.1	9.4	13.2	8.9	2.7	4.6	5.13	2.405	24.931 *** b<c,a
	청소년 ^b	554	11.0	4.3	11.2	11.2	9.0	23.8	9.7	9.2	6.5	1.4	2.5	4.29	2.531	
	보호 ^c	117	8.5	2.6	6.0	12.0	6.8	32.5	7.7	6.0	4.3	3.4	10.3	4.96	2.740	
경제 수준	상 ^a	139	2.2	0.0	3.6	0.7	2.9	20.9	9.4	20.1	17.3	10.1	12.9	6.81	2.236	121.113 *** c(b,a
	중 ^b	834	2.6	1.1	3.5	5.8	7.4	34.2	12.2	15.3	10.1	2.6	5.2	5.63	2.102	
	하 ^c	1,525	9.2	4.0	11.0	13.4	8.6	25.4	7.8	9.4	6.3	1.7	3.2	4.38	2.504	

*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⑤ 보통 → ⑩ 매우 만족한다

3) '22년 청년 자료의 결맞음은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정세정 외, 2022) 원자료에 제시된 가중치를 을 적용한 수치임.

⑦ 삶의 만족도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 결과를 보면 평균 점수가 10점 만점에 4.93으로 지난 1차년도 결과(4.99점)에 이어 올해도 중간값인 5점에 미치지 못하였다. 일반청년들의 경우 삶의 만족도 평균값이 6.71점인 것과 비교해 볼 때 시설퇴소청년들의 삶의 만족도는 상당히 낮음을 알 수 있다. 시설퇴소청년들 내 하위집단별 차이를 보면 대재 이상보다는 고졸 이하에서, 아동 및 소년보호시설보다는 청소년시설 퇴소자에게서,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경향을 보였다(표 IV-42).

또한 고립감 정도 및 우울 증상 유무에 따른 삶의 만족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IV-43). 그 결과 경제수준, 퇴소시설 유형, 학력(대학 입학 여부) 외에도 고립감과 우울증상의 유무가 삶의 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관련이 있었다. 특히 R^2 의 변화량에 따르면 우울증상의 유무(설명력 4.6%)보다는 고립감(20.8%)의 정도가 삶의 만족도와 더 깊은 관련성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시설퇴소청년 중 특히 고립·은둔 청년들을 조속히 발굴해 내고 그들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표 IV-43. 고립감 및 우울 유무와 삶의 만족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N=2,496

변인	1	2	3	4	5	6	7
1. 삶 만족도(DV)	1.000						
2. 성별	-.021	1.000					
3. 학력	.075***	.076***	1.000				
4. 경제수준	-.297***	.011	.075***	1.000			
5. 퇴소시설	-.102***	-.073***	-.274***	.011	1.000		
6. 고립감	-.534***	.105***	-.055***	-.246***	.143***	1.000	
7. 우울 유무	-.505***	.076***	-.117**	-.214***	.182***	.586***	1.000
평균	4.93	1.51	1.65	3.85	1.32	1.89	1.25
표준편차	2.474	.500	.476	1.821	.557	.906	.430
모형	변인	R^2 1)		교정된 R^2	R^2 변화량	F 변화량	
1	경제수준	.104***		.104	.104	290.064	
2	퇴소시설	.115***		.115	.011	31.539	
3	학력	.121***		.120	.006	16.888	
4	고립감	.329***		.328	.208	772.654	
5	우울 유무	.375***		.374	.046	181.722	

* 주: * α .05 ** α .01 *** α .001

⑧ 자해

시설퇴소청년 응답자의 10.2%는 최근 1년간 자해를 한 적이 있었다. 특히 남자보다는 여자에게서 경험률이 높았으며 시설별로는 청소년시설 퇴소청년들의 자해경험률이 가장 높아 10명 중 2명 이상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자해를 한 적이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자해를 한 날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본 결과 평균적으로 약 14일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IV-44).

표 IV-44. 최근 1년간 자해 경험 및 자해 일수

(단위: %, 일)

구분		사례 수 (명)	자해 경험		χ^2 검증 ¹⁾	사례 수 (명)	t/F 검증 ¹⁾		
			있다	없다			평균(일)	표준편차	유의도
전체		2,498	10.2	89.8	-	254	13.72	33.915	-
성별	남자	1,217	5.9	94.1	47.694***	71	12.27	39.468	-0.425
	여자	1,281	14.3	85.7		183	14.28	31.602	
학력	고졸이하	864	12.8	87.2	10.004**	110	12.88	33.010	-0.344
	대재이상	1,633	8.8	91.2		144	14.36	34.691	
거주 지역	수도권	1,061	12.3	87.7	8.410**	129	12.36	26.593	-0.647
	비수도권	1,437	8.7	91.3		125	15.12	40.161	
퇴소 시설	아동시설 ^a	1,827	6.6	93.4	104.738***	120	10.20	24.491	2.225
	청소년시설 ^b	554	21.5	78.5		119	18.33	42.503	
	소년보호시설 ^c	117	13.7	86.3		15	5.33	9.976	
자립지원 기간	3년 미만	2,048	10.7	89.3	4.566*	219	13.70	33.813	-0.071
	3년 이상	436	7.3	92.7		32	14.16	36.443	
경제 수준	상 ^a	139	4.3	95.7	44.805***	6	2.83	3.545	0.569
	중 ^b	834	5.3	94.7		43	10.63	41.015	
	하 ^c	1,525	13.4	86.6		205	14.69	32.763	

* 주: * $p < .05$, ** $p < .01$, *** $p < .001$

⑨ 정신건강 치료·상담

최근 1년간 정신건강 문제로 전문가의 상담(진료)이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적이 있는지 알아본 결과(표 IV-45) 응답자의 13.1%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일반청년들의 응답률(2.7%)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이다. 다만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할 때 받았다는 응답이 70.8%로 나타난 것은 이들의 필요에 따른 개입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전문가의 상담(진료)이 필요 없었다는 응답이 일반청년들의 경우 49.1%였으나 시설퇴소청년의 경우는 16.1%에 불과하여 시설퇴소청년들은 정신건강을 위해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결과이기도 한다.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주된 이유로는 비용에 대한 부담감(44.3%)이 가장 높았으며 이는 일반청년의 28.6%에 비해서도 15.7%p나 높은 수치이다. 그 다음으로 는 시간 부족(17.1%), 심리적 부담감(10.1%), 어디로 가야 할 지 잘 모름(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IV-26).

표 IV-45. 최근 1년간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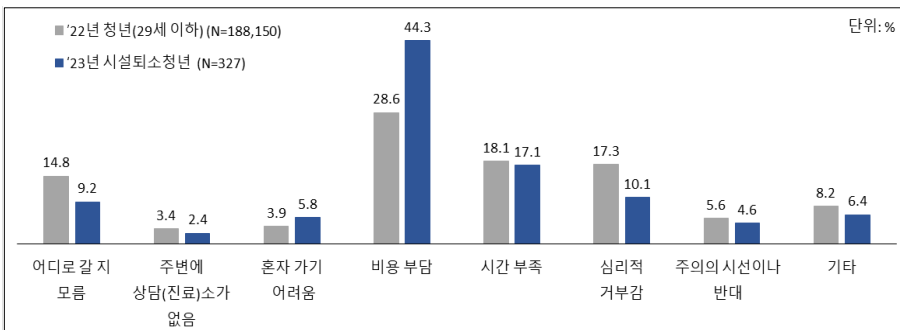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사례 수(명)	①	②	③	χ^2 검증 ¹⁾
'22년 청년(29세 이하) ³⁾		6,996,219	2.7	47.5	49.8	-
'23년 시설퇴소청년		2,498	13.1	70.8	16.1	-
성별	남자	1,217	8.6	74.6	16.8	41.615***
	여자	1,281	17.3	67.1	15.5	
거주 지역	수도권	1,061	16.0	69.7	14.2	16.522***
	비수도권	1,437	10.9	71.5	17.5	
퇴소 시설	아동시설 ^{a)}	1,827	10.5	71.6	17.8	54.643***
	청소년시설 ^{b)}	554	21.7	66.8	11.6	
	소년보호시설 ^{c)}	117	12.8	76.1	11.1	
경제 수준	상 ^{a)}	139	9.4	72.7	18.0	32.156***
	중 ^{b)}	834	8.2	75.1	16.8	
	하 ^{c)}	1,525	16.1	68.3	15.6	

*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① 있다, ② 없다, ③ 전문가의 상담(진료)이 필요한 적이 없었다

3) '22년 청년 자료의 결댓값은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정세정 외, 2022) 원자료에 제시된 가중치율 을 적용한 수치임.



* 주: '22년 청년 자료의 결댓값은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정세정 외, 2022) 원자료에 제시된 가중치율 을 적용한 수치임.

그림 IV-26. 전문가의 상담(진료)을 받지 못한 주된 이유

표 IV-46. 최근 1년간 심리·정서적인 어려움으로 약물 사용 경험

(단위: %)

구분		사례 수(명)	있다	없다	χ^2 검증 ¹⁾
'22년 청년(29세 이하) ²⁾		6,996,219	3.7	96.3	-
'23년 시설퇴소청년		2,498	14.9	85.1	-
성별	남자	1,217	10.4	89.6	37.977***
	여자	1,281	19.1	80.9	
퇴소 시설	아동시설 ^{a)}	1,827	9.8	90.2	157.013***
	청소년시설 ^{b)}	554	31.4	68.6	
	소년보호시설 ^{c)}	117	15.4	84.6	
경제 수준	상 ^{a)}	139	11.5	88.5	25.364***
	중 ^{b)}	834	10.2	89.8	
	하 ^{c)}	1,525	17.7	82.3	

*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22년 청년 자료의 결락값은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정세정 외, 2022) 원자료에 제시된 가중치를 을 적용한 수치임.

⑩ 심리·정서 문제 약물 복용 및 의사 처방 여부

최근 1년간 행동이나 심리·정서적인 어려움으로 약물(수면제, 신경안정제, 각성제 등)을 사용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시설퇴소청년은 14.9%로 '22년 일반청년들의 응답률(3.7%)의 4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특히 심리·정서 문제로 인한 약물 사용 경험은 남자보다는 여자에게서, 청소년시설 퇴소청년에게서,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단일수록 높게 나타났다(표 IV-46). 이러한 결과는 앞서 서술했듯이 여자, 청소년시설,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단에서 우울, 자해 고립감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한편 약물 사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 중 기분 향상이나 긴장감 해소 등을 위해 의사 처방 없이 약물을 사용한 적이 있는가라는 물음에는 13.5%만이 그렇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22년 일반청년들의 응답률(12.2%)과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⑪ 장애

시설퇴소청년 중 현재 장애가 있어 장애인 등록을 한 경우는 4.4%로 '22년 일반청년들의 응답률(0.6%)에 비해 상당히 높았다. 퇴소시설별 차이를 보면 등록장애인 비율은 소년보호시설 퇴소청년에게서, 비등록 장애인 비율은 청소년시설 퇴소청년에게서 타 시설 퇴소청년보다 높게 나타났다(표 IV-47).

표 IV-47. 장애 여부

(단위: %)

구분		사례 수 (명)	①	②	③	χ^2 검증 ¹⁾
'22년 청년(29세 이하) ²⁾		6,981,143	99.2	0.2	0.6	-
'23년 시설퇴소청년		2,495	93.3	2.4	4.4	-
퇴소 시설	아동시설 ^{a)}	1,824	94.1	1.8	4.1	54.643***
	청소년시설 ^{b)}	554	91.2	4.3	4.5	
	소년보호시설 ^{c)}	117	90.6	1.7	7.7	

*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①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다, ② 장애가 있으나 장애인 등록을 하지는 않았다, ③ 장애가 있어서 장애인 등록을 하였다.

3) '22년 청년 자료의 결측값은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정세정 외, 2022) 원자료에 제시된 가중치율을 적용한 수치임.

장애가 있으나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이들(48명)을 대상으로 그 주된 이유를 살펴 본 결과, 장애 등록을 할 만큼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7.1%로 가장 높았고 장애인 등록을 원치 않았다는 응답(17.6%)이 그 뒤를 이었다(그림 IV-27). 한편 등록절차를 몰라서라는 응답(14.7%)도 있었는데 비록 소수가 하더라도 장애가 의심되거나 판명된다면 등록절차 안내 및 권유를 통해 본인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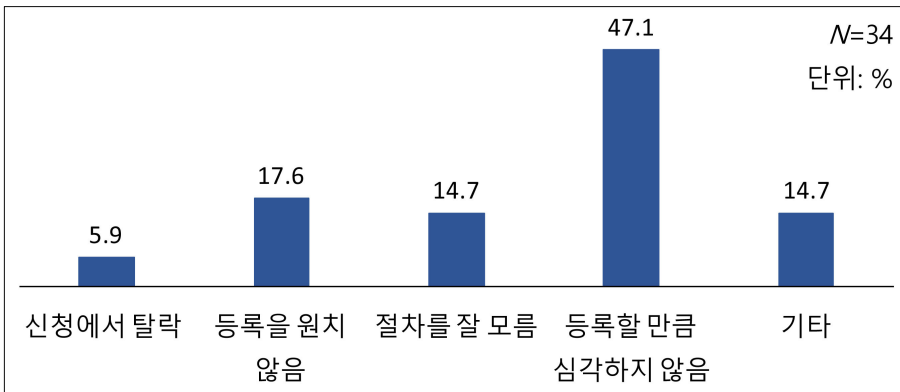


그림 IV-27.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은 주된 이유

표 IV-48. 현재 신체·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일상·사회생활 어려움 여부

(단위: %)

구분		사례 수(명)	있다	없다	χ^2 검증 ¹⁾
'22년 청년(29세 이하) ²⁾		6,996,219	3.2	96.8	-
'23년 시설퇴소청년		2,498	13.0	87.0	-
성별	남자	1,217	10.4	89.6	14.804***
	여자	1,281	15.5	84.5	
퇴소 시설	아동시설 ^{a)}	1,827	9.4	90.6	86.283***
	청소년시설 ^{b)}	554	24.5	75.5	
	소년보호시설 ^{c)}	117	14.5	85.5	
경제 수준	상 ^{a)}	139	8.6	91.4	41.293***
	중 ^{b)}	834	7.4	92.6	
	하 ^{c)}	1,525	16.5	83.5	

*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22년 청년 자료의 결락값은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정세정 외, 2022) 원자료에 제시된 가중치율 을 적용한 수치임.

⑫ 질병치료 및 건강보험료 납부 현황

시설퇴소청년 중 신체나 정신건강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은 13%로 '22년 일반청년의 응답률(3.2%)보다 4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표 IV-48). 하위 집단별로 볼 때 신체나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어려움은 남자보다는 여자, 타 시설보다 청소년시설 퇴소청년, 경제수준이 하인 경우에 그 응답률이 높았는데 이는 앞서 정신적 어려움 등과의 결과와도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정신과 질환이 가장 많아 전체 응답자의 8.25%가 해당 질환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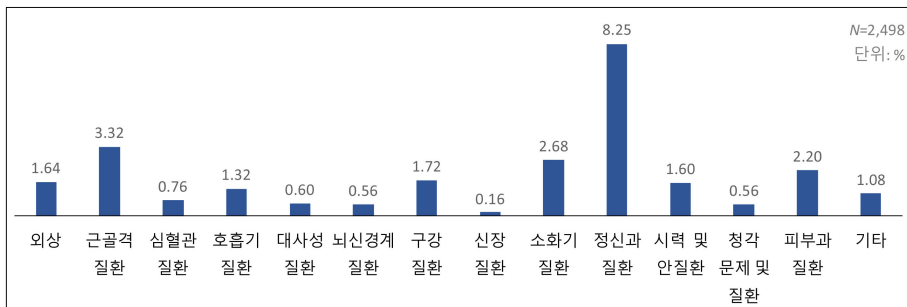


그림 IV-28. 최근 1년간 앓았던 질병·질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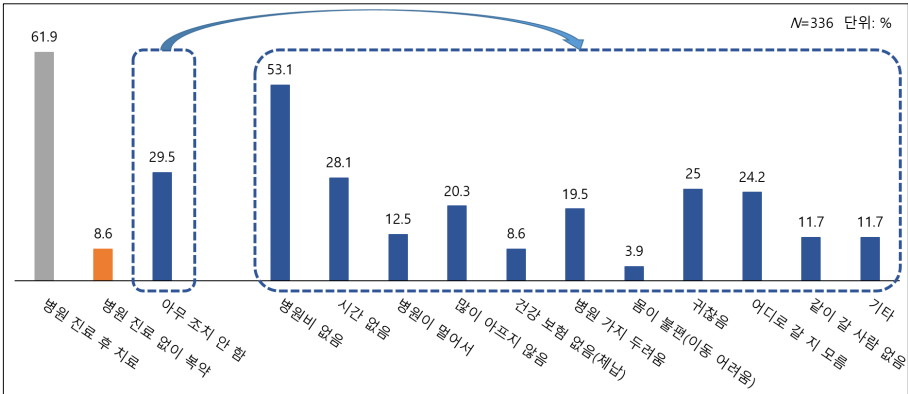


그림 IV-29. 병원 치료 여부 및 치료 받지 않은 이유

인해 최근 1년 간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에 제한을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근골격 질환(디스크, 관절염 등)이 3.32%, 소화기 질환(2.68%), 피부과 질환(2.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IV-28).

최근 1년간 앓았던 질병 및 질환이 있다고 응답한 336명을 대상으로 치료 여부를 살펴 보았다. 그 결과, 이들 중 약 62%는 병원 치료 경험이 있는 반면 약 30%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이유로는 병원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절반 이상이었으며 시간이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그 뒤를 이었다(그림 IV-29).

표 IV-49.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미납 또는 연체 경험

(단위: %)

구분		사례 수(명)	있다	없다	χ^2 검증 ¹⁾
'23년 시설퇴소청년		2,498	9.9	90.1	-
퇴소 시설	아동시설 ^a	1,827	7.7	92.3	35.984***
	청소년시설 ^b	554	15.9	84.1	
	소년보호시설 ^c	117	15.4	84.6	
경제 수준	상 ^a	139	3.6	96.4	13.705**
	중 ^b	834	8.0	92.0	
	하 ^c	1,525	11.5	88.5	

*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22년 청년 자료의 결괏값은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정세정 외, 2022) 원자료에 제시된 가중치율을 적용한 수치임.

마지막으로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미납 또는 연체(밀림)를 한 적이 있는지 알아 본 결과, 약 10명 중 1명이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응답은 아동시설 퇴소청년 보다는 청소년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 퇴소청년에게서, 그리고 경제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높았다(표 IV-49).

⑬ 주관적 건강

평소의 건강상태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식 정도는 표 IV-50과 같다. 시설퇴소청년들이 인식하는 건강에 대한 평균 점수(3.10점)는 '22년 일반청년(평균 3.61점)보다 다소 낮았다. 하위 집단별 차이를 보면 남자보다는 여자, 아동시설보다는 청소년시설 퇴소자,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자신의 건강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같은 집단별 차이는 앞서 서술된, 여러 건강 상황에 대한 집단별 차이와 유사한 형태로 건강 관련 지원이 보다 필요한 집단이 어디인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표 IV-50. 건강 상태

(단위: %, 점)

구분	사례 수 (명)	①	②	③	④	⑤	t/F 검증 ¹⁾		
							평균	표준편차	유의도
'22년 청년(29세 이하) ³⁾	6,996,219	0.4	6.4	36.3	45.3	11.6	3.61	0.789	-
'23년 시설퇴소청년	2,498	2.6	17.3	54.5	18.5	7.1	3.10	0.857	-
성별	남자	1,217	1.9	15.6	52.2	19.6	10.7	3.22	0.900
	여자	1,281	3.3	18.8	56.8	17.5	3.7	2.99	0.801
퇴소 시설	아동시설 ^{a)}	1,827	1.6	15.2	55.2	20.4	7.7	3.17	0.834
	청소년시설 ^{b)}	554	5.4	24.5	51.3	14.1	4.7	2.88	0.882
	소년보호시설 ^{c)}	117	5.1	15.4	59.0	11.1	9.4	3.04	0.923
경제 수준	상 ^{a)}	139	0.7	7.2	48.9	30.9	12.2	3.47	0.828
	중 ^{b)}	834	1.2	11.0	56.6	21.5	9.7	3.27	0.829
	하 ^{c)}	1,525	3.5	21.6	53.9	15.8	5.2	2.98	0.850

*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① 매우 나쁘다, ② 나쁘다, ③ 보통이다, ④ 좋다, ⑤ 매우 좋다
 3) '22년 청년 자료의 결괏값은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정세정 외, 2022) 원자료에 제시된 가중치율을 적용한 수치임.

(7) 참여 및 사회·미래인식

① 정치·사회활동 참여

시설퇴소청년들의 정치·사회활동 참여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정치·사회문제에 대해 주변사람들과 얘기하기, 온라인 등에 의견제시나 공유, 시위·집회 참석 등의 정도를 살펴 보았다. 온라인 등에 의견제시나 공유, 시위·집회 참석 등의 정도에서는 시설퇴소청년들과 일반청년들 간에 경험률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았으나 정치·사회문제에 대해 주변사람들과 얘기하는 비율에서는 시설퇴소청년들(45.4%)의 경험률이 '22년 일반청년들(66.7%)에 비해 낮았다. 하위집단별 차이를 보면 여자보다는 남자에게서, 그리고 대학교 재학 이상보

표 IV-51. 정치·사회 활동 여부

(단위: %)

문항 ²⁾	구분		사례 수(명)	①	②	③	④	χ^2 검증 ¹⁾
1	'22년 청년(29세 이하) ⁴⁾		6,996,219	33.2	15.9	19.1	31.7	-
	'23년 시설퇴소청년		2,498	54.6	17.3	13.4	14.7	-
	성별	남자	1,217	58.4	16.0	11.6	14.0	15.421**
		여자	1,281	50.9	18.6	15.1	15.5	
	학력	고졸이하	864	63.0	16.1	9.8	11.1	42.511***
		대재이상	1,633	50.1	18.0	15.2	16.7	
2	'22년 청년(29세 이하) ⁴⁾		6,996,219	65.6	11.9	9.0	13.5	-
	'23년 시설퇴소청년		2,498	64.2	10.3	8.8	16.6	-
	성별	남자	1,217	69.8	9.1	7.9	13.1	34.704***
		여자	1,281	58.9	11.5	9.8	19.9	
	학력	고졸이하	864	68.2	9.8	6.6	15.4	12.338**
		대재이상	1,633	62.1	10.6	10.0	17.3	
3	'22년 청년(29세 이하) ⁴⁾		6,996,219	90.0	8.0	1.5	0.5	-
	'23년 시설퇴소청년		2,498	91.4	5.2	2.3	1.1	-
	성별	남자	1,217	92.9	4.0	2.0	1.1	7.788
		여자	1,281	90.0	6.2	2.7	1.1	
	학력	고졸이하	864	92.9	4.3	1.7	1.0	4.304
		대재이상	1,633	90.6	5.6	2.6	1.1	

* 주: 1)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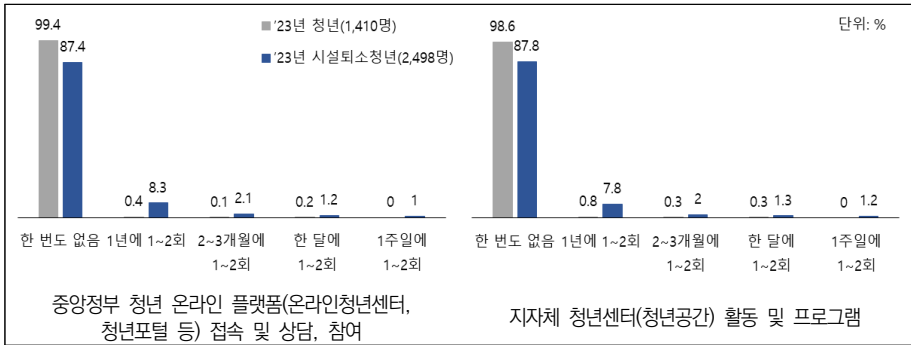
2) 문항 1. 정치·사회 문제에 대해 주변 사람과 이야기하기

문항 2. 온라인에서 정치·사회 문제에 대한 의견을 올리거나 '좋아요' 누르기, 공유하기 등

문항 3. 시위, 집회 등에 참여하기

3) ① 전혀 없다, ② 최근 1년은 아니지만 해본 적 있다, ③ 최근 1년 동안 1~2번, ④ 최근 1년 동안 3번 이상

4) '22년 청년 자료의 결괏값은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정세정 외, 2022) 원자료에 제시된 가중치율을 적용한 수치임.



* 주: '23년 청년 자료의 결괏값은 2023년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조사(김기현 외, 2023)에 참여한 29세 이하 청년들의 응답에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그림 IV-30. 청년 활동 참여율

다는 고졸 이하에서 그 정도가 더 낮았다(표 IV-51).

뿐만 아니라 청년 활동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청년 온라인 플랫폼(온라인청년센터, 청년포털 등) 접속 및 상담, 참여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는 응답과 지자체 청년센터(청년공간) 활동 및 프로그램 참여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는 응답도 각각 87.4%, 87.8%에 달하였다(그림 IV-30). 반면 '23년 일반청년들의 경우는 중앙정부 청년 온라인 플랫폼과 지자체 청년센터 활동 모두에서 시설폐소청년들보다 경험률이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일부 시설폐소청년들은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정보나 활동 등에서 일반청년들보다 좀 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참여율이나 참여 횟수가 저조하여 청년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사회참여에 대한 효능감을 알아보기 위해 세 문항에 대한 응답 정도를 살펴본 결과, '22년 일반청년들에 비해 모든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 점수를 보였다(표 IV-52). 이는 시설폐소청년들의 참여 효능감이 그만큼 낮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시설폐소청년들을 대상으로 하위집단별 평균점수를 비교해 보면 대체로 남자 집단과 고졸 이하 집단에서 효능감 정도가 낮았다. 낮은 효능감은 실제적인 참여 행동의 정도를 낮출 수 있고 또 낮은 참여율은 효능감을 다시 낮추는 식으로 순환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시설폐소청년들의 참여행동 고취 및 효능감 제고를 통해 건전한 시민으로서 사회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정책소외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시설폐소청년들은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사회 안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냄으로써 사회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가질 수 있을 뿐 아니라 개인이

표 IV-52. 참여 효능감

(단위: %, 점)

문항 2)	구분	사례 수(명)	①	②	③	④	⑤	t/F 검증 ¹⁾		
								평균	표준편차	유의도
1	'22년 청년'	6,996,219	16.5	23.2	37.2	19.0	4.2	2.71	1.080	-
	'23년 시설퇴소청년'	2,498	31.1	17.2	34.2	13.0	4.4	2.42	1.181	-
	성별	남자	1,217	34.9	13.9	33.0	13.4	4.8	2.39	-1.351
		여자	1,281	27.5	20.4	35.4	12.6	4.1	2.46	
	학력	고졸이하	864	39.7	16.8	30.7	9.3	3.6	2.20	-6.896 ***
		대재이상	1,633	26.6	17.5	36.1	15.0	4.9	2.54	
2	'22년 청년 ⁴⁾	6,996,219	9.1	12.3	41.5	29.5	7.6	3.14	1.033	-
	'23년 시설퇴소청년'	2,498	18.1	6.6	35.5	29.5	10.3	3.07	1.222	-
	성별	남자	1,217	23.0	7.1	33.2	26.4	10.4	2.94	-5.357 ***
		여자	1,281	13.4	6.1	37.7	32.5	10.3	3.20	
	학력	고졸이하	864	25.6	8.4	37.3	20.5	8.2	2.77	-8.888 ***
		대재이상	1,633	14.1	5.6	34.5	34.3	11.5	3.23	
3	'22년 청년 ⁴⁾	6,996,219	20.6	24.6	36.3	14.9	3.6	2.56	1.083	-
	'23년 시설퇴소청년'	2,498	35.4	17.3	30.9	11.9	4.5	2.33	1.200	-
	성별	남자	1,217	40.4	15.0	29.3	10.4	4.9	2.24	-3.506 ***
		여자	1,281	30.6	19.4	32.5	13.4	4.1	2.41	
	학력	고졸이하	864	41.4	18.1	28.4	8.7	3.5	2.15	-5.645 ***
		대재이상	1,633	32.2	16.8	32.3	13.7	5.1	2.43	

*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문항 1. 나는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문항 2. 나는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

문항 3. 나는 선거나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정치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4) '22년 청년(29세 이하) 자료의 결괏값은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정세정 외, 2022) 원자료에 제시된 가중치율을 적용한 수치임.

나 자신이 속한 집단의 권리 확보와도 긴밀하게 연결되기 때문이다.

② 사회 인식

시설퇴소청년들의 사회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크게 세 가지 영역-공정성, 복지, 사회에 대한 신뢰도를 살펴보았다. 우선 공정성과 관련하여 시설퇴소청년들은 모든 사람이 소득과 부를 평등하게 나누는 사회보다는 열심히 일한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버는 사회가 더 공정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22년 청년들의 경향과 크게

표 IV-53. 공정성에 대한 의견

(단위: %, 점)

문항 2)	구분	사례 수(명)	①	②	③	④	⑤	평균	표준편차
1	'22년 청년 ⁴⁾	6,996,219	16.3	26.7	30.6	20.9	5.5	2.73	1.128
	'23년 시설퇴소청년	2,498	20.7	25.9	36.7	11.0	5.7	2.55	1.106
2	'22년 청년 ⁴⁾	6,996,219	0.8	2.9	17.8	44.1	34.5	4.09	0.838
	'23년 시설퇴소청년	2,498	3.7	2.9	23.1	36.1	34.1	3.94	1.010
3	'22년 청년 ⁴⁾	6,996,219	6.5	19.7	40.5	27.7	5.5	3.06	0.976
	'23년 시설퇴소청년	2,498	5.2	11.2	39.3	29.8	14.5	3.37	1.028
4	'22년 청년 ⁴⁾	6,996,219	34.1	27.8	29.3	7.3	1.5	2.14	1.021
	'23년 시설퇴소청년	2,498	20.8	25.7	39.1	11.0	3.3	2.50	1.042

* 주: 1) 문항 1. 모든 사람이 소득과 부를 평등하게 나누는 사회가 공정하다
 문항 2. 열심히 일한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버는 사회가 공정하다
 문항 3. 가난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조건 없이 돌보는 사회가 공정하다
 문항 4.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특권을 누리는 사회가 공정하다
 2)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3) '22년 청년(29세 이하) 자료의 결측값은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정세정 외, 2022) 원자료에 제시된 가중치율을 적용한 수치임.

다르지 않았으나 그 정도에서 다소 차이를 보였다. 한편 시설퇴소청년들은 '22년 청년들보다 가난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조건 없이 돌보는 사회가 공정하다는 생각이 좀 더 강했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특권을 누리는 사회가 공정하다는 의견에는 '22년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의견이 강했으나 부정응답률(매우) 그렇지 않다, 46.5%)은 '22년 청년들(61.9%)에 비해 다소 낮았다(표 IV-53).

복지와 사회 신뢰도에 대해서는 각각에 대해 10점 만점의 척도에 응답하도록 질문을 한 결과(그림 IV-31), 시설퇴소청년은 '22년 29세 이하 일반청년들과 마찬가지로 개인보다는 정부가 개인의 생계와 복지에 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⁴⁵⁾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만 그러한 생각이 청년보다는 시설퇴소청년들에게서 좀 더 강하게 나타났다. 우리 사회를 어느 정도나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22년 일반청년들은 중앙값이 5점보다 다소 높았던 반면 시설퇴소청년들의 값은 평균 4.3점으로 중앙값보다 다소 낮아 사회에 대한 신뢰도가 낮았다.

45) 5점을 기준으로 10점에 가까울수록 개인 스스로 생계와 복지에 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강하며 0점에 가까울수록 정부가 개인의 생계와 복지에 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강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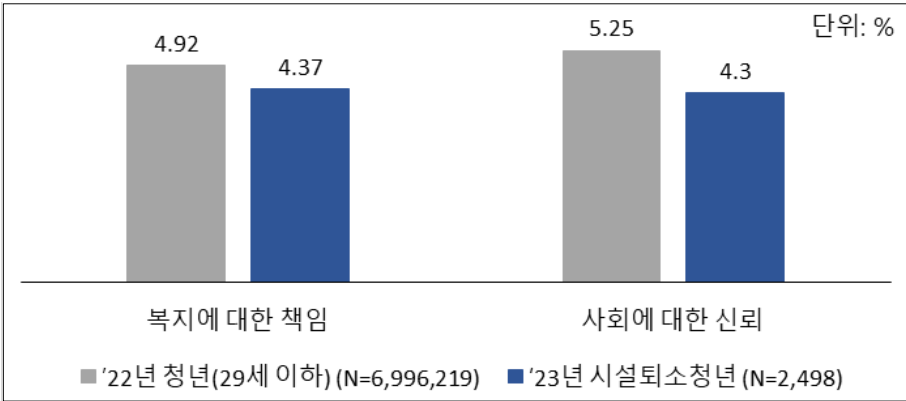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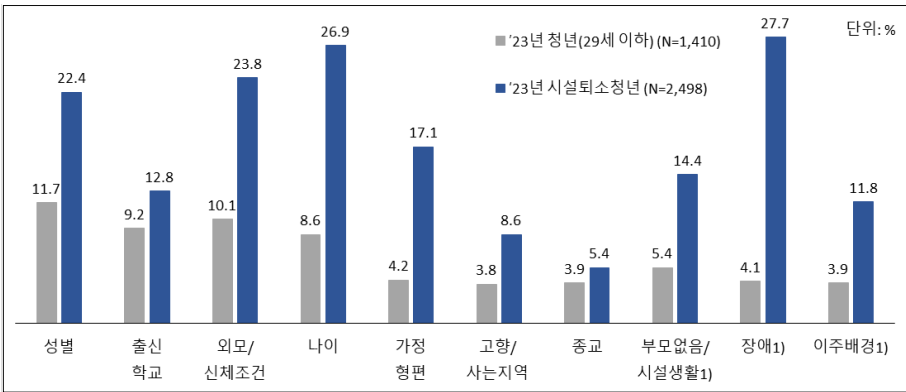


그림 IV-31. 복지 및 사회 신뢰에 대한 의견

③ 차별 경험 및 존중 정도

최근 1년간 주위사람들로부터 여러 이유로 차별 경험을 당한 적이 있는지 알아본 결과, 차별을 가장 많이 받은 이유는 장애, 나이, 외모·신체조건, 성별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IV-32). 표나 그림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시설퇴소청년들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남자(각각 16.5%, 20.2%, 24.1%)보다는 여자(각각 28%, 27%, 29.7%)에게서 성별이나 외모, 나이에 따른 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률은 높았다.

또한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를 보았을 때에는 경제수준이 하인 집단에서 성별, 출신학교,



* 주: 1) 해당자만 응답
 2) '23년 청년 자료의 결괏값은 2023년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조사(김기현 외, 2023)에 참여한 29세 이하 청년들의 응답에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그림 IV-32. 다양한 이유에 따른 차별 경험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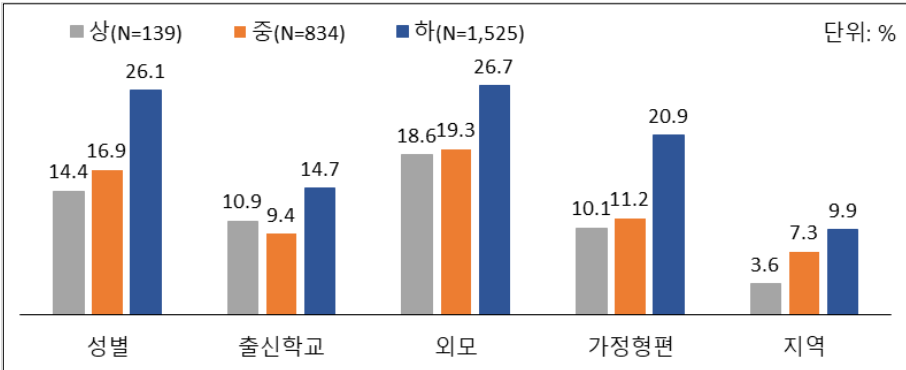


그림 IV-33. 시설퇴소청년들의 경제수준별 다양한 이유에 따른 차별 경험률

외모, 가정형편, 지역에 따른 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률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높았다(그림 IV-33). 결국 시설퇴소청년들은 다양한 이유로 차별을 경험하지만 여성이거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그 경험률이 증가한다는 것은 이들이 그만큼 차별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성을 지니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IV-54. 각 영역에서 자신의 인권을 존중받는 정도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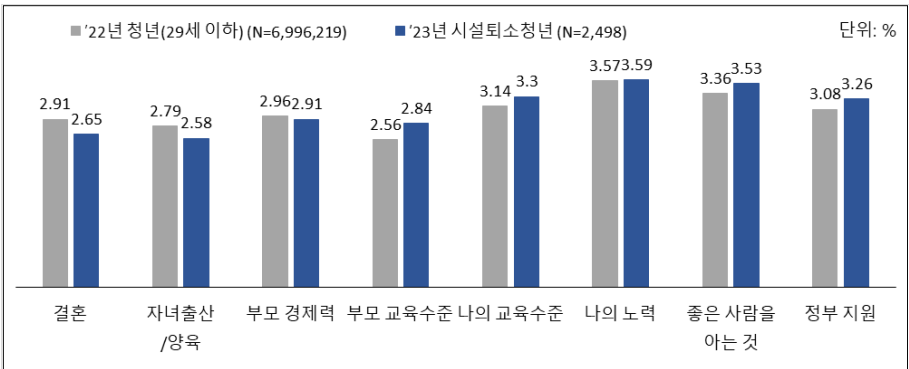
문항	구분	사례 수(명) ³⁾	①	②	③	④	t/F 검증 ¹⁾		
							평균	표준편차	유의도
가정	'23년 청년 ⁴⁾	1,410	0.3	2.2	57.7	39.8	3.37	0.542	237.528
	'23년 시설퇴소청년	1,359	5.4	6.4	27.7	14.9	2.96	0.888	***
학교	'23년 청년 ⁴⁾	851	0.2	5.4	69.8	24.5	3.19	0.524	10.739
	'23년 시설퇴소청년	1,231	1.7	4.3	30.0	13.2	3.11	0.695	**
직장	'23년 청년 ⁴⁾	981	0.6	8.5	69.2	21.7	3.12	0.557	7.886
	'23년 시설퇴소청년	1,568	2.1	7.2	38.2	15.3	3.06	0.698	**
나라 전체	'23년 청년 ⁴⁾	1,410	0.8	16.7	69.1	13.5	2.95	0.575	114.103
	'23년 시설퇴소청년	2,498	11.1	18.1	59.5	11.2	2.71	0.809	***
사이버 공간	'23년 청년 ⁴⁾	1,410	5.6	32.1	53.6	8.7	2.65	0.716	.038
	'23년 시설퇴소청년	2,498	14.2	18.1	56.5	11.2	2.65	0.858	

* 주: 1) * $p < .05$, ** $p < .01$, *** $p < .001$ (통계 검증 시 가중치 적용하지 않음.)
 2) ①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 ② 존중받지 못한다, ③ 존중 받는다, ④ 매우 존중 받는다
 3) 가정, 학교, 직장의 사례 수는 “☐ 해당 없음” 응답자를 제외한 수임.
 4) '23년 청년 자료의 결핍값은 2023년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조사(김기현 외, 2023)에 참여한 29세 이하 청년들의 응답에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시설퇴소청년들이 가정, 학교, 사회 등에서 자신의 인권을 어느 정도가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4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그렇다-매우 그렇다)알아 본 결과, 모든 항목에서 중앙값인 2.5점을 넘겨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표 IV-54). 다만 우리나라 전체로부터 (전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응답률 29.2%)이 가정·학교·직장에서 존중받지 못한다는 응답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은 우리사회 구성원으로서 이들의 위치를 짐작케 한다. 또한 이러한 응답을 '23년 29세 이하 일반청년들의 응답과 비교해 볼 때 시설퇴소청년들은 사이버 공간을 제외하고 가정, 학교, 직장, 나라에서 모두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점을 보임으로써 인권을 존중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낮은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차별 경험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단순히 개인적 인식의 차이를 넘어 실제로 인권 존중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시설퇴소청년들이 실제 사회에서 다양하게 부딪힐 수 있는 인권 문제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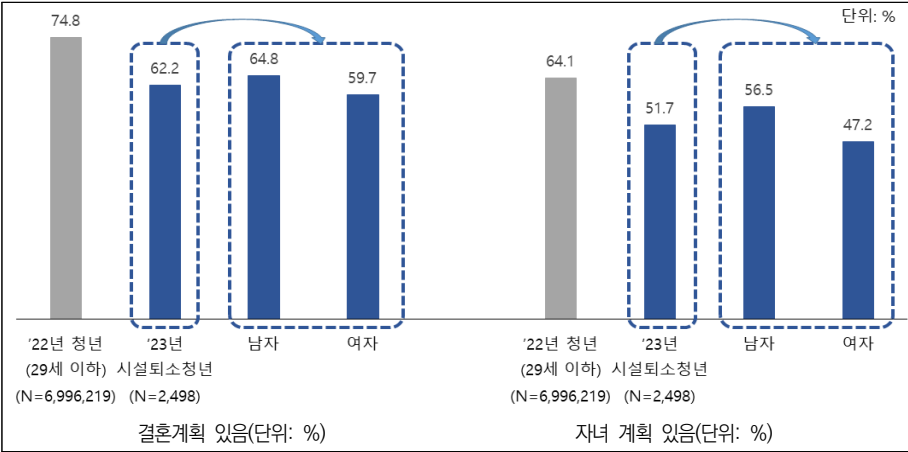
④ 미래계획

시설퇴소청년들에게 다양한 영역에 대해 자신이 희망하는 미래를 위해 해당 영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4점 척도(1점 전혀 중요하지 않다~4점 매우 중요하다)로 질문한 후 각 영역별 평균 점수를 그림 IV-34에 제시하였다. 시설퇴소청년들이 원하는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노력(3.59점)이었으며 좋은 사람들을 아는 것(3.53점), 나의 교육수준(3.30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응답을 '22년 일반청년들의 평균점수와 비교해보자면 결혼과 자녀 출산 및 양육에 대해서는 일반청년들만큼 중요하게 생각



* 주: '22년 청년 자료의 결맞음은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정세정 외, 2022) 원자료에 제시된 가중치율을 적용한 수치임.

그림 IV-34. 각 영역별 원하는 미래를 위해 중요한 정도



* 주: '22년 청년 자료의 결맞음은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정세정 외, 2022) 원자료에 제시된 가중치율 을 적용한 수치임.

그림 IV-35. 향후 결혼 및 자녀 계획

하지는 않은 반면 부모나 자신의 교육수준, 좋은 사람을 아는 것과 정부의 지원에 대해서는 일반청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향후 결혼 및 자녀를 가질 계획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시설퇴소청년 중 있다는 응답은 각각 62.2%와 51.7%로 나타났다(그림 IV-35). 이러한 결과는 '22년 일반청년들의 응답률과 비교해 볼 때 다소 낮은 응답률이며 이는 그만큼 시설퇴소청년들이 결혼이나 자녀출산 및 양육을 생각할 만큼 녹록한 삶이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여자 청년들의 응답률이 낮았는데(그림 IV-36) 이는 시설퇴소 여부를 떠나서 현재 우리나라 여자 청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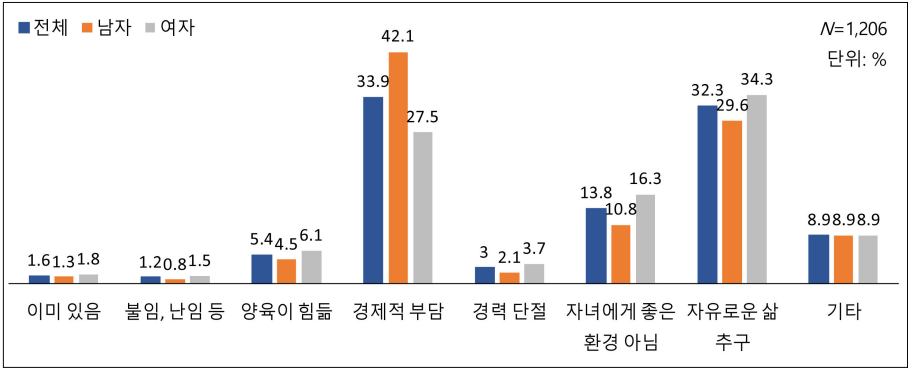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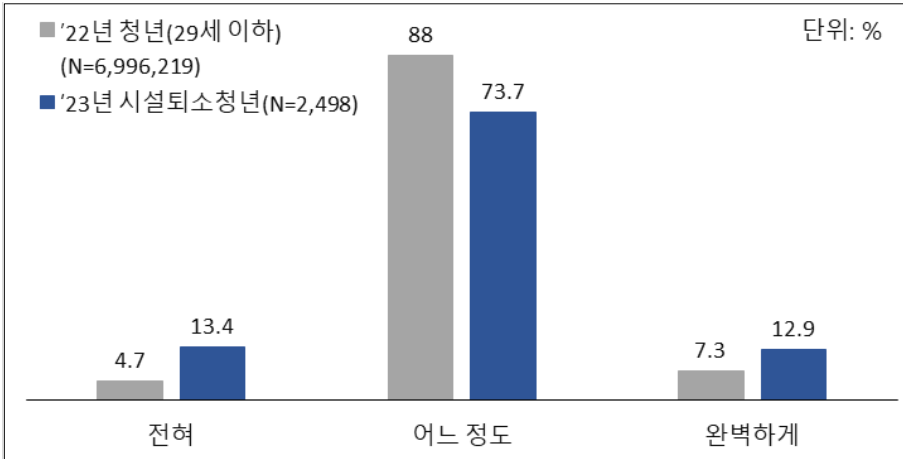


그림 IV-36. 자녀 계획이 없는 주된 이유



* 주: '22년 청년 자료의 결핍값은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정세정 외, 2022) 원자료에 제시된 가중치율 을 적용한 수치임.

그림 IV-37. 자신이 원하는 미래의 실현 가능성

의 결혼 및 자녀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의지가 그다지 크지 않은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자녀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이들을 대상으로 그 주된 이유를 살펴 본 결과는 이러한 가정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전체적으로 볼 때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이유이지만 여자 청년의 경우는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34.3%)라는 응답이 경제적 부담(27.5%)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바라는 미래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알아본 결과, 전혀 실현할 수 없다는 응답은 13.4%, 완벽하게 실현할 수 있다는 응답은 12.9%로 나타났다(그림 IV-37). 이러한 응답률을 '22년 일반청년들의 응답률과 비교해 보면 전혀 실현할 수 없다는 응답과 완벽하게 실현할 수 있다는 응답 모두에서 시설퇴소청년들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6) 소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설퇴소청년들의 삶은 예상했던 바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우선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들의 실태를 영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구 상황을 살펴보면 시설퇴소청년 10명 중 7명 이상은 혼자 살고 있었으며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6.4%에 불과하였다. 또한 가구 내 신체·정신적 문제나 노령 등으로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구성원을 주로 돌보고 있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2.6%였다.

둘째, 교육과 관련하여 시설퇴소청년들의 학력은 일반 청년에 비해 낮았다. 그 대표적인 예로 일반청년들의 대학 진학률(88%)에 비해 시설퇴소청년들의 진학률(아동시설 퇴소청년 73.2%, 청소년시설 46.5%, 소년보호시설 퇴소청년 32.5%)이 낮았다. 학력은 향후 양질의 일자리를 통한 경제적 자립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이들의 학력 신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시설퇴소청년 대부분은 일을 해 본 경험이 있었으며 한 번도 일한 경험이 없었던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6%에 불과하였다. 시설퇴소청년 중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절반 정도(49.5%)가 일을 하고 있었으며 그 중 11.7%는 2개 이상의 일자리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생의 경우도 학업과 근로를 병행해야 하는 형편임을 보여준다. 이는 시설퇴소청년의 대부분이 가정의 지원이 없어 일찍부터 생계전선에 뛰어들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들의 일자리는 열악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취업자 중 지난 일주일 간 2개 이상의 일자리에 종사했던 경우는 일반 청년에 비해 많았으며 특히 청소년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 퇴소청년들에게서, 그리고 경제적으로 하층인 경우에 그 응답률이 특히 높았다. 4대 보험 가입 대상인 상용근로자(정규직, 무기계약직, 계약 기간 1년 이상인 자)나 전일제 근로자 중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6.8%이며 야간·주말·초과 근무 경험자 10명 중 3~5명 정도는 관련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하는 등 시설퇴소청년들은 자신의 근로자로서의 권익을 충분히 인지하거나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도 보고되었다. 이에 고용주 및 근로청년들을 대상으로 해당 제도 안내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근로 환경 감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구직활동을 한 시설퇴소청년들이 구직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역시 임금과 근로시간으로 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경제적 자립의 기본 요소인 적절한 근로 시간과 그에 따라 적절한 임금이 보장되는 일자리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최근 일을 그만 둔 주된 이유로 계약기간 만료와 건강 문제, 열악한 근무조건이나 작업환경 등에 대한 응답은 불안정하고 열악한 근무환경은 시설퇴소청년들에게 근로의 저해 요인이 됨을 보여준다.

넷째는 경제 영역으로 시설퇴소청년들의 월 평균 소득은 일반청년의 월 평균소득 약 365만 원보다 훨씬 작은 약 170만 원이었으며 청소년시설 퇴소청년들의 평균 소득은 141.74만 원으로 아동양육시설 퇴소청년들의 월 평균소득인 179.36만 원 보다 훨씬 적었다. 이러한 차이는 부분적으로 국가, 지자체, 기관·시설 등으로부터의 지원금의 차이

에서 비롯된 것이다. 실제로 아동시설 퇴소청년의 51.5%가 현재 수급 중인데 반해 청소년 시설 퇴소청년은 34.7%, 소년보호시설 퇴소청년은 24.8%만이 수급 중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경제수준이 ‘하’라고 응답한 이들 중에서 현재 맞춤형 급여를 수급 중인 경우는 52.5%, 한 번도 수급한 적이 없다는 응답은 16.8%였다. 이는 다시 말하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청년 중 맞춤형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가 있음을 시사한다.

현재 채무가 있는 시설퇴소청년은 전체응답자의 36.4%이며 채무액 평균은 약 1,366만원이었다. 채무 발생 사유로는 주거비, 생활비, 기타, 학자금, 범죄 피해로 인한 채무, 가족의 빚을 넘겨받거나 내 명의의 빚 등의 순이었다. 채무가 있는 시설퇴소청년 중 금융채 무불이행자는 16.2%, 금융채무불이행자이면서도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가 65.7%로 나타났다. 이에 시설퇴소청년들을 대상으로 채무 관련 예방 및 지원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시설퇴소청년들의 주거 실태를 살펴보면 이들 중 최근 1년 간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았던 경험이 있는 경우가 약 30%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일터의 일부 공간이나, 고시원, 노숙 및 비숙박용 다중이용업소 등에서 한 달 이상 중복적으로 비적정 주거 상태에 놓여 있었던 청년들이 과반 이상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청년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의 불안정한 거주 상황을 경험하였음을 시사한다. 특히 청소년복지시설 및 소년보호시설 퇴소청년 거주 상황은 상대적으로 더 열악하였다.

현재 시설퇴소청년들의 주택 상황을 보면 자가의 비율이 현저히 낮고, 전세 및 월세, 무상거주 등의 비율이 높았다. 특히 아동복지시설 퇴소청년들은 전세가 절반 정도로 가장 많았으나 청소년시설 및 소년보호시설 퇴소청년의 경우 상대적으로 월세의 비율이 높았다. 이는 청소년시설 및 소년보호시설 퇴소청년들의 주거 상황이 일반청년은 물론 아동복지시설 퇴소청년들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임을 시사한다. 이와 같이 퇴소시설별 차이는 부분적으로 아동복지시설 퇴소청년들에 비해 청소년시설 및 소년보호시설 퇴소청년들이 LH 등의 지원을 받거나 자립수당 및 자립지원수당을 통해 주거비를 마련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냉·난방을 하지 못한 경험, 공과금이나 관리비, 월세, 주택담보대출 이자나 원리금 등의 연체 경험도 일반청년에 비해 7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시설퇴소청년들이 주거 자립을 하는데 있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청소년시설 및 소년보호시설 퇴소청년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고충을 겪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거와 관련한 정부의 지원제도를 이용한 경험은 특히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서 높았다. 이와 관련하여 비수도권 지역에서 민간임대나 주택마련지원, 주택금융 등의 주거 관련 지원제도의 활용 기회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정부지원 주택지원사업에 대해 이용경험이 있는 시설퇴소청년들의 대부분(83.1%)은 이러한 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 주택지원사업이 시설퇴소청년의 주거안정에 효과적인 제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정부지원 주택지원사업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시설퇴소청년들은 그 이유로 주택의 시설이나 질에 대한 불만족, 까다롭고 복잡한 지원절차를 언급한 경우가 많아 임대주택의 시설 개선 및 지원 절차의 간소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여섯째, 건강 및 심리·정서 영역을 살펴보면 시설퇴소청년들은 가족의 지원 없이 스스로 건강을 챙겨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경우가 많은 만큼 건강검진 수검이나 건강한 식습관 형성 및 영양 섭취,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등 신체적 건강을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시설퇴소청년들에게는 무엇보다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에 더욱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이들은 일반청년에 비해 우울이나 고립감, 자해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고 삶의 만족도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상당수가 정신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시설퇴소청년들이 호소하는 건강 문제 중 가장 많은 것이 정신과 질환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10명 중 7명은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할 때 받았다고 응답하여 이들의 필요에 따른 개입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전문가의 상담(진료)이 필요한 이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양질의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시설퇴소청년들은 남자보다는 여자, 아동시설보다는 청소년시설 퇴소자,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자신의 건강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같은 집단별 차이는 앞서 서술된, 여러 건강 상황에 대한 집단별 차이와 유사한 형태로 건강 관련 지원이 보다 필요한 집단이 어디인지를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참여 및 사회·미래인식 영역에서 시설퇴소청년들 중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성별, 출신학교, 외모, 가정형편, 지역 등 여러 영역에서 차별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우리나라 전체로부터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률이 보다 직접적인 대면이 가능한 가정·학교·직장에서 존중받지 못한다는 응답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우리사회 구성원으로서 이들의 위치를 짐작케 한다. 또한 시설퇴소청년들의 열악한 생활 실태는 향후

결혼이나 자녀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어렵게 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면 시설퇴소청년들의 생활 실태는 일반 청년들에 비해 전반적인 영역에서 상당히 열악한 측면이 많았으며 특히 청소년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 퇴소청년들은 아동복지시설 퇴소청년들에 비해 더 열악한 생활을 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후자의 경우 청소년기에 보다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퇴소 후 자립지원도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전자의 경우는 불안정한 청소년기를 보내고 퇴소 후 자립지원도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들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퇴소 시설에 따라 지원 내용에 차이를 두기보다는 시설퇴소청년 개인의 자립준비수준과 그에 따른 취약한 부분을 파악한 후 개별적인 맞춤형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자립지원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

2. 1차 년도 실태조사-행정데이터 가명정보 결합 분석

본 연구에서는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분절적 지원과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지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배제와 불평등 등의 정책소외 실태를 확인하고자 행정데이터 가명정보 결합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합 분석에 활용된 데이터는 2022년 실시한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생활 실태조사 1차 년도 데이터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이다. 이 절에서는 두 데이터 간 가명정보 결합을 실시하여 공적지원 수급의 정합성 및 공적지원 수혜 인지 여부 확인, 공적지원 수혜여부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준 및 삶에 질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였다.

1) 가명정보결합 개요

'20년 8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데이터 3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2:5). 가명정보는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의미한다(한국사회보장정보원, 연도 없음). 또한 가명처리는

표 IV-55. 개인정보 보호법 제 28조의2

개인정보 보호법 제3절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2020.2.4.본조 신설)

* 출처: 개인정보 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0%9C%EC%9D%B8%EC%A0%95%EB%B3%B4%EB%B3%B4%ED%98%B8%EB%B2%95>에서 2023년 9월 11일 검색.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체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2:7).

개인정보의 가명처리는 보통 ①가명처리 목적 설정 등 사전준비, ②위험성 검토, ③가명처리 수행, ④적정성 검토 및 추가 가명처리, ⑤가명정보의 안전한 관리단계 등 다섯 단계로 이루어진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2:10)(표 IV-56). 다만 가명정보는 가명처리를 수행한 당시의 목적과 처리환경(활용형태, 처리 장소, 처리 방법)에 따라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며(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2:10), 개인정보 식별로부터 안전한 가명정보 처리를 위해 가명처리, 적정성 검토, 가명처리가 완료된 가명정보 처리를 수행하는 업무담당자를 각각 분리하고 해당분야별로 접근권한을 분리하여 운영(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2:11)할 필요가 있다.

표 IV-56. 개인정보 가명처리 단계

단계	내용
1. 목적설정 사전준비	보호법에서 정한 가명정보처리 목적 중 가명정보 처리의 목적을 명확히 설정하고 가명정보 처리 목적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서류 작성
2. 처리 대상의 위험성 검토	사전준비단계에서 설정한 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항목을 개인정보파일에서 선정하고, 가명처리 대상 정보에 식별 가능한 요소가 있는지 검토하는 식별위험성과 가명정보 처리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처리환경의 식별 위험성 요소 검토
3. 가명처리 수행	식별위험성 검토 결과를 토대로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에 필요한 가명처리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 항목별 가명처리 계획 설정
4. 적정성 검토	앞선 세 단계의 가명처리에 대한 적정성을 최종 검토하는 단계. 최소 3명 이상으로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식별 가능성이 있는 정보 검토. 필요한 경우 재검토, 추가가명처리 등을 통해 재식별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 요구 가능
5. 안전한 관리	적정성 검토 이후 생성된 가명정보에 대한 재식별 금지 및 재식별 가능성 모니터링, 내부관리계획에 따른 가명정보의 안전한 관리, 가명정보 처리 관련 기록 작성 및 보관

*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2022).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이용안내서를 토대로 연구진 구성.

가명정보 이용기관과 가명정보 제공기관에서 위와 같은 다섯 단계를 통해 개인정보의 가명처리가 이루어지면 가명정보의 결합과 반출을 위한 사전작업이 완료되어 가명정보 결합이 가능한 단계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명정보 결합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한 가명정보를 하나의 가명정보로 만들기 위해 결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가명정보 결합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뢰받는 결합전문기관을 통해서만 결합을 수행해야 한다.⁴⁶⁾ 가명정보 결합은 ①결합신청자의 결합신청, ②결합키 관리기관의 결합키 연계정보 생성, ③결합전문기관의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④결합신청자의 반출정보 활용 및 관리 등의 단계에 따라 진행된다(표 IV-57, 표 IV-58).

표 IV-57.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단계

단계	내용
1. 결합신청 단계	- 개인정보 파일에서 가명정보 결합목적에 필요한 항목을 선정하고, 결합 가능정보를 탐색, 확인하기 위해 해당 정보의 보유기관 간의 협의 - 결합목적과 결합가능정보 탐색 완료 후, 가명정보 결합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항목을 선정, 반복결합여부 및 모의결합/결합을 확인/가명정보 추출 신청여부, 결합키 생성 항목 등을 결정 - 결합신청자 간 결합일정이나 전송방법 협의 등 사전 준비사항을 확인 후 결합전문기관에 결합 신청
2. 결합 및 추가 처리 단계	- 결합키 관리기관으로부터 결합키 생성에 이용되는 정보인 Salt값을 수신하여 결합키 생성, 결합을 확인/ 모의결합/ 가명정보 추출 등 완료 후 가명처리 대상 정보를 가명처리하여 결합대상정보를 전문기관에 전송 - 결합신청자가 결합키와 일련번호를 결합키 관리기관에 전송하면 결합키 관리기관은 결합키와 일련번호를 사용하여 결합키 연계정보를 생성하여 결합전문기관에 전송. 결합전문기관은 이러한 정보를 사용하여 가명처리정보 결합 - 이 과정에서 식별위험성을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시 추가 가명처리 수행
3. 반출 및 활용단계	- 결합전문기관에 결합정보 또는 분석 결과 등에 대한 반출을 신청하는 단계 - 결합신청자가 반출을 요청하면 결합전문기관은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반출심사위원회를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을 결합신청자에게 통지 - 반출이 승인되면 결합신청자는 결합정보를 분석한 결과물이나 결합정보 반출 가능
4. 안전한 관리 단계	- 반출정보가 재식별되지 않도록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하여 반출한 결합정보를 반출신청서 기재 목적에 따라 처리

*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2022).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이용안내서를 토대로 연구진 구성.

46) 가명정보결합 종합지원시스템 홈페이지. <https://link.privacy.go.kr/nadac/organ/introData.do>에서 2023년 9월 11일 검색.

표 IV-58.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절차

결합신청 전 사전 준비단계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진행 단계			
가명정보이용기관	가명정보 제공기관	결합신청	결합 및 추가 처리	반출신청 및 활용	안전한 관리
가명정보 결합 사전준비	가명처리 적합성 검토 및 식별 위험성 검토	결합신청서 제출	결합키 생성	반출신청서 제출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가명정보 결합목적 설정	가명정보 제공 결정	결합신청서 검토	가명처리 및 검토	반출심사위원 구성 등 반출 담당자 협의	목적 달성 후 관련정보 파기
결합가능정보 탐색	가명처리 대상 선정			반출심사 및 승인여부 결정	
결합목적에 따른 계획서 작성	식별위험성 검토		결합대상정보 송신	정보수신방식 등 반출담당자와 협의	
가명정보제공기관 사전 협의	가명정보 처리 방법 및 수준 정의		가명정보 결합	반출승인 결합정보 수신	
결합전문기관·결합키 관리기관 사전 협의	결합전문기관·결합키 관리기관 사전 협의		결합정보 확인 및 반출여부 결정		
가명정보 결합 신청서류 작성	가명정보 결합 신청서류 작성		추가 처리	결합정보 활용	
				결합전문기관 내 개인정보 파기	

*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연도 없음), p.4.

2)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 결합 추진 과정

본원에서 추진한 가명정보를 활용한 데이터 결합은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의 퇴소시설에 따른 분절적 지원으로 인한 지원 배제 및 불평등 및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는 지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원 누락 등 자립준비청년의 정책소외 실태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본원에서 2022년 수행한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생활 실태조사의 1차년도 데이터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행복e음,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간 가명정보 결합을 실시, 이를 토대로 공적지원 수급의 정합성 및 공적지원 수혜 인지 여부 확인, 공적지원 수혜여부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준 및 삶에 질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표 IV-59).

본 연구팀은 '23년 1월, 데이터결합 전문기관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의 업무협의를 시작으로 가명정보 결합을 위한 기초 작업을 수행하였다. 첫 업무협의를 데이터 결합의 의미와 방법 및 절차 등 데이터 결합에 관한 연구진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설명회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후 본격적인 절차 수행에 앞서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실태조사 데이터의 가명처리 활용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동년 3월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실태조사 데이터의 가명처리 활용에 대한 법률해석을 요청하여 과학적 연구 목적의 활용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표 IV-59. 조사대상 및 결합 대상 데이터

	1차 년도 ('22)	2차 년도 ('23)	3차 년도 ('24)
조사대상	약 2,500명	1차 년도 코호트 + 신규 표본(총 2,500명)	2차 년도 코호트 + 신규 표본(총 2,500명)
조사내용	- 성인의 의미 - 교육 및 훈련 - 경제와 고용 - 주거 - 건강 및 심리·정서 - 관계 및 참여 - 서비스 이용 및 요구	- 교육·훈련 - 고용 - 경제 - 주거 - 건강 및 심리·정서 - 관계 및 참여 - 사회인식·미래설계	기존문항 + 문화여가활동 + 자립역량
가명정보 활용 결합 데이터	-	1차 년도 데이터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차 년도 데이터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시스템 (+ 위기청소년통합관리시스템)

이에 따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업무담당자 간 상시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필요데이터의 범위를 설정하고 데이터 결합을 위한 변수를 추출하여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과학적 연구 목적의 연구계획서를 제출(3.31.)하였다. 동시에 가명정보 제도에 대한 교육, 컨설팅, 인프라, 결합지원 등의 온·오프라인 전주기 패키지에 대한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가명정보 활용 컨설팅 지원사업’⁴⁷⁾에 신청, 지원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후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포유시큐리티, 유피에스테이터 등 컨설팅기관으로부터 자문⁴⁸⁾을 받아 가명정보 내부관리계획을 수립(4.14.)하였다. 또한 가명정보 보호 및 결합을 위한 원내의 연구진 기초교육의 일환으로 ‘행정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명정보처리의 이해’⁴⁹⁾라는 주제의 콜로키움(4.19.)을 개최하였다.

이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추출가능 데이터를 확정함에 따라 5월 초부터 2개월 간 보건복지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3개 부처, 11개 부서)와 데이터 제공 협조를 위한 업무협의를 추진, 각 부처별 데이터 제공 승인을 받아 보건복지부(차세대보장

제13조. 가명정보의 처리

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II. 가명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은 가명정보의 이용기간 동안 보유하여 목적 달성 시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연구명	목적	처리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청년종합연구: 정책소와계층 청년 실태 및 정책개발	과학적 연구	거주지(시군구), 대학등록금마련(기타), 생활비 지원액, 제우액, 자산액, 평균소득(1개월), 거주기간(아동양육시설, 청소년시설, 기타시설, 노숙), 보증금	결합데이터 분석 완료시까지 (~2024.12.31.)

III.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받는 자(수탁자)	위탁업무	보유 및 이용기간
유피에스테이터	<청년종합연구> 가명정보 처리, 가명정보 적정성 검토 지원, 결합신청 및 반출 지원	2023년 12월까지

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3.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IV.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가명정보 처리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등)에 따라 처리하는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관리적 조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 기술적 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 관리, 파일 암호화, 접근통제시스템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
- 물리적 조치: 자료보관실(연구실) 등의 접근통제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방침. https://www.nypi.re.kr/modgedg/contentsView.do?ucont_id=CTX030018&menu_nix=g1XP6VLx에서 2023년 10월 23일 검색.

그림 IV-38. 홈페이지 개인정보 처리방침(가명정보의 처리) 게시 내역

47)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kisa.or.kr/1030301>에서 2023년 9월 8일 검색.

48) 한국인터넷진흥원 가명정보확산팀, 가명정보 활용 컨설팅 위탁기관인 유피에스테이터, 포유시큐리티의 컨설팅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가명정보처리 내부관리 계획 및 데이터에 관한 컨설팅을 수행하였다.

49) 본 콜로키움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가명정보 활용 컨설팅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개최하였으며, 본 콜로키움부터 가명정보결합 및 반출에 이르는 전 과정은 걸쳐 유피에스테이터의 컨설팅 하에 진행되었다.

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 복지정보운영과)에 데이터 추출을 요청하였다. 7월에 한국인터넷진흥원 컨설팅 위탁기관인 유피에스테이터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을 체결,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실태조사 데이터를 가명처리 하였다. 또한 정보주체인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들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본인 홈페이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가명정보 활용 및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내역을 게시 하였다, 또한 '23년 3월에 개정되어 9월에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3의2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자 및 위탁업무 내용을 추가로 게시하였다(그림 IV-38).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명처리를 수행한 본원 데이터의 가명처리 수준이 적정인지 검토하기 위하여 가명처리 적정성 평가 회의(7.27.)를 거쳤다. 그 결과 '적정' 평가를 받음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 가명정보결합 종합지원시스템(link.privacy.go.kr)에 가명정보결합 신청서를 제출하여 결합신청을 승인받았다(8.16). 이후 추가가명처리 및 결합키를 생성하여 결합키 연계정보 생성을 위한 CSV파일을 가명정보결합 종합지원시스템에 업로드(8.25.)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데이터와의 결합률을 검토한 결과 70.53%로 나타나 결합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데이터결합기관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데이터에 대한 가명처리 적정성 평가 회의를 실시(9.8.)하여 '적정' 평가를 받았고, 가명처리 결과에 대해 적절한 수준에서 가명처리가 이루어졌는지, 재식별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결합신청서 외부전문가 심사(9.13.)에서도 '적정'으로 평가받아 결합에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다. 이 과정에서 본 연구팀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주최한 제3회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아이디어 경진대회에 참여(8.16.)하여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 심사를 거쳐 우수상(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상)을 수상(9.15.)하였다.

이후 결합신청기관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결합전문기관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간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방화벽 해제 및 암호키 송수신, 파일 송수신 프로그램 설치 등의 작업을 진행한 후, 온라인 파일전송시스템을 통해 가명정보 결합을 위한 파일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송신하였다(9.18.)(그림 IV-39). 데이터 결합이 완료(9.19.)됨에 따라 반출 전 결합데이터를 검토하고 개인식별 가능성이 있는 변수에 대해 추가로 가명처리를 실시하였다(9.21).

최종적으로 반출신청서 및 가명정보 사후관리 이행확약서,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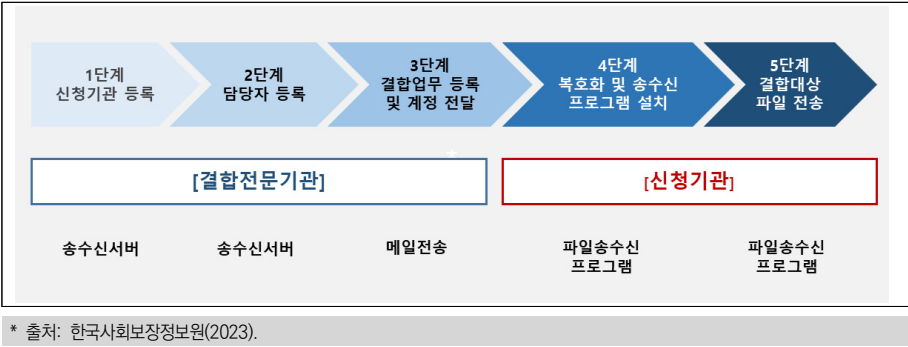


그림 IV-39. 파일송수신 업무절차

이행확약서, 보안서약서 등 반출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제출하였으며(9.25.), 반출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반출이 결정되었다(10.5). 반출심사 결과 반출이 승인됨에 따라 결합정보를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조치가 적용된 분석공간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내 가명정보결합분석센터 가명처리실에서 분석을 실시하였다.

3) 가명정보처리 자료 분석

(1) 활용데이터 및 변수

본 연구의 활용데이터는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가 보유한 사회보장정보 및 사회복지시설정보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보유한 시설폐소 자립준비청년 실태조사 1차 코호트 자료이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은 각종 사회보장 급여 및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과 이력에 관한 정보의 통합 관리, 지자체 복지업무 처리 지원 등을 위해 구축된 정보시스템이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은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표준화·투명화 및 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를 위해 구축된 통합업무관리시스템이다. 보건복지부에서 보유한 자료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자료 간 가명정보 결합은 결합전문기관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수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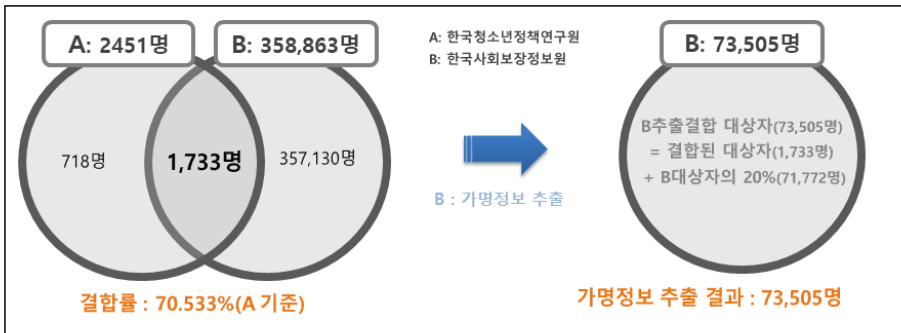
본 연구에 활용된 가명정보처리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본원의 시설폐소 자립준비청년 실태조사 데이터는 아동·청소년복지시설 및 소년보호시설 폐소 후 자립지원을 받고 있는 만 19세 이상 청년 데이터 총 2,457건이고, 총 칼럼 수는 86개였다. 보건복지부의 데이터

표 IV-60. 가명정보처리 데이터 특징

데이터 보유기관	구분	내용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데이터명	시설폐소 자립준비청년 실태조사 1차 코호트
	데이터 특징	(용량) 7.19MB (레코드수) 2,457건(명) (칼럼수) 86개
	데이터 생성방법	-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및 소년보호시설 폐소 후 자립자원을 받은 만 19세 이상 청년에 대한 자기기입식 조사
보건복지부 (한국사회 보장정보원)	데이터명	사회복지정보시스템 ('22.6월 말 기준)
	데이터 특징	(용량) 16.9MB (레코드수) 73,505건(명) (칼럼수) 119개
	데이터 생성방법	- 복지부(교육부, 국토부) 담당사업과의 자료활용 승인을 득하여 사회복지정보시스템 중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수급대상자의 일반정보, 소득정보 등에 대한 사회보장정보 추출 - 연구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선정하여 가명처리 수행
	데이터명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22.6월 말 기준)
	데이터 특징	(용량) 1.01MB (레코드수) 11,499건(12,789명) (칼럼수) 9개
	데이터 생성방법	- 복지부 담당사업과의 자료활용승인을 득하여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내 퇴소청년 관련 정보를 추출 - 연구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선정하여 가명처리 수행

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회보장서비스 수급 대상자 73,505건, 119개 칼럼에 해당하는 데이터와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데이터 11,499건, 9개 칼럼이 가명처리에 활용되었다(표 IV-60).

가명처리 대상의 모집단은 결합키 생성을 통해 동일 결합키 대상자를 제거한 한국청소년



*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2023).

그림 IV-40. 가명처리 대상 정보

년정책연구원 시설폐소 자립준비청년 실태조사 응답자 2,451명(중복제거 전 2,457명)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데이터 358,863명(중복제거 전 425,618명)이다. 결합 후 추출결합을 위한 가명정보 추출 후 가명처리 대상 모집단을 확정하였다(그림 IV-40).

결합에 활용된 데이터별 활용변수는 다음과 같다. 결합데이터 간 공통변수인 이름, 생년월, 성별은 가명처리하여 결합기로 활용하였으며, 시설폐소 자립준비청년 실태조사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교육 및 훈련, 경제와 고용, 주거, 건강 및 심리·정서, 관계 및 참여, 서비스 이용 및 요구 등 자립준비청년의 생활 실태, 자립과정, 지원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조사된 7개 영역의 변수가 결합에 활용되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는 생계, 의료, 교육, 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 자활사업, 차상위계층, 긴급복지지원 등의 수급 여부, 장애인 등록여부, 자산형성지원계좌 가입여부, 국가장학금 및 공공임대주택 지원 여부 등을 활용하였다.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에서는 시설보호정보, 자립준비 및 지원 현황, 자립정착금·자립수당 수혜여부,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여부 등을 변수로 활용하였다(표 IV-61).

가명처리 과정에서 데이터의 식별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석목적에 필요하지 않은 거주지(시군구 단위), 대학등록금 마련 방법(기타), 장학재단명, 평가일 등의 변수를 삭제하였다. 또한 소득관련 정보, 시설거주기간 등과 같이 개인 식별 위험성이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상·하단 코딩, 라운딩 등의 방식으로 가명처리하거나,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표 IV-61. 결합활용변수 개요

구분		내용	비고
가명처리대상항목		이름, 생년월, 성별	결합키
결합 데이터	시설폐소 자립준비청년 실태조사	- 일반사항, 교육 및 훈련, 경제와 고용, 주거, 건강 및 심리·정서, 관계 및 참여, 서비스 이용 및 요구 등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과정과 지원 효과 분석을 위한 7개 영역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 교육, 주거급여), - 자활사업, 차상위계층, 긴급복지지원 - 장애인여부 - 자산형성지원계좌 - 국가장학금, 공공임대주택 지원 등	보건복지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 아동복지시설 정보(시설보호정보, 자립준비 및 자립지원 현황 등) -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아동발달지원계좌 등	보건복지부

범주화하는 방법으로 가명처리를 하였다. 이후 추가가명처리 과정에서 결합된 데이터 중 시설폐소 자립준비청년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사회보장정보, 사회복지시설 정보) 내 데이터 중 중복 데이터를 삭제하고, 식별가능성이 있는 변수를 삭제, 대체, 상단코딩 등의 방식으로 처리하여 총 206개의 변수, 1,733명의 자료를 최종 결합하였다.

(2) 분석 결과

시설폐소 자립준비청년 실태조사와 행정데이터(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간 가명정보 결합을 통해 공적지원 수급의 정합성 및 공적지원 수혜 인지도 여부 확인, 공적지원 수혜여부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준 및 삶에 질에 미치는 영향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① 사회보장제도 이용 여부에 대한 정합성 분석

시설폐소 자립준비청년 실태조사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데이터 간 결합을 통해 취합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여부 및 다양한 국가지원제도의 이용여부를 살펴보았다. 다만 시설폐소 자립준비청년 실태조사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여부와 수급기간 등을 정밀하게 질문하지 않아 정합성을 세밀하게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다양한 지원제도 이용에 대한 조사대상자들의 인지 정도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는데 의의를 두었다.

가. 생계급여⁵⁰⁾

시설폐소 자립준비청년 실태조사에서 공적이전소득 여부와 생계급여 수급여부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공적이전소득은 국가에서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등을 포함하므로 생계급여와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는 없으나 시설폐소 자립준비청년들이 주로 수령하는 공적이전소득 중에는 생계급여가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수급경험을 단순 비교해보았다. 수급경험 여부가 일치한 경우는 약 62.8%(둘 다 수급경험 있음 24.4%+둘 다 수급경험 없음 38.4%)였다. 생계급여 수급경험이 없어도 공적이전소득을 수급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29.5%)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생계급여를 수급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적이전소득을 수급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50) 시설폐소 자립준비청년 생활 실태조사(1차년도)에서는 생계급여 수급여부를 별도로 질문하지 않고 정부/지방자치단체/기관/종교단체 등에서 지원받는 생활비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생계급여 수급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만 공적이전소득 여부에 대한 인지 정도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단순 비교하였음을 밝힌다.

표 IV-62. 생계급여 수급여부의 정합성

(단위: 명, %)

구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수급경험 없음	수급경험 있음	전체
실태조사	수급경험 없음	사례 수	940	191	1,131
		비율	38.4	7.8	46.1
	수급경험 있음	사례 수	722	598	1,320
		비율	29.5	24.4	53.9
	전체	사례 수	1,662	789	2,451
		비율	67.8	32.2	100.0

경우는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계급여 수급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비율은 7.8%였다(표 IV-62).

나. 주거급여

주거급여 수급여부 확인 결과, 전체 대상의 71.7%(둘 다 수급경험 있음 18.3%+둘 다 수급경험 없음 53.4%)는 수급경험여부에 대해 실태조사와 행정데이터 간 일치도를 보였다. 그러나 실제 수급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15.2%, 수급경험이 없음에도 수급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13.1%로 전체 대상의 약 28%는 주거급여 수급여부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63).

표 IV-63. 주거급여 수급여부의 정합성

(단위: 명, %)

구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수급경험 없음	수급경험 있음	전체
실태조사	수급경험 없음	사례 수	1,310	372	1,682
		비율	53.4	15.2	68.6
	수급경험 있음	사례 수	320	449	769
		비율	13.1	18.3	31.4
	전체	사례 수	1,630	821	2,451
		비율	66.5	33.5	100.0

표 IV-64. 의료급여 수급여부의 정합성

(단위: 명, %)

구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경험 없음	자격 중지	수급 중	전체
실태조사	건강보험 (직장, 지역)	사례 수	731	15	43	789
		비율	29.8	0.6	1.8	32.2
	의료급여	사례 수	148	1	365	514
		비율	6.0	0.0	14.9	21.0
	모름	사례 수	675	15	350	1,040
		비율	27.5	0.6	14.3	42.4
	건강보험, 의료 급여 미이용	사례 수	62	0	46	108
		비율	2.5	0.0	1.9	4.4
	전체	사례 수	1,616	31	804	2,451
		비율	65.9	1.3	32.8	100.0

다. 의료급여

의료급여의 경우 실태조사에서 수급경험이 아닌 이용 중인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종류를 조사하였기 때문에 조사시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의료급여 수급상태를 확인하여 분석하였다. 사회보장시스템 내에서 현재 의료급여를 수급 중인 청년들은 전체 대상의 32.8%였으며, 행정데이터와 실태조사 데이터에서 현재 의료급여 수급 중인 상황이 일치한 비율은 전체 대상자의 14.9%에 불과하였다. 의료급여 자격 변동으로 기존에는 수급 중이었으나 현재 자격이 중지된 경우를 감안하더라도 본인의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수급 상태를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가 42.4%에 달하였으며, 실제 의료급여를 수급 중이면서 수급여부를 알지 못하는 경우는 14.3%,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를 이용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도 1.9% 등으로 나타났다. 즉 다른 기초생활보장급여들에 비해 의료급여의 수급여부에 대한 인지도가 현저히 낮은 것을 볼 수 있다(표 IV-64).

라. 디딤씨앗통장 이용 여부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초기비용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아동자산형성사업인 디딤씨앗통장 이용여부를 확인한 결과는 표 IV-65와 같다. 전체의 53.1%(둘 다 이용경험 있음 35.2%+둘 다 이용경험 없음)는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반면, 14.8%는 이용 여부를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이용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용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29.1%에 달하고, 이용경험이 있음에도 이용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2.9%로

표 IV-65. 디딤씨앗통장 이용여부의 정합성

(단위: 명, %)

구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경험 없음	이용경험 있음	전체
실태조사	이용경험 없음	사례 수	437	70	507
		비율	17.9	2.9	20.7
	이용경험 있음	사례 수	717	860	1,577
		비율	29.3	35.2	64.5
	모르겠음	사례 수	207	154	361
		비율	8.5	6.3	14.8
	전체	사례 수	1,361	1,084	2,445
		비율	55.7	44.3	100.0

나타나는 등 전체의 32.0%는 자신의 이용경험에 대해 잘못 인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마. 국가장학금 수혜여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경제적 수준에 따라 국가에서 차등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의 수혜경험 일치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IV-66과 같다. 국가장학금 수혜여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내에 자료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으나 '22년 기준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내 국가장학금 수혜여부 자료를 추출한 결과 입력된 자료가 소수에 그쳐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내에 입력된 아동복지시설 퇴소청년 자료로 분석하였다. 행정자료와 실태자료 간 수혜 여부가 일치하는 경우는 69.6%(경험없음 34.3%+경험있음 35.5%)였으나 행정자료 상에 수혜경험이 있으나 경험이 없다고 인지하고 있는 경우는 2.9%, 실제

표 IV-66. 국가장학금 수혜여부의 정합성

(단위: 명, %)

구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수혜경험 없음	수혜경험 있음	전체
실태조사	수혜경험 없음	사례 수	407	34	441
		비율	34.3	2.9	37.2
	수혜경험 있음	사례 수	325	421	746
		비율	27.4	35.5	62.8
	전체	사례 수	732	455	1,187
		비율	61.7	38.3	100.0

수혜경험이 없음에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27.4%로 약 30%에 달하는 조사대상 청년들이 국가장학금 수혜여부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장학금의 수혜경험이 없음에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지자체나 타 기관 등에서 받은 지원을 국가장학금으로 오인하고 있는 경우인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바. 장애여부

장애등록 여부에 관하여 분석한 결과 사회보장시스템 내 장애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은 전체 조사대상의 4.1%에 해당하는 100명이었다. 이 중 장애등록여부 행정자료와 실태조사 결과가 일치하는 경우는 전체 조사대상 중 97.3%(장애없음 92.2%+장애등록 3.1%+장애미등록 2.0%)로 행정자료와 실태조사의 자료의 정합성이 매우 높았다.

그러나 기존에 장애등록경험이 있으나 현재 자격을 상실하여 장애등록여부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0.2%를 제외하더라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상에 장애등록이 되어 있음에도 본인에게 장애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0.9%, 장애가 있어서 장애 등록을 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으나 행정자료 상에는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1.5%로 조사대상의 약 2.5%는 자신의 장애등록여부를 잘못 인지하고 있었다(표 IV-67).

사. 자립수당 수급여부

자립수당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내에 자립수당 수급대상으로 입력된 청년 1,159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립수당 수혜대상 청년들 중 92% 이상은 자신이 자립수당을 수급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7.8%에 해당하는 청년들은 본인이 자립수당을

표 IV-67. 장애등록여부의 정합성

(단위: 명, %)

구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장애없음	장애수급 자격상실	장애수급	전체
실태조사	장애 없음	사례 수	2,261	0	23	2,284
		비율	92.2	0.0	0.9	93.2
	장애 있고 장애등록함	사례 수	36	6	77	119
		비율	1.5	0.2	3.1	4.9
	장애 있으나 등록 안 함	사례 수	48	0	0	48
		비율	2.0	0.0	0.0	2.0
	전체	사례 수	2,345	6	100	2,451
		비율	95.7	0.2	4.1	100.0

표 IV-68. 자립수당 수급여부

(단위: 명, %)

구분			정보시스템	구분			정보시스템
			수급				수급
실태조사	비수급	사례 수	90	자립지원 담당자	비수급, 모름	사례 수	187
		비율	7.8			비율	16.1
	수급	사례 수	1,069		수급	사례 수	972
		비율	92.2			비율	83.9
	전체	사례 수	1,159		전체	사례 수	1,159
		비율	100.0			비율	100.0

받고 있음에도 자립수당을 받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이들을 관리하고 있는 자립지원 담당자들이 청년들의 수급여부를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한 결과, 약 84%는 수급여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지만 16% 가량의 담당자들은 수급여부를 모르거나 비수급으로 인지하고 있었다(표 IV-68).

②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기준에 따른 퇴소시설별 수급여부 및 심리·정서 상태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들이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적절하게 이용하고 있는지,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경험에 따라 심리·정서 상태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태조사에서 1인 가구에 해당하는 청년의 1개월간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2022년 급여종류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을 추출하여 퇴소시설별 수급여부 및 수급경험에 따른 심리·정서 상태 차이를 분석하였다⁵¹⁾.

가.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기준에 따른 퇴소시설별 수급여부

퇴소시설별로 살펴보면 아동복지시설 퇴소청년의 경우 생계급여 65.7%, 의료급여 65.5%, 주거급여 63.7% 등 약 60% 이상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보호시설 퇴소청년의 이용경험률은 생계급여 46.2%, 의료급여 40.0%, 주거급여 27.8% 등으로,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의 경우는 생계급여 24.7%,

51) 조사대상 2,451명 중 기초생활보장제도 이용을 위한 소득인정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가구 내 소득 및 자산, 채무 등의 경제상황을 모두 고려해야 하지만 실태조사 자료에 포함된 자산, 채무 등을 통해 소득인정액을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1개월 간의 평균소득이 급여종류별 1인 가구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 1인 가구 자립준비청년을 추출하여 단순 비교하였다(2022년 기준 1인 가구 중위소득 100% 194만 4812원). 교육급여는 초·중·고등학교에 본인 혹은 자녀가 재학 중인 경우 수급이 가능한 제도로 전체 대상자 중 수혜경험이 있는 경우가 10명 미만으로 나타나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22년 기준 생계급여 선정기준(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30%)은 58만 3444원, 주거급여(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46%)는 89만 4614원, 의료급여(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40%)는 77만 7925원이었다.

표 IV-69.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기준에 따른 퇴소시설별 수급여부

(단위: 명, %)

구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경험 없음	경험 있음	전체	경험 없음	경험 있음	전체	경험 없음	경험 있음	전체
아동복지시설	사례 수	79	151	230	99	188	287	116	204	320
	시설별 비율	34.3	65.7	100.0	34.5	65.5	100.0	36.3	63.7	100.0
청소년복지시설	사례 수	55	18	73	67	26	93	72	36	108
	시설별 비율	75.3	24.7	100.0	72.0	28.0	100.0	66.7	33.3	100.0
소년보호시설	사례 수	7	6	13	9	6	15	13	5	18
	시설별 비율	53.8	46.2	100.0	60.0	40.0	100.0	72.2	27.8	100.0
전체	사례 수	141	175	316	175	220	395	201	245	446
	시설별 비율	44.6	55.4	100.0	44.3	55.7	100.0	45.1	54.9	100.0

의료급여 28.0%, 주거급여 33.3% 등이었다. 이는 두 시설의 퇴소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이용률이 아동복지시설 퇴소청년에 비해 낮음을 보여준다(표 IV-69).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수급은 가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대상청년의 소득뿐만 아니라 원가족의 경제적 상태에 따라 수급여부가 결정되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시설퇴소 시 자립준비청년의 세대분리 및 수급자격 및 수급자격 취득여부 등에 대해 확인하고 가능한 지원방법을 안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나.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경험에 따른 심리·정서 상태 차이

1인 가구 생계급여 수급기준에 해당되는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의 생계급여 수급경험에 따른 심리·정서 상태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는 표 IV-70과 같다.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의 심리·정서 상태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차이가 없었다. 다만 생계급여 수급경험이 있는 청년들의 경우 수급경험이 없는 청년들에 비해 자신의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 의료급여 수급기준에 해당되는 청년의 의료급여 수급경험에 따른 심리·정서 상태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는 표 IV-71과 같다. 의료급여 수급 경험에 있는 청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년들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주관적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인식하였고 삶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불안과 고립감이 낮았다. 1인 가구 주거급여 수급기준에 해당되는 청년의 주거급여 수급경험에 따른 심리·정서 상태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표 IV-70. 생계급여 수급경험에 따른 심리·정서 상태 차이

(단위: 명, 점)

구분		사례 수(명)	t/F 검증 ¹⁾		
			평균(점)	표준편차	유의도
건강상태	경험 없음	141	2.99	.918	-1.542*
	경험 있음	175	3.15	1.002	
우울	경험 없음	141	6.46	6.569	1.443
	경험 있음	175	5.42	6.247	
불안	경험 없음	141	3.97	5.464	1.709
	경험 있음	175	2.97	4.925	
스트레스	경험 없음	141	6.38	2.291	2.067
	경험 있음	175	5.82	2.464	
삶의 만족도: 전반적인 인생	경험 없음	141	4.97	2.586	-.877
	경험 있음	175	5.22	2.380	
고립감	경험 없음	141	8.50	4.277	1.758
	경험 있음	175	7.69	3.852	
자립성취도	경험 없음	141	14.62	3.463	-.031
	경험 있음	175	14.63	3.058	

* 주: * $p < .05$, ** $p < .01$, *** $p < .001$

표 IV-71. 의료급여 수급경험에 따른 심리·정서 상태 차이

(단위: 명, 점)

구분		사례 수(명)	t/F 검증 ¹⁾		
			평균(점)	표준편차	유의도
건강상태	경험 없음	175	2.97	.867	-2.138**
	경험 있음	220	3.18	1.012	
우울	경험 없음	175	6.59	6.965	1.588
	경험 있음	220	5.54	6.200	
불안	경험 없음	175	4.03	5.586	1.686*
	경험 있음	220	3.14	4.920	
스트레스	경험 없음	175	6.39	2.225	2.323
	경험 있음	220	5.83	2.472	
삶의 만족도: 전반적인 인생	경험 없음	175	4.77	2.614	-1.471*
	경험 있음	220	5.14	2.311	
고립감	경험 없음	175	8.63	4.439	1.856*
	경험 있음	220	7.86	3.856	
자립성취도	경험 없음	175	14.51	3.287	-.882
	경험 있음	220	14.79	3.057	

* 주: * $p < .05$, ** $p < .01$, *** $p < .001$

표 IV-72. 주거급여 수급경험에 따른 심리·정서 상태 차이

(단위: 명, 점)

구분	사례 수(명)	t/F 검증 ¹⁾	
		평균(점)	표준편차
건강상태	경험 없음	201	3.03
	경험 있음	245	3.16
우울	경험 없음	201	6.20
	경험 있음	245	5.77
불안	경험 없음	201	3.70
	경험 있음	245	3.28
스트레스	경험 없음	201	6.14
	경험 있음	245	5.91
삶의 만족도: 전반적인 인생	경험 없음	201	4.93
	경험 있음	245	5.09
고립감	경험 없음	201	8.46
	경험 있음	245	7.98
자립성취도	경험 없음	201	14.67
	경험 있음	245	14.79

* 주: * $p < .05$, ** $p < .01$, *** $p < .001$

수급경험이 있는 청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년들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주관적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인식하였고 불안 정도가 낮았다(표 IV-72).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급여가 가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원가족의 경제적 상태에 따라 수급여부가 결정된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기준에 해당하는 저소득 시설퇴소청년들에게서 수급여부에 따라 심리·정서 상태에 차이를 보여줌으로써 시설퇴소청년들이 시설 퇴소 후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필수적인 사회보장제도를 제공하는 것은 이들의 심리·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기준에 따른 퇴소시설별 수급여부(표 IV-69)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득수준이 유사한 경우라도 퇴소시설의 유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수급여부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가구 기준으로 수급여부가 결정되는 제한점 외에도 기초생활보장급여를 포함한 다양한 지원제도가 개인(가구)의 신청을 토대로 하므로 제도에 대한 정보나 신청방법 등을 잘 알지 못하여 신청을 못하는 경우에는 수급을 받기 어렵다는 한계를 보여준다. 이에 국가나 지자체, 기타 다양한 기관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지원제도에 보다 용이하게 접근하

표 IV-73. 자립정착금 수급여부에 따른 심리·정서 상태 차이

(단위: 명, 점)

구분	사례 수(명)	t/F 검증 ¹⁾		유의도
		평균(점)	표준편차	
건강상태	미수급	1,335	3.03	-5.992**
	수급	1,116	3.26	
우울	미수급	1,335	7.05	8.235***
	수급	1,116	4.97	
불안	미수급	1,335	4.53	7.981***
	수급	1,116	2.81	
스트레스	미수급	1,335	6.43	7.902
	수급	1,116	5.70	
삶의 만족도: 전반적인 인생	미수급	1,335	4.75	-5.021*
	수급	1,116	5.27	
고립감	미수급	1,335	8.91	6.637***
	수급	1,116	7.75	
자립성취도	미수급	1,335	14.72	-5.731*
	수급	1,116	15.46	

* 주: * $p < .05$, ** $p < .01$, *** $p < .001$

고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디딤씨앗통장 이용 여부에 따른 심리·정서 상태의 차이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들이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디딤씨앗통장 등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심리·정서 상태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자립정착금을 받은 청년들은 그렇지 못한 청년들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주관적인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울과 불안, 고립감은 낮고 자립성취도는 높았다(표 IV-73).

자립수당의 수급여부에 따른 심리·정서 상태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IV-74와 같다, 자립수당을 받은 청년들은 그렇지 못한 청년들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주관적 건강상태 및 삶의 만족도가 높고 우울, 불안, 고립감은 낮았다.

디딤씨앗통장 이용여부에 따른 심리정서상태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디딤씨앗통장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청년들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경험이 없는 청년들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더 높았다. 이들은 또한 우울과 불안, 고립감은 낮고 전반적인 인생만족도는 높았다(표 IV-75).

표 IV-74. 자립수당 수급여부에 따른 심리·정서 상태 차이

(단위: 명, 점)

구분		사례 수(명)	t/F 검증 ¹⁾		
			평균(점)	표준편차	유의도
건강상태	미수급	1,292	3.04	.904	-5.494***
	수급	1,159	3.24	.939	
우울	미수급	1,292	7.06	6.802	8.017***
	수급	1,159	5.04	5.488	
불안	미수급	1,292	4.50	5.873	7.417***
	수급	1,159	2.90	4.647	
스트레스	미수급	1,292	6.37	2.260	6.150
	수급	1,159	5.80	2.324	
삶의 만족도: 전반적인 인생	미수급	1,292	4.72	2.656	-5.450**
	수급	1,159	5.28	2.429	
고립감	미수급	1,292	8.89	4.596	6.232***
	수급	1,159	7.81	3.950	
자립성취도	미수급	1,292	14.90	3.245	-2.517
	수급	1,159	15.23	3.223	

* 주: * $p < .05$, ** $p < .01$, *** $p < .001$

표 IV-75. 디딤씨앗통장 이용여부에 따른 심리·정서 상태 차이

(단위: 명, 점)

구분		사례 수(명)	t/F 검증 ¹⁾		
			평균(점)	표준편차	유의도
건강상태	미이용	1,361	3.07	.922	-3.929**
	이용	1,084	3.22	.926	
우울	미이용	1,361	6.74	6.644	5.704***
	이용	1,084	5.29	5.708	
불안	미이용	1,361	4.34	5.802	6.172***
	이용	1,084	3.00	4.694	
스트레스	미이용	1,361	6.33	2.256	5.715
	이용	1,084	5.80	2.332	
삶의 만족도: 전반적인 인생	미이용	1,361	4.79	2.640	-4.256**
	이용	1,084	5.23	2.448	
고립감	미이용	1,361	8.76	4.534	4.811***
	이용	1,084	7.91	4.025	
자립성취도	미이용	1,361	15.00	3.206	-1.057
	이용	1,084	15.13	3.267	

* 주: * $p < .05$, ** $p < .01$, *** $p < .001$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디딤씨앗통장 등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에게 제공되고 있는 경제적 지원 및 자산형성지원제도를 이용한 청년들은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한 청년들에 비해 긍정적인 건강 및 심리·정서 상태 놓여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주로 아동복지시설 및 일부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들에게 범위가 국한되어 있어 유사한 상황에 놓인 타 시설 퇴소청년들은 이러한 지원제도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들의 건강한 자립을 위해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의 지급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시기부터 자산형성을 위해 노력해보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디딤씨앗통장 가입대상 범위를 확대하거나 시설거주 아동·청소년·청년들의 특성에 부합하는 자산형성지원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④ 자립수당 연차 및 보호종료 유형에 따른 심리·정서 상태의 차이⁵²⁾

자립수당 수급연차에 따라 심리·정서 상태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V-76). 자립수당연차가 높아짐에 따라 대체로 우울, 스트레스, 고립감의 정도가 높아지고 전반적인 인생에 대한 만족도는 낮아졌다. 특히 우울은 자립수당 수급 1년 미만의 청년들에 비해 3년 이상의 청년들에게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자립수당을 2년 이상 수급한 청년들의 경우는 1년 미만인 청년들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전반적인 인생에 대한 만족도는 낮고 고립감은 높았다. 즉 자립 초반에 비해 연차가 높아질수록 심리·정서적인 어려움이 심화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립 이후 2~3년차에는 심리·정서적인 개입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52) 자립수당은 아동복지시설 및 청소년쉼터 퇴소청년들에게 지원되고 있으나 본 분석에서 사용된 자립수당 자격 데이터는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청년들에 한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자료가 입력되어 있고 보호종료유형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포함된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아동복지시설 퇴소청년의 자료만으로 분석하였다.

표 IV-76. 자립수당연차에 따른 심리·정서 상태 차이(미수급 제외)

(단위: 명, 점)

구분		사례 수(명)	F 검증 ¹⁾		
			평균(점)	표준편차	F
우울	1년 미만 ^a	255	4.15	4.898	3.133* d)a
	1년 이상~2년 이하 ^b	323	5.13	5.412	
	2년 이상~3년 이하 ^c	281	5.28	5.478	
	3년 이상 ^d	300	5.49	5.972	
	전체	1,159	5.04	5.488	
스트레스	1년 미만 ^a	255	5.43	2.366	3.015*
	1년 이상~2년 이하 ^b	323	5.81	2.269	
	2년 이상~3년 이하 ^c	281	5.96	2.413	
	3년 이상 ^d	300	5.94	2.235	
	전체	1,159	5.80	2.324	
삶의 만족도: 전반적인 인생	1년 미만 ^a	255	5.81	2.349	6.275*** a)c,d
	1년 이상~2년 이하 ^b	323	5.32	2.395	
	2년 이상~3년 이하 ^c	281	5.07	2.534	
	3년 이상 ^d	300	4.99	2.368	
	전체	1,159	5.28	2.429	
고립감	1년 미만 ^a	255	7.13	3.406	4.012** c,d)a
	1년 이상~2년 이하 ^b	323	7.75	3.723	
	2년 이상~3년 이하 ^c	281	8.21	4.415	
	3년 이상 ^d	300	8.07	4.094	
	전체	1,159	7.81	3.950	
자립성취도 (총점)	1년 미만 ^a	255	14.97	2.937	1.282
	1년 이상~2년 이하 ^b	323	15.19	3.452	
	2년 이상~3년 이하 ^c	281	15.22	3.186	
	3년 이상 ^d	300	15.50	3.230	
	전체	1,159	15.23	3.223	

* 주: * $p < .05$, ** $p < .01$, *** $p < .001$

보호종료 유형에 따라 심리·정서 상태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IV-77). 중간종료⁵³⁾ 청년들의 우울, 스트레스, 고립감 점수가 가장 높고, 종료시기가 연장⁵⁴⁾될수록 그 점수는 낮아졌다⁵⁵⁾. 마찬가지로 삶의 만족도와 자립성취도는 연장종료 청년들이 가장 높고 중간종료 청년들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복지시설 퇴소청

표 IV-77. 보호종료 유형에 따른 심리·정서 상태 차이 (단위: 명, 점)

구분		사례 수(명)	F 검증 ¹⁾		
			평균(점)	표준편차	F
우울	중간종료 ^a	34	6.59	6.602	4.850** a>c
	만기종료 ^b	702	5.37	5.720	
	연장종료 ^c	451	4.50	4.950	
	전체	1,187	5.08	5.485	
스트레스	중간종료 ^a	34	6.21	2.293	.917
	만기종료 ^b	702	5.74	2.328	
	연장종료 ^c	451	5.67	2.184	
	전체	1,187	5.72	2.273	
삶의 만족도: 전반적인 인생	중간종료 ^a	34	4.41	3.125	2.340
	만기종료 ^b	702	5.23	2.471	
	연장종료 ^c	451	5.34	2.339	
	전체	1,187	5.25	2.445	
고립감	중간종료 ^a	34	9.09	4.795	3.818* a>c
	만기종료 ^b	702	7.99	4.031	
	연장종료 ^c	451	7.52	3.549	
	전체	1,187	7.84	3.889	
자립성취도	중간종료 ^a	34	14.26	3.964	2.305
	만기종료 ^b	702	15.40	3.084	
	연장종료 ^c	451	15.44	3.053	
	전체	1,187	15.38	3.104	

* 주: **p* <.05, ***p* <.01, ****p* <.001

53) 아동양육시설에서 만 18세가 되기 이전에 퇴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54) 아동양육시설에서는 만 18세에 퇴소(만기종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인 의사에 따라 만 24세에 달할 때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하고 이후 퇴소할 수 있는데 이를 연장종료라 한다.
55) 본 조사대상자의 중간종료 사유는 전원(38.2%), 원가정복귀(32.4%), 군입대, 무단퇴소, 취업 등(20.6%), 가정보호(8.8%) 등의 순이었다.

년 1,264명 중 중간종료 청년은 34명(2.7%)이었으며 중간종료의 사유로는 전원(轉院)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는 원가정 복귀 순이었다. 아동복지시설에서는 시설장이 아동복지시설에서 단순생활지도 곤란 등의 사유로 보호아동에게 보호처분을 받게 하는 통고제도를 이용하여 타 부처 소관시설로 전원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경우에는 보호처분을 받은 이후에 아동복지시설로 복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자립준비 청년이 받는 다양한 지원에서 제외되고 사후관리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보호종료 유형에 따른 특성은 우울과 고립감 등에서 통계적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20대 초반에 연장종료 후 퇴소한 청년들이 중간종료 후 퇴소한 청년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심리·정서적 측면에서 보다 긍정적 결과를 보였다. 이 같은 결과는 20대라도 자립에 대한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질 때까지 시설에서 제공하는 안정적인 보호, 또는 연장종료의 주요 사유가 되는 고등교육의 효과 등 다양한 요인에 따른 긍정적 영향에서 비롯된 것임을 추측해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안정된 보호를 제공하고 시설퇴소 이후라도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자립준비청년의 심리·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됨을 시사한다.

(3) 소결 및 시사점

이상과 같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여부를 살펴본 결과,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경우 수급여부에 대한 개인의 인지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데이터 간 정합성은 약 63%, 장애등록여부나 자립수당 수급여부에 대한 정합성은 약 90% 이상, 국가장학금의 경우도 약 70%에 달하였으나 의료급여 수급여부에 대한 정합성은 약 50% 미만이었다. 의료급여를 포함한 건강보험 유형에 대한 인지율이 타 급여에 대한 인지율에 비해 현저히 낮고 조사대상자 중 건강보험 유형을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0% 이상으로 나타난 점은 주목할 만하다. '22년 1차년도 조사결과에서 최근 1년간 앓았던 질병이 있었던 조사대상자들 중 35.9%가 병원비가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했다고 응답하였는데(김지연 외, 2022:217),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도 자신이 수급자임을 모르는 비율이 14.3%이고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를 이용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1.9%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의료급여나 건강보험 등을 통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상태임에도 자신의 수급여부를 몰라서 적기에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한 비율이 상당히 높을 수 있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이에 자립을 시작할 때 행정데이터 조회를 통해 자신의 수급여부를 파악하고 현재 상태에서

이용 가능한 제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아동자산형성사업인 디딤씨앗통장 이용에 대한 인지여부는 약 53%의 정합성을 보였다. 행정데이터 상에는 이용경험이 있다고 되어 있음에도 이용경험이 없거나 모르겠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전체의 9%(이용경험자 중 20.5%) 이상이었다. 이는 시설에서 디딤씨앗통장 적립이 시작되었으나 그 적립여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한 청년이 디딤씨앗통장 이용자의 1/5 이상임을 의미한다. 현행 디딤씨앗통장은 18세 만기 시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 비용,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만 24세 이후에는 사용용도에 제한 없이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여 대상자들의 중도해지 방지 및 자산형성 지원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되 이에 더하여 추후 이용자가 자신의 자산에 대해 인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퇴소 시 디딤씨앗통장 가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적립된 자산을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산관리교육 등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퇴소시설별로 소득기준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 이용률을 살펴본 결과, 아동복지시설 퇴소청년의 경우 생계급여(65.7%), 의료급여(65.5%), 주거급여(63.7%) 등 약 60% 이상이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수급한 경험이 있었고 소년보호시설 퇴소청년은 약 40% 내외(생계급여 46.2%, 의료급여 40.0%, 주거급여 27.8% 등)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은 생계급여 24.7%, 의료급여 28.0%, 주거급여 33.3% 등 약 30% 내외만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이용하고 있어 실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비율이 매우 낮았다. 다만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수급기준은 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퇴소청년의 소득이 낮더라도 원가족의 경제적 상태에 따라 수급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시설퇴소 시 경제적 상태 등에 따라 수급자격 여부, 자격취득 가능 여부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나 다양한 제도에 대한 이용방법을 안내해주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경험 여부,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수급 및 디딤씨앗통장 이용 여부에 따라 시설퇴소청년들의 심리·정서상태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수급경험이 있는 청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년들에 비해 대체적으로 주관적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거나 삶의 만족도가 높은 반면 우울과 불안, 고립감 정도는 낮았다. 이처럼 복지지원의 수급 여부에 따라 개인의 심리·정서 상태에 차이가 있다는 결과는 일정기준 이하의 소득을

가진 시설퇴소청년들에게 복지제도가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심리·정서적 안정을 돕는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급여를 포함한 다양한 지원제도들은 대부분 신청주의에 기반하기 때문에 정보 접근이 어렵거나 본인의 수혜 대상 여부, 신청방법 등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 자격여건을 충족함에도 그 대상에서 누락될 수 있다. 이에 기초생활보장급여 외에도 국가나 지자체, 기타 다양한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원제도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정보를 통합하고, 통합된 지원망 내에서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은 아동복지시설 및 일부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들에게만 지급되고 있어 부모의 보호력 부재와 같은 유사한 상황에 처해있지만 해당 시설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을 수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한다.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 수급은 시설퇴소청년의 성공적인 사회적 정착을 위한 기반 마련 및 심리·정서적 안정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대상 확대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디딤씨앗통장과 같은 자산형성지원금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자산형성을 위한 노력 및 만기 시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아보는 경험의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아동복지시설 외 시설에서도 거주기간동안 자산형성 경험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자립수당 수급 연차 및 보호종료 유형에 따른 심리·정서 상태를 살펴본 결과 자립 초반에 비해 연차가 높아질수록 심리·정서적인 어려움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자립 이후 2~3년차에는 대인관계 및 사회적응 등 자립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에 대한 심리·정서적인 개입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우울, 고립감 등의 심리·정서적 상태에서도 연장종료 후 퇴소한 청년들이 중도 퇴소 청년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이는 조기 퇴소로 시설의 보호에서 벗어나는 것이 개인의 심리·정서 상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중도 퇴소청년들에게도 퇴소 이후의 생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추적관리 및 심리·정서 지원을 하여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 제5장 시설퇴소 자립준비 청년 면접조사

- 1. 조사 개요
- 2. 연구결과
- 3. 소결

1. 조사 개요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최근 양육시설 퇴소청년을 중심으로 자립준비청년에 대해 학계와 정책분야, 사회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전국단위 실태조사뿐만 아니라 자립준비청년과의 면접을 통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야기를 전하는 질적 연구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에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자립준비청년에 관한 많은 정보가 축적되었다. 특히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질적 연구를 통해 더욱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행된 질적 연구는 자립 이후 경험하는 어려움을 중심으로 한 자립과정을 핵심 주제별로 나열함에 따라 자립의 당사자인 청년들이 어떤 환경과 맥락 속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외부 체계와 상호작용하였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시설퇴소 이후 성공적 자립 상태에 있는 청년들이라면 그들이 어떤 조건에서 어떤 경험을 하였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향후 정책개발을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설퇴소 이후 자립에 성공한 10명의 청년들 이야기를 토대로 자립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인 청년들은 어떤 경험을 하면서 고군분투하였는지에 주목하면서 자립과정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고자 한다.

56) 이 장은 노혜진 교수(강서대학교)가 집필하였다.

2) 면접 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이 시설을 퇴소한 후 삶을 살아나가는 과정을 분석하는 도구로 근거이론을 활용하였다. 근거이론은 이론적 추출 방식으로 표본추출을 하는데 이는 이론을 만들기 위해 자료수집 과정을 거치는 것을 의미한다. 이론적 표본추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의사결정은 특정 집단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에서 시작된다. 새로운 사람이나 집단, 사례의 추출을 통하여 이론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은 무한하므로 표본추출에 제한을 둘 기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때 ‘해당 사례가 도움이 되는가?’, 혹은 ‘이론개발에 해당 사례가 연관성이 있는가?’ 등을 고려한다(Flick, 2002). 질적 연구에서 의도적 표본추출을 할 때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대표적인 기준은 전형적 사례, 결정적 사례, 다양성의 최대화, 편의성 등이다(Patton, 1990).

연구의 목적이 성공적 자립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표본추출 중에서 극단적 사례와 전형적 사례 추출 방법을 적용하여 참여자를 모집하였다(Flick, 2002). 이론적 표본추출에서 극단적 사례추출이란 성공 혹은 실패한 사례를 선택하여 그 이유를 분석하는 방식을 의미하고, 전형적인 사례란 성공과 실패 사례 중 전형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는 사례를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시설퇴소 이후 자립에 성공한 청년의 변화과정을 분석하고 모델을 이론화하는 것에 주목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성공’으로 인식하는 전형적인 청년들을 참여자로 섭외하였다. 이 과정에서 현장전문가들에게서 성공사례를 추천받았고 사회참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연구주제에 적합하다고 판단된 이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하였다.

면접은 2023년 5월부터 6월까지 3명의 연구자가 청년들과 개별적으로 진행하였다. 면접을 진행하기 전에 연구진 회의를 통해 연구주제와 면접 방향성 및 내용을 공유하는 과정을 거쳤다. 청년과는 1차 면접을 진행하다가 시간이 부족할 경우 2차 면접을 진행하기도 하였는데 각 면접은 약 1시간에서 1시간 20분 정도 소요되었다. 면접에 참여한 청년은 10명이며, 총 면접 횟수는 16회이다. 면접 참여자의 구성은 표 V-1과 같다.

표 V-1. 면접 참여 청년

연번	이름	성별	출생연도	직업	시설경험
1	A	남	1997	간호사	공동생활가정-양육시설 19년
2	B	여	1991	사회복지사	청소년쉼터, 소년원
3	C	여	1996	캠페이너	아동양육시설 19년
4	D	남	1993	캠페이너	아동양육시설 17년
5	E	여	1999	사회복지사	청소년자립지원관
6	F	여	1993	카페 대표	아동양육시설 3년
7	G	남	1997	자립활동가	청소년쉼터 5년
8	H	여	1997	학생	아동양육시설 10년
9	I	남	1996	상담사	소년원 2년
10	J	남	1994	자립활동가	아동양육시설 10년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의 변화과정을 분석하기 위하여 근거이론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근거이론은 당사자 관점에서 실제 삶의 현장에서 발생한 사건이나 현상에 대해 깊게 탐색할 수 있는 연구방법으로 참여자들이 경험한 생생한 과정을 분석하기에 유용하다(Strauss & Corbin, 2008). 현장에서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복잡하고 숨어있는 과정을 확인하고 분석하여 ‘그럴듯한 관계’의 이론을 만들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이제 막 실태조사가 체계화되기 시작한 시점에서 양적 연구를 통해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들이 시설퇴소 이후 실제 어떤 구체적 상황과 사건을 통해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는지를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경험했던 사건이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끌어냄으로써 새로운 자료를 도출하고 이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근거이론 방법을 활용하여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들의 경험과 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개념을 도출하고 범주화하여 자립 과정을 보여주었다.

자료분석은 근거이론 분석의 일반적인 방식에 따라 면접 녹음자료를 축어록으로 작성한 후, 이를 행간(line-by line)으로 면밀하게 읽으면서 개방코딩하였다. 근거이론 연구의 자료분석 단계에 따라 개념과 범주에 대한 지속적 비교방법(constant comparison)을 통해 축코딩(axial coding), 패러다임(paradigm)의 순으로 수행하였다(Strauss & Corbin, 2008).

4) 연구의 엄격성과 윤리적 고려

참여자를 섭외하기 전부터 연구자들은 연구의 엄격성과 윤리성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주의를 기울였다. 우선 본 연구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은 후에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하였다. 처음 10명을 추천받았으나 면접 일정 조율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연락하는 과정에서 연락이 원활히 되지 않은 참여자에게는 면접을 강조하지 않았다. 이에 한 명을 새로운 참여자로 대체하였다. 모든 참여자를 대상으로 1차 면접 시작 전에 연구의 목적과 주요 인터뷰 내용, 연구 참여 절차 및 방법, 개인정보 보호 및 처리절차, 연구 참여에 따르는 위험 및 이득·혜택, 연구참여 중단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면접에 참여한 청년들이 연구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에 서명한 이후에 면접을 시작하였고 2차 면접이 필요할 경우 참여자의 동의를 구하였다. 면접은 참여자가 희망하는 장소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면접 후에는 참여자들이 희망하는 방식으로 사례비가 지급되었다.

2. 연구결과

1) 개념의 민감화: 자립의 의미

근거이론을 적용하여 시설을 퇴소한 청년들에게 자립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살펴보기에 앞서 자립의 개념에 대해 먼저 서술하고자 한다. 사회과학에서 이론이란 실제 세계, 실제 이야기와 연결할 수 있어야 가치가 인정되며 실제 세계와 이론을 연결하는 매개체가 바로 개념이다. 개념 정의가 대상의 공통속성을 발견하는 것이라면 개념을 민감화한다는 것은 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보려는 현상과 실제 상황 간의 관련성을 찾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념을 민감화하는 작업은 질적 연구의 출발점이자 해석적 도구라고 할 수 있다(노혜진 외, 2019; Bowen, 2006; Charmaz, 2006:16-17).

이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개념은 바로 자립이다. 이에 면접에 참여했던 청년들이 자립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바탕으로 자립의 개념을 정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핵심 개념인 ‘자립’의 개념을 고려대한국어대사전에서는 ‘남에게 의지하거나 종속되지 않고 스스로 힘으로 서 있음’으로 정의하고, 반대말은 ‘기대어 생활하거나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의존으로 명시되어 있다. 사전적 정의에서는 ‘스스로’를 뜻하는 ‘자’의 의미 그대로

로 주체성은 강조하되 의존·의지와는 반대임을 강조하고 있다. 사전적 정의가 아니더라도 선행연구에서도 자립은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독립과 유사한 개념으로 정의된다(임주원, 김서현, 홍진주, 2022).

그런데 면접에 참여한 청년들에게 자립은 ‘스스로’를 강조하는 독립뿐만 아니라 사전에 반대말로 명시된 ‘의존’이 모두 포함된 의미인 것 같다. 자립의 개념에 대해 청년들은 ‘내 책임감이 진짜로 발휘되는 시기’라고 표현하며 ‘스스로’를 강조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내가 누군가에게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상호의존성 또한 강조하였다.

“자립이란 내 책임감이 진짜로 발휘되는 시기... 그게 자립이죠. 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하잖아요.” _B

“누구의 지원을 받는 그런 게 아니라, 누가 옆에 있어서 (내가) 의지를 하고 살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 저한테 누군가가 의지할 수 있게끔 스스로 좀 성장하고 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게 자립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까지진 내가 누군가한테 의지를 했다면 이제는 누군가가 저한테 의지를 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게...” _E

그렇다면 자립은 누구에게 어느 시기에 이루어지는 것일까? 이 연구에서는 앞서 시설되 소 자립준비청년의 개념을 자립지원전담기관,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사후관리를 받는 보호종료 5년차 이내 청년, 청소년자립지원관이나 청소년쉼터 등을 이용한 적이 있거나 현재 이용 중인 청년,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을 출원한 경험이 있는 청년으로 정의하였다. 이들 개념에서 강조하는 공통속성은 시설되소 후 일정 기간 안에 있는 19세 이상 34세 이하라는 연령대이다. 그렇다면 자립이란 19세부터 34세 사이에 있는, 시설을 퇴소한 청년들에게 퇴소 이후 시점에 달성해야 하는 과업일까? 면접에 참여한 청년들의 답변을 들어보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자립은 시설에 거주했다가 퇴소한 청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청년에게 해당되며 특정 시점(퇴소 직후)에 달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생애에 걸쳐 진행되는 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

“자립이라는 키워드가 저는 자립준비청년만 국한되어 있는 건 당연히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실 자립 같은 경우는 모든 청년들 혹은 자립을 못한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문제잖아요.”

_J

“자립이라는 게 한순간에 준비되는 게 아닌데 뭔가 우리는 너무 자립 이후에 초점을 많이 맞춰서 그런 것 같아요” _D

2) 개방코딩과 축코딩 결과

본 연구에서 개방코딩과 축코딩을 통해 도출한 패러다임은 그림 V-1과 같다. 시설을 퇴소한 청년들은 취약함의 교집합 상태에서 약한 뿌리로 지탱하기 힘든 맥락 속에서 어렵고 모르는 것 투성이인데 무턱대고 자립을 요구하는 사회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어려움은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과 관심 증가로 개선되고 있지만 그림에도 여전히 한계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들은 뿌리와 햇빛이 약해도 적극적으로 살아남기 위해 다양한 대처를 하였고, 이를 통해 주체적인 삶을 배워나가면서 혼자 서는 독립적인 자립이 아니라 함께 서는 공립(共立)을 꿈꾸는 과정을 경험하고 있었다.

(1) 인과적 조건

인과적 조건이란 중심현상을 발생시켰거나 중심현상의 발전을 이끈 사건을 의미한다 (Strauss & Corbin, 2008). 본 연구에서는 중심현상을 이끈 인과적 조건을 ‘취약함의 교집합’으로 표현하였는데, 이는 구체적으로 청년기와 퇴소 직후의 중첩, 나를 알 기회 부족, 이미 정해진 듯한 길 등 3가지 범주로 구성된다. 청년기는 노동시장으로의 진입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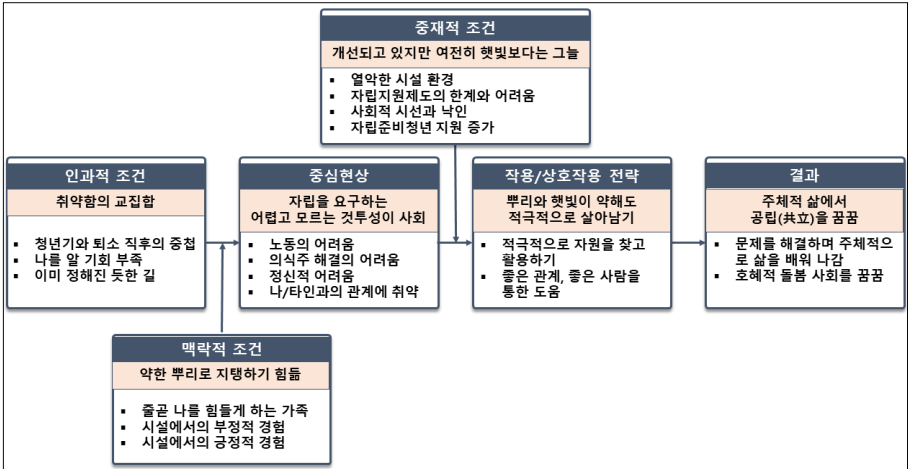


그림 V-1.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과정

결혼, 출산 등의 큰 생애 사건을 경험하며 본인만의 인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견되지 않은 이벤트’가 수시로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취약함을 내포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청년기에 경험하는 고유한 취약함뿐 아니라 지금까지 보호받던 시설의 울타리를 벗어나 ‘내던져진’ 것처럼 느껴지는 퇴소라는 주요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다중 취약함에 놓여있었다.

“저는 이벤트가 생길 때마다 다 힘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집을 갑자기 구해야 할 때, 갑자기 뭘 해야 할 때. 예를 들어 갑자기 입원 수술 해야 할 때.. 큰 이벤트로 봤을 때.. 예견되지 않은...” _A

“너무 내던져진 느낌이었고. 근데 보육원은 날 이미 잊은 것 같았어요. 왜냐면 그때 되게 제가 보육원을 퇴소하면 너무 신이 날 것 같았거든요. 근데 울었어요.” _C

두 번째 인과적 조건은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들이 성장 과정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 알아갈 기회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선택 기회 부족과 경험 부족으로 구분된다. 정해진 틀 안에서 생활해야 하는 시설 생활환경의 특성상 청년들은 성장하면서 선택을 통해 이어지는 크고 작은 결과를 경험할 기회나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 기회가 부족했다. 저녁 식사의 메뉴선택, 학용품 선택 등 일상적인 상황에서 사소하고 작은 선택을 통해 경험학습의 기회를 쌓지 못했던 청년들은 퇴소 후에 주저지 선택, 직업 선택 등 매우 크고 중요한 선택과 결정부터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태어나서 20년을 주어진 것만 먹고 자기의 의견이 반영된 저녁 식사를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과 결과가 이어지는 경험을 해 본 적이 없어요. 물건 사는 것도 학용품 살 때도 애기 데리고 가서 ‘너, 골라 봐. 뭐가 갖고 싶어?’ 이러면서 고르잖아요. 근데 시설은 (시설 아이들은) 그냥 단체로 주어지는 거를 받거든요. 똑같은 거. 어릴 때부터 내가 뭘 좋아하는지, ‘우리 아들은 이걸 좋아하지’ 이걸 엄마도 알고 자기도 알잖아요. 근데 시설의 아이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 그런 작은 선택과 결과가 이어지는 경험이 부족한데 갑자기 성인 돼서 ‘야, 이제 너희 자립해 봐.’ 이러니까 애네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애들이 스스로가 몰라요.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고...” _F

더불어 시설 안에서 성장하면서 청년들은 다양한 선택의 경험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일상 경험이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경험 또한 충분하지 않았다. 소소한 일상의 다양한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장한 청년들은 대학 진학 후 족발을 먹는 사소하고 일상적인 상황에서 다른 친구들과 본인이 다름을 경험하며 거리감을 느끼기도 한다.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다양한 걸 안 먹어봤더라고요. 몰랐어요, 저도. 그냥 주는 대로 먹었으니까. 근데 이제 막상 대학생 되니까 저한테 애들이 ‘너 이것도 안 먹어봤어?’ 제가 족발을 대학생 때 처음 먹어봤어요. ‘나 처음 먹어봐.’ 이러거든요. 근데 애들이 ‘와~ 이걸 처음 먹어봐?’ 막 이러니까 거기서도 뭔가 갭이 느껴지는 거예요.” _A

세 번째 인과적 조건은 시설 안에서 개별적으로 진로 탐색을 지원하는 체계와 프로그램이 충분하지 않고 이미 가야 할 길이 정해진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청년들이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고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시설 안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지 않고 성장한 청년들은 직업이나 전공 등 진로를 결정하는 상황에서도 정보나 지원체계가 충분하지 않아 오롯이 독학으로 준비하거나 혹은 주로 시설 선생님이 정해주는 대로 따라갔다.

“대학 진학을 선택을 할 때도 시설에 있는 선생님들이 사회복지학과 가라고 해서 사회복지학과 갔어요. 약간 본인이 뭘 잘하고 뭘 좋아하는지 알아서 본인의 인생을 설계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학교 선생님, 시설 원장님, 선생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 얘기 듣고. 그냥 보이는 게 딱 그거니까. 그걸로 인생을 결정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_J

“시설 안에 살다 보면 직업 선택지가 너무 작아요. 사회복지사, 유치원 교사, 치위생사 아니면 공장에 취업하거나. 되게 서비스직이라거나 제조업이라거나 그런 것들로 되게 많이 하게 되는데 다양한 직업을 볼 수도 없고 시설에 살다 보면...” _D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에게 때로는 대학 진학이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기도 하였고, 취업은 자신의 인생에 대한 계획이나 목표 없이 단순히 돈을 벌거나 오로지 퇴소를 위한 목적으로만 이루어지기도 했다. 실제로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의 대학 진학률은 일반청년들보다 낮다(김지연 외, 2022). 결국 진학이든 취업이든 무엇을 결정하든 주도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년들은 취업 후 겪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갑자기 진로를 선회하기도 한다.

“목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어떤 목적이냐 정확한 게 없었고 그냥 일단은 돈 많이 벌어야겠다였던 거 같아요. 사실 지금 애들한테 물어보면 다 똑같더라고요.” _F

그러나 실패하더라도 돌아갈 곳이 없는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이미 진입한 길에서 진로를 바꾸는 것은 매우 큰 도전과 용기가 있어야 하는 과업이다. 다시 돌아가거나 방향을 바꾸더라도 가족에게서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즉 ‘기댈 어깨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청년들은 이미 발을 디딘 길에서 주도적으로 나아가지도 혹은 돌아가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로 인해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인생은 ‘정해진 루트가 있는 것’처럼 인식된다.

“또래들이 쉽게 잘 그만두고 이직률이 높고 이런데 저희가 그러지 못했던 건 사표를 써도 돈 줄 부모가 없잖아요. 기댈 어깨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잠깐 들긴 하지만 그래도 버텨야지.” _B

“나는 일단 엄마가 아프시고 아빠도 없고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나는 이대로 가야 돼, 나는 이대로 꼭 가야 돼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간호학교 꼭 가야 되고, 간호학과 졸업하고 꼭 취업을 해야 되고. 그 과정을, 루트. 근데 그 루트가 지금 저를 힘들게 하지만. 왜냐면 제가 다른 걸 도전 못하겠어요.” _A

(2) 맥락적 조건

맥락적 조건이란 전후(前後) 관계라고도 지칭하는데, 어떤 현상에 속한 특정한 속성으로 써 작용/상호작용 전략이 행해지는 일련의 조건을 의미한다(Strauss & Corbin, 2008). ‘어렵고 모르는 것 투성이’라는 핵심 현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이라는 대처가 발견된 전후관계에는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들에게 ‘뿌리가 약해서 지탱하기 힘든’ 맥락적 상황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들에게 뿌리는 누구이고 어디일까? 아마도 많은 사람에게 뿌리는 가족일 것이다.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들에게는 가족뿐만 아니라 자신이 성장했던 시설 역시 뿌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청년들에게는 가족과

시설은 모두 청년들을 지탱해주기에도, 그리고 이를 토대로 충분히 뺏어나가도록 돕기에도 힘든 약한 뿌리였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는 결국 뿌리에 의지하지 않고 오롯이 스스로 노력하게 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첫 번째 맥락적 조건은 가족이다. 가족은 어른이 되기 전이나 어른이 된 후 한결같이 청년들을 힘들게 하는 존재이다. 어른이 되기 전 청년들은 가정폭력이나 갈등, 빈곤 등 튼튼하지 않은 가족 뿌리로 인해 시설에서 생활하거나, 시설이 아닌 위탁가정에서 살면서는 수급비 갈취 등의 문제에 노출되기도 했고 '왜 이렇게 태어나야만 했는지' 자문하면서 성장하였다. 한편 가구원 수에 따라 책정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지급방식으로 인해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원가정 복귀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나야만 했나, 나는 왜 이런 삶을 살고 있나?” 이렇게 매일같이 물었던 것 같아요.” _A

“부모가 되게 조종 아닌 조종. 가스라이팅 아닌 가스라이팅 같은 걸 해서 뭐가 시설을 좀 더 빨리 퇴소하게 한다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부양가족이 더 많으면 2인 가족이 되면 수급비를 더 많이 받거나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아이들이 시설에 있다가도 그렇게 데리고 나가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_D

어른이 된 후 청년들은 보호가 필요했던 시기에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았던 부모가 자신을 부양해 달라고 요구하는, 즉 '역부양 요구에 발목이 잡히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이제 막 자립한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들이 부모의 금전적 요구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은 선행연구에서도 발견된 부분인데(김수정, 김지선, 정익중, 2017),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들은 역부양을 거절한 후에 죄책감을 경험하기도 한다. 때로는 자신을 버린 부모를 평생 부양해야 하는 상황으로 인해 삶 자체를 의미 없다고 생각하거나 더 나아가 살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느끼기도 한다. 그로 인해 청년들은 가족과 연락을 차단하고 살았던 기간이 가장 좋았다고 평가했고 사망 신고를 해서라도 가족과 법적으로 완전히 분리되기를 희망하기도 하였다.

“요새는 또 부모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친구들이 역부양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오히려 이전까지는 보호자 역할 제대로 안 했는데 나가고 나니까 부양을 해야 되고...

(중략) 자립 당시에는 그냥 ‘몰라, 내 삶 살 거야.’라고 했지만 나중에 가니까 그래도 ‘내가 아빠한테 너무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_D

“시설에서 살았는데 퇴소를 하나까 아버지의 부양 의무자가 된 거예요. 아버지한테 받은 게 없는데, 갑자기. 그 언니도 취업 잘 했었거든요. 취업에서 돈 버니까 부양의무자가 돼서. 아버지가 원래는 기초생활수급자였는데 내가 돈을 벌게 돼서, 자녀가 있으니까 돈을 벌게 되면서 아버지가 생계비가 끊기면서 그 퇴소한 언니가 그 아버지를 부양을 해야 되는... (중략) 내가 힘들게 내 미래를 꿈꿔서 내가 돈을 벌면 뭐 해? 아빠한테 가야 되고 또 나는 발목이 잡히고, 부모한테 발목 잡힌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거 같아요. 나는 아무 것도 받지 못했는데 내가 아버지를 평생 부양해야 되는 건 너무 부당하다 싶어서 그러면 안 사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 같아요.” _F

“저는 한때 그 생각도 했어요. 제 스스로 사망 신고를 하고 다른 이름으로 청소를 좀 하고 살까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_E

두 번째 맥락적 조건은 시설에서의 부정적 경험이다. 시설은 분명 보호가 필요했던 시기에 청년들을 보호해준 곳이지만, 동시에 학대와 차별의 경계를 경험하거나, 의견을 표현하기 힘든 단체생활로 인하여 무기력을 학습하고 강화한 곳이기도 했다. 혹은 언제든지 잘못하면 다른 시설로 보내지는 직간접적 경험을 하면서 청년들은 인생에서 첫 번째는 부모에게 버려지고 두 번째는 시설에서 버려졌다는 표현을 하기도 하였다.

“워낙 시설 애들이 적극성이 없어요. 시설 오래 살던 애들 보면 개인 주장이 없어요. 저는 그냥 구조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많은 인원들이 있는데 거기서 나 한 명이 나 이거 하려면 욕심이라고 하고. 그리고 강압적이고 10시면 다 누워야 되고 이러니까...” _A

“친구들끼리 그런 얘기를 자조적으로 하거든요. ‘첫 번째는 엄마가 버렸고 두 번째는 시설이 버렸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_C

“약간 이제 제가 선생님 마음에 안 들었던 애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좀 ‘재량’ 놀면 너희까지 간식 안 줄 거다.’ 이래서 이제 방에 혼자 계속 있고..” _H

시설에서의 경험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았기 때문에, 자립준비가 덜 되었거나 보호가 더 필요한 청년들을 위한 제도인 ‘보호 연장’에 대해서도 청년들은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하였다. 보호 연장이 촘촘한 자립준비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기간 연장으로만 그친다면 그것은 무의미한 제도에 불과하며 오히려 퇴소해야만 받을 수 있는 공적 지원제도의 기회를 차단한다고 청년들은 표현하였다.

“보호연장이라는 게 너무나 공백이에요. 보호연장된다고 한들 더 받는 어떤 다른 업그레이드 된 교육이라거나 지원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저도 보호연장 기간 동안 그냥 거주만 했지...” _D

“보호연장 할 수 있었는데 제가 중간에 나온 이유가 제 입장에서는 시설에서 나가서 개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면 시설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보다 개인적으로 들어오는 비용이 크다 보니 이걸로 대학생활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퇴소를 결정했고...” _A

물론 시설에서의 경험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이후 서술하겠지만, 청년들이 좋은 관계와 좋은 사람을 통해 도움을 주고받는 전략을 사용하게 된 핵심적인 맥락에는 시설에서 청년들을 전방위적으로 보호하고 지지해준 좋은 사람들을 만난 경험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시설퇴소 후 고립상태에 있던 청년은 하루에 5시간씩 통화를 하며 자신을 지켜준 시설 선생님 덕분에 자살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천만 원의 사비를 내어준 선생님 덕분에 집을 구할 수 있었다. 시설에서 보호받는 동안 청년들은 자신을 지켜준 ‘엄마’ 선생님들을 만나며 처음으로 부모가 어떤지 느끼고, 어른이 옆에 있다는 것을 느끼며 사람을 신뢰하는 경험을 쌓았다.

“시설 들어가면서 약간 어른에 대한 거를 믿기 시작한 것 같긴 해요. 내 가족들 제외하고는 다 믿어도 되겠구나라는... (중략) 일단 그 선생님하고 되게 친구 같이 지내고 있어서. 거의 다른 친구들이 보면 ‘엄마야?’ 할 정도로 되게 친구같이 지내서. 퇴근할 때 선생님이 먼저 전화 오셨어요. ‘퇴근하고 있냐? 밥은 먹었냐?’ 이라고 정말 하루에 5시간 이상을 서로 통화하면서 얘기했고.” _E

“저는 보호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소년원을 나와도 갈 데가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 저를 되게 많이 도와준 선생님이 계셨어요. 소년원 선생님이. 진짜 부모가 뭐구나, 엄마가 뭐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해줬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내가 진짜 갈 데가 없고

부모님이 없고 이래서. 물론 경찰서 가고 심사원 가고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고 혼자 견딜 수 있지만 그런 데를 갈 때 어른이 항상 내 옆에 있다는 걸 느낀 게 처음이었어요.” _B

(3) 중심현상

중심현상이란 작용/상호작용에 의해서 다루어지고 조절되거나 관련 집단에서 발견되는 중심 생각이나 사건들을 의미한다. 연구 참여자들의 발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자료는 무엇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작용/상호작용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등의 질문을 통해 중심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면접에 참여했던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에게서 나타난 중심현상은 ‘자립(自立)을 요구하는, 어렵고 모르는 것 투성이의 사회’로 정리할 수 있다. 연구를 설계하고 면접을 시작하기에 앞서 연구진들은 자립에 성공한 청년들에게서 발견되는 중심현상으로 ‘성공’에 관한 특별한 요소나 사회환경 등에 관한 이야기들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지금 현재 자립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자립의 과정에서 나타난 중심사건이 ‘어려움’이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청년들이 경험한 어려움은 구체적으로 노동의 어려움, 의식주 해결의 어려움, 정신적 어려움, 나/타인과의 관계에 취약 등 4개의 범주로 구성된다. 첫째 노동의 어려움은 노동 시장 진입과 유지, 조직 내 인간관계로 구분할 수 있다. 앞서 진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대학입시를 고려하지 않았던 청년들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첫 직업을 선택하게 되는데 학력 중심의 한국 사회에서 대학에 가지 않은 청년들이 진입하는 일자리는 주로 2차 노동 시장에 존재하는 ‘열악한 일자리’일 가능성이 크다. 괜찮은 일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취직을 했다는 사실, 혹은 취업이 아니더라도 인턴으로 인해 월급을 받게 되면 청년들은 소득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의도치 않게 퇴소를 하게되기도 한다.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쉽터 퇴소자가 그렇듯이 학력이나 스펙, 자격증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뒤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열악한 일자리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_G

“18년도에 인턴을 하게 됐는데 소득이 잡히면 시설에 못 산다고 해서. 그래서 갑작스럽게 나오게 돼서...(중략) 학교 연계돼서 한 거여서 한 학기만 했는데 퇴소했어요.” _H

청년들에게는 열악한 일자리에서 버티지 못하고 퇴사를 고민하거나 결정하는 과정은 특히 시설과의 관계 측면에서 쉽지 않다. 회사 적응에 ‘실패’하고 시설로 돌아온 친구가

실패자로 공표되는 모습을 보면서 청년들은 퇴사하더라도 시설에 눈치가 보여서 퇴사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위축되어서 시설과의 관계를 끊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는 그만두면 안 되는 거, 약간 좀 실패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좀 되게 조용히 그만뒀어요. 보육원 선생님도 그렇고 보육원에 있을 때 제가 조금 의지했었던 어른들이랑 회사를 그만두면서 제가 스스로 좀 위축되고 눈치 보면서 관계를 일방적으로 끊은 것 같아요. (중략) 한 친구가 이제 회사를 나가고 여러 번 실패를 했어요. 처음 나가자마자 실패를 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적응 못하고 보육원에 들어왔을 때 보육원에서 엄청 실패자라고 공공연하게 공표 같은 걸 했어요.” _C

노동의 어려움은 노동시장 진입과 유지라는 구조적인 측면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시설에서 성장하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한 경험이 부족했던 청년들을 가장 힘들게 한 것은 조직 내 인간관계였다. 사실 첫 직장생활은 시설퇴소 자립준비 청년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어렵다. 그러나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에게는 직장생활에서의 어려움이 이제 막 노동시장에 진입한 사회초년생들 누구나 경험하는 어려움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어른이 없고,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해 줄 어른이 많지 않다. 이 과정에서 조직 생활의 어려움을 과도하게 개인적 어려움으로 치부하게 된다. 그로 인해 조직의 어려움을 말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힘들게 취업한 일터에서 2~3년을 버티는 것이 매우 어려운 과업이 되기도 한다. 다양한 대인관계 경험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조직 내 관계에 어려움을 느낀 청년들은 심지어 대기업에 취직하더라도 대인관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기도 한다.

“본인들 스스로도, 사실 가정에서도 일을 하면서 힘든 부분이 많잖아요. 자식들도 힘든 부분 많고 청년들도 힘든 부분이 많은. 그런 것들을 좀 경험이 있는 부모님과 좀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회사 생활에서는 이런 건 지켜야지 상사한테 이런 건 해야지.’ ‘이건 좀 부당한 것 같아.’라고 하면 ‘이건 정말 부당하다.’라고 좀 판단을 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그런데 자립준비 청년들은 그런 분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사회 생활을 할 때 필요한 선인지 그런 고민들도 참 많이 하거든요.” _D

“사실은 저희 애들 특징이 오래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거의 다 일을 금방

관두고 나오고 못 버티고 그렇더라고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기업의 문제보다는 그 아이의 대인관계의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사회관계라든지. 개가 느꼈을 때 부당하다 이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금방 때려치우고 나오고. 알바도 3일 만에 때려치우고 나오고 하루 만에 때려치우고 나오고 이런 애 진짜 많거든요. 그런 대인관계나 이런 자기 심리·정서적인 부분에 문제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가 아무리 좋은 대기업을 보내도 그걸 못 버티고. 정말 대기업에서 좋은 기숙사 제공해 주고 진짜 연봉 이만큼 주고 해도 거기서 이거 못 버티면 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심리·정서나 그리고 그 회사 문화나 이런 사회관계, 조직 속에서 좀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약한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이. (중략) 애들도 보면 오래 버티는 직장인들을 보면 같이 가거나, 친구나 또래나 선배나 형이나 누가 같이 가서 두세 명이 같이 가서 하면 애들이 그래도 2~3년 있더라고요.”

_F

청년들이 경험하는 직장 적응의 어려움이 단순히 ‘인식’ 때문만은 아니다. 미혼이거나 혹은 가족이 없어서 명절에 일할 것을 요구받는 등 실제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도 있고 혹은 피해의식으로 인해 과도하게 부당하다고 느끼기도 한다. 이처럼 시설퇴소 자립준비 청년들이 직장을 구하더라도 사람들과 거리를 두며 적응하기 힘든 문제나 직장 내 동료, 상사 등에서 상처를 받는 문제 등은 기존 연구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김성민, 2021).

“일상생활에서도 저희들이 마주하는 상황들이 부모님이 없으니 명절에 일을 더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거나...” _D

“자립준비 청년들을 여러 경험을 해주기 위해서 카페도 들여보내주고 했지만 좀 뭔가 실수할 때마다 자기가 혼나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보육원 출신이라는 걸 알고 이렇게 더 심하게 혼나는 건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_E

둘째, 청년들이 경험한 두 번째 어려움은 의식주 해결의 어려움이다. 이는 빠듯한 삶, 줄곧 해결되지 않는 집 문제, 위험 대비에 취약함 등 3개의 범주로 구성된다. 자립정착금이 많지 않고 자립수당이 없던 시기에 퇴소했던 청년들에게 공통으로 발견되었던 자립 후 사건은 생활비가 없어서, 혹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고생했던 경험이다. 이들은 대학에 다니며 아르바이트를 동시에 3개나 하는 경우도 있었고 밥을 굶었던 경험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또한 저임금 열악한 일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취업한 대가로 의료급여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의료비 부담에 직면하기도 한다.

“학교 끝나고 카페 마감 아르바이트 했고, 주말에 중국집 설거지 이런 거 했었던 것 같고.”

_C

“처음에는 진짜 너무 심각하게 안 좋았는데. 생활비 없어서 식비 없고 그럴 때는 다른 쉼터 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도와주실 때도 있기는 했는데. 밥 굶고 이런 적도 많았던 것 같아요.” _G

“이제 막 취업한 친구들은 소득은 있지만 사실 기본적인 자산이 있는 친구들은 아니잖아요. 크게 병원비를 쓴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되게 부담스러운데 그거를 취업했다는 이유만으로 그거를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는 게 좀 아쉽더라고요.” _D

무엇보다 청년들이 시설퇴소 이후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경험은 집을 구하는 과정이었다. 집을 보러 다닐 때 같이 다니는 어른이 없어서 이들은 늘 부동산 사거나 전세 사기를 염려하면서 집을 구해야 했다. 또한 자립청년이라고 일부러 좋지 않은 집만 소개하거나 집을 아예 보여주지 않는 집주인들을 만나기도 하였다. 때로는 집을 보여주기로 한 공인중개사가 약속 시간에 오지 않아서 집을 보기 위해 밤에 혼자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빈집에 들어가는 위험을 감수하기도 했다.

“부동산마다 보여준 매물들이 같은 지역인데 너무 달라서. 그리고 아예 소년소녀가장 유형이면 집 안 보여주겠다고 하는 데도 많아요. 저번에 이사할 때도 그렇고 이번에 이사 준비할 때도 그렇고 소년소녀 유형이냐고 물어보거든요... (중략) 친구들 보면 ‘너 집 볼 때 어떻게 봤어?’ 그러니까 부모님이 봐주거나 아니면 같이 보거나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좀 부동산 분들이 사기 덜 치시려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어른이 있으면... (중략) 부동산 집 보기로 했는데 그 부동산 관계자가 안 와 가지고 밤에 보기로 했는데 혼자 집 들어가서 비밀번호 눌러서 보고, 근데 그 집마저 곰팡이 핀 집인 거예요. 근데 그 부동산이 제가 살던 시설이랑 연계된 부동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_H

이렇게 힘든 과정을 통해 집을 구했다고 하더라도 주거와 관련된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이 아니었다. 매달 내야 하는 월세가 청년들에게 매우 부담되는 금액이었기 때문이다. 집 안에서 안전하게 사는 것은 누구에게나 가장 기본적인 욕구에 해당하지만 부모 찬스가 없는 청년들에게 집은 시설에서 막 퇴소했던 과거뿐만 아니라 월세를 내는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여전히 불안을 조성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청년 전세가 1억 2천만 원 빌려준다고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월세 20만 원, 15만 원. 작은 원룸이어도 그러더라고요. 10만 원은 기본으로 받더라고요. 그래서 전세 임대가 이자 감면 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그것도 5년이 지나면 끝나기 때문에 2억에 2%면 거의 20만 원 정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20만 원에 월세로 추가로 요구하는 것들에 맞추다 보면 10만 원, 20만 원 더 내면 한 30~40, 40~50이 넘어가는데 그렇게까지 해서 내가 이 안 좋은 컨디션의 집에 굳이 살 필요가 있을까.” _D

“공과금이 한 3만 원에서 5만 원. 겨울철에 가스비 많이 나오면 10만 원까지 갈 때도 있고 이렇게 공과금은 월세랑 따로 또 나가요. 그래서 막 밀린 적도 많고.” _G

의식주 등 생존과 관련하여 청년들에게서 발견되는 또 어려움은 이들이 미래에 발생할 위험 대비에도 취약하다는 사실이다. 소득중단이나 단절의 위험에 대비하여 복지국가가 사회보험제도를 설계한 것처럼 위험에 대비하는 것은 기본적인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성장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관찰한 경험이 없던 청년들은 위험 대비 전략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부모를 통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주택청약이나 실손보험에 대하여 무지하고 그로 인해 실손보험에 가입했다면 어렵지 않게 해결했을 의료비를 오롯이 혼자서 부담하느라 그동안 모아둔 돈을 한꺼번에 다 지출하기도 한다.

“지원이 없어서 완전 모아둔 돈으로 다 치료비나 생활비에 써서 완전 힘들어졌다 인생이. 이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보육원 선배들한테.” _C

“청약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청약, 보험 이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어릴 때부터 가입을 해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대부분 알려주고, 성인이 되면은 ‘이제부터 보험료를 내가 내라.’ 이런 식으로 넘긴다고 한하는데 저희들은 청약이나 보험 같은 걸 누군가 해주지

않다 보니까 그걸 뒤늦게 알게 되기도 하고 그 기간도 늦춰지는 것 같아요.” _D

셋째,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들이 경험하는 또 다른 어려움은 이들이 정신건강 측면에서 취약하다는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가정이 아니라 시설에서 성장한 경험으로 인해 청년들은 충분히 자기의 생각과 의사를 표현하고 이에 대해 수용 받고 존중받는 기회를 얻지 못하였고 이러한 상황이 축적됨에 따라 무기력하거나 자존감이 낮다. 이미 높지 않은 자존감은 시설퇴소 후 이 세상에서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것을 느끼며 더 낮아지기도 한다.

“통장을 나 스스로 만들지도 못하고 부동산 계약을 나 혼자 스스로 하지도 못하고 전세를 알아보는 것조차도 힘들기 때문에. 혼자서는. 그런 거를 혼자 하다 보면 되게 내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그런 걸 느끼는 순간 자존감이 진짜 바닥으로 진짜 뚫고 들어가고...” _E

이러한 정서적 취약함으로 인해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사업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이 낮은 청년들은 이내 본인이 대상이 되지 않거나 지원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단하고 사업에 신청하거나 지원하지 않는다. 또한 주변의 가스라이팅에도 취약하다. 나아가 청년들은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등 진단을 받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도 하며 시설퇴소 이후 주변인의 자살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시설을 퇴소한 청년들이 우울감이 높거나 자살 생각 비율이 높은 문제는 선행연구에서도 이미 강조한 부분이다(이상정 외, 2020).

“뭘랄까... 우울하고 너무 자신감이 없어서 자기가 지원을 못 받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오거든요.. (중략) 저도 공황장애를 좀 심하게 앓은 적이 있어서 지하철에서 진짜 기절해 본 적도 있고...” _E

“애들이 생각보다 자존감이 낮거나 의존도가 높으면 조금만 잘해주면 되게 잘 휘둘리거든요. 가스라이팅을 잘 당해요.” _J

“시설에서 나온 애가 자살을 하고, 또 다른 애가 자살하고 또 저희 생활관 애가 자살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른 애가 또 자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20대도 안 된 네 명이 연달아서.” _I

이러한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상황에서 청년들은 심리 상담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성인이 된 후에 갑자기 모르는 사람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가 쉽지 않고 상담자가 바뀔 때마다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기도 쉽지 않다. 이에 청년들이 바라는 심리 상담의 방식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동안 별도로 진행되는 심리치료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형태의 상담이었다.

“상담자에게 제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처음 보는 사람인데 ‘제가 사실은 이랬고요, 이랬고요.’라는 하는 것들도 아쉽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중략) 사실 저도 그렇고 상담을 받아봤기도 했지만 사실 제 이야기를 꺼낸다는 게, 갑작스럽게 꺼낸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성인이 돼서 그 이야기를 꺼내는 건 쉽지 않고.” _D

“저는 일반적인 가정에서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시설에서) 엄마가 생기고 아빠가 생기고 동생들이 생기면서 그 가정 안에서 제가 배운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리고 잘 사는 가정도 결국에는 저런 문제들이 있구나. 다 똑같구나. 엄마 아빠 싸우는 건 다 똑같고 우리 가족만 유별난 게 아니구나. 그런 내용들을 (시설) 엄마를 만나고서 같이 살아오면서 내가 겪어오면서 많이 느꼈거든요. 그니까 결국에 보육시설이나 그룹홈에 사는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어떤 (시설) 엄마 밑에서 어떻게 크냐가 틀린 거잖아요. 저는 치료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_B

넷째, 시설퇴소 이후에 청년들이 경험한 어려움으로 가장 자주 등장한 주제는 관계에 관한 것이다. 사회적 관계나 고립에 관한 어려움은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에 관한 선행연구(예: Cunningham & Diversi, 2013; Mendes & Rogers, 2020)에서도 이미 강조된 부분으로 정익중, 김주현(2019)의 연구에서는 이를 ‘고립무원’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시설에서 생활하는 동안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많은 사람과 함께 생활했던 청년들은 퇴소 이후 물리적 환경의 변화뿐만 아니라 관계의 변화를 경험한다. 청년기에 주변의 관계가 변화하는 것은 비단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대학에 진학하거나 직장에 들어가면서 살던 지역을 이동하기도 하고 그 외에도 청년기에 발생하는 다양한 생애 사건을 경험하면서 주변 관계의 변화를 경험한다.

특히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에게 주변인과의 관계가 어려움으로 부상한 이유는 이들이 자기 자신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거나 유지하는데 취약하기 때문이

다. 대인관계에서 상대방과의 친밀감이 발달하고 그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자기공개(Laurenceau, Barrett, & Pietromonaco, 1998)이다. 그런데 이들에게 시설에서의 성장 경험은 쉽게 공개하기 어려운 주제일 수 있다.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임을 드러내기 어렵다면 본인에 대해 의도하지 않게 거짓말하거나 숨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것은 중장년이 되더라도 여전히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이다.

“양육시설에 성장을 한 게 제 선택이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제가 큰 실수를 저질러서 전과를 숨기는 것 마냥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혹은 성장 환경 얘기할 때마다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대화를 회피하거나 뭔가 우물쭈물하는. 이게 내가 잘못된 게 아닌데 제가 그렇게 하는 게 너무 괴롭더라고요. (중략) 저희 출신들 중에 흔히 말해서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의사 되신 분도 있고 변호사 되신 분들도 있거든요. 정말 몇 십억 사업체를 운영하신 분도 있고. ‘아직까지 나도 내가 속한 필드에서 오픈을 못했다. 내 와이프한테밖에 오픈을 못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자식이나 장모님도 모른대요.” _J

“대인관계를 맺는 게 계속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숨겨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처음부터 당당하게 오픈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계속 숨기고 사람들을 대하기 때문에 그게 점점 어려워지고.” _F

더불어 시설에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기 생각이나 의사 표현을 하지 못했던 청년들은 대인관계에서도 불편함을 겪을 때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을 학습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로 인해 힘들더라도 괜찮은 척 위장하기도 하고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꺼리거나 겁내기도 한다.

“티를 안 냈어요. 티를 내는 게 싫어서. 힘들다는 티를 잘 내는 성격도 아니고 그냥 다 괜찮은 척하고 다녔어서 다른 사람들도 잘 몰랐어요. 제가 어떻게 힘들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몰랐었어요. (중략) 낙인이 너무 강하게 찍혀 있어서. 그래서 정상적인 가정에서 살아온 척을 하거든요.” _E

“제가 힘들다고 얘기하면 좀 더 안 좋아질까 봐. 그래서 거의 얘기를 안 하려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저를 좀 부담스럽거나 아니면 거부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 거부를 할까 봐.” _H

청년들이 타인과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방식이 서툰 이유는 이들을 둘러싼 지지체계가 협소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절대적인 관계, 변하지 않는 관계는 누구에게나 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부모자녀 관계는 다양한 인간관계 중에서 상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관계에 가깝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들은 변하지 않는 주요 대상과의 관계가 결핍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변하지 않는 관계, 즉 버팀목이 있는 상황에서 그 외의 대인관계에서 단절을 경험하는 것과 버팀목이 없는 상황에서 주변인과 관계의 단절을 경험하는 것은 다르다. 이런 상황에서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들은 ‘이어짐이 되지 않는’ 대인관계에 대해 더욱 심리적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그분들이 지금까지 이어오지는 않았었어요. 사실 그런 이어짐이 되지 않는 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고민인 것 같아요. 좀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나를 계속 알아주시는 분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오히려 부모님이라는 존재가 더 좀 크다. 왜냐면 부모님은 계속해서 쪽 있어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런 분이 저에게 일단 없어서.” _A

그 외에도 청년들은 어릴 때부터 가졌던 주변인이나 어른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느낀다. 또한 시설을 퇴소한 후에 ‘서로 힘든 얘기만 쏟아내기 바쁜’ 시설 친구들과 멀어지면서 ‘말할 사람이 없어서 집 안에서 며칠 내내 우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시설을 퇴소하고 성인이 된 후에 도움을 주거나 인생은 누구에게나 어렵고 어느 직장이든 힘들다고 말해주는 어른이 없어서 청년들은 본인이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해 더 크게 느끼기도 한다.

“저희 아이들이 어쨌든 부모에 대한 그게 안 좋잖아요. 그래서 어른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 같아요. 기반이.” _F

“대학을 진학하는 과정에서 (시설) 친구들과의 관계를 좀 멀리 뒀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서로 너무 힘들어서. 서로 너무 힘들기만 해서 힘든 이야기만 쏟아내고 매번 같은 이야기만 반복돼서 너무 뭔가 좀 힘들었어요.” _C

“제가 애를 써서 노력해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아무도 연락하지 않고 그냥 집에 혼자 있고 싶거든요. 근데 약간 감당이 안 되면 진짜 며칠 동안 울거든요. 근데 그러면 몸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_H

한편 핵심 지지체계인 어른의 부재는 시설퇴소 이후 10여 년이 지나 30세가 되어 자립에 성공한 시점에 생각지 못한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독립 가구를 형성하여 두 자녀를 양육하는 F의 경우에는 퇴소 직후에는 정작 부모의 빈자리를 느끼지 못하다가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크게 느꼈다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엄마 아빠 없는 게 그전까지는 우리 신랑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정말 부모가 꼭 필요해?’라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우리 아이를 낳으니까 왜 엄마 아빠가 필요한지. 그래서 ‘좋겠다.’ 이제서야 ‘좋겠다.’가 나오더라고요. 그전에는 엄마 아빠 있는 애들 좋겠다, 부럽다라는 생각을 사실 안 해 봤거든요. 근데 요즘에 ‘좋겠다, 엄마 아빠 있어서.’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어요.” _F

이처럼 지지체계가 충분하지 않거나 결핍된 상황에서 청년들은 힘든 일을 겪어도 편하게 연락할 사람이 없다고 느끼기도 한다. 그로 인해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들은 반려동물에 의지하거나 혹은 주변인과의 관계를 회피하면서 이민을 희망하고 준비하기도 한다. 때로는 고립·은둔 상황에 놓이기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악재가 한꺼번에 닥쳐버리니까 사람이 제정신으로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다 포기하고 진짜 그냥 집에만 누워 있고. 밥 사러 갈 때 편의점만 나갔어요. (중략) 진짜 환경 탓 많이 안 하고 진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산 결과가 이건가’라는 생각을 했고 막상 그 상황이 되니까 편하게 연락할 사람이 진짜 생각보다 없는 거예요.” _J

“제가 사람한테 의지를 하고 상처를 되게 많이 받고 또 상처받았다는 걸 티를 잘 안 내거든요. 그냥 약간 굶어 있는 그런 느낌인데. 전화로 상담해 주시는 분이 강아지 한번 키워보는 게 어떻겠냐 해서 키웠는데 이제는 제가 강아지한테 너무 의지를 하고 있어서 (중략) 제 꿈은 이민가는 거거든요. 낙인도 그렇고. 아무래도 아직은 세상에 눈이 너무 매서우니까 자유로운 국가에 가서 사는 게 낫지 않을까 하고. 그래서 돈을 모으고 있는 거고. 국가에서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가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_E

(4) 중재적 조건

중재적 조건이란 어떤 현상 안에 속해 있는 구조적 전후 관계로써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조장하거나 강요하도록 작용하는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상황을 의미한다. 중재적 조건에는 시간, 공간, 문화 등이 포함된다. 연구에서 발견된 중재적 상황은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햇빛보다는 그늘’로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중재적 상황은 열악한 시설 환경, 시설폐소 자립준비청년 지원 증가, 자립지원제도의 한계와 어려움, 사회적 시선과 낙인 등 4개의 범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중재적 조건인 열악한 시설환경은 구체적으로 열악한 근무환경, 집과 다른 환경, 시설 간 편차 등의 하위범주로 구성된다. 청년들이 성장한 아동양육시설이나 청소년 보호시설은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도 특히 근무환경이 열악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생활시설의 특성상 주로 2~3교대 형태로 운영되는 근무환경은 열악한 노동강도를 동반한다. 그로 인해 종사자 이직이 빈번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상황이 보호아동 입장에서는 ‘엄마가 자주 바뀌는’ 문제가 된다. 또한 교대제 근무로 운영되는 생활시설의 특성상 당사자들과 가장 가까워서 활동하지만 실천역량을 높이기 위한 종사자 대상 보수교육이나 역량강화 기회도 충분하지 않다.

“인수인계가 되어야 하는 직업이에요. 주간이랑 야간이랑. 만약에 주간에 일하던 선생님이 주간에 마무리를 못한 게 있으면 그걸 또 집으로 가져가서 야간 선생님한테 전달을 해야 되니까. 저희 반이 아니라 다른 반 선생님 같은 경우는, 퇴근 지문을 찍거든요. 저희가 출근, 퇴근 지문을 찍는데 퇴근 지문을 찍고 다시 일하러 들어가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출퇴근 시간이 2시간 걸리시는데도 그냥 들어가서 다시 일을 하시더라고요.” _E

“시설에서 애들이 어릴 때부터 사는 애도 있으니까. 자기는 처음에는 그분이 엄마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엄마가 바뀌었대요. 어릴 때 심정을 얘기하는 거야. 엄마가 또 바뀌고 또 엄마가 바뀌고 그런 박탈감을 여러 번 경험하면서 ‘이게 엄마가 아니구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_F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종사자가 자주 교체되거나 보수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의 대가는 고스란히 청년들에게로 돌아온다.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나 제도에 대한 지식을 종사자가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기도 하고 과다한 업무로 인해 퇴소한 청년들의

사후관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시설환경의 문제는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에 관한 다른 연구에서도 빈번히 등장한다. 주해란, 마미나, 이예진, 황소연, 안태구(2022)의 연구에서는 생활지도사가 어른의 표본으로 인식되어 퇴소 후 대인관계나 직장 상사와의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생활지도사가 주 양육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업무환경이 조성되어야 함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시설 선생님, 원장님들보다 오히려 제가 정보를 더 아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_A

또한 시설보호 인원이 10명이 넘어가는 순간 ‘집처럼 자연스럽게’ 생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시설의 규모가 커질수록 ‘선을 지켜야 해서’ 종사자와 아동 간 유대관계를 형성하기 쉽지 않고 단체생활로 인해 지켜야 할 규칙은 많아지며 개인 공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시설환경으로 인해 청년들은 하루빨리 퇴소하고 싶어하기도 한다(유영림, 양영미, 박미현, 2015).

“시설에 있을 때는 자연스럽게 볼 만한 게 없어요. 해주는 대로 다 받아 먹고 케어 받고 하나 까.” _A

“대단위 보육원에서는 각자 맡은 업무가 있고 각자 해야 될 게 있고 또 늘 선을 지켜야 된다고 압박하는 기관장이나 재단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되기가 쉽지 않죠.” _B

그런데 흥미로운 부분은 시설환경이 집과 유사하지 않은 속성, 즉 시설과 집의 격차가 최근 시설 내 아동 인권이 강조되면서 더 심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설아동의 인권 문제가 강화되면서 보호아동들에게 말을 예쁘게 하지 않으면 사회복지사가 해고되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집처럼 훈육하기’가 더 어려워졌고 이것이 시설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망치고 일반 아이들과의 격차를 더 벌린다는 것이다.

“시설에서도 아이들 인권의 문제 때문에 말을 예쁘게 하지 않아도 사회복지사들이 잘리는 상황이니깐요. 근데 자기 자식 키우면서 어떻게 말을 예쁘게만 할까요?” _B

“시설에서 인권이 진짜 필요하긴 하거든요. 정말 아이들이 학대당하거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필요한데. 좀 선이 분명하지 않구나, 이 부분이. 이게 오히려 아이들을 더 망치

는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이 아이들의 의견을 그대로. 사실 애네가 그만큼 성장한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잖아요. 대부분. 아직 학생이고 어리기 때문에. 근데 그 아이들 모든 의견을 받아들여서 약속이라든지 교육 부분에 있어서라든지 이런 게 다 배제되면은 오히려 이 아이한테는 역효과인 거죠.” _F

한편 열악한 시설환경은 시설 간 격차 문제를 통해서도 나타난다. 우선 보호 형태별 격차 차원에서 보면 가정위탁 보호아동의 경우 진로 교육이나 자립지원에서 모두 서비스가 배제되어 있거나 충분하지 않다. 선행연구에서도 자립준비도 측면에서 가정위탁 보호아동이 취약하거나(정익중, 김주현, 2019; 홍나미, 박주혜, 강현주, 2023) 아동보호시설과 청소년보호시설 간에 지원 서비스의 차이가 있는(김지연 외, 2022) 문제가 강조되었다. 보호 형태별 격차뿐만 아니라 같은 유형 안에서도 시설 간 지원의 격차가 발생하기도 한다. 예로써 시설마다 외부 지원금이나 교육지원, 혹은 퇴소 시 받게 되는 지원금 등에서의 차이가 그것이다. 더불어 지역 간 격차 문제도 있는데 지방시설 출신의 경우 수도권보다 정보획득이나 지원 측면에서 모두 열악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들이 시설퇴소 이후에 혼자서 자원을 찾고 이용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가정위탁, 그룹홈이 교육의 사각지대이고 그 친구들은 사실 지원 자립 교육이 필수는 아니잖아요. 필수가 아니다 보니까 모르는 경우도 너무 많고.” _D

“이전 시설에서는 그런 걸 잘 몰랐는데 학교 장학금 그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오니까 외부 장학금을 받아서 학원을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_H

“진짜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지방에 있고 그런 걸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서포터즈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그런 도움이 필요할 거더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방 출신이에요. 제가 ○○에 있는 아동양육시설 출신인데 저는 진짜 혼자 다 발품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자립 정보나 LH 이런 자립 정보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다 구글, 네이버에 검색을 해서 제가 다 찾았어요.” _J

두 번째 중재적 조건은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나 제도, 지원사업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로

인해 민관 영역에서 모두 관련 정책 및 지원사업이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다. 우선 공적 지원제도를 보면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퇴소 시점에 디딤씨앗통장이나 500만 원 이하의 자립정착금에 의지하던 양육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들이 이제는 최대 2,000만 원의 자립정착금이나 매월 40만 원의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국민권익위원회, 2016). 그러나 지원제도의 확대로 인한 결과가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자립수당을 받는 동안 소득활동을 위한 준비를 하지 않다가 수당이 종료되는 시점인 20대에 생계급여 수급자로 전락할 위험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친구들 되게 좋아 보여요. 이번에 대학교 간 친구가 자립수당도 받고 기초생활수급비도 받아요. 대학생이 이제 기초생활 수급을 받을 수 있어서. 그래서 그 친구가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 그냥 학업에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안 하니까 그런 자립 준비 청년 커뮤니티에도 나올 수 있고. (중략) 그런데 어떤 친구는 일을 할 수 있는데 일을 뭘가 안 하는 형태로 있으니까 50만 원 정도밖에 못 받는데 그냥 그 50만 원으로 살더라고요.” _C

“그래도 지원금 받는 게 있어서. 자립수당 40만 원, 수급비 70만 원 그리고 다른 장학지원 재단에서 한 40만 원 이렇게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인턴하면서 70만 원.” _H

민간에서도 대형 모금단체를 중심으로 캠페인을 통해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이 확대되고 있다. 그로 인해 청년들이 지원사업을 찾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밭에서 수확하듯이’ 매우 많은 지원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공적인 영역이나 사적인 영역에서 모두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청년들이 다양한 자원을 찾고 이용할 수 있는 상황적 맥락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잘 찾으면 애들 지원받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냥 정말 밭에서 수확하듯이 너무 많아요.” _I

“돈은 어떻게 해서든 어떤 방법으로든 어필해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돈은 어디 재단이나 어디 기업이든 떼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_A

세 번째 증재적 조건은 자립지원제도가 확대되었음에도 신청이나 이용 과정에서 한계와 어려움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우선 신청과정에서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상황’으로 인해 정작 정책의 당사자인 청년들이 해당 정책을 모르는 문제가 존재한다. 더불어 정책정보가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고 사회복지 수급권이 신청주의에 기반하기 때문에 스스로 적극적으로 찾지 않는다면 여전히 제도에서 배제될 위험이 존재한다. 또한 담당 공무원이 자립수당 등 자립지원제도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서 청년들이 지원을 요청하러 방문하더라도 충분히 안내해주지 못하는 문제도 존재한다.

“다행히 기초생활수급 지원이 됐거든요. 사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누가 알려주질 않았거든요. 자립하고 나서도 기초생활 수급이 가능할지 안 할지 몰랐어요. 알려주지 않으셔서... (중략) 동사무소에 가서 자립수당 신청해 보기 이런 것들을 해봤는데 자립수당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 당시가 한 1~2년 전이기는 한데 서울에서도 그랬고 OO 지역에서도 두 번을 방문했는데 자립수당이 뭔지 모른다고 이렇게 반문을 하셨고 오히려 저한테 그게 뭐냐 설명해달라. 어떻게 보면 되게 조금은 공격적인 것처럼 ‘그게 뭔데, 뭐냐’ 막 이렇게 하니까 되게 위축되더라고요.” _D

제도 신청과정에서의 한계와 어려움, 나아가 불합리함은 자립수당뿐만 아니라 생계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도 발견되었다. 청년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자신을 보호하지 않았거나 혹은 관계가 불편한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또한 선지급 후지원으로 운영되는 국가장학금의 지급방식으로 인해 당장 입학 전 시점에는 오롯이 혼자서 등록금을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자립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임을 입증해야 했는데, 이를 위해 관계가 썩 좋지 않았던 시설 선생님께 부탁하기 꺼려져서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상황도 있었다.

“제가 기초수급 탈수급을 했다가 다시 수급자가 됐는데 엄마랑 연락을 끊은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엄마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고 하니까 저는 엄마가 어디 사는지 몰라서 그렇대요. 이게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는지 안 받는지 1년 치 통장 내역을 다 검토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저는 시설에 살았으니까 부모님의 영향이 없는 줄

알았는데 아빠는 진짜 연락이 단절됐으니까 모르는 게 맞는데 엄마 같은 경우에는 동생이 한 번씩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를 건너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엄마한테 수급자 동의 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_H

“대학교 1학년 때는 국가장학금 신청해도 나중에 나오거든요. 먼저 제가 지출 후 지급받는 건데.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1학기 때는 그 돈 낼 돈조차도 없었으니까 시설 원장님이 대신 내주셨어요.” _A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확인서를 시설 선생님한테 받아야 돼요. 시설에서 항상 떼주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랑 유대관계는 좋지만 혹시나 진짜 시설과 이런 게 안 좋은 애는 그걸 요청하기조차 싫을 수도 있잖아요.” _F

신청과정에 이어서 정책을 이용하는 과정에서도 한계가 존재하는데 이는 현금 급여와 주거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들이 이용하는 현금 급여에는 대표적으로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이 있는데 현재 두 제도 모두 최근 몇 년간 급여 수준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청년들은 오히려 수당을 100% 받기 위해 수당을 받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장기적으로는 미래를 준비할 기회를 놓치게 한다는 측면에서 무조건적인 자립수당이 독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하였다. 자립정착금 역시 한 달에 용돈을 3만 원 받으면서 생활하던 청년들이 퇴소 직후에 금융관리에 대한 교육이나 어떠한 사후관리 없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받게 되면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측면에서 독이 될 수 있다.

“진짜 필요한 애들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데 몇몇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냥 은둔형 외톨이처럼 수당만 받고 사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을 하면 수당이 깎이거나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일을 하면은 더 잘해서 돈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일을 했으니까. 그러면 자기가 정말 나 ‘이만큼 저축을 하겠다.’ 저축성으로 준다는지. 좀 그렇게 미래를 위해서 좀 할 수 있게끔 하면 좋을 것 같은데” _F

“한 달에 3만 6천 원. 근데 그게 크고 적고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하다가 갑자기 500만 원, 1천만 원 받으면 제 친구들 중에 제대로 쓰는 친구들 거의 못 봤어요.” _C

현금급여에 이어 주거지원 측면에서는 월세 문제가 대두되었다. 월세에 대한 부담이 해결되지 않는 주거지원은 청년들에게 불완전한 제도일 수밖에 없다. 또한 집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거나 선택의 폭이 좁거나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등 계약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 역시 청년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었다.

“제가 행복주택이 될지 국민임대 될지 뭐가 될지는 몰랐었고, 각각의 특징이 있는데 이런 것도 제가 선택할 수는 없었고 내가 몇 평의 집을 들어갈 수 있는지도 아예 모르고, 주는 대로 가야 돼요. 집도 못 봤어요. 집도 그냥 ‘여기 있으니까 너 갈래?’ ‘네. 갈게요.’ 하니까 그럼 계약하자 해서. 계약하기 전에 그래도 방을 봐야 하잖아요.” _A

그 외에도 자립지원제도의 지역 간 격차 문제도 발견되었다. 자립정착금의 지역 간 격차 문제는 2010년대 중반부터 계속해서 제기되는 문제였다. 2022년에는 자립정착금의 지자체별 격차를 해소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하였으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수도권 시설에서 퇴소한 청년들이 수도권의 다양한 자립지원사업을 경험해 보고 싶어서 지역을 이주하는 예도 있었다.

“제가 자립준비 5년 동안 지원이 많잖아요. 그게 서울에 많이 있으니까 어차피 정착을 하려면 지원받을 수 있을 때 올라가서 살아보고 안 되면 다시 내려오고, 지원받으면서 정착을 하자 싶어서 올라온 거 같아요. 자립지원도 지역마다 차이가 좀 심한 것 같아요.” _H

네 번째 중재적 조건은 사회적 시선과 낙인으로 여기에는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시선뿐만 아니라 청년의 정신 건강에 대한 시선 모두 포함된다. 정상적인 가족에서 생활하지 못한 청소년이라는 낙인은 개인의 정체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낙인의 내재화로 이어져서 청년들은 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이기 쉽다(설경옥, 황다솔, 심진화, 2018).

“자립을 제일 방해하는 걸림돌? 사회의 인식. 사회의 인식들이 쉽지 않죠.” _B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청년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정신 건강에 대해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한국 사회에서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황은 ‘모자란 애’, ‘불량’, ‘정상이 아닌’ 개념과 연결된다. 그로 인해 시설에서 보호를 받을 때도 심리상담을 받아야 하는 상황은 비난을 동반하는 과정이었고 시설을 퇴소한 후에도 심리상담이나 정신과 상담은 여전히 주변에 숨겨야 하는 사실이 된다.

“시설 안에서도 심리 상담받겠다고 하면 애들이 ‘재는 부족한 애야, 재는 좀 모자란 애야.’라는 시선도 저희들끼리 안에서도 있었어요.” _D

“제가 공황장애를 앓았을 때 저는 되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힘들어서 몸이 아파서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판정을 받고 나니까 약간 제가 불량인 것 같더라고요. 정상이 아닌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정신과 상담을 받을 때 다른 친구들이 ‘너 어디 가냐?’ 이러면 모른 척했어요. 그냥 약속이 있어서 가는 거다 했는데... 누구한테 정신과 다닌다고 그러면 ‘너 좀 이상한 애구나.’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정신과 자체가 좀 사회적으로 별로 좋지 않아요.” _E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회적 낙인은 여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시설 퇴소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청년 당사자들이 느끼기에 캠페인의 내용은 여전히 ‘빈곤 포르노’를 바탕으로 ‘불쌍한’ 이미지를 고착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 확대가 자칫 특혜를 주어 다른 청년과의 관계에서 역차별을 조장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도 면접에 참여했던 청년들은 염려하고 있었다.

“대형 NGO에서 하는 캠페인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너무 빈곤 포르노에 기반을 둔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의 캐릭터를 소모할 때 ‘불쌍하니까 도와주세요.’라는 거를 너무 각인을 많이 시켰어요. (중략) 역차별 얘기도 이제 나오고 있어요. 당사자들 중에서 나는 환경 탓 안 하고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가 싸잡아서 다 특혜를 받았던 것처럼, 왜 이렇게 내 노력을 인정해주지 않고 얘기를 하느냐.” _J

(5) 작용/상호작용 전략

작용/상호작용 전략이란 어떤 현상이 특정한 전후 관계나 조건에서 존재하고 나타나는 고 볼 때 발생한 현상을 다루고 조절하며 수행하고 반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립준비청년 이 시설에서 퇴소한 후 경험한 다양한 어려움을 다루고 조절한 상호작용 전략은 ‘뿌리와 햇빛이 약해도 적극적으로 살아남기’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상호작용 전략은 적극적으로 자원을 찾고 활용하기, 좋은 관계와 좋은 사람을 통해 도움받기로 구성된다.

첫 번째 상호작용전략인 적극적 자원 찾기는 생존을 위협하는 다양한 어려운 상황 앞에서 청년들이 대처한 대표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적극적으로 공적 지원제도를 이용하고 여기에서 발생한 부족분은 민간 지원사업으로 채우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전술한 바와 같이 자립지원제도를 신청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한계와 어려움이 없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청년들은 ‘1%의 가능성, 지원받을 희망으로’ 적극적으로 수급 정보를 알아보며 신청했고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자신에게 적용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때로는 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학 진학을 결정하거나 이사를 하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주거지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에 봉착하고 제도적 한계가 있었지만 주어진 환경 안에서 최선의 주거지를 찾기도 하였다.

“국취로 처음에 조경 기사 하다가 피부미용사하고 마지막에 전산 회계 자격증반 듣고 그러고 취업은 못한 상태에서 대학교 진학한다고 종료를 했어요. (중략) 사무소나 구청에 전화해서 수급자 관련해서 전화해서 문의할 거 있다니까 담당자 바뀌주신대요. 그래서 그때 수급을 어떻게 받는지 여쭙봤어요” _H

“저는 국가 안에 있는 사람이고 동사무소도 국가에서 관리하는 곳이고 어쨌든 어느 정도 1%라도 지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지고 갔던 것 같아요.” _E

그러나 공적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한다 해서 이것이 청년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이 나 부족한 부분을 모두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에 청년들은 카카오톡 채널, 포털 사이트, 자조모임 등을 통해 다양한 민간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재단이나 기업, 단체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공모사업에 지원하면서 일상생활의 부족분을 채우고 있었다.

“대학교 1학년 때였으니까 대학교 3학년 때까지는 받겠다라는 건 알고 지원했죠. 근데 휴학도 했어서. 휴학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 장학재단에. 1년 휴학하고 서울에서 영어 학원도 다니고 싶다. 그런데 그것도 허락해 주셔서 1년은 지원금이 학비로 안 들어가고 그냥 서울 생활비로 들어갔어요. 서울 집 구할 때도 돈 들어가고.” _A

두 번째 상호작용전략은 취약하고 협소한 관계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하는 상황에서 무력하게 있기보다 좋은 관계와 좋은 사람들을 통해 계속 지지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청년들은 자조 모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이를 통해 정보를 공유할 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친밀한 관계를 나누기도 하였다. 네트워크는 청년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다. 자조모임 커뮤니티를 통해 자신의 문제를 털어놓을 뿐만 아니라 자기 공개 과정을 연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의 중요성은 기존 연구에서도 강조되고 있다(이상정 외, 2020; 차유림, 민소영, 장혜림, 2022).

“친구들, 동생도 있고, 형, 누나들도 있었는데 약간 일반청년하고 조금 다른 그런 어려운 부분들. 예를 들어 이제 대학 다니기 어렵다거나 아니면 취업시장에서 대부분 밀려서 비정규직, 공장 이런 데에서 고생하는 것들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소통하고 공감도 하면서 그런 정서적인 교류를 나눌 수 있던 게 제일 좋았던 거 같아요.” _G

“자원을 되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게 되게 그렇게 정보를 많이 알고 하는 게 자립에 너무 많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커뮤니티 안에 있을 때 좀 많이 얻을 수 있고 정보를 알아도 두려워서 못할 수 있는데 ‘누구누구 이거 하나까 이렇게 됐대’ 이런 거를 실제 눈에 보면 하게 되더라고요.” _C

또한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들은 ‘의지를 다지고’ 자신과 같은 경험을 공유한 청년들과의 자조 모임 외에도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집단과의 만남을 통해 지지집단을 넓혀가기도 했다. 본인이 속한 집단의 관계망을 통하여 지지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대인관계 방식이나 ‘사람들 사이의 물’을 배워나가기도 하였으며 실제적인 도움을 받기도 하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지지집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지역사회 안에서 관계망을 구축하는 것이 강조되었다. 이는 박혜지, 이정화(2020)의 연구에서도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주를 위해

지역사회 기반의 사회적 지지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사람인 것 같아요. 저도 되게 제가 운이 너무 좋았던 게 되게 좋은 스승님을 만났는데 근데 그 형님이 굉장히 이제 좋은 말씀도 많이 해 주시고 제가 한참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도 좀 옆에서 많이 잡아주시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면서 영향을 또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려고 노력을 해야죠.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_I

“사람들은 저런 대화를 하는구나. 여기 사람들은 이런 거에 관심이 많구나. 여기 왔을 때도 놀랐던 게 만약에 뭐 먹으러 갔어요. 저한테 돈을 안 내게끔 저를 계속 막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잖아요. ‘나도 내가 하고 싶은데 왜 계속 돈을 못 내게 하나’ 했더니 ‘그냥 너는 다른 사람한테 가서 돈 쓰라’고 이런 것도 배우면서 이런 걸 내가 다른 사람한테 하면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죠. 좋은 거 같아요. 사람.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롤 같은 거를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_A

(6) 결과

어떤 현상에 대처하거나 그 현상을 다루거나 해결하기 위하여 취한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그에 따른 결과를 만들어 낸다. 이 결과가 언제나 예측할 수 있거나 혹은 의도한 대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결과는 현실에 바탕을 둔 실제적일 수도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잠재적일 수도 있다. 또한 현재에 바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미래에 나타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 발견된 결과는 ‘주체적 삶에서 공립(共立)을 꿈꿈’으로 명명하였는데 이는 구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주체적으로 삶을 배워나감’, ‘호혜적 돌봄 사회를 꿈꿈’ 등 2개의 범주로 구성하였다.

그렇다면 첫 번째 결과인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들이 주체적으로 삶을 배워나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며 어떻게 나타날까?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나를 알 기회가 부족했던 청년들은 퇴소 이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고 그 과정 속에서 다양한 대처를 통해 자기 이해의 중요성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비로소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 감정이 어떤지 등을 알아차리면서 나를 배워나간다.

“시설은 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를 생각할 시간이 없었어요. 내가 뭘 좋아하고... 과거의 나를 이해하고 지금의 나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행동 변화까지 쭉 이어서 생

각을 하면 나 스스로 태도가 바뀌어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까지 생각이 드니까 관계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_A

“26살이 돼서 (자기 이해의 중요성을) 알아 가지고, 이제 연습을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받아주고 자기가 아픈 거 예민하게 느껴도 되고 표현해도 되고 그렇게 해도 된다면 본인의 감정이나 몸 상태 이런 거는 숨기거나 무감각하게 안 지내도 되는 거잖아요.” _H

또한 이미 정해진 것처럼 보이는 길에서 수동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정하고 그에 따라 삶을 살아가던 청년들은 자신을 알아차리면서 다시 목표를 세우기도 한다. ‘빨리 보육원을 나오고 싶다’는 목표만 가지고 취업으로 이어졌던 길에서 경로를 이탈하여 뒤늦게 대학에 진학하면서 ‘처음으로 주체적으로 산다’는 느낌을 받기도 하고 ‘옛날처럼 살고 싶지 않다’고 결심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청년들은 온전히 자신의 인생이 되어감의 과정으로 이행한다.

“뒤늦게 대학을 진학하다 보니까 좀 뭔가 처음으로 주체적으로 산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게 보육원 안에 있을 때도 그렇고 취업이라는 행위도 내가 좋아서 했다고보다는 그 동기가 빨리 보육원을 나오고 싶다는 목적이 되게 컸기 때문에... 대학교를 선택한 것도 제 어떤 과거와 연관이 있지만 좀 주체적으로 내 삶을 살아간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 삶을 좀 잘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좀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_C

“기본적으로 제가 살고 싶었어요. 그냥 옛날처럼 살고 싶지 않았고. 그게 일단 기본이었던 것 같고.” _I

시설에서 성장했다는 것은 청년들에게 바꿀 수 없는 현실이며 기댈 가족은 여전히 없고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과 낙인 역시 완전히 사라졌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 좋은 관계, 좋은 사람들을 통해 지지와 힘을 얻은 청년들에게 나타난 결과 중 하나는 나를 드러낼 힘이 생겼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청년들은 자신이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임을 알릴 뿐만 아니라 ‘자립이 나에게 도움이 되었고’, ‘역울함에서 능력자’로 자신과 자신의 삶에 관한 생각과 관점을 바꿔나가기도 하였다. 더불어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의 정체성을 뛰어넘어 다른 정체성으로 자아상을 확장해 나가는 핵심적인 변화를 경험하기도 한다.

“자립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자립이 나에게 좀 많이 도움이 됐구나라는 생각으로 조금 관점이 바뀌었어요. 좀 억울하다는 감정이 그때 좀 많이 바뀌는 계기가 된... 억울함에서 능력자 혹은 할 수 있는 게 좀 더 많아졌고 그걸 더 일찍 한 사람이라는 것으로 조금 관점이 바뀌어서 그때 자기 효능감이 높아지고 자존감이 좀 많이 높아졌었던 것 같아요.” _C

“사실 오픈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도 없었지만 오픈하고 나서도 ‘뭐 어떡해, 내가 내 과거인데 이게.’ 약간 이런 마인드로 살았던 것 같아요. (중략). 자립입대를 한 이유가 우선은 이것도 저만의 생각인데 저는 갔다 와야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으로서만 남아있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평생 성장 환경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갖고 살 생각이 없거든요. 성장 환경은 이랬지만 다른 일반청년들하고 공감대도 형성을 하고...” _J

청년들이 주체적인 삶을 살아나가기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시설퇴소 직후 경험했던 문제들이 일정 부분 해결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안정적 일자리를 통해 경제 상태가 개선되기도 하고, 가족이 있던 청년들은 본인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가족관계의 적정선을 조율하기도 한다.

“아근 수당이라든가 특근 이런 게 달라지긴 하는데 많이 별 때는 한 달에 360 벌 수도 있고 세후로. 저금은 200 정도 하는데 적금도 하고 주식 투자 같은 것도 조금씩 해보고 있어요.” _A

“성인 되고 나서 깨달은 게 아빠도 이제 피해자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원망이나 이런 마음들이 사라지면서 좀 연락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좀 좋아진 것 같아요. 관계가.” _G

두 번째 결과는 호혜적 돌봄 사회를 꿈꾼다는 것이다. 호혜적 돌봄사회를 꿈꾸는 과정에 서 발견되는 첫 번째 양상은 보답이다. 청년들은 자신을 도와준 분들을 롤 모델로 삼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답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처음으로 나를 믿어주고 내 말을 인정해준’ 시설의 엄마 계장님을 실망시키지 않겠다는 생각은 삶의 지침이 되기도 하고, ‘힘든 상황에서 등록금을 구해준’ 계장님께 보답하기 위해 대학 졸업까지 우수한 성적을 받으며 보답하기도 한다.

“나한테는 처음으로 나를 믿어주고 내 말을 인정해주고 그런 내 옆에 있어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 실망 안 시켜야지’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중략) 이 돈(등록금)이면 실은 다른 아이들 학원을 몇 군데나 더 보낼 수 있는 돈이니까. 그래서 지원을 안 해주려고 했는데 이제 저희 엄마(계장님)가 ‘안 된다. 무조건 애 받아야 된다. 그리고 성적으로 확인시키겠다.’ 그래서... 저 입학하는 날 학교 데려다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B+같은 소리 말도 안 된다. A+ 받아와라.’ 그랬어요. 근데 한 학기 점수 딱 나오고 나니까 저는 그 위원회에서 그냥 졸업시킬 때까지 돈을 줘야 될 애가 됐죠. A+ 5개, A 3개.” _B

시설폐소 직후에 직면했던 크고 작은 어려움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관계망의 도움을 받았던 청년들은 무엇보다 본인과 비슷한 경험을 하는 후배 자립준비청년들을 돕고 있었고 장래에도 기여하고 싶어 했다. 강도 높은 업무로 힘든 상황이지만 시설폐소 후 똑같은 어려움을 경험하는 후배들을 위해 휴일에 멘토링 프로그램에 멘토로 참여하기도 한다. 또한 ‘나에게 엄마가 되어주었던 선생님처럼 (시설의) 동생들에게 엄마 같은 사람’이 되어 명절에 아이를 데리고 오는 시설 후배의 아이를 돌봐주기도 하며 자신처럼 육아로 고생할 후배들을 돕기 위해 후배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본인이 돌봐주겠다고 다짐하기도 한다.

“어른이 항상 내 옆에 있다는 걸 느낀 게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부모가 있는데도, 가족이 있는데도 이렇게 방황을 해야 되는 것들이 얼마나 그런지 너무 잘 아는데 동생들은 안 그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시설 계장님을 지칭) 같은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냥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_B

“검정고시 준비를 쉬는 날 틈틈이 가르치고 있어서. 멘토링을 받는 학생들도 좀 잘 성장해서 또 다른 사람을 멘토링 해줄 수 있는 건강한 어른으로 되게 하자고 하시는데 관장님도 저를 많이 도와주셨으니까 그냥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_E

“애를 낳아서 키우는 게 진짜 부모님이 필요하다 진짜 많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독박 육아니까. 다른 사람들은 친정엄마나 혹은 양가 부모님께서 다 도와주시는데 저희는 그게 너무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애들 키울 때 특히 어릴 때. 그러니까 일할 생각은 아예 꿈도 못 꿔고. 그래서 저는 우리 시설폐소 자립준비청

년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분명 비슷한 상황에 애들이 생길 텐데 그러면 나는 이제 내가 봐줘야겠다 맨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애들한테 ‘만약에 혹시 너희 결혼해서 애 낳으면 내가 봐줄게.’ 이러면서.” _F

더불어 주변인의 범위에 국한하지 않고 건강한 공동체 사회를 꿈꾸며 기여하는 모습도 청년들에게서 발견되었다. 청년들은 건강한 가족을 만들고 싶어 했고 지역사회 안에서 서로 돌보는 공동체를 꿈꾸며 이를 위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더 나아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의 삶에 기여하기를 희망하였다. 이를 통해 누군가에게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바람을 표현하였다.

“누군가를 도와주는 이유는 그 사람이 저로 인한 도움뿐만 아니라 어떤 주변 체계라든가 주변에 사회의 시스템 이런 거를 제가 전달해드리고 그 사람의 삶이 나아지는 거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제가 그랬기 때문에. 저는 언젠가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언젠가는. 한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_A

“여섯 분의(시설) 선생님이 이렇게 서 계시더라고요. 지금도 그 선생님들과 연락을 하고 있고. 그 선생님들이 가끔 물어요. 행복하냐고. 근데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솔직히 행복 한지는 잘 모르겠어서. 앞으로 하고 싶은 거는 그냥 그런 선생님들이 되고 싶어요.” _E

앞서 자립개념의 민감화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면접에 참여했던 청년들에게 자립이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나가기 시작하는 ‘독립’의 의미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상태로써 ‘상호의존성’의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었다. 출생 시점부터 누군가에 의해 태줄이 끊겨야만 생존이 가능했던 인간의 삶에 자립이란 애초부터 전 생애에 걸쳐 어느 순간에도 달성할 수 없는 불가능한 과업이다. 스스로 잘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순간에도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은 누군가에게 빚진 상태이거나 의존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공적이든 사적이든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한다고 해서 이들이 일방적인 수혜자인 것은 결코 아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에 누군가는 돌봄 제공자가 되고 누군가는 수혜자가 되지만 이 관계는 다른 시점과 순간에 언제든지 역전되기도 한다. 그런 맥락에서 시설을 퇴소한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과정은 일방적인 수혜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평생에 걸쳐 돕고 돕는 관계를 만들어주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수혜자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돕고 돕는 관계, 평생을 갈 수 있는 관계라는 것들을 심어줄 필요도 있고 그것들을 좀 프로그램들이 더 잘 좀 구체화해서 제공한다 면...” _D

표 V-2.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과정 축코딩

개념	하위범주	범주	축
시설에서 단계적으로 자립준비를 하지 못함, 청년기의 취약함, 퇴소 직후의 취약함	퇴소 후 다중취약 상태에 놓임	청년기와 퇴소의 중첩	인과적 조건
선택기회가 부족한 시설생활, 의사표현 기회 부족	선택 기회 부족	나를 알	
일상경험 부족, 진로경험 부족, 프로그램 범위 협소	경험 부족	기회 부족	
독학으로 준비, 다양한 직업을 모름, 갑자기 진로 선회	진로지원체계 부족	이미 정해진 듯한 길	
대학 진학을 고려하지 않음, 목적 없는 취업, 타인에 의한 진로결정	주체적이지 않은 진로 결정		
정해진 인생경로, 실패하면 돌아갈 곳 없음, 목표를 위한 도전이 두려움, 기회가 차단된 미래	경로 이탈의 두려움		
가정폭력과 갈등, 수급비 갈취, 원하지 않던 원가정 복귀	미성년기에 나를 힘들게 한 가족	줄곧 나를 힘들게 하는 가족	맥락적 조건
역부양 요구에 발목잡힘, 원가족과 관계 불편, 가족과 분리를 희망	성인 이후에도 나를 힘들게 한 가족		
학대와 차별의 경계, 시설 부적응, 무기력하게 만드는 시설생활, 시설간 폭탄 돌리기	쉽지 않은 시설의 삶	시설에서의 부정적 경험	
단순 기간 연장은 무의미, 공적 지원 기회를 차단하는 보호 연장, 생존을 위한 연장	제각각인 보호연장		
나를 지켜준 선생님들, 시설 선생님 신뢰	좋은 어른을 만남	시설에서의 긍정적 경험	
다양한 경험을 함, 시설에서의 성공경험 중요	다양한 경험과 성장		
2차 노동시장에서 일자리 시작, 취업·퇴소·수급 종료 중 택일, 창업 유지의 어려움, 시설에 퇴사가 눈치 보임	노동시장 진입과 유지의 어려움	노동의 어려움	중심 현상
첫 직장생활의 어려움을 말할 사람 없음, 조직 내 인간관계 어려움, 부당대우	조직 생활의 어려움		
어릴 때부터 시작된 생활비 마련 노력, 부족한 종잣돈으로 시작, 지출 부담	빠듯한 삶	의식주 해결의 어려움	
주거지 마련 과정에서의 어려움, 현재의 주거비 부담, 미래에도 염려되는 살 곳	줄곧 해결되지 않는 집		
보험정보 무지, 청약정보 무지, 돈관리 방법을 모름	위험 대비에 취약	정신적 어려움	
시도하지 않음, 낮은 자존감, 공황장애와 우울증,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함, 주변인 자살	정신건강에 취약		
심리상담 필요, 외부인의 심리상담은 비효과적, 생활보급형 심리상담 희망	정신건강의 도움을 바램		

개념	하위범주	범주	축	
관찮은 척, 긴장과 숨김, 대인관계 유지방식에 서툰	대인관계 어려움	나/타인과의 관계에 취약		
관계의 연속 없음, 주변인과 어른 불신, 내 자리와 소속감 없음, 말할 상대 없음, 시설친구들과 멀어짐, 도와줄 어른 없음, 독박육아, 시설친구들과 의지, 지지체계를 통한 정보에 취약	지지체계 취약			
반려동물에 의지, 이민을 희망, 회피와 고립	지지체계 결핍 대안으로서 회피			
의지할 어른 필요, 관계 안 자립 필요, 관계지원 필요, 다양한 관계경험 필요	관계 지원 필요			
종사자가 제도를 모름, 높은 업무 강도, 잦은 직원 교체, 교육기회 부족, 사후관리 미흡	열악한 근무환경	열악한 시설환경		중재적 조건
인권강조로 무너진 훈육, 10명이 넘는 순간 집과 다름	집과 다른 환경			
가정위탁 사각지대, 시설보호 시 지원의 편차, 시설퇴소 시 지원의 편차, 지방시설 퇴소자 사각지대	시설간 편차	자립지원 제도의 한계와 어려움		
정책정보 무지, 정책정보가 산발적임, 공무원이 제도를 모름, 신청과정에서 경험한 불합리, 자립지원 서비스 접근성 문제	자립지원 신청의 어려움과 한계			
무조건적인 자립수당은 독, 규모만 커진 자립정착금, 자립지원의 지역격차, 주거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주거지원, LH 계약과정의 불합리함	자립지원제도 이용의 한계	사회적 시선과 낙인		
정신상담에 대한 시설 내 낙인, 정신과 상담을 숨김, 정신질환에 대한 주변의 비난	정신건강에 대한 엄격한 잣대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부정적 시선과 꼬리표,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이미지를 고착시키는 캠페인, 역차별 인식 불편, 인식개선 희망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낙인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지원 증가		결과
현금급여 다양해짐, 급여에 의존, 다양한 민간지원사업, 주거지원제도	민-관 지원 확대			
수급정보를 알아보고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용, 제도이용을 위한 진학과 이사, 최선의 주거지원 찾기	적극적으로 공적지원제도 이용	적극적으로 자원을 찾고 활용하기		
공모지원 제출, 현금지원, 가능성에 지원, 일상생활 지원, 사례관리	민간지원사업으로 부족분 채움			
자조모임의 중요성 인식, 자조모임을 통한 정보공유, 자조모임을 통한 관계나눔	자조모임에 참여	좋은 관계, 좋은 사람을 통한 도움		
지지집단의 중요성 인식, 관계망을 통해 지지받음, 대인관계 방식을 배우나감, 주변인을 통한 도움받기, 관계기반 자립지원의 필요성 인식	다양한 사람과 집단을 만남			
자기이해의 중요성 인식, 나를 알아차림	나를 배우나감	문제를 해결하며 주체적으로		
꿈과 목표를 세움, 나를 돌보고 성장시킴, 내 길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	목표에 따른 선택과 결정			

개념	하위범주	범주	축
나에 대한 관점을 바꿈,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정체성을 뛰어넘음,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임을 알림	나를 드러냄	삶을 배워나감	
경제상태 개선, 안정적 일자리, 가족관계 개선	문제 해결		
나를 믿어준 분들께 보답하고 싶음, 후배들을 도움	주변인을 돕고 보답	호혜적 돌봄사회를 꿈꿈	
건강한 가족을 만들고 싶음, 지역사회 공동체를 꿈꿈, 누군가에게 기여하고 싶음, 의지할 만한 사람이 됨, 인식개선 활동에 참여	건강한 공동체를 꿈꾸며 기여		

3. 소결

본 연구에서는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이라고 명명되는, 시설을 퇴소한 청년 10명을 면접하였고 이를 통해 시설에서의 생활과 퇴소 이후의 과정을 살펴보았다. 면접을 시작하기 앞서서 연구진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들이 자립에 성공할 수 있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다른 청년들에게도 적용 가능한 경험과 사례를 정리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모든 면접과 분석과정을 거치면서 정리보다는 하나의 질문이 도출되었다. 인간에게 독립과 자립이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말할 수 있을까?

모든 인간은 돌봄 의존적 존재이고, 삶의 어느 한순간에도 주변의 도움 없이 혼자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취약한 존재이다. 의존해야 하는 시기에 돌봄을 받지 못한다면 그 개인은 생존하고 성장하지 못한다. 그런데 시장제도가 인간을 합리적이고 독립적인 존재로 가정하고 사회복지제도가 합리적 인간상을 바탕으로 한 시장노동을 전제로 하면서 인간은 자율적인 행위자와 의존적인 수혜자로 구분되고 돌봄의 가치와 돌봄을 주고받는 관계가 배제되고 주변화되면서 돌봄 수혜자는 타자화되었다(Orloff, 2009; Tronto, 2017). 그러나 모든 사람은 의존의 시기를 겪었으며 예외 없이 누군가로부터 돌봄을 받았기 때문에 돌봄이 필요한 타인을 돌볼 도덕적 의무가 있고 사회는 돌봄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해야 한다(Kittay, 1999). 따라서 돌봄 윤리는 인간의 돌봄 의존성(care dependency)과 이에 따른 취약성(vulnerability)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Engster, 2007; Kittay, 1999).

폴 브랜드와 필립 안시는 자신들의 저서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A Surgeon Looks at the Human and Spiritual Body』에서 인류학자 마거릿 미드(Margaret Mead)의 강연에서 들은 부러진 다리뼈 일화를 소개하였다(Brand & Yancey,

1980). 미드는 문명이 시작된 첫 번째 증거를 ‘부러졌다가 붙은 흔적이 있는 다리뼈’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 달아날 수도, 사냥을 할 수도 없으므로 원시사회에서 부러진 다리는 죽음을 의미했다. 그러나 부러졌다가 붙은 흔적이 있는 다리뼈는 누군가가 그 사람이 치유될 때까지 곁에서 도와주었음을 의미한다는 면에서 그것을 문명의 시작으로 보았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만났던 청년들은 청년기와 퇴소 직후라는 취약함이 중첩된 상황에서 가족과 시설 모두 그들에게 강한 뿌리가 되어주지 않는 맥락, 즉 ‘다리가 부러진’ 상태로 출발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립 이후의 삶과 사회는 어렵고 모르는 것 투성이 그 자체였다. 최근 몇 년간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제도적 한계나 어려움이 모두 해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들은 뿌리와 햇빛이 약해도 살아남기 위해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기도 하고 관계 안에 들어가기도 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주체적인 삶을 배워나가고 있었다. 무엇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청년들은 자립이 혼자 스스로 서는(自立) 것만을 의미하는 개념이 아니라, 함께 세워주는 공립(共立)임을 강조하였고, 돌봄의 가치와 돌봄을 주고받는 관계가 지속되는 사회를 꿈꾸고 있었다.

청년들이 꿈꾸고 바라는 돌봄의 가치와 돌봄을 주고받는 관계가 지속되는 서로 세워주는 사회가 되기 위해 퇴소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한다.

1) 퇴소 이전

첫째, 청년들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성장하던 공간인 아동양육시설, 청소년쉼터 등은 사회복지 시설분류체계에 의하면 모두 생활시설이다. ‘생활’의 개념적 정의 그대로 삶을 영위하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생활시설이 집 같은 시설에서 나아가 더욱 ‘집’에 가까워질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시설의 소규모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본 연구에서 만났던 청년들 모두 시설에서 생활할 때 취침 시간 등의 규칙, 대집단이 생활하는 공간으로 인해 스스로 선택하거나 개별 상황이 충분히 수용되지 못했던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이 과정에서 선택을 통해 자연스럽게 학습할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충분한 돌봄을 제공하면서 시설보호 아동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시설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시설은 공동생활가정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이미 아동양육시설이나 청소년쉼터 등에서 보호아동과 청소년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 참여했던 청년들은 ‘나를 알 기회가 충분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였다. 따라서 시설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성격과 내용은 이전보다 더욱 경험과 체험 중심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정해진 길로 진입했다가 되돌아오는 과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진로를 충분히 탐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형 진로 탐색 프로그램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시설퇴소 자립준비 청년의 온전한 성장을 위해서는 성인이 되기 전까지 청년들에게 핵심 돌봄 제공자 역할을 하는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과 처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동양육시설이나 청소년쉼터의 사례관리는 성장 과정 중에 있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서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일반 사례관리보다 훨씬 집중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종사자 1인당 적정 사례 수 조율, 교대근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장시간 근로나 시간외 근로 문제의 개선은 비단 종사자를 위한 이슈가 아니라 자립준비 청년을 위해 기본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부분이다. 무엇보다 시설에서 성장하는 동안 바뀌지 않는 돌봄자는 이들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고 퇴소한 후에도 청년들이 언제든지 돌아왔을 때 시설이 고향과 친정 같은 곳이 되기 위해서는 시설 종사자가 자주 바뀌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종사자의 역량 향상도 자립준비 청년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담보되어야 하는 주제이다. 이를 위해 슈퍼비전 체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지원, 시설 맞춤형 이수교육과 보수교육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된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시설, 즉 소년원 등의 종사자가 보수교육에서 제외되는 문제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설에는 언제든지 ‘생활보급형 심리상담’을 할 수 있는 인력과 상황이 준비되어야 한다. 청년들은 시설퇴소 전이나 후에 모두 정신적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지만 이에 관한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다. 시설에 있는 동안에는 ‘따로 상담이 필요한’ 아이로 분류되면서 낙인이 동반되기도 하고 무엇보다 처음 본 낯선 사람에게 본인의 삶을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시설에서 이들의 돌봄을 책임지는 사례관리자가 심리상담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갖추고 체계를 만드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2) 퇴소 이후

퇴소 이후의 지원을 위한 정책 방안은 본 연구에서 발견한 자립과정 모형의 중심현상과 중재적 조건을 중심으로 제안할 수 있다. 첫째, 중심현상에서 도출된 주제로써 시설에서 퇴소한 후에 청년들이 경험한 다양한 어려움 중에 위험 대비 전략에 취약하다는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각종 사회보험뿐만 아니라 실손보험, 주택청약제도, 금융관리 교육, 자산관리 교육 등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중심현상으로 나타난 관계 차원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퇴소 후 사후관리로 믿을만한 관계망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자립준비청년의 자조모임인 바람개비 서포터즈를 활성화하여 사회적 지지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서포터즈를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이나 권역별 자조모임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들에게 필요한 정보조언 제공을 위해 직종별 전문가와의 소규모 멘토링 또는 강연회를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며 다양한 지지체계를 만드는 방안이 이미 마련되어 운영되고 있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3). 이에 시설에서 퇴소한 시점에 맞춰 청년들이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에서의 연계성이 확보되어야 하겠다. 이 과정에서 자립지원전담기관이 핵심 역할을 하는데 청년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성장하던 시설의 종사자가 아닌 직원과 새롭게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부담이 사업 참여를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시설퇴소 전부터 지역의 자립지원전담기관과 연계한 사업 운영을 통해 담당 직원과 청년들이 충분한 라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자립지원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접근성을 높이려는 방안도 필요하다. 시설퇴소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다양한 지원제도와 사업이 있지만 얼마나 열심히 찾느냐에 따라 청년들이 활용하는 정도가 다른 부분이 발견되었다. 각자 가입한 다양한 커뮤니티를 통해 정보를 획득하고 있었는데 이보다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제도와 사업을 한데 모은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었다. 통합정보 플랫폼 구축을 통해 현재 대두되고 있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시설퇴소청년에게서 나타나는 정보 격차 문제도 일정 부분 개선될 수 있겠다. 시설퇴소청년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안내하는 교육을 제공할 때도 교육 내용과 교육방법, 신청창구, 강사 등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교육참여의 어려움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실질적으로 자립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제출해야 하는 자립확인

서가 서비스 이용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해 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라 기관 이용의 장벽을 낮추는 방안으로써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선배 자립준비청년이 인턴 등의 형태로 상주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넷째, 현재의 자립수당제도의 설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자립 수당은 보호종료 5년 이내에 월 4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자립수당 지급을 통해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이나 진로 준비를 위한 지원에 긍정적 기여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의 특성으로 인해 현금지원 외의 기능은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지원통합서비스가 운영되지만 다수의 청년들이 시설에서 퇴소한 후에 실질적으로 기관과 연락이 되지 않은 상태로 사후관리나 통합서비스에서 배제되고 있다. 따라서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금융교육을 받거나 멘토링에 참여하는 등 청년들이 최소한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자립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제6장 정책제언

- 1. 정책의 기본방향
- 2. 영역별 정책과제

이 장에서는 제2장과 제3장에 제시한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의 특성과 관련 정책 현황과 쟁점, 제4장과 5장에서의 실태조사 및 면접조사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이 장에서 제시한 정책과제들은 국정과제 중 특히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 기회 보장” 등을 포함하는 [약속 17: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 놓기]를 실현하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

1. 정책의 기본방향

현재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주어진 자립이라는 과업은 성인기로 이행 중인 일반 청년들의 과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들의 경우는 가정이나 주변의 지지체계가 부족하여 그 과업을 달성하는데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들에 대한 지원정책은 전체 청년정책 안에서 수립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정책의 기본방향은 “청년정책으로서의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정책의 수립”으로 제1차 년도 연구에서 제시한 비전인 “모든 청년의 권리보장과 삶의 질 개선”과 동일선상에 놓여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기본 방향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청년정책으로서의 자립지원정책 수립, 둘째, 자립준비청년 지원 제도의 자격기준 개선, 셋째, 개인 맞춤형의 통합적이고 단계적인 자립지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 기반 자립지원체계 구축 및 지역 격차 해소이다(그림VI-1).

청년정책으로서 정책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의 정책조정 및 총괄 기능 강화가 필요하며 자립지원청년의 대상자에서 소외되는 이들이 없도록 사각지대

57) 이 장은 백혜정 선임연구위원, 김지연 선임연구위원, 김승경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공동집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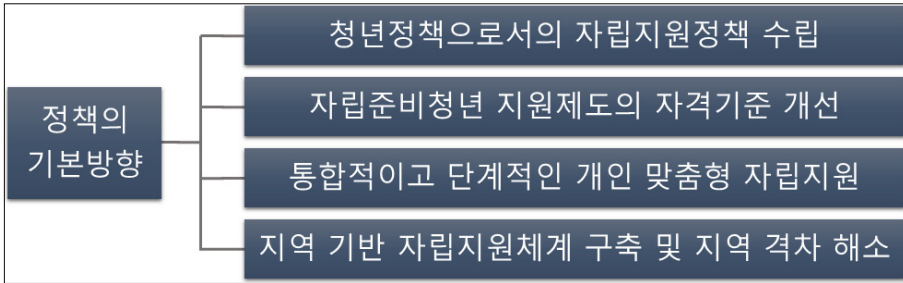


그림 VI-1. 정책의 기본방향

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립준비청년의 자격기준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정책들이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접근성 및 실효성 높은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 전반에서 당사자들의 참여를 강화해야 하는 한편 개인 맞춤형의 통합적이고 단계적인 지원과 지역 기반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제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정책으로서의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 수립

(1)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의 정책조정 및 총괄 기능 강화

현재 시설퇴소청년 지원정책의 주무부처는 시설유형별로 나뉘어 있다. 즉 양육시설 퇴소청년에 대한 정책은 보건복지부에서, 청소년시설 퇴소청년에 대한 정책은 여성가족부에서, 소년보호시설 퇴소청년에 대한 정책은 법무부에서 주로 담당한다. 이처럼 제각각의 정책추진 체계는 지원 대상별 정책의 격차를 발생시킨다. 대표적인 예로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양육시설에서 18세 이후에 만기 퇴소를 한 청년은 “자립준비청년”으로 타 시설 퇴소청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양하고 많은 지원을 받고 있으나 같은 시설이라도 원가정 복귀나 타시설로의 전원 조치 등을 이유로 18세 이전에 퇴소한 경우,⁵⁸⁾ 또는 여가부나 법무부 산하 시설에서 생활한 경우는 자립여건이 동일하게 열악한 경우라도 동일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다음의 표에 제시했듯이 현행 퇴소시설별 자립(지원)수당 및 자립정착금 지원 내용은 지원의 격차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가정의 지원이 거의 없는 시설퇴소청년들은 만 18세 전후로 최종 퇴소시설이 어디인지에 따라 지원의 내용이 크게

58) 18세 미만 조기 보호종료의 경우는 최근 아동복지법 개정안 통과로 자립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3.7.18).

〈현행 퇴소시설별 자립(지원)수당 및 자립정착금〉

- 자립수당
 - 아동양육시설 퇴소청년: 월 40만 원 최대 5년 지급
 - 청소년쉼터 퇴소청년: 월 40만 원 최대 3년 지급
 - 소년보호시설 퇴소청년: 없음
- 자립정착금
 - 아동양육시설 퇴소청년: 1,000만 원 이상 지급
 - 청소년쉼터 퇴소청년: 일부 지자체에서만 자체적으로 500~1,000만 원 지급
 - 소년보호시설 퇴소청년: 소년보호협회 입주 후 퇴소 시 개인별 상황에 따라 자체적으로 교통비 20만 원

달라지며 지원이 거의 없는 청년들의 자립은 더욱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서는 시설을 옮겨 다니거나 18세 이전에 중도퇴소 등의 이유로 아예 자립지원 정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한편 청년기본법 제8조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수립된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관계부처 합동, 2020)에 따르면 보호종료청년 지원 강화, 청년정책 사각지대 해소 등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그러나 다음의 표에 제시한 바와 같이 여기에서도 각 정책의 지원 대상의 공통적인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정책이 각 대상별로 분절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

- 보호종료청년 지원 강화
 - (자립수당) 복지시설에서 보호가 종료된 청년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수당* 지원기간 등 확대 검토
 - (주거지원) 보호종료청년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매월 임대료지속 지원 및 공공주거서비스 전국 확대
- 청년정책 사각지대 해소
 - (위기청년) 가출, 학교밖 청년(19~24세)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자립·교육서비스 제공
 - (청년 1인 가구) 가족센터(전국 97개소) 중심 기초지자체·민간단체협업체계 구축, 심리상담·커뮤니티 참여 등 사회적 관계망 형성지원

* 출처: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관계부처 합동, 2020)에서 제시한 내용을 재구성함.

이에 정책대상을 ‘자립지원이 필요한 시설퇴소청년’이라는 동일 집단으로 보고 각 부처를 아우르는 정책조정 및 총괄 기능을 담당할 부서가 필요하다. 따라서 청년기본법 제6조 및 제13조에 의거하여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에서는 이들에 대한 보다 더 깊은 이해

〈청년기본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생략)

3. 청년정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정책의 분석·평가 및 이행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청년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청년정책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청년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30922&lsiSeq=249017#J15:0>
에서 2023년 9월 28일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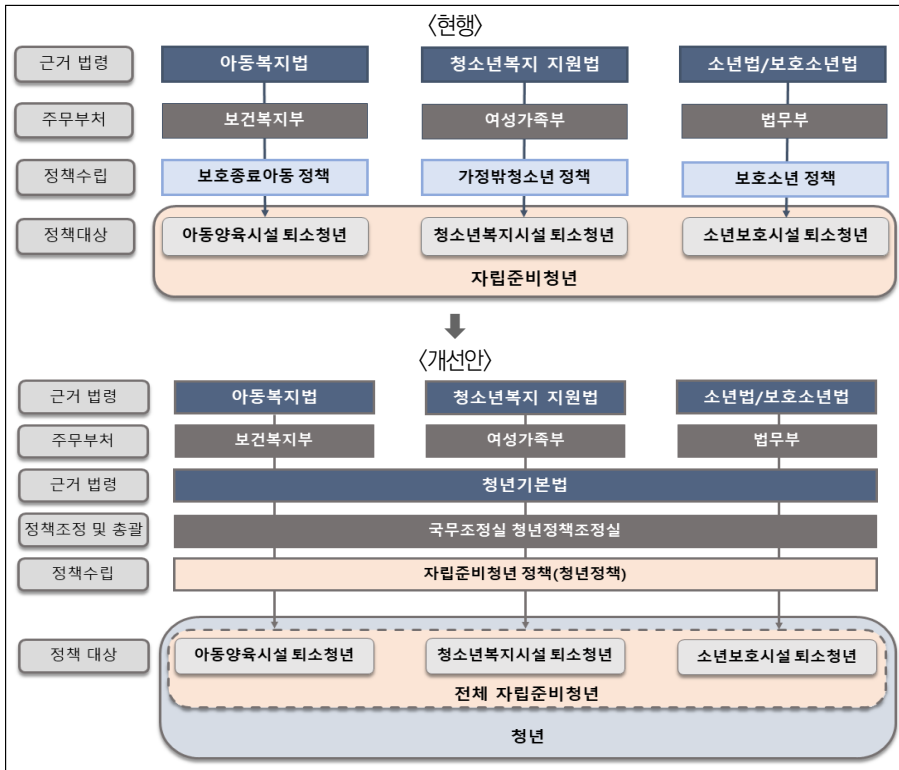


그림 VI-2.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정책수립체계(안)

를 바탕으로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그림VI-2는 현행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정책수립체계와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에서 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담당할 경우 변화되는 정책수립체계(안)를 제시하였다.

(2) 정책 수립·집행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참여 강화

청년정책으로서의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정책이 올바르게 수립되고 집행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참여형 거버넌스’가 구축되어야 한다. 「청년기본법」 제15조에서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청년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청년기본법〉

제15조(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청년정책 결정과정의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⑥ 국무총리는 청년정책과제의 설정·추진·점검을 위하여 청년정책 전문가와 다양한 청년들의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30922&lsiSeq=249017#J15:0>에서 2023년 9월 28일 검색

이에 시설퇴소청년들에 대한 지원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수립→집행→평가→피드백의 단계로 이어지는 전 과정에서 당사자인 시설퇴소청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최근 국민통합위원회의 「자립준비청년과 함께서기 특별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자립준비청년들로 정책지원단을 구성하고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시도를 한 것⁵⁹⁾은 좋은 예이다.

2) 자립준비청년 지원제도의 자격기준 개선

(1) 아동양육시설 퇴소청년 외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격심의 제도 도입

앞서 언급했듯이 현행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들에 대한 지원은 퇴소시설 유형 및 퇴소연령에 따라 지원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자립정착금이나 자립수당은 아동시설 퇴소청년과 일부 청소년시설 퇴소청년에게 제한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즉 부모의 보호력 부재와 같은 유사한 상황, 때로는 더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소시설의 유형에 따라 지원대상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등 불합리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59)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홈페이지.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563786>에서 2023년 9월 28일 검색.

〈연구결과: 경제적 지원에 따른 심리·정서 상태〉

- 자립정착금
 - 주관적 건강상태, 삶의 만족도, 자립성취도: 수급>미수급
 - 우울, 불안, 고립감: 수급<미수급
- 자립수당
 - 주관적 건강상태, 삶의 만족도: 수급>미수급
 - 우울, 불안, 고립감: 수급<미수급

조사결과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개인의 주관적 건강상태 및 심리·정서 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따라서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들이 개인의 취약성 정도 및 필요에 따라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에 장기적으로는 여기에서 제시한 영국사례를 참고로 아동·청소년기에 일정 기간

〈영국의 보호종료아동 자격 유형〉

- 영국의 보호종료아동 자격 유형(leaving care status)

유형	현재 연령	보호 경력 여부	제공 서비스
적격 아동 (Eligible child)	16~17세	14세 이후에 13주 이상 보호 경력이 있으며 현재 보호 중	• 개별 상담(자문) • 자립 수준 평가 • 자립계획 •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모든 보호와 지원 서비스
연관 아동 (Relevant child)	16~17세	14세 이후에 적격아동이었으나 구금·입원 등을 이유로 현재 보호종료	• 개별 상담(자문) • 자립 수준 평가 • 자립계획 • 거주지와 생활비 • 교육·훈련, 고용을 위한 재정적 지원
이전 연관 아동 (Former relevant child)	18~25세	과거 적격 또는 관련 아동	• 개별 상담(자문) • 자립계획(정기적 검토) • 교육·훈련, 고용 지원 • 거주지 지원 • 생활비 보조
유자격 아동 (Qualifying care leaver)	16~21세 (학생: ~25세)	16세 전후에 보호 경력이 있 으나 14세 이후 보호 경력 13주 미만 (적격 또는 관련 아동 기준 미충족)	• 생활비 보조 • (대학생인 경우) 방학 중 거주지 지원 • 아동 서비스 상담 및 지원 (현금 지원일 수 있음)

* 출처: House of Commons Library. (2022.10.20). support for care leavers. (영국 하원 도서관 홈페이지.
<https://researchbriefings.files.parliament.uk/documents/CBP-8429/CBP-8429.pdf>에서 2023년 7월 20일
 검색.)
 영국 아동법 자문 홈페이지.
<https://childlawadvice.org.uk/information-pages/services-for-children-leaving-care/>에서 2023년 7월 20일
 검색.

이상 복지시설의 도움을 받았던 청년들에게는 공공 차원의 자립지원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영국에서는 보호경력 여부에 따라 보호종료아동 자격 유형을 나누고 그에 따라 제공 서비스 내용에 차이를 두고 있다. 이처럼 보호종료아동 유형을 보호경력 여부에 따라 세분화한 것은 자립지원에 있어서 시설 유형 및 만기퇴소 여부 자체보다는 실제적인 자립지원 필요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됨을 시사한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아동양육시설에서 18세 이후에 만기 퇴소한 경우 뿐 아니라 소년원이나 치료시설 등 타시설로의 전원이나 원가정 복귀 등을 이유로 양육시설에서 조기 퇴소한 청년, 아동양육시설 이외에 청소년복지시설을 비롯하여 여타 복지시설에서 일정기간 이상 머물거나 지원을 받은 경력이 있는 청년 등을 자립지원의 “유자격자”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물론 개별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현재 복지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모든 지원을 자립준비청년과 동일하게 제공할 필요는 없다. 다만 자립지원 서비스가 절실한 청년이 그 대상에서 누락되어 사각지대에 머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본적으로 아동기에 복지시설에서의 보호이력이 있는 청년은 자립준비청년 심의대상으로 선정 가능하도록 하고 심의에서 자립지원 여부 및 지원 내용 등을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자립준비청년 심의는 지자체 등에서 담당할 것을 제안하는데 이는 청년들이 자신들이 생활하는 지역사회에서 뿌리를 내리고 건강한 시민으로의 성장하는 것을 돕기 위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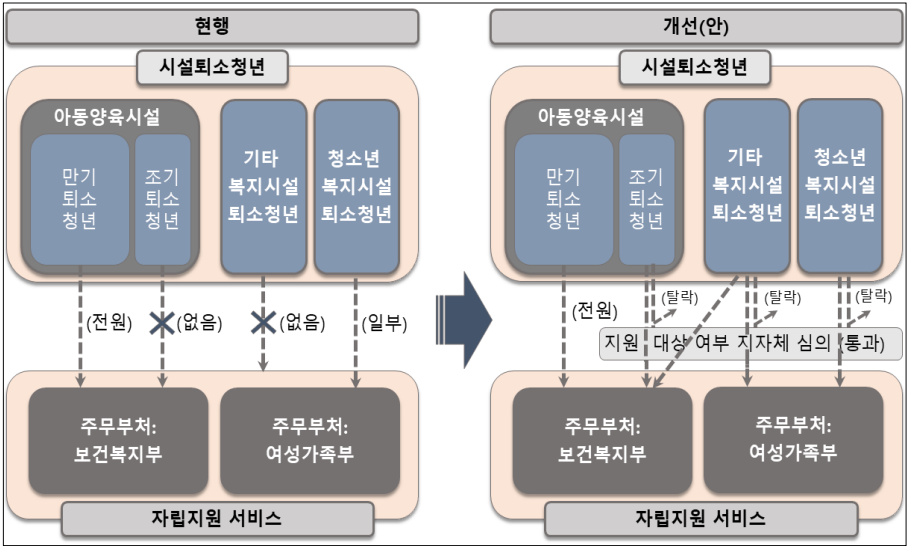


그림 VI-3. 시설퇴소청년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절차 개선(안)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VI-3과 같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통합위원회의 「자립준비청년과 함께서기 특별위원회」에서도 중장기적으로 이처럼 다른 유형의 시설에서 퇴소한 청년들을 통합하여 지원할 것을 제안하였다.⁶⁰⁾

(2) 무의탁 소년원 퇴소청년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강화

소년원 퇴소자 중 일부는 부모가 없거나 원가정의 보호력 불충분으로 소년원 퇴소 후 법무부 산하 청소년자립생활관 등에 입소하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다. 공식적인 통계인 2022년 범죄백서(법무연수원, 2023)에서도 19세 미만 소년범죄자 중 800여 명이 부모가 없었고 1,400여 명이 가정의 보호력이 낮아 6호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자립생활관에 입소하였더라도 입소자들에 대한 지원은 중앙 및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아니라 민간 기부금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다보니 그 내용이 아동양육시설은 물론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에 비해서도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소년보호시설 퇴소청소년들의 성공적인 사회정착 및 재범 예방을 위해서는 퇴소 후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김혁, 2020 재인용). 이를 위해 첫째, 법무부 산하 청소년자립생활관, 여가부 산하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시설미성년후견법」 제2조 제1호의 보호시설에 포함시키고 이곳에서 생활하는 청년들에게도 중앙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 자립지원이 제공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여가부에는 이미 보호처분 1호를 받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 포함되어 있고 청소년자립생활관은 여가부 산하 청소년자립지원관과 유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해당 시설을 청소년자립지원관의 한 형태로 특성화하여 여가부 산하 청소년복지시설로 포함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둘째, 아래에 제시한 영국 사례에서는 지자체가 소년보호시설에 입소한 청소년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를 제시하였다. 이를 참고하여 소년보호시설 퇴소청년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 강화 역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보호소년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미미하고 이들이 퇴소 후 지역사회에 정착한 이후라도 지자체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다. 적어도 원가정이 없거나 그 보호력이 약한 보호소년이 지역사회에 정착하려고 할 경우 소년보호시설 퇴소 전에

60) 연합뉴스(2023.8.31). 통합위 "가정 밖 보호 6개월 이상이면 '자립지원 필요청년'으로". <https://www.yna.co.kr/view/AKR20230831066700001?input=1195m>에서 2023년 10월 10일 검색.

〈해외사례: 영국의 보호소년에 대한 지지체의 의무〉

- 소년보호시설 내 청소년은 자동적으로 지지체의 보호를 받음.
- 관할 지지체의 역할(의무)
 - 보호소년의 서비스 욕구 파악 및 관련 서비스 지원 여부 등 확인·연계
 - 보호소년 담당 사회복지사 지정 후 복지사-보호소년 간 연락 유지

* 출처: 영국정부홈페이지. <https://www.gov.uk/guidance/case-management-guidance/how-to-manage-bail-and-remands>에서 2023년 10월 1일 검색.

지자체와의 연계를 통해 이들의 사회정착 및 자립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와의 연계는 보다 구체적으로 지자체 내 아동보호팀 또는 청소년안전망팀(지역사회 청소년통합 지원체계)과의 연계 등을 고려해볼만 하다. 이를 위해 법무부 산하 청소년자립생활관에게는 여가부의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활용 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지자체가 지역 내 아동·청소년의 보호시설 이력을 통합적으로 확인·관리할 것을 제안한다.

3) 개인의 필요에 따른 통합적이고 단계적인 개인 맞춤형 자립지원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들은 교육·훈련, 고용·경제, 주거, 건강, 참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자립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지만 성별이나 연령, 학력이나 경제적 수준, 자립 기간 등 개인의 특성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영역에 차이가 있거나 변화를 보이기도 하였다.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예로 들자면, 남자보다는 여자 청년에게서, 자립 지원기간 초반보다는 중반기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시설퇴소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현금 지급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적 지원과 같이 특정 영역에만 집중된다면 우울이나 고립감 등 정서적인 어려움 등을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심각한 수준의 정서적인 어려움은 개인의 학업이나 근로, 대인관계, 신체활동 등 전반적인 생활 영역에 악영향을 미침으로써 자립생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시설퇴소 후 자립지원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이들 생활 전반에 대한 점검을 하고 개인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지역 내 자원 연계가 필요하다.

자립지원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자립지원기관 종사자 등이 해당 청년의 자립 상황에 대한 방문(또는 대면) 점검을 반드시 하고 이 때 취약성이 발견된 청년은 상대적으로 점검 기간의 간격을 짧게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생활 영역에서 별 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청년은 6개월에 한 번씩 대면 또는 전화 등을 통한 점검이 가능하지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심각도에 따라 최소 1~3개월에 한 번씩 방문(대면) 점검을 통합 집중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자원 연계 시에는 연계 시설의 종사자와도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청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디딤씨앗통장 등의 경제적 지원에 따라 심리·정서 수준에 차이가 있다는 결과는 경제적 지원이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에게 안정적인 자립기반이 되어 청년들의 심리·정서적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디딤씨앗통장 등의 경제적 지원이 아동복지시설 및 일부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들에 한하여 지원되고 있어 유사한 상황에 처한 청년들에게까지 지원기준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지원을 모든 시설퇴소청년들에게 일괄지원하기보다는 개인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지원 대상 및 내용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면서도 형평성 있는 지원을 위한 절차와 방안에 대해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다.

자립연차에 따른 심리·정서 수준에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연차별로 필요한 서비스가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자립 초기에는 음식 만들기, 주거지 관리, 건강관리, 경제관리 등 실생활에 필요한 기술 교육과 더불어 미래 설계, 대인관계 기술 등 자립초기 사회적응에 대한 교육에 초점을 둘 수 있다. 특히 자립준비청년들은 사회생활경험이 적어 취업 상황에서 대인관계문제나 사회생활 미숙 등의 문제로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립 전과 자립 초기에 사회적응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고 자립준비청년이 스스로를 건강하고 능동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자기주도적인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자기보호 및 돌봄 역량 교육 등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사회 경험이 많아지는 2~3년차부터는 자립생활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서 스트레스, 우울, 고립감 등 다양한 심리·정서적 어려움의 수준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자립지원 코칭 및 멘토링 등을 통해 포괄적인 심리적 지지를 제공하는 데 좀 더 집중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연차별 필요 서비스의 세부 내용은 향후 보다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마련할 필요가 있다.

4) 지역 기반 지원체계 구축 및 그에 따른 지역 격차 해소 방안 마련

교육·훈련, 취업, 주거 등 대부분의 개인 생활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생활 형태는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도 예외가 아니므로 이들을 위한 지역 기반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지역 기반 자립지원은 시설퇴소청년들로 하여금 지원을 찾아 타 지역으로의 불필요한 이동을 줄이고 지역 안에서 일상생활 유지를 가능케 한다. 지역 사회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찾고 선택하여 지원하는 생활형태는 일상생활에서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자기 결정성을 높이고 사회와의 연결고리 확보로 인해 고립·소외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지역사회 기반 자립지원 서비스망 구축을 위해 지역 내 다양한 자원들을 활용한다면 지원 서비스의 공급자와 이용자 간에 상호의존성이 형성되면서 자립준비청년들의 긍정적인 사회 경험이 증가하고 이후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린 자립준비청년들은 향후 자립지원의 수혜자에서 공급자로 그 위상을 전환할 수도 있다.

다만 지역 내 인프라가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역 기반 자립지원에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지역 간 격차 해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원이 빈약한 지역의 시설퇴소청년은 성장한 지역을 떠나서 낯선 지역으로 이동하여 새롭게 적응해야 한다. 가뜩이나 빈약한 지지체계를 갖고 있는 청년들이 낯선 지역으로 이동한다면 지지체계가 끊어진 채 고립생활을 이어나가거나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에 지역 기반 지원체계를 구축하되 지역 간 지원의 격차를 해소시켜 시설퇴소청년이 원한다면 지지체계가 형성되어 있는 익숙한 지역에서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2. 영역별 정책과제

이 절에서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시설퇴소청년들의 자립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부 정책과제를 연구결과 및 국내외 사례를 토대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영역별 세부 정책과제는 개인 맞춤형 지원에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1) 진로·고용 영역⁶¹⁾

진로와 관련하여 연구결과에서는 시설퇴소청년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학업 중단율과 낮은 대학 진학률, 그리고 주도적이지 못한 진로 결정 등의 특성을 보였다. 낮은 학력은 취업시장에서의 불이익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으며 상황에 밀려 주도적이지 못했던 진로 결정은 대학 진학이나 취업 이후 겪게 되는 어려움에 쉽게 좌절하게 되기도 한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61) 설문조사 영역 중 교육·훈련 영역과 고용 영역에 해당한다.

〈연구결과: 진로 영역〉

- 설문조사 결과
 - 고졸 미만 학력: 아동시설 퇴소청년 1.2%, 청소년시설 퇴소청년 8.7%, 소년보호시설 퇴소청년 25.6%, 일반청년 0.3%
 - 대학 진학률: 아동시설 퇴소청년 73.2%, 청소년시설 퇴소청년 46.5%, 소년보호시설 퇴소청년 32.5%, 일반청년 88%
- 면접조사 결과
 - 직업이나 전공 등 진로 관련 정보의 부족과 자립에 대한 압박으로 인한 진로나 대학 전공 결정에서 주도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함.
 - 시설퇴소를 위한 취업, 그에 따라 대학 진학은 고려사항이 되지 못함.

(1) 시설퇴소청년들의 대입기회 제공을 위한 기회균형선발 전형 대상기준 개선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4년부터 대학들은 사회통합전형 중 기회균형선발 전형의 대상을 모집정원의 10%(지방대학의 경우는 모집 정원의 5%) 이상 선발해야 한다.⁶²⁾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동법 제42조의6(사회통합전형의 운영)에 명시되었는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각 호의 아동, 즉 아동양육시설을 비롯한 아동복지시설 퇴소청년, 가정위탁보호 대상이 그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아동복지시설 퇴소청년에 비해 대학 진학률이 현저히 낮은 그 외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 등 타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들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들을 포함시키는 개정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6의 개정이 필요하다.

다만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의 경우는 일시보호가 가능하므로 자립지원수당 지원 대상과 같이 일정 기간 이상 생활한 자로 한정하는 방안이 필요할 수도 있다. 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6〉

현행(요약)	개정(안)
제42조의6(사회통합전형의 운영) ① 법 제34조의8 제1항에 따라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입학전형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4. (생략) 〈신 설〉 5~6. (생략)	제42조의6(사회통합전형의 운영) ① --- ----- 1~4. (현행과 같음) 5. 「 청소년복지 지원법 」 제31조제1호 및 제2호의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청소년 6~7. (현행 5~6과 같음)

62) 한겨레(2021.12.30). 2024학년도 대입부터 사회적 배려 대상자 10% 이상 의무 선발.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025358.html>에서 2023년 9월 25일 검색.

한 향후 법무부 산하 청소년자립생활관도 복지시설로 편입된다면 그들 역시 청소년 쉼터 및 자립지원관의 입소자들과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2) 지역 기반 진로탐색 지원체계 마련

아동양육시설 퇴소청소년들은 아동·청소년기의 한정된 경험과 시설 종사자들의 진로 관련 정보의 부족으로 진로 선택의 폭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진로 선택의 어려움은 비단 아동양육시설 퇴소청소년들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청소년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 퇴소청소년들 역시 아동·청소년기부터 가정의 지원이 부족하여 이러한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에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청소년기부터 체계적인 진로교육이 진행되어야 마땅하지만 이에 더하여 시설퇴소 후에도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이들의 진로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연계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이나 후기청소년기에 해당하는 24세 이전에는 각 지역 내 청소년 수련원 등 청소년활동시설이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진로 상담 및 탐색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설퇴소 후, 또는 24세 이후 청년기에는 각 지역 내에 있는 청년센터에서 진로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대부분의 진로활동 프로그램은 단기간의 단체 활동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연령이나 진로활동 경험 등 개인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거나 충분히 진로를 탐색하고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 경우가 많은 것에 주의하여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장기적으로 단계별 진로탐색 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설계와 전문가의 지도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 내 진로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시설퇴소라는 개인적 특성을 드러내기 어려워하는 이들도 있는 만큼 준비되지 않은 채 불필요한 개인사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설 및 기관의 종사자들에게 대한 역량강화 교육이 필수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진로 프로그램을 주도하는 청(소년)시설이나 센터에서는 시설퇴소청소년들이 진로 프로그램 외에도 실질적인 근로를 위한 기본 훈련을 받거나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역 내 기업이나 사업장을 발굴하여 연계할 필요가 있다.

지역 기반의 진로지원은 지역 간 인프라의 격차가 존재할 때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온라인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이 병행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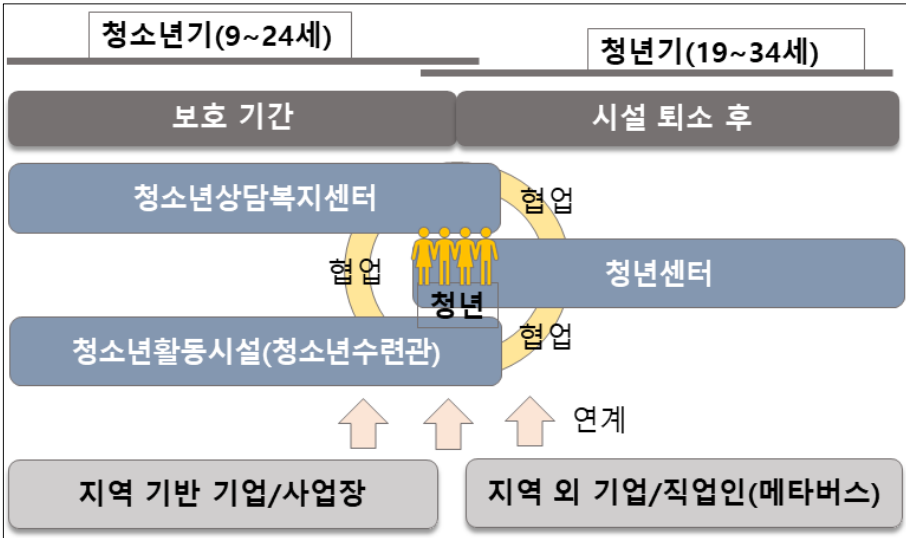


그림 VI-4. 지역 기반 시설퇴소청년 진로지원체계(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소그룹 활동, 관련 직업인이나 진로상담사와의 상담 등 진로탐색 및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일례로 청년재단에서는 SK텔레콤과 연계하여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 미취업 청년들에게 진로·취업 상담을 제공한 바가 있다.⁶³⁾ 이상과 같은 내용을 도식화하면 그림VI-4와 같다.

(3) 산학 연계를 통한 양질의 직업 훈련-고용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시설퇴소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는 일자리 개발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직업 훈련을 통해 취업희망자들의 직업역량 역시 제고할 필요가 있다. 설문조사 결과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들 중 36%는 취업을 위해 별도의 비용을 들여 교육·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최소 두 명 중 한 명은 정부(지자체)가 제공하는 취업관련 교육 및 훈련을 수강할 의향이 있었다. 이는 더 나은 일자리를 위해 자신들의

〈연구결과: 진로 영역〉

- 설문조사 결과
 - 취업을 위해 별도의 비용을 들여 교육·훈련을 받은 경험률: 36%
 - 그 중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 64.7%
 - 정부(지자체)가 제공하는 취업관련 교육 및 훈련 수강 의향: 56.6%

63)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2916559922에서 2023년 9월 26일 검색.

직업 역량 제고 의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자립준비청년들의 직업 역량 제고를 통한 취업연계의 사례로는 미국 뉴욕시(NYC)의 V-CRED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뉴욕시에서는 지역 내 산학 연계를 통해 체계적인 직업 훈련을 바탕으로 자격증 취득 뿐 아니라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 중으로 이를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적용할 만하다. 실제로 경기북부자립지원관에서 제공했던 프로그램은 이와 비슷한 사례이다.

〈해외사례: 미국 뉴욕시의 V-CRED 프로그램〉

- 16~24세 위탁보호 종료 청소년을 위한 새로운 직업훈련 프로그램으로 2022년 3월부터 시범 운영
- 프로그램 구성 요소: 전문 인증 교육→유급 인턴십→일자리 배치
 - 전문 인증 교육: 브루클린 소재 킹스보로커뮤니티컬리지(Kingsborough Community College)에서 제공하는 전문 자격증 취득 과정 참여
 - 유급 인턴십/견습 프로그램: 전문 자격증 취득 후 유급 인턴십/견습 프로그램 참여
 - 일자리 배치: 인턴십 후 해당 사업장의 고용주와 정규 취업 논의
- 취업 분야: 정보기술(IT), 전기기사 도우미, 간호조무사 등 의료지원, 약국기술자(보조 약사), 건축기술자 등 5개 직업 분야
- 아동서비스국(Administration for Children's Service, ACS)에서 위탁보호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인 페어 퓨처(Fair Futures)와 연계하여 관리

* 출처: NYC Administration for Children's Services (2022.3.29), MAYOR ADAMS ANNOUNCES NEW CAREER TRAINING PROGRAM FOR YOUTH IN FOSTER CARE. <https://www.nyc.gov/assets/acs/pdf/PressReleases/2022/VcRed.pdf>에서 2023년 9월 26일 검색.

〈사례: 경기도북부자립지원관 인턴십 프로그램〉

- 지역 내 대학교 부설 반려동물센터와 연계하여 3개월(주24시간) 인턴십 진행
- 인턴십 기간 동안 월 110만 원 지급(자립지원관 월 100만 원 지원, 업체는 추가비용(추가급여, 4대보험, 소득세 등) 부담)
- 경기도일자리재단 펫케어 전문인력 양성과정과 연계, 교재비 및 자격증 응시료 등의 지원을 받고 반려동물종합관리사 자격 취득
-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하여 펫케어 전문인력 양성과정 이수 후 애견미용사 3급 자격 취득
- 인턴 지원사업을 시행했던 대학교 부설 반려동물센터에 정규직 취업

* 출처: 경기북부자립지원관(2023).

(4) 지역 기반 기초근로훈련 프로그램 제공

직장 경험이 적은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들 중에는 직장 예절이나 대인관계, 근무태도 등과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들에게는 본격적인 취업 이전에 자활작업장 등을 활용하여 기초적인 근로훈련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전북 익산의 사회적협동조합 청소년자립학교는 시설퇴소청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기초근로훈련 프로그램 운영의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또한 인천시 청소년 자활센터 작업장 ‘카페 립’ 역시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에게 기초근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예이다.

〈사례: 사회적협동조합 청소년자립학교〉

- 자립학교 운영
 - 대안교육지원을 통한 기초학습보장 및 자기계발 지원
- 청년 식당, 청년 카페 운영
 - 직원: 학교 밖 청소년, 청소년쉼터 및 소년보호시설 퇴소청소년과 60대 이상 고연령층
 - 식재료로 지역 먹거리 직매장의 생산물 활용
 - 청소년들에게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인턴십, 취·창업 기회 등 제공
- 주거공동체 쉼어하우스(블루하우스) 운영
 - 주거공간 제공

* 출처: 협동조합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coop_2012&logNo=223134089205&parentCategoryNo=&categoryNo=6&viewDate=&isShowPopularPosts=true&from=search에서 2023년 9월 30일 검색.

〈사례: 기초근로훈련을 통한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취업 연계 사례〉

- 청소년 자활센터 작업장 ‘카페 립’
 - 인천시 위탁 자활작업장으로 가톨릭청소년재단이 운영
 - 사회복지시설, 대안학교, 쉼터를 이용 18~20세 청소년 중 서류전형, 면접을 통해 채용
 - 바리스타 교육, 사회적 향상 프로그램, 진로탐색 프로그램, 교양 프로그램 등 제공

* 출처: 인천광역시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RgC0ulpmb1g>에서 2023년 9월 27일 검색.

(5) 근로 권익 보호 강화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설퇴소청년들의 일 경험률은 매우 높지만 양질의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우는 많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시설퇴소청년들의 과반수가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였는데 이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주휴수당 미수령, 4대 보험 미가입 비율이 증가하는 등 근로 권익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부분적으로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영세사업주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근로

〈연구결과: 일자리 영역〉

- 일 경험률: 시설퇴소청년 94% vs 일반 청년 40.8%
- 복수 일자리 종사자: 시설퇴소청년 8.6% vs 일반 청년 4.5%
- 시설퇴소청년 근무지의 규모
 - 5명 미만 사업장 근무자: 24.4%
 - 5~29인 이하 사업장 근무자: 32.3%
 - 직장의 규모가 작을수록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주휴수당 미수령, 4대 보험 미가입률 증가

시간, 연차휴가 등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다.⁶⁴⁾

이에 사업주보다 경제적으로 더 취약한 상태일 수 있는 시설퇴소청년들이 그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설퇴소청년들의 기본적인 근로 권익이 지켜질 수 있는 근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시설퇴소청년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제도로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및 노동권익센터를 통한 무료상담 및 권리 구제, 근로 청년 및 사업주 대상 근로권익교육,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및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행정절차 지원, 근로기준법 준수 사업장에 대한 한시적 자비 부담률 완화 등을 제시할 수 있다.

2) 경제 영역

설문조사 결과 시설퇴소청년들의 경제적 여건은 동년배 일반 청년과 비교할 때 매우 취약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시설퇴소청년의 채무 내용을 살펴보면 주거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의 부채 규모가 가장 컸고 부채 사유도 다양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목할 부분 중 하나는 시설퇴소청년의 소득 중 ‘사적이전’의 내용으로 바둥거 가족으로부터 받는 지원은 월 평균 3만 원 수준인 반면 가족을 제외한 국가와 지자체, 시설·기관 등 외부로부터 받는 지원은 월 평균 38만 원 수준이었다. 즉 원가족으로부터의 경제적

〈연구결과: 경제 영역〉

- 소득
 - 월 평균 총 소득: 시설퇴소청년 약 170만 원 vs 일반 청년 약 365만 원
 - 시설퇴소청년의 근로소득: 월 평균 약 122만 원
 - 시설퇴소청년의 (바둥거)가족지원: 월 평균 약 3만 원
 - 시설퇴소청년의 국가, 지자체, 시설/기관 지원: 월 평균 약 38만 원
- 지출
 - 시설퇴소청년의 생활비: 월 평균 약 116만 원
 - 식비 약 38만 원 > 기타 생활비 약 19만 원 > 주거비 약 13만 원 순 지출
- 채무(부채)
 - 채무 액수: 시설퇴소청년 약 1,366만 원 vs 일반 청년 약 514만 원
 - 시설퇴소청년 채무 사유와 채무액: 주거비 약 631만 원 > 생활비 약 246만 원 > 기타 사유 약 178만 원 > 학자금 약 162만 원 > 범죄 피해 약 94만 원 > 가족의 빚 또는 내 명의의 빚 약 85만 원 > 창업 자금 마련 약 32만 원
 - 금융채무불이행자 비율: 시설퇴소청년 16.2% vs 일반청년 0.7%

64) 고용노동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고 발표하였으나 아직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발표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30100461에서 2023년 9월 26일 검색.)

지원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근로소득의 약 1/3에 해당하는 소득을 외부 지원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특히 설문조사에 참여한 시설퇴소청년 가운데 금융채무불이행(신용불자) 경험이 있다는 응답률이 전체의 16%를 초과하였는데, 이는 일반 청년의 약 2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에 연구결과를 근거로 다음의 과제를 제안하였다.

(1) 「청년기본법」 하위법령 제정: 청년 금융생활 지원 근거 마련

올해 개정된 「청년기본법」 제22조(청년 금융생활 지원)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취약계층 청년의 채무여건 개선 및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비단 시설퇴소청년 뿐 아니라 취약계층 청년이 직면한 금융취약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개발과 추진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시설퇴소청년의 경우 소득 수준과 채무 상태 전반에서 다양한 취약성이 확인되었고 취약계층 청년의 경우 금융문제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에 하위법령을 제정하여 법률에서 명시한 청년의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주무부처의 책무와 주요 정책 지원 방향과 내용에 대한 법적 근거부터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시설퇴소청년 자립(지원)수당제도 운영 개선

현재 「아동복지법」상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립수당’ 제도와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가정밖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립지원수당’ 제도는 제각기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수당 지원 대상을 포함하여 아동·청소년기에 일정 기간 생활시설에서 거주한 경험이 있는 취약청년의 경우 금융생활 전반에서 심각한 수준의 문제를 동반하고 있다. 이에 영국의 취약계층에 대한 개인자립수당(PIP) 제도를 참고하여 기존의 수당제도 운영 방식을 일부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아동·청소년기에 위탁보호 경험이 있는 경우 자립(지원)수당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그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립수당 금액을 월 40만 원, 월 50만 원으로 일괄 책정하지 않고 취약성의 정도에 따라 생활비, 교통비 등 항목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셋째, 수당 수혜자 가운데 부채가 있는 별도의 부채 관리 계획 등 전문상담을

〈해외사례: 영국의 시설퇴소청년 PIP수당〉

- 취약계층 개인자립수당(Personal Independent Payment) 사례
 - 아동청소년기 위탁보호 대상, 신체적·정신적 건강 문제나 장애 등 독립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16세 이상 65세 미만 취약계층 대상 수당제도
 - 생활비 최대 101.75파운드, 교통비 최대 71파운드 등 현금 지원
 - 부채가 있는 경우 부채 관리 계획 전문 상담, 채권자로부터 보호를 위해 최대 60일 간 임시거처가 가능한 '숨 쉬는 공간(Breathing Space)' 운영 및 조건부 부채 탕감(Debt Relief Order) 프로그램 운영 등

* 출처: 영국정부 홈페이지, 'Personal Independence Payment (PIP)'. <https://www.gov.uk/pip/how-much-youll-get>에서 2023년 10월 6일 검색.

받는 것을 조건으로 수당을 지원하는 등 조건부 운영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 특히 개인자립수당 수혜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부채 탕감 제도(DRO)도 운영 중인데 탕감이 가능한 부채는 신용카드 대출, 임대료, 공공금 연체금, 지방세 및 소득세 등이며 학자금은 제외된다.

(3) 관계기반 금융생활 지원제도 신설

시설퇴소청년의 금융 관련 취약성을 고려할 때 자립(지원)수당만 지원하거나 자산형성 지원제도를 이용하도록 하는 등 단일한 경제적 지원 방식을 탈피하고 소득, 지출, 부채 상태를 포함하여 금융생활 전반에 걸쳐 맞춤형 경제 교육을 확대하여야 한다. 특히 부채 문제 해결을 취약청년 개인에게만 부과할 것이 아니라 청년의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여 부채의 재발을 방지하고 자산형성을 도모하는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지역과 민간(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취약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관계기반 금융 모델 사례'의 다양한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필요시 정부 주도의 시범운영을 거쳐 전국단위로 확대, 제도화하도록 한다.

〈사례: 취약청년 관계기반 금융 모델〉

- 청년연대은행 토닥
 - 2013년부터 조합원들의 십시일반 출자금으로 자조기금을 조성해 소득증빙과 신용등급을 요구하지 않는 무보증 무담보 소액대출사업 운영
 - 소득과 신용으로 상환가능성을 평가하는 금융문법 대신 1:1 재무 상담을 통해 기금이 대출을 신청한 청년의 삶을 나아지게 할 수 있는지 만을 심사
 - 대출 수혜자가 대출 공여자가 되는 토닥의 시스템 안에서 청년들 간의 관계적 회복력을 키울 수 있는 생활안전망 역할 수행
 - 대출 조건: 신입조합원 교육(토닥학 개론 이수)
 - 지원 금액: 최대 150만 원
- 경기도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사업
 - 취약노동자들이 자조모임을 결성하여 협동조합이나 공제조합 등이 이익대변단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업종형, 지역형 구분하여 3개 사업지원

※ 지원 세부사업

업종형(이동노동자 쉼터 등 소모임 결성, 직무교육·정보 및 애로사항 소통 활성화)

지역형(취약노동자 조직 소모임 결성, 자조모임 운영)

- 플랫폼 노동 종사자, 경비노동자 등 노동조합 가입이 어려운 취약노동자 대상

• (사)일하는 사람들의 생활공제회 좋은이웃 '마니또'

- 안산·시흥지역 특성화고 졸업 청년 노동자들의 자조모임 '마니또'

- 안산시가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청년을 지원하고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제안

- 목적: 청년노동자지원을 통한 근로 생활안정과 권익증진 및 공동체 활성화 강화

※ 지원 항목: 소액대출(근급생활자금대출), 무료 생활·노동법률 상담(임금·산재·고용 등 노동법률 상담 및 지원, 개인회생, 파산 등 무료 생활법률 상담 지원), 공동구매(먹거리 및 생활재 공동구매)등

* 출처: 김지연 외(2022). p.325.

(4) 자산형성지원제도 확대

아동자산형성제도인 디딤씨앗통장은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해 자산형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등 보호대상아동과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등에게 지원되고 있다. 이러한 자산형성제도의 수급여부에 따라 자립준비청년 개인의 주관적 건강상태 및 심리·정서 상태에 차이를 보였다는 점은 이러한 제도가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적인 안착을 위해 경제적으로 중요한 기반이 되는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이러한 자산형성지원은 금전적인 측면에서의 혜택을 넘어 자산형성을 위한 노력과 만기 시 노력에 대해 보상을 받는 경험 자체로도 개인에게 중요한 의미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아동복지시설 이외의 청소년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 등에서 퇴소한 청년들의 경우에는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 등으로 인해 디딤씨앗통장의 가입대상에서 배제되기도 한다. 또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취약청년들은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에 가입이 어렵거나 가입하여도 만기까지 납입을 못 하고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부모의 소득 및 재산 정도 또는 안정적인 일자리 등의 기준과 관계없이 시설거주 아동·청소년·청년이나 이에 준하는 취약상황에 놓인 아동·청소년·청년들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존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비해 비교적 단기간 노력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경기도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청소년자립두배통장'을 참고할 만하다.

〈제도: 경기도 청소년자립두배통장〉

- 대상: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기도 내 거주 가정 밖 청소년(15~24세)
(청소년쉼터·자립지원관 이용)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 청소년쉼터(일시제외)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이거나 거주 후 퇴소한 사람
 - 청소년쉼터(일시제외)에서 6개월 이상 거주 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받은 사람
 -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1년 이상 지원받은 사람
 -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두고 거주 중인 사람
- 내용: 청소년 본인이 2년간 매달 1~10만 원 저축 시 경기도가 저축액의 2배(최대 20만 원)를 추가 적립

* 출처: 경기도청 홈페이지. 2023년 경기도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참가자 모집(2023.2.7). <https://new-ggopen.gg.go.kr/bbs/boardView.do?bsidx=464&bidx=68716646&page=1&menuId=1534&bclidx=519>에서 2023년 10월 19일 검색.

3) 주거 영역

시설퇴소청년들은 아래에 제시한 연구결과와 같이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았던 경험,

〈연구결과: 주거 영역〉

- 주거 점유형태
 - 자가(본인 및 가족 소유) 10%, 전세 42.0%, 보증금 있는 월세 31.1%, 보증금이 없는 월세 3.2%, 일세 0.2%. 무상거주 12.5% 등
- 주거비 마련
 - LH 등의 지원(주거지원통합서비스) 60.6%, 저축 및 근로소득 26.8%, 자립수당/자립지원수당 20.8%
- 주거유형
 - 비거주용 건물, 고시원, 판잣집·비닐하우스 등 비적정 주거상태 2.4%, 반지하(지하) 및 옥탑방 4.0%(일반청년의 4배)
- 최근 1년간 주거 취약 상황
 - 경제적 어려움으로 주거취약 상황을 자주 경험: 난방 5.6%, 냉방 6.4%
- 임대 관련 어려움 경험
 - 3개월 이상 공과금이나 관리비 연체: 13.5%(일반청년의 12.3배)
 - 3개월 이상 주택담보대출 이자 또는 원리금 연체: 4.5%(일반청년의 9배)
 - 2개월 이상 월세 연체: 12.2%(일반청년의 7.6배)
- 주거지원제도 이용 경험
 - 주거지원제도(주거급여 분리자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 14.3%
 - 청년주택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 16.6%
 - 주택금융: 7.4%
 - 주택마련지원: 11.1%
- 정부지원 주택 입주 경험(거주 중, 입주 예정, 입주경험 있음): 32.3%
 - 정부지원 주택이 도움이 됨: 83.1%
 -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 주택의 시설이나 질이 만족스럽지 않음(23.8%), 지원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함(23.8%)

주거 점유형태, 주거유형 등에서 일반청년에 비해 취약한 경향을 보였다. 또한 주거취약 상황에 놓이거나 임대와 관련한 어려움을 경험하는 등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이는 경우가 많았다.

(1) 전세임대 지원 대상 확대

'23년 6월 국토부에서는 소년소녀가정 지침 지원 대상자에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을 포함하고 보호종료 아동 등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하였다. 이 개정안에서는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보호조치를 연장한 자, 보호조치 종료 예정자 또는 시설퇴소 예정자) '자립준비청년'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을 2년 이상 이용한 후 퇴소한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으로 여성가족부 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중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무주택자에 한하여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전세주택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자립준비청년 또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인 경우 22세까지 전세임대주택을 무상지원하며 지원대상자의 연령이 20세를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기한 연장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2년 단위로 최대 3회까지 연장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시설퇴소청년들 중 약 1/3이 정부지원주택 입주 경험이 있고 그 중 약 83% 이상이 정부지원 주택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나아가 정부의 노력으로 자립준비청년 및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으로 전세임대주택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있는 점은 시설퇴소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더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여전히 아동복지시설 중도퇴소 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이용기간 확인이 어려운 일부 청소년쉼터 청년, 무의탁 보호소년 등은 여전히 주거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을 볼 때 현행 아동복지시설 퇴소 자립준비청년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및 일부 청소년쉼터 퇴소 청년 중심으로 지원 중인 전세임대주택의 지원 대상을 아동복지시설 중도퇴소 청년이나 무의탁 보호소년 등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다만 지원 대상을 특정 시설 이용자로 국한할 경우 사각지대가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모든 시설퇴소청년들에게 동일하게 제공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자체와 자립지원기관 등으로 이루어진 심의기구에서 개인의 취약성과 위기도를 평가하여 지자

책 장이 추천하는 자로 지원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주거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에게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규정화할 필요가 있다.

(2) 지역 기반의 주거지원사업 추진 및 주거지원 대상 확대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설퇴소청년들은 일반청년에 비해 임대와 관련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비율이 높고 보증금이 없는 월세, 일세, 무상 거주 등 불안정한 주거환경에 놓여있거나 비거주용 건물, 고시원, 판잣집·비닐하우스 등 비적정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며 반지하(지하) 및 옥탑방에 거주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는 시설퇴소청년들 중 상당수가 주거취약계층임을 입증해준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에서 운영 중인 자립준비청년기관에서는 지역별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주거환경 개선, 주택청약종합저축 지원, 월세지원 등 주거와 관련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러한 지원의 대부분은 아동복지시설 퇴소 자립준비청년에게 한정되어 있다. 이에 타 시설 퇴소청년들에게는 지원 기회조차 제공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주거지원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시설퇴소청년들이 필요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자체별 심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면접조사 결과에서는 시설퇴소청년들은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성인이 없어 부동산 사기를 걱정하거나 좋지 않은 집을 제안 받거나 임대를 거절당하는 등의 부당한 경험을 호소하였다. 또한 집을 구한 이후 경험하는 월세 부담으로 인해 시설을 퇴소하여 막막했던 과거부터 월세를 내는 현재, 준비되지 않은 미래에까지 집이 안전한 공간이 아닌 지속적으로 불안을 야기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위해 이들이 예산 한도 내에서 적절한 거주지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주택공급 외에 입주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⁶⁵⁾의 경우 자립준비청년이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와 협력하여 지역별 자립준비청년 부동산 중개도우미를 위촉, 자립준비청년이 원할 경우 지역 부동산 중개사들이 전담하여 매물 중개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 기반의 협력관계를 통해 시설퇴소청년들에게 매물 중개 지원의 역할 뿐만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성인’의 역할을 제공함으로써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65) 경인매일(2023.2.28). 경기도, '2023년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추진계획' 수립·시행. (<https://www.k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388295>에서 2023년 10월 4일 검색.)

〈사례: 경기도 주거지원〉

- 자립준비청년 입주지원¹⁾
 -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 전세임대주택 입주 시 도배·장판, 입주물품(이불, 수저, 냄비 등 생필품) 지원
- 자립준비청년 부동산 마련과정 지원²⁾
 - 공인중개사협회소속 경기 남부, 북부 시군지회장 등을 ‘부동산 중개 도우미’로 위촉
 - 경기도 자립지원전담기관으로부터 거주희망지역 부동산 중개 도우미 정보를 제공받아 부동산 매물 확인 및 계약서에 대한 검토 지원 가능
 - 2억 원 이하 주택 계약 시 저소득 주민은 경기도 중개보수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최대 30만 원까지 중개수수료 지원 가능

* 출처: 1) 경기도 경기주택복지포털 (2022.8.17).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관련 사업 안내. <https://housing.gg.go.kr/board/20041300000001/SYS220817-01007277/view?bbsId=SYS200413-00000001&postCls=&pageNumber=0&option=&condition=both&filter=에서> 2023년 10월 4일 검색.
2) KBS뉴스 (2023.5.30).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부동산 마련 과정 지원.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687539>에서 2023년 10월 4일 검색.

4) 건강 영역

시설퇴소청년들은 다음에 제시한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건강과 관련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취약한 경향을 보였다. 특히 낮은 건강검진 수검률, 빈약한 식생활 및 신체활동 등 건강 행태가 바람직하지 못한 경향을 보였다.

〈연구결과: 건강 영역〉

- 건강검진 수검률: 최근 2년간 건강검진 56.4%, 최근 1년간 구강검진 53%
- 식생활
 - 10명 중 1명 이상(13.1%)이 하루 한 끼 식사
 - 식비 부족으로 부실한 식사나 끼니 거름: 43.4%
- 신체활동
 - 주1회 미만 신체활동: 37.8%
 - 주된 이유: 귀찮음(37.1%), 시간 없음(22.3%), 비용 부담(19.9%)
- 최근 1년간 앓았던 질병이나 질환 있음: 13%
 - 이에 대해 병원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 29.5%
 - 치료받지 않은 주된 이유로 병원비 없음: 53.1%, 시간 없음 28.1%

(1) 건강검진을 제고를 위한 노력

국가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강검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건강검진 편의성 제고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검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① 건강검진 안내 및 홍보 강화

시설퇴소청년들에게 건강검진의 필요성과 실효성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설퇴소청년들의 지원 기관 등을 통해 건강검진에 대한 상세한 안내 및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129조에 의거하여 직장인 건강검진이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며 미실시의 경우 동법 제175조제4항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9조 별표 35(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안내하여 피고용인들이 대부분인 시설퇴소청년들이 건강검진에 적극 참여하도록 안내하는 한편 검진에 필요한 시간을 할애해 주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익광고를 송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일례로 청소년의 흡연을 감소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⁶⁶⁾되는 금연 공익광고인 ‘노담광고’를 참고할만하다.

② 건강검진 편의성 제고 및 사후관리 강화

건강검진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휴일 및 야간 검진이 가능한 곳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 국가건강검진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검진 후에는 충분한 건강 상담과 더불어 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는 경우 추가 검사나 치료로 이어지도록 하는 등 검진 이후 사후관리의 질도 제고해야 한다.

(2) 올바른 건강행동 증진을 위한 제도 확대

①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확대

시설퇴소청년들의 신체활동을 높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건강검진 수검과 현재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안이 있다. 건강검진 결과 과체중이나 저체중 뿐 아니라 고혈압이나 당뇨 질환자, 자세·체형 교정 등 건강 관리가 필요한 청년들에게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를 안내하고 특히 저소득이나 시설퇴소 등 취약청년들에게는 서비스에 참여함으로써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인센티브 제공은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건강인센티브제)를 참고하여 시설퇴소청년 중 건강검진 수검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건강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 그들의 건강개선 노력 및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다. 다만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가 고혈압·당뇨 질환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지만 청년들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청년들의 주요 질병과 생활습관을 고려하여 그 대상자의 범위를 변경·확대할 필요가 있다. 예를

66) 아시아경제(2022.7.3). HS애드, '노담 캠페인'으로 에피 어워드 최고상 수상. <https://www.asiae.co.kr/article/2022070309303797128>에서 2023년 9월 30일 검색.

〈제도: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 내용: 3개월간 월 24만 원 맞춤형 운동처방 등의 서비스를 본인부담금 10% 부담 조건으로 제공
 - 유산소, 근력향상, 체력증진 등 개인 맞춤형 운동처방
 - 운동처방에 따른 제공인력의 직접 지도하에 정기적 운동 실시
 - 식단 관리 및 영양 지도 등
 - 자세·체형교정(거북목, 라운드숄더, 척추·골반 이상 등) 운동
- 대상: BMI(체질량) 지수가 23 이상 18.5 미만인 과체중 또는 저체중 청년(19~34세)
- 참여 유형
 - 예방형: 건강관리가 필요한 국민
 - 관리형: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환자

* 출처: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 <https://www.youthcenter.go.kr/youngPlcyUnif/youngPlcyUnifDtl.do?bizId=R2023042612164>에서 2023년 10월 20일 검색.

〈제도: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건강인센티브제) 시범사업〉

- 내용: 참여자의 현재 건강상태를 안내하고 스스로 실천한 건강생활 노력 및 건강개선 결과에 따라 건강생활실천지원금(최대 6~8만 원) 지급
- 대상: 20~64세인 건강보험 가입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관하는 일반건강검진 결과 건강관리가 필요한 사람
- 참여 유형
 - 예방형: 건강관리가 필요한 국민
 - 관리형: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환자

* 출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nhis/together/wbhaea01000m01.do?mode=view&articleNo=10836081>에서 2023년 9월 30일 검색.

들면 과체중 또는 저체중 청년들이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체활동 실천을 인증하고 신체건강 지표가 개선되면 포인트를 지급하거나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를 위해 지급한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환급하는 것은 방안도 고려해볼만 하다.

②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시설퇴소청년 중 71.7%는 하루 2끼, 13.1%는 한 끼를 먹으며 최근 1년간 식비 부족으로 식사량이 줄거나 식사를 거른 적이 있다는 응답도 43.4%로 나타나는 등 식사를 통한 영양 공급에 어려움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식비 부담 경감 및 양질의 아침 식사 제공을 위해 2017년부터 시작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대상자를 대학생에서 해당 연령의 청년으로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천원의 아침밥’ 사업 중 학교부담금을 지자체 부담금으로 변경하고 지역 내 대학이나 구청과 같은 공공기관, 교회와 같은 종교기관 등과의 협의를 통해 기관 내 식당을 개방하거나 시민단체 등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식당(예: 청년밥상문간, 전북 익산 청년식당)과의 연계를 통해 비대학생 청년들에게도 양질의 아침밥을 1천 원에 제공하는 방안을

〈제도 및 사례: 천원의 아침밥 사업 및 청년식당〉

- 제도: 천원의 아침밥¹⁾
 - 내용: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식사를 1천 원*에 제공
* 1인 기준 학생 1천 원 + 정부 1천 원 + 학교부담금(자율)
 - 2022년 참여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사업지속 희망자 98.7%, 아침밥 중요성 인식 91.8%
 - 2023년 41개교 참여
- 청년식당 사례²⁾: 청년밥상문간
 - 내용: 후원자의 지원과 봉사자의 참여로 청년들에게 김치찌개(3천 원) 제공
 - 총 4곳(정릉점, 이화여대점, 낙성대점, 제주점)에서 운영
- 청년식당 사례 2³⁾: 전북익산 청년식당
 - 내용: 지역민 대상 가정식 판매 및 지역 아동청소년 대상 무료급식 제공
 - 사회적협동조합 청소년자립학교에서 운영
 - 학교 밖 청소년, 청소년쉼터 및 소년보호시설 퇴소청소년 등을 직원으로 고용

* 출처: 1)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3.3.20). 농식품부, '천원의 아침밥' 사업 참여대학 41개교 선정. <https://www.mafra.go.kr/home/5109/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aG9tZSUyRjc5MiUyRjU2NTc0MSUyRmFydGNsVmllldy5kbyUzRg%3D%3D>에서 2023년 9월 30일 검색.
2) 청년문간 홈페이지. <https://youthmungan.com/43>에서 2023년 9월 30일 검색.
3) 익산시 공식 블로그. <https://m.blog.naver.com/hiksanin/222100758901>에서 2023년 9월 30일 검색.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및 확대

설문조사 및 가명정보처리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시설퇴소청년들 중 우울증상을 보이는 이들은 전체 응답자의 24.5%로 나타났으며 특히 청소년시설 퇴소청년의 경우는 41.2%로 매우 높았다. 또한 자립수당 수급 후 2~3년 정도가 지나면 1년 미만이었을 때 보다 정신건강 상의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도 한다.

〈연구결과: 정신건강 영역〉

- 우울
 - 아동시설 퇴소청년 19%, 청소년시설 퇴소청년 41.2%, 소년보호시설 퇴소청년 31.6%, 일반청년 5.9%
- 삶의 만족도(10점 만점)
 - 아동시설 퇴소청년 5.13점, 청소년시설 퇴소청년 4.29점, 소년보호시설 퇴소청년 4.96점, 일반청년 6.71점
- 시설퇴소청년의 자립수당연차에 따른 정신건강 수준
 - 우울, 고립감: 자립수당연차 1년 미만<2~3년 이상
 - 삶의 만족도: 자립수당연차 1년 미만>2년 이상
- 양육시설 퇴소청년의 보호종료 유형에 따른 정신건강 수준
 - 우울, 고립감: 연장종료<중간종료
- 필요한 전문가의 상담을 받지 못한 비율: 시설퇴소청년 13.1% vs 일반청년 2.7%
 - 상담을 받지 못한 주된 이유: 비용 부담(시설퇴소청년 44.3% vs 일반청년 28.6%)

이와 관련하여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에 따르면 기존 10년을 주기로 실시되던 정신건강 검진을 '25년부터는 청년층(20~34살)부터 2년 주기 검진을 시행하고 평가 결과에서 우울증, 조현병, 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등에 연계하여 사후관리를 받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었다(관계부처 합동, 2023.4).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25년부터 실시되어 그 이전에는 공백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본 연구결과에서는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던 청년 10중 한 명 이상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설퇴소청년들의 우울을 비롯하여 정신질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①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의 개선 및 확대

현행 시설퇴소청년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정신적인 어려움이 보다 심각한 것으로 판단되는 집단인 청소년시설 퇴소청년들은 정작 이 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에 해당 사업의 우선지원 대상을 현행 보호종료아동에서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전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만 신청자가 많을 시에는 예산 상의 문제를 고려하여 시설퇴소청년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의 정도를 조정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또한 현행 10회(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 12개월)로 제한되어 있는 서비스는 심리·정서상 만성적이거나 중증도의 문제를 갖고 있는 등 심리·정서 상태의 위험도에 따라 지원 횟수나 기간을 좀 더 장기간으

〈제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 내용: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서비스(3개월 총 10회기) 제공
 - 사전·사후검사(90분) 각 1회
 -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제공(1:1원칙, 50분) 총 8회
 - 종결상담 1회
 -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 12개월 지원
- 서비스 제공인력 기준 및 본인 부담금
 - A형: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2년, 석사1년)이 있는 자 / 본인 부담금 6,000원
 - B형: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4년, 석사3년, 박사1년)이 있는 자 / 본인 부담금 7,000원
- 대상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 우선지원 대상: (1순위)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 상담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특히 B형의 경우는 실제 상담 경력을 중심으로 자격기준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심리검사 결과 고위험군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B형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신질환의 문제가 심각한 경우에는 정신과 전문의와도 연계하여 약물치료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② 단계별 맞춤형 정신건강 지원체계 구축

시설퇴소청년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개입은 그 심각성에 따라 단계별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림VI-5는 정신건강 증진을 개입 단계별 개입(안)을 3단계로 나누어 개입하는 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 중 2~3단계에서의 개입은 앞서 제시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시설퇴소 후 1년 미만 일 때 보다 2~3년이 지난 후 정신건강 문제가 더 불거진다는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에도 이러한 단계별 맞춤형 정신건강 지원은 시설퇴소 후 자립지원기관과도 연동하여 진행 할 수 있다. 즉 자립지원기간 초반에는 정신건강 예방 단계로 진행하면서 심리적 취약성의 조기 발견 및 예방에 중점을 두지만 이후 자립지원기간 중반기에 접어들면서 정신건강 문제의 심각성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2~3단계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단계: 정신건강 예방 단계 • 목적: 일상에서의 심리-정서적 지지 • 대상자: 시설퇴소청년 전체 • 주요 내용: 비전문가들(예: 시설종사자, 멘토, 또래상담자 등)과의 상시적 만남을 통한 심리-정서적 지지 상담 전문가가 제공하는 개인 및 집단 상담 프로그램 제공
2단계: 정신건강 위험 초기 단계 • 목적: 정신질환의 개선 및 중증화-만성화 차단 • 대상자: 정신건강 위험 초기 단계로 진단 받은 시설퇴소청년 • 주요 내용: 일정 수준 이상의 상담 전문가들과의 정기적 만남을 통한 개인상담 제공
3단계: 정신건강 고위험 단계 • 목적: 정신건강 관련 전문가의 집중 개입 및 치료 제공 • 대상자: 정신건강 중증 또는 만성화 단계로 진단 받은 시설퇴소청년 • 주요 내용: 정신건강전문-상담전문가-사례관리자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그림 VI-5. 정신건강 증진을 개입 단계별 개입(안)

(4)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확대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경험이 있는 시설퇴소청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년들에 비해 건강상태 및 삶의 만족도, 고립감, 불안 등 건강 및 심리·정서 영역의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이는 의료적 지원이 개인의 건강 및 심리·정서적 측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결과: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경험에 따른 심리·정서 상태 차이〉

- 생계급여 수급 경험: (건강상태) 있음<없음
- 의료급여 수급 경험: (건강상태, 삶의 만족도) 있음<없음
(불안, 고립감) 있음<없음
- 주거급여 수급 경험: (건강상태) 있음<없음
(불안) 있음<없음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22.11.17.)’에서는 의료비 지원사업을 신설(‘23년 하반기)하여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에게 보호종료 후 5년간 의료급여 2종 수준으로 본인부담금을 경감시키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자립준비청년’에 국한되어 있어 여전히 타 시설 자립준비청년들은 지원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 범위를 유사한 상황에 처한 타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으로 포괄·확대하되, 개인의 취약성·위기도를 반영하여 우선지원대상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이로써 경제적인 이유로 병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신체적·심리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고 필요 시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다는 심리적인 지지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5) 참여 영역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설퇴소청년들은 참여 활동 이전에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고립·은둔의 문제가 시설퇴소청년들을 대상으로 중요

〈연구결과: 고립·은둔〉

- 고립·은둔
 -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사람 없음: 19.9%
 - 현재 6개월 이상 다른 사람과 관계 맺지 않음: 7.3%
- 고립감을 느끼는 정도
 - 1년 이상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립된 느낌: 시설퇴소청년 16% vs 일반청년 2.8%

하게 해결되어야 할 문제 중 하나임을 시사한다.

(1) 고립·은둔 청년의 발굴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및 모임의 활성화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시설퇴소청년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는 것을 물론 이들을 포함하여 고립감을 느끼는 시설퇴소청년들이 온오프라인에서의 사회적 관계 형성에 자발적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다각적인 참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대상자의 발굴을 위해서는 퇴소시설-퇴소 후 지원기관-지자체 등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비슷한 취미나 활동, 관심사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소그룹 청년 모임을 지원함으로써 청년 모임의 활성화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는 지역 사회 내에서 또래 간 사회적 관계 형성이 가능하도록 동네친구 만들기 등의 사업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다만 고립감을 느끼는 청년들은 이러한 모임 참여에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을 성향이 강하므로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동네 식당이나 광장 등에서 천원 식사 행사 개최 및 참가자 대상 경품 지급, 참가자 간 관계를 이어줄 수 있는 활동가 배치, 소집단 활동 마련 등이 포함될 수 있다.

(2)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들의 당사자 활동 확대

면접조사 결과, 시설퇴소 직후 직면한 어려움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관계망의 도움을 받았던 시설퇴소청년들은 본인과 비슷한 경험을 하는 후배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들을 돕고 있었고 앞으로도 돕고 싶어 했다. 또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역사회 안에서 서로 돌보는 공동체를 꿈꾸고 이를 위한 활동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의지될 만한

〈연구결과: 참여영역〉

- 설문조사 결과: 청년 활동 참여율 및 참여 횟수 저조
 - 중앙정부 청년 온라인 플랫폼(온라인청년센터, 청년포털 등) 접속 및 상담, 참여 경험 없음: 87.4%
 - 지자체 청년센터(청년공간) 활동 및 프로그램 참여 경험 없음: 87.8%
- 면접조사 결과
 - 정보 공유 및 관계 형성 등을 위해서 당사자 네트워크 및 자조모임이 중요함.
 - 안정적인 정주를 위해 지역사회 기반의 사회적 지지체계 구축 필요함.
 - 나를 믿어준 분들에게 보답하고 싶음, 후배들을 도움.
 - 건강한 가족을 만들고 싶음, 지역사회 공동체를 꿈꾸, 누군가에게 기여하고 싶음, 의지할 사람이 됨, 인식개선 활동에 참여

사람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들이 서로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자체 내 자조모임을 조직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시설퇴소청년들의 대표적인 자조모임으로 ‘바람개비 서포터즈’가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바람개비 서포터즈’는 양육시설 퇴소청년 등 보호종료아동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 청소년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 퇴소청년들은 이러한 자조모임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들이 시설유형에 구분 없이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역별 자조모임 조직을 지원·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사례: 바람개비 서포터즈〉

- 자격기준:
 - 실제 자립을 경험한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으로 ‘바람개비서포터즈 예비 학교’ 과정(총 4회) 이수
 - 2023년 바람개비서포터즈 14기(연장보호·자립준비청년 60명) 신규 모집
- 주요 내용: 보호종료를 앞둔 아동들의 자립준비를 돕는 멘토로서
 - 직종별 전문가 멘토링: 자립준비청년들에게 필요한 직종별 정보·조언 제공을 위해 직종별 전문가와의 소규모 멘토링 또는 강연회 운영
 - 지역별/권역별 자조모임: 네트워크 구축(심리·정서 지지체계 형성) 및 보호유형별 정책제안을 위해 서포터즈 주도로 자조모임 진행
 - 방문 교육 및 연계 멘토링: 보호아동에게 자립선배의 사례(자립경험) 공유를 통한 공감대·유대감 형성 및 심리·정서적 지원, 자립관련 정보제공

* 출처: 2023년 아동분야 사업안내(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3)에서 제시한 내용을 재구성함.

또한 이들 모임이 자조모임으로 끝나지 않고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청소년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청년, 보다 실용적이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 제공자 및 심리·정서적 지지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퇴소청년 지원자 중 심사를 통해 선발하고 선발자에 한 해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과정을 이수하도록 한 후 자립지원 전문 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당사자 활동가는 당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연계망을 활용하여 앞서 언급한 고립·은둔청년 발굴 및 지원에 있어서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면접조사 결과에서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들은 자신들의 연락망을 통해 동일한 시설에서 퇴소한 청년들 중 고립·은둔 상태에 놓인 이들에 대한 정보 수집에 용이하고 또 스스로도 고립·은둔 상태에 놓였다 벗어난 경험도 갖고 있는 경우들이 보고되었다. 이에 활동가를 희망하는 시설퇴소

청년들에게 일정한 교육과 훈련을 이수하도록 한다면 고립·은둔 청년 지원 활동에 참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정보 접근성 강화 및 청년들의 정보이해능력 강화

설문조사 및 가명정보처리 자료 분석, 면접조사 결과,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중 자신과 관련 있는 제도나 지원의 자격 여부나 절차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이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사회보장제도의 수급 여부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고 지원 제도 자체를 알고 있더라도 신청 및 이용 절차가 복잡하여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보고되었다. 이에 시설퇴소청년들의 정보 수집 및 활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책이 필요하다.

〈연구결과: 제도 활용 등에서의 격차〉

- 설문조사 결과
 - 장애인 등록하지 않은 이유: 절차를 잘 모름 14.7%
 - 급여 지급 주체 및 근로계약서 작성·주휴수당 수령 여부: 잘 모름 27.5%
 - 정부지원 주택제도가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 지원 절차 복잡 23.8%
 - 전문가의 상담(진료)을 받지 못한 주된 이유: 어디로 갈지 모름 14.8%
 - 병원 치료가 필요했으나 받지 않은 이유: 어디로 갈지 모름 24.2%
- 가명정보처리 자료 분석 결과
 - 생계급여 수급 경험이 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 7.8%
 - 주거급여 수혜 여부를 부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경우: 28.3%
 - 의료급여 수혜 여부를 부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경우: 82.5%
 - 디딤씨앗통장 이용 여부를 부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경우: 47%
-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에 따른 심리·정서 상태
 - 생계급여: 주관적 건강상태(수급)미수급)
 - 의료급여: 주관적 건강상태, 삶의 만족도(수급)미수급), 불안(수급)미수급)
 - 주거급여: 주관적 건강상태(수급)미수급), 불안(수급)미수급)
- 면접조사 결과
 - (신청해도 안 될 것 같다는) 자신감 부족으로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음.
 - 청약이나 실손보험에 대해 알지 못해 손해 봄.
 - 최근 지원사업의 확대로 적극적으로 알아보면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지원제도의 신청절차나 이용과정이 까다로워 신청 및 이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①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한 공공포털 이용의 편의성 제고

시설퇴소청년들의 자립을 위해 최근 공공 및 민간 차원의 지원이 많이 확대되었으나 지원 혜택에서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는 지원 정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보니 개인이 적극적으로 찾아야하고 이에 따라 개인의 정보수집 및 이해능력의 차이

는 지원혜택의 차이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개인 간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복지부의 ‘자립정보on’이나 여가부의 ‘자립해냄’ 등 공공 포털사이트를 보다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포털사이트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사이트 안에서 공공·민간 서비스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배치하며 서비스 내용 역시 이해하기 쉬운 말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서비스 알림 및 신청 기능 등을 탑재하여 서비스 내용 보기-신청-결과 확인이 원스톱으로 가능하도록 신청 및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서비스 알림에서는 개인이 필요한 서비스 영역을 설정하면 해당 영역에 대한 알림만 선택적으로 올 수 있도록 설정하는 방안이 있으며 서비스 신청 기능에서는 신청을 원할 경우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해당 사이트로 연결해 주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보다 적극적으로는 현재 신청주의에 기반하여 운영 중인 복지 및 맞춤형 급여 안내서비스가 개인이 가입을 하고 신청해야지만 이용 가능한 방식(opt-in 방식)에서 시설퇴소를 하거나 일정연령에 도달하면 당연 가입이 되면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 활용을 비동의하여 수신을 거부하는 방식(opt-out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 이러한 정보제공 방식의 개선은 시설퇴소 후 자립 상황에 직면하는 청년들이 퇴소시설의 유형과 관계없이 자신의 상황에 따라 유용한 복지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 개인의 정보 접근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다.

② 당사자들의 정보이해능력(Information literacy) 강화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들 중에는 개인의 이해능력 부족으로 자립정보 수집 및 이해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수집하고 이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청년들의 정보이해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청년들이 자주, 그리고 쉽게 사용하는 유튜브 등의 채널을 활용하여 이해하기 쉬운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하는 방안을 고려해볼만 하다. 교육자료 제작 및 배포 시에는 빠르게 변화하는 지원제도의 내용을 신속하고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교육영상 제작활동에 앞서 언급했던 당사자 활동가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으며 온라인 외에도 오프라인에서 당사자 활동가의 멘토링, 지원기관 내 제도 안내 전담 인력 배치 등을 통해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들의 정보이해능력을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세부 추진과제들을 표로 제시하면 표 VI-1과 같다.

표 VI-1.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추진과제(안)

[국정과제]			추진 기간	주무 부처
91.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 기회 보장(관계부처 합동)				
I. 기본 방향	1.1. 청년 정책으로서의 지원정책 수립	1.1.1.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의 정책조정 및 총괄 기능 강화	중장기	국무조정실
		1.1.2. 정책 수립·집행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참여 강화	단기	국무조정실 관련 부처
	1.2. 자립 준비청년 지원제도의 자격기준 개선	1.2.1 아동양육시설 퇴소청년 외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격심의 제도 도입	중장기	국무조정실 관련 부처 지자체
		1.2.2 무의탁 소년원 퇴소청년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강화	단기	법무부
	1.3. 통합적이고 단계적인 개인 맞춤형 자립지원		중장기	관련 부처
	1.4. 지역 기반 지원체계 구축 및 지역 격차 해소		중장기	관련 부처 지자체
II. 영역 별 과제	2.1. 진로· 고용 영역	2.1.1. 시설퇴소청년들의 대입기회 제공을 위한 기회균형선발 전형 대상기준 개선	단기	교육부
		2.1.2. 지역 기반 진로탐색 지원체계 마련	중장기	교육부, 고용부 지자체
		2.1.3. 산학 연계를 통한 양질의 직업 훈련-고용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단기	
		2.1.4. 지역 기반 기초근로훈련 프로그램 제공	단기	
		2.1.5. 근로 권익 보호 강화	단기	고용부
	2.2. 경제 영역	2.2.1. 「청년기본법」 하위법령 제정: 청년 금융생활 지원 근거 마련	중장기	국무조정실
		2.2.2. 시설퇴소청년 자립(지원)수당제도 운영 개선	중장기	관련 부처 지자체
		2.2.3. 관계기반 금융생활 지원제도 신설	단기	금융위, 지자체
		2.2.4. 자산형성지원제도 확대	중장기	관련 부처 지자체
	2.3. 주거영역	2.3.1. 전세임대 지원 대상 확대	중장기	국토부
		2.3.2. 지역 기반의 주거지원사업 추진 및 주거지원 대상 확대	단기	
	2.4. 건강영역	2.4.1. 건강검진율 제고를 위한 노력	-	-
		2.4.1.1. 건강검진 안내 및 홍보 강화	단기	복지부
		2.4.1.2. 건강검진 편의성 제고 및 사후관리 강화	중장기	

[국정과제]		추진 기간	주무 부처
91.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 기회 보장(관계부처 합동)			
2.5. 참여영역	2.4.2. 올바른 건강행동 증진을 위한 제도 확대	-	-
	2.4.2.1.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확대	단기	복지부
	2.4.2.2.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	단기	교육부, 복지부
	2.4.3.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및 확대	-	-
	2.4.3.1.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의 개선 및 확대	단기	복지부
	2.4.3.2. 단계별 맞춤형 정신건강 지원체계 구축	중장기	
	2.4.4.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확대	중장기	
	2.5.1. 고립·은둔 청년의 발굴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및 모임의 활성화	중장기	관련 부처 지자체
	2.5.2. 시설외소 자립준비청년들의 당사자 활동 확대	단기	
	2.5.3. 정보 접근성 강화 및 청년들의 정보이해능력 강화	-	-
	2.5.3.1.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한 공공포털 이용의 편의성 제고	중장기	관련 부처
	2.5.3.2. 당사자들의 정보이해능력(Information literacy) 강화	단기	



참고문헌

참고문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2).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이용안내서.
- 경기북부자립지원관 (2023). 내부자료.
- 관계부처 합동 (2020.12).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
- 관계부처 합동 (2021.7.13).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
- 관계부처 합동 (2022.11.17). 부모의 마음으로, 따뜻한 동행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 관계부처 합동 (2023.4).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3~'27).
- 국무조정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청년 삶 실태조사.
- 국민권익위원회 (2016). 보호대상아동의 보호 및 자립지원 개선.
-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기현, 장근영, 신인철, 임성근 (2023).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II.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성민 (2021). 보호종료아동: 자립당사자의 자립경험을 중심으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동광, 115, 14-25.
- 김수정, 김지선, 정익중 (2017). 가정외보호 퇴소 청소년의 원가족 관계 경험, 한국아동복지학, 58, 1-45.
- 김정연, 하지선, 김인숙 (2011). 시설 십대 청소년의 “자립”척도 개발: 십대여성 지원 시설 입소 및 이용자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3(2), 23-53.
- 김지연, 백혜정, 김미향 (2022). 2022년 시설퇴소청년 생활실태조사 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지연, 백혜정, 김미향, 김성아, 정소연, 이우태, 이상정, 박광옥 (2022). 청년종합연구 I: 정책소외계층 청년 실태 및 정책개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혁 (2020). 소년원 출원생의 사회정착을 위한 연계체계에 관한 일본 사례연구. **소년보호연구**, 33(1), 1-46.
- 노혜진, 남기철, 박미희, 이봉주, 이성학, 이신혜 (2019). 희망플랜(니트청년 지원 사업)에 참여한 청년의 변화과정: 근거이론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21(3), 1-33.
- 대한민국 정부 (2023).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박현동 (2022). 가정밖 청소년의 주거환경을 위한 지원 방향성. **제22차 아동복지포럼 자료집: 자립준비 청년의 주거자립을 위한 현실적 대안 모색**, 46-49. 서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 박혜지, 이정화 (2020). 가정위탁보호가 종료된 청소년들의 자립과정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31(1), 65-80.
- 법무부 (2023). **내부자료.**
- 법무연수원 (2023). **2022 범죄백서.**
- 보건복지부 (2023). **2023년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안내.**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2).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3). **2023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 설경옥, 황다슬, 심진화 (2018). 다문화 아동의 차별경험과 자존감의 관계에서 민족정체성과 내재화된 낙인의 조절된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1(1), 71-90.
- 여성가족부 (2023). **내부자료.**
- 여성가족부, 복권위원회,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2). **자립이 필요할 때 읽어보는 서책.**
- 유영립, 양영미, 박미현 (2015). 아동양육시설 퇴소 자립청소년의 자립에 대한 이해: 생애사적 관점으로. **아동과 권리**, 19(3), 509-550.
- 이상정, 김지민, 류정희, 허은영, 박세경, 임성은, 김지연, 황정하, 김무현 (2020).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임주원, 김서현, 홍진주 (2022). 자립준비청년의 지역사회 자립지원 프로그램 참여경험. **사회과학연구논총**, 38(2), 145-186.
- 임희진, 황여정, 유성렬 (2022).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III: 후기청소년.**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전민경 (2020).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준비 지원 실태조사 연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 정세정, 김문길, 김태완, 김동진, 김성아, 이원진, 이해정, 임덕영, 함선유, 류진아, 홍성운 (2021). **청년 삶 실태조사 추진방향 수립연구**. 국무조정실, 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 정세정, 류진아, 강예은, 김성아, 함선유, 김동진, 임덕영, 신영규, 김문길, 이해정, 김기태, 김태완, 이원진 (2022).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 정익중, 김주현 (2019). 가정위탁종결청소년의 자립경험. **한국가족사회복지학**, 64, 131-163.
- 주해란, 마미나, 이예진, 황소연, 안태구 (2022). 아동양육시설의 양육 환경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보호종료아동의 관점에서, **청소년학연구**, 29(7), 25-59.
- 차유림, 민소영, 장혜림 (2022).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과정, **청소년복지연구**, 24(4), 79-99.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연도 없음).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이용안내서**.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23). **파일송수신 안내 자료(신청기관 담당자용)**.
- 황여정, 임희진, 정은주, 유설희, 정윤미 (2022).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홍나미, 박주혜, 강현주 (2023). 자립준비청년의 자조모임 경험에 관한 포토보이스 연구: 가정위탁보호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72(2), 1-37.
- Bowen, G. A. (2006). Grounded theory and sensitizing concepts. *International Journal of Qualitative Methods*, 5(3), 1-9.
- Brand, P., & Yancey, P. (1980).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a surgeon looks at the human and spiritual body*. Zondervan.
- Charmaz, K. (2006). *Constructing Grounded Theory*. Sage.
- Cunningham, M. J., & Diversi, M. (2013). Aging out: youths' perspectives on foster care and the transition to independence. *Qualitative Social Work*, 12(5), 587-602.
- Engster, D. (2007). **돌봄: 정의의 심장**. 김희강·나상원 역. 서울: 박영사.
- Flick, U. (2002). **질적 연구방법**. 임은미·최금진·최인호·허문경·홍경화 역. 한울.
- Kittay, E.F. (1999). **돌봄: 사랑의 노동**. 김희강·나상원 역. 서울: 박영사.
- Laurenceau, J. P., Barrett, L. F., & Pietromonaco, P. R. (1998). Intimacy as an interpersonal process: The importance of self-disclosure, partner disclos

- ure, and perceived partner responsiveness in interpersonal exchang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5), 1238-1251.
- Mendes, P., & Rogers, J. (2020). Young people transitioning from out-of-home care: What are the lessons from extended care programmes in the USA and England for Australia?. *The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50(5), 1513-1530.
- Orloff, A. S. (2009). Gendering the Comparative Analysis of Welfare States. *Sociological Theory*, 27(3), 317-343.
- Patton, M. Q. (1990). Qualitative designs and data collection. In M. Q. Patton (Ed.), *Qualitative Evaluation and Research Methods*. (pp. 169-186). Sage Publication.
- Strauss, J., & Corbin, A. (200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3rd)*. Sage.
- Tronto, J. C. (2017). There is an Alternative: Homines Curans and the Limits of Neoliberalism. *International Journal of Care and Caring*, 1(1), 27-43.
- 가명정보결합 종합지원시스템 홈페이지. <https://link.privacy.go.kr/nadac/organ/introData.do>에서 2023년 9월 11일 검색.
- 경기도 경기주거복지포털 (2022.8.17).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관련 사업 안내. <https://housing.gg.go.kr/board/20041300000001/SYS220817-01007277/view?bbsId=SYS200413-00000001&postCls=&pageNumber=0&option=&condition=both&filter=>에서 2023년 10월 4일 검색.
- 경기도청 홈페이지. 2023년 경기도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참가자 모집(2023.2.7). <https://new-ggopen.gg.go.kr/bbs/boardView.do?bsIdx=464&bIdx=68716646&page=1&menuId=1534&bcIdx=519>에서 2023년 10월 19일 검색.
- 경인매일 (2023.2.28). 경기도, ‘2023년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추진계획’ 수립·시행. <https://www.k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388295>에서 2023년 10월 4일 검색.
- 경향신문 (2022.10.19). 보육원·그룹홈 나온 청년 4명 중 1명 ‘소재 불명’…1명이 135명 관리.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210191131001?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ial&utm_campaign=sharin에

서 2023년 5월 11일 검색.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2916559922에서 2023년 9월 26일 검색.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30100461에서 2023년 9월 26일 검색.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21.9.30). 우범소년 규정 삭제 등 소년사법제도 전면적 개선 필요.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boardtypeid=24&boardid=7607280&menuid=001004002001#>에서 2023년 5월 11일 검색.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2022.10.26).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추진계획. 국무조정실 홈페이지. <https://www.opm.go.kr/opm/news/press-release.do?mode=view&articleNo=151716&article.offset=10&articleLimit=10&srPeriodEnd=2022-10-28&srPeriodStart=2022-10-24>에서 2023년 2월 13일 검색.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nhis/together/wbhaea01000m01.do?mode=view&articleNo=10836081>에서 2023년 9월 30일 검색.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3.3.20). 농식품부, ‘천원의 아침밥’ 사업 참여대학 41개교 선정. <https://www.mafra.go.kr/home/5109/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aG9tZSUyRjc5MiUyRjU2NTc0MSUyRmFydGNsVmllZy5kbyUzRg%3D%3D>에서 2023년 9월 30일 검색.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https://help.scourt.go.kr/nm/min_19/min_19_7/index.html에서 2023년 7월 5일 검색.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홈페이지.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563786>에서 2023년 9월 28일 검색.

마이홈포털. <https://www.myhome.go.kr/hws/portal/sch/selectRsdtRcritNtcDetailView.do?pblancId=12816>에서 2023년 4월 26일 검색.

법무부 보도자료 (2022.10.26). 소년범죄 종합대책 마련. <https://www.moj.go.kr/moj/221/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9qJTJGMTgyJTJGNTY0MTc1JTJGYXJ0Y2xWaWV3LmRvJTNGcGFzc3dvcmQlM0QlMjZyZ3NCZ25kZVN0ciUzRCUyNmJic0NsU2VxJTNEJTl2cmdzRW5kZGVtdHlM0QlMjZpc1>

ZpZXdNaW5lJTNEZmFsc2UIMjZwYWdlJTNEZmZlMjZiYnNPcGVuV3JkU2VxJTNEJTI2c3JjaENvbHVtbiUzRHNoJTI2c3JjaFdyZCUzRCUyNg%3D%3D에서 2023년 5월 16일 검색.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12.18). 보호종료아동의 물음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답하다!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299&CONT_SEQ=351938에서 2023년 5월 16일 검색.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3.7.18). 보건복지부 소관 5개 법률안 7월 18일 국회 본회의 통과.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1132>에서 2023년 10월 2일 검색.

아시아경제 (2022.7.3). HS애드, '노답 캠페인'으로 에피 어워드 최고상 수상. <https://www.asiae.co.kr/article/2022070309303797128>에서 2023년 9월 30일 검색.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1.5.4). 여성가족부, 청소년쉼터 퇴소자 자립지원수당 첫 지원.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772에서 2023년 10월 2일 검색.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6.10).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내 손 안의 자립지원 정보'.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1081>에서 2023년 10월 2일 검색.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3.6.9).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행복도시락' 배송 시작.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9330에서 2023년 7월 5일 검색.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sp/yth/sp_yth_f014.do에서 2023년 4월 26일 검색.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3&bbtSn=709594에서 2023년 4월 26일 검색.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cs/opf/cs_opf_f941.do에서 2023년 7월 14일 검색.

연합뉴스 (2023.8.31). 통합위 "가정밖 보호 6개월 이상이면 '자립지원 필요청년'으로". <https://www.yna.co.kr/view/AKR20230831066700001?input=1195m>에서 2023년 10월 10일 검색.

영국 아동법 자문 홈페이지. <https://childlawadvice.org.uk/information-pages/services-for-children-leaving-care/>에서 2023년 7월 20일 검색.

영국정부홈페이지. <https://www.gov.uk/guidance/case-management-guidance/how-to-manage-bail-and-remands>에서 2023년 10월 1일 검색.

영국정부 홈페이지. 'Personal Independence Payment (PIP)'. <https://www.gov.uk/pip/how-much-youll-get>에서 2023년 10월 6일 검색.

영국 하원도서관 홈페이지. <https://researchbriefings.files.parliament.uk/documents/CBP-8429/CBP-8429.pdf>에서 2023년 7월 20일 검색.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 <https://www.youthcenter.go.kr/main.do>에서 2023년 5월 24일, 9월 20일 검색.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 <https://www.youthcenter.go.kr/youngPlcyUnif/youngPlcyUnifDtl.do?bizId=R2023042612164>에서 2023년 10월 20일 검색.

익산시 공식 블로그. <https://m.blog.naver.com/hiksanin/222100758901>에서 2023년 9월 30일 검색.

인천광역시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RgC0ulpmb1g>에서 2023년 9월 27일 검색.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000000021079>에서 2023년 7월 5일 검색.

청년문간 홈페이지. <https://youthmungan.com/43>에서 2023년 9월 30일 검색.

한겨레 (2021.12.30). 2024학년도 대입부터 사회적 배려 대상자 10% 이상 의무 선발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025358.html>에서 2023년 9월 25일 검색.

한국소년보호협회 홈페이지. <https://www.kjpa.or.kr/>에서 2023년 5월 24일 검색.

한국소년보호협회 홈페이지. <https://www.kjpa.or.kr/51>에서 2023년 5월 8일 검색.

한국소년보호협회 홈페이지. <https://www.kjpa.or.kr/80>에서 2023년 5월 30일 검색.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kisa.or.kr/1030301>에서 2023년 9월 8일 검색.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방침. https://www.nypi.re.kr/modedg/contentsView.do?ucont_id=CTX030018&menu_nix=g1XP6VLx에서 2023년

10월 23일 검색.

협동조합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coop_2012&logNo=223134089205&parentCategoryNo=&categoryNo=6&viewDate=&isShowPopularPosts=true&from=search에서 2023년 9월 30일 검색.

e-나라지표 홈페이지.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38에서 2023년 5월 16일 검색.

KBS뉴스 (2023.5.30).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부동산 마련 과정 지원.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687539>에서 2023년 10월 4일 검색.

NYC Administration for Children's Services (2022.3.29), MAYOR ADAMS ANNOUNCES NEW CAREER TRAINING PROGRAM FOR YOUTH IN FOSTER CARE. <https://www.nyc.gov/assets/acs/pdf/PressReleases/2022/VCred.pdf>에서 2023년 9월 26일 검색.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725호, 2023. 9. 19., 타법개정]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25호, 2021. 8. 17., 타법개정]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19611호, 2023. 8. 8., 일부개정]

「소년법」. [법률 제17505호, 2020. 10. 20., 타법개정]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국토교통부훈령 제1631호, 2023. 6. 28., 일부개정]

「아동복지법」. [법률 제17784호, 2020. 12. 29., 일부개정]

「청년기본법」. [법률 제19253호, 2023. 3. 21., 일부개정]

「청소년복지지원법」. [법률 제18101호, 2021. 4. 20., 일부개정]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국토해양부훈령 제905호, 2012. 10. 15., 일부개정]

○ — 부 록

부 록

1. 조사지

2023년 시설외소 자립준비청년 생활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산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개년간 시설외소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에 대한 요구와 일반 청년 대비 생활 영역의 격차를 분석하여 사회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설외소 자립준비청년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응답하신 내용과 개인정보는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 목적 이외 다른 용도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설문 내용은 맞고 틀린 것이 없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이 정책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외소 자립준비청년이란?** 자립준비청년과 아동·청소년기에 청소년복지시설, 소년보호시설에서 다년간 생활한 후 퇴소하여 자립지원을 받거나 받고 있는 만 19세 이상 청년을 의미합니다.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1. 통계작성과정에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2.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연구 문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백혜정 선임연구위원 044-415-2115

■ 조사 문의 : ㈜한국리서치 여론 1본부 2부 박종경 수석 080-430-1000

조사 주관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 수행기관	Hankook Research
---------	--	---------	------------------

SQ1. [조사 참여 동의]

1. 나는 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2. 나는 내가 원하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3. 나는 내가 응답한 내용이 연구목적으로 제3자(연구자)에게 제공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스스로 동의합니다.

1. 동의
2. 비동의

SQ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생활실태조사> 관련 의견 수렴, 공적 서비스 수혜 내역 확인 및 답례품 제공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성별, 생년월일, 거주지역, 연락처(휴대전화번호)
개인정보 수집 기간 : 2026년 12월 31일까지(연구종료일부터 3년 동안)

※ 보유 및 이용기간 경과 후 또는 기간 내라도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즉시 파기함.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동의
2. 비동의

I. 일반 사항

문1. 본인의 이름이 **DB (본인 이름)**이/가 맞으십니까?

1. 맞다 →문1-2
2. 아니다
3. 개명하여 현재 다른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문1-1. 본인의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1. ()

문1-2. 귀하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은 언제인가요?

1. ()년
2. ()월
3. ()일

문2. 본인의 성별이 **DB (성별)**이/가 맞으십니까?

1. 맞다 →문3
2. 아니다

문2-1. 귀하의 성별은 무엇인가요?

1. 남자
2. 여자

문3. 귀하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이 **DB (시도) (시군구)**이/가 맞으신가요?

1. 맞다 →문4
2. 아니다

문3-1. 귀하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1. 시·도: ()
2. 시·군·구: ()

문4. 귀하는 작년 조사에서 총 **DB (년1) (개월1)** 동안 자립지원을 받았다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작년 조사 이후인 2022년 8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자립지원을 받은 기간은 총 몇 개월인가요?

※ **자립지원** : 아동양육시설(보육원), 아동그림움(공동생활가정), 청소년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소년원(소년부류심사원 포함) 등에서 나온 후, 생활했던 시설이나 자립지원전담기관, 자립지원관, 자립생활관 등에서 자립을 위해 받은 지원
 ※ 지원 받은 적이 없다면 **0개월**로 응답해 주세요.
 지원 받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1개월**로 응답해 주세요.
 ※ 두 기관 이상에서 각기 다른 기간 동안 지원을 받았다면 모든 기간을 더해서 응답해 주세요.
 예를 들어, 보육원 퇴소 후 3개월 지원을 받고, 이후 자립지원관에서 3개월을 받았다면 "총 6개월"로 응답해 주세요.

1. 총 ()개월

문4-1. 귀하가 시설퇴소 후 자립지원을 받은 기간은 모두 어느 정도인가요?

※ **자립지원** : 아동양육시설(보육원), 아동그림움(공동생활가정), 청소년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소년원(소년부류심사원 포함) 등에서 나온 후, 생활했던 시설이나 자립지원전담기관, 자립지원관, 자립생활관 등에서 자립을 위해 받은 지원
 ※ 지원 받은 적이 없다면 **0년 0개월**로 응답해 주세요.
 지원 받은 기간이 6개월인 경우 **0년 6개월**로 응답해 주세요.
 지원 받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0년 1개월**로 응답해 주세요.
 ※ 두 기관 이상에서 각기 다른 기간 동안 지원을 받았다면 모든 기간을 더해서 응답해 주세요. 예를 들어, 그림움에서 퇴소 후 2년 지원을 받고 이후 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지원을 받았다면 "총 2년 6개월"로 응답해 주세요.

1. 총 ()년

2. ()개월

문5. 귀하는 맞춤형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를 받고 있거나 받은 적이 있나요?

1. 현재 수급 중이다

2. 과거에 수급하였으나 현재는 수급하지 않고 있다 →문6

3. 수급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문6

문5-1. 각 유형별로 현재 급여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선택해 주세요.

생계급여	1. 수급
	2. 비수급 (가구원 일부 수급 포함)
의료급여	3. 의료급여 1종
	4. 의료급여 2종
주거급여	5. 비수급
	6. 수급
교육급여	7. 비수급
	8. 수급
	9. 비수급

문6. 현재 귀하의 주거지에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 직장, 학업 등을 이유로 주중에만 따로 살거나, 잠깐 따로 사는 경우는 "함께 살고 있다"로 응답해 주세요.
※ 반려동물은 제외하고 응답해 주세요.

1. 혼자 살고 있다 →문8
2. 함께 살고 있다

문6-1. 현재 귀하의 주거지에 함께 사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와 함께 살고 있나요? (중복 선택 가능)

※ 직장, 학업 등을 이유로 주중에만 따로 살거나, 잠깐 따로 사는 경우는 "함께 살고 있다"로 응답해 주세요.
※ 반려동물은 제외하고 응답해 주세요.

1. 부모(새아버지, 새어머니 포함)
2. 형제
3. 친인척, 조부모 ()명
4. 배우자 (※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는 사실혼 포함) ()명
5. 자녀 ()명
6. 친구, 선후배, 직장동료 등 ()명
7. 기타() ()명

문6-2. 현재 귀하의 주거지에 함께 사는 사람은 총 몇 명 인가요?

1. ()명

문6-3. 귀하의 가정은 맞벌이를 하고 있나요?

※ 휴직이나 아르바이트도 돈을 버는 것으로 응답해 주세요.

1. 맞벌이
2. 외벌이(본인)
3. 외벌이(배우자)
4. 둘 다 벌이가 없다

문7. 귀하와 함께 사는 사람 중에 **신체적·정신적 문제, 노령으로** 계속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있나요?

1. 있다
2. 없다 →문8

문7-1. 함께 사는 사람 중에 **신체적·정신적 문제, 노령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중복 선택 가능)

1. 부모(새아버지, 새어머니 포함)
2. 형제
3. 친인척, 조부모
4. 배우자 (※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는 사실혼 포함)
5. 자녀
6. 친구, 선후배, 직장동료 등
7. 기타()

문7-1-1. 함께 사는 중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인원 수를 적어주세요.

1. ()명

문7-2. 현재 함께 사는 사람 중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총 몇 명 인가요?

1. ()명

문7-3.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귀하가 주로 돌보고 있나요?

1. 내가 주로 돌본다
2. 나는 필요할 때 도와주고 주로 다른 사람이 돌본다
3. 나는 거의 돌보지 않는다

문8. 귀하는 이주배경에 해당하나요?

※ 이주배경 : 다문화가족(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외국인이거나 귀화한 경우)
 북한이탈가족(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북한이탈주민인 경우)
 중도입국(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는 도중에 한국으로 이주한 경우)

1. 예
2. 아니오
3. 잘 모르겠다

II. 교육, 훈련

문9. 귀하는 작년 조사에서 최종 학력이 **[DB (학력)]** 이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작년과 비교하여 현재 최종 학력에 변화가 있으신가요?

※ 학력 변화 : 재학 중이었다가 중퇴/휴학/졸업 등으로 변경된 경우
 상위학교로 새로 입학한 경우(고졸 -> 전문대/4년제, 대졸 -> 대학원 등)
 검정고시에 합격한 경우 등

1. 있다
2. 없다 (작년과 같음) ->문10

문9-1.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디에 해당하나요?

※ 평생교육원 또는 학점은행제의 경우 학위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 중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 대학교(전문대학 포함) 졸업을 유예 중인(졸업을 늦추는) 경우는 재학 중으로 응답해 주세요.
 ※ 검정고시 취득은 졸업으로 인정합니다.

학교급	재학	휴학	중퇴	수료/졸업
	1	2	3	4
1. 중학교 이하				
2. 고등학교(미인가 대안학교 포함)				
3. 전문대학(2~3년제)				
4. 대학교(4~6년제)				
5. 대학원(석사 이상)				

문10. 귀하는 **학교교육 외 취업을 위해 별도의 비용을 들여**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적이 있나요?

1. 있다
2. 없다 →문11

문10-1. 귀하가 받은 교육 및 훈련은 취업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앞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1. 전혀 도움이 안 된다
2. 별로 도움이 안 된다
3. 보통이다
4. 약간 도움 된다
5. 매우 도움 된다

문11. 귀하는 정부(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취업관련 교육 및 훈련을 받을 생각이 있나요?

1. 있다 →문12
2. 없다

문11-1. 정부(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취업관련 교육 및 훈련을 받을 생각이 없다고 응답한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1. 시간이 없어서
2. 돈을 벌어야 해서
3. 받을 필요가 없어서
4.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5. 기타()

문12. 귀하는 **취업/창업을 위해** 다음 중 어떤 영역의 교육이나 훈련을 받고 싶나요? [단수]

1. 특정 직종과 관련된 직업 훈련
2. 창업교육
3. 어학
4. 교양
5. 기타()

Ⅲ. 고용

문13. 귀하는 **지난 일주일간**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하였나요?

※ 일당 및 시간당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일을 한 경우도 **‘일하였다’**에 응답해 주세요.
 ※ 직업이나 직장이 있지만 지난주에 일하지 않은 경우는 **‘휴가 및 일시 휴직’**에 응답해 주세요.
 ※ 돈을 받지 않고 함께 사는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18시간 이상 일 한 경우도 **‘일하였다’**에 응답해 주세요.

1. 일하였다
2. (일자라는 있었지만) 휴가 및 일시 휴직 상태였다
3. 일하지 않았다 →문20

문14. 귀하는 **지난 일주일간** 모두 몇 개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었나요?

※ 두잡, 쓰리잡 등 여러 가지 일을 한 경우, 근무했던 일자리 개수를 모두 더해주세요.
 ※ 휴가 및 일시 휴직상태인 일자리도 포함하여 응답해 주세요.
 예시) 지난주에 식당에서 일을 했는데 중단하고, 편의점 일을 새로 시작한 경우 : 2개
 예시) 월수급 - 식당, 화목도 - 편의점에서 일을 한 경우 : 2개

1. 1개
2. 2개 이상 : 총 ()개

문15. 귀하가 **지난 일주일간** 가장 많은 시간 일한 일자리부터 순서대로 응답해 주세요. (최대 3개)

※ 직장명은 **정식 명칭**을 작성해 주세요.
 예시) 식당(X) → 하남돼지집 문정점(O)
 예시) 자동차 회사(X) → 현대자동차 블루핸즈 대방점(O)
 ※ 내가 회사에서 주로 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예시) 마스크 공장에서 제품 검수
 예시) 카센터에서 자동차 수리 보조
 ※ 함께 사는 가족의 사업장(일터)에서 보수를 받지 않고 일한 경우라도 2개 이상의 일을 했다면 응답해 주세요.

직장명	그 직장에서 내가 주로 하는 일
1. 첫 번째 일자리 ()	()
2. 두 번째 일자리 ()	()
3. 세 번째 일자리 ()	()

다음은 **지난 일주일간** 일했던 귀하의 첫 번째 일자리 관련 질문입니다.

문15-1. [제시: 문15]에서 귀하의 고용형태는 무엇인가요?

1. 상용근로자(정규직, 무기계약직, 계약기간 1년 이상)
2. 임시근로자(계약기간 1개월 이상~1년 미만)
3. 일용근로자(계약기간 1개월 미만 또는 일단위로 고용되어 일급 또는 일당제 급여를 받는 사람)
4. 자영업자(창업, 개업, 프리랜서 등) →문16
5. 무급가족종사자(자영업자의 가족, 친인척으로 임금을 받지 않고 1주일에 18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 → 문16

문15-2. [제시: 문15]에서 귀하의 근로시간 형태는 무엇인가요?

1. 전일제
2. 시간제

문15-3. [제시: 문15]에 고용될 때 근로계약을 작성했나요?

1. 예
2. 아니오

문15-4. 귀하는 [제시: 문15]에서 주휴수당을 받나요?

※ 주휴수당 :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개근 시 지급되는 유급 휴일에 대한 수당

1. 받았다
2. 주15시간 이상 근로했지만 받지 못했다
3. 대상자가 아니다(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4. 잘 모르겠다

문15-5. 귀하는 [제시: 문15]의 임금(급여)을 일한 직장(거주지)에서 받았나요? 아니면 파견업체나 용역업체에서 받았나요?

1. 직장(지난 주 일한 곳)
2. 파견업체 또는 용역업체
3. 잘 모르겠다

문16. 귀하는 [제시: 문15]에서 4대 보험에 가입되었나요?

	가입	미가입	모르겠다/해당 없다
	1	2	3
1. 고용보험			
2. 건강보험			
3. 국민연금			
4. 산재보험			

문17. [제시: 문15]이 속한 직장(사업체)의 종사자 수는 얼마나 되나요?

1. 5명 미만(1~4명)
2. 5~29명
3. 30~299명
4. 300명 이상
5. 잘 모르겠다

문18. 귀하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한 달 중 며칠 정도 경험하나요? (주업 및 부업 모두 포함)

※ 해당 상황을 경험한 적이 없다면 '0일'로 입력해 주세요.

구분	한 달 중 며칠
1. 밤 근무(22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 근무)	()일
2. 저녁 근무(18시부터 22시까지 근무)	()일
3. 하루에 8시간 초과 근무	()일
4. 주말(토·일요일) 및 휴일(공휴일) 근무	()일

문18-1. 각 경우에 추가수당을 받나요? (주업 및 부업 모두 포함)

※ 야간 근로나 연장근로에 대한 추가 수당을 받지 않더라도 보상휴가 등으로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추가 수당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응답해 주세요.
 ※ 해당 항목에 대해 받는 경우도 있고,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면 '받는다'로 응답해 주세요.

구분	받는다	받지 않는다
	1	2
1. 밤 근무(22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 근무)		
2. 저녁 근무(18시부터 22시까지 근무)		
3. 하루에 8시간 초과 근무		
4. 주말(토·일요일) 및 휴일(공휴일) 근무		

문19. 귀하의 일주일 평균 일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주업 및 부업 모두 포함)

※ **일한 시간:**
 예시1) 하루 8시간, 1주일에 5일 일하면 $8 \times 5 = 40$ 시간
 예시2) 일주일 중 2일만 일하고, 하루는 3시간, 하루는 5시간 일하면 $3 + 5 = 8$ 시간

1. 일주일 평균 일하는 시간 : 약 ()시간

문20. 귀하는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직장(일자리)를 가져 본 적이 있나요?

※ 직장(일자리)를 가져 본 경험은 계약직, 인턴, 일용직, 아르바이트, 창업 등도 모두 포함해 주세요.
 ※ 15세 이후, 일주일에 1시간 이상 일했던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예(가져보았다)'로 응답해 주세요.

- 예, 직장(일자리)을 가져보았다
- 아니오, 직장(일자리)을 가져보지 않았다 →문21

문20-1. 가장 최근에 일자리를 그만둔 시기는 언제인가요?

- ()년
- ()월

문20-2. 가장 최근에 일자리를 그만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1. 학업을 계속하려고
2. 전공과 맞지 않아서
3. 적성에 맞지 않아서
4. 기술(기능)이 부족해서
5. 직장사람들과 관계가 좋지 않아서
6. 보수·승진 등에 불만이 많아서
7. 근무조건 또는 작업 환경이 나빠서
8. 직장(직무)에 미래가 없어서
9. 창업(개인사업)을 하기 위해서
10. 폐업을 해서
11. 해고
12. 계약기간이 끝나서
13. 건강상의 이유로
14. 육아 및 가사 때문에
15. 기타 ()

문20-3. 일을 그만둔 후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가장 어려웠던 점 한 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1. 생활비 부족
2. (재취업 과정에서) 교육·훈련 기회 부족
3. (재취업 과정에서) 일자리 정보 부족
4. (재취업 과정에서) 일자리 기회 부족
5. (재취업 과정에서) 차별 경험
6. 창업자금 마련의 어려움
7. 가족을 돌보면서 할 수 있는 일자리 부족
8. 기타 ()
9. 특별히 없음

문21. 귀하는 **지난 한 달간** 직장(일자리)을 **구해 본 적**이 있나요?

※ 창업 준비를 한 경우도 **예**로 응답해 주세요.

1. 예
2. 아니요 →문21-2

문21-1. 직장(일자리)을 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1. 임금
2. 근로시간
3. 고용안정성
4. 승진가능성
5. 휴일(주5일제)
6. 동료 또는 상사와의 관계
7. 회사전망
8. 본인의 장기적 진로설계
9. 직장 규모
10. 복지수준
11. 적성 및 흥미
12. 기타()

문21-2. 다음 중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1.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2.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일할 의욕이 없어서 등)
3. 일을 하면 수급비(생계급여)가 끊겨서
4. 육아, 돌봄, 가사 활동을 해야 해서
5. 질병, 장애 등으로 몸이 아파서
6. 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7. 진학 준비 중이어서(일시학원에 다녀서 등)
8. 취업을 위해 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에 다녀서
9. 군 입대 대기 중이어서
10. 계속 취업에 실패해서
11. 인간관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12. 진로를 정하지 못해서
13. 당분간 쉬고 싶어서
14. 기타 ()

문22. 귀하는 지금까지 직장에서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 '위험한 근로환경' : 기계 등의 진동·소음·열·먼지가 심한 환경, 실내/실외 관계없이 온도가 너무 높거나 낮은 환경, 화학제품·폐기물·실험물질 등을 흡입·접촉·취급하는 환경 등

문 항		없다 1	있다 2	모르겠다 3
산업 안전	1. 일하는 동안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이나 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았다			
	2. 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한 근로환경에 자주 노출되었다			
	3. 일하는 동안 일로 인해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다친 적이 있다			
	4. 산업재해보험 급여(병원비, 요양기간 중 휴업급여, 보상금 등)를 받은 적이 있다			

문23. 귀하는 작년 조사에서 “15세 이후부터 지금까지, 학교도 다니지 않고, 일도 하지 않으면서 진학 준비나 취업 준비 등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낸 기간”이 총 [DB (년2) (개월2) or (일2)] 이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작년 조사 이후인 2022년 8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낸 기간이 1주일을 넘긴 적이 있나요?

1. 있다 ->문23-2 or 문24
2. 없다 ->문24

문23-1. 귀하는 15세 이후부터 지금까지, 학교도 다니지 않고, 일도 하지 않으면서 진학 준비나 취업 준비 등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낸 기간이 1주일을 넘긴 적이 있나요?

1. 있다 ->문23-3 or 문24
2. 없다 ->문24

문23-2. 작년 조사 이후인 2022년 8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귀하가 학교도 다니지 않고, 일도 하지 않으면서 진학 준비나 취업 준비 등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낸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선택(V)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낸 기간
1. 1개월 미만	()일 동안 지속 되었다. (예: 15일)
2. 1개월 이상	()개월 동안 지속 되었다. (예: 3개월)

문23-3. 귀하가 학교도 다니지 않고, 일도 하지 않으면서 진학 준비나 취업 준비 등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낸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선택(V)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낸 기간
1. 1개월 미만	()일 동안 지속 되었다. (예: 15일)
2. 1개월 이상	()개월 동안 지속 되었다. (예: 3개월)
3. 1년 - 2년 미만	1년 ()개월 동안 지속 되었다. (예: 1년 6개월)
4. 2년 이상	()년 ()개월 동안 지속 되었다. (예: 2년 6개월)

문24. 귀하는 최근 1년간 원치 않는 이유로 소득 없이 쉬는 적이 있나요?

1. 있다
2. 없다 ->문25

IV. 경제

문25.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중복 선택 가능)

1. 본인
2. 부모(새아버지, 새어머니 포함)
3. 형제
4. 친인척, 조부모
5. 배우자
6. 이 중에 없음

문26. 귀하의(또는 귀하 부부의) 월 평균 소득은 얼마인가요?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각 항목에 응답해 주세요.

※ 퇴직금, (민간)보험금 받은 것, 복권 당첨금 등 일시적으로 들어온 기타 소득은 제외해 주세요.
 ※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부부 월평균 소득(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적어 주세요.
 ※ 소득이 없는 항목은 **0만원**으로 응답해 주세요.

구분	항목	월평균 소득
1. 근로 및 사업소득	근로자: 직장을 다니면서 벌어들인 소득 (세전 기준) 자영업자: 벌어들인 소득 중 순소득(총매출에서 사업비용을 뺀 금액)만 입력	약 ()만원
2. 재산소득	재산 운영을 통해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에서 대출이자, 관리비 등을 뺀 금액	약 ()만원
3. 이전소득①	함께 살지 않는 가족으로부터 매달 평균적으로 받는 현금이나 물품	약 ()만원
4. 이전소득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각종 기관이나 시설로부터 매달 평균적으로 받는 현금이나 물품(단, 코로나 19 관련 지원금은 제외)	약 ()만원
5. 총 소득	근로 및 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①+이전소득②	약 ()만원

문27. 귀하(동거 가족 포함)는 다음의 항목에 대해 한 달에 얼마 정도 지출하나요?

※ 지출이 없는 항목은 **0만원**으로 입력해 주세요.
 ※ 할부 구매한 물품의 경우 월 할부금을 포함해 주세요. 예) 2022년 12월에 24만원 짜리 가전제품을 12개월 할부(월 2만원)로 구매한 경우 월 생활비에 2만원 포함
 ※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 관련 지출 비용은 제외합니다.

구분	항목	월 평균 금액
1. 식비	· 주식, 부식, 외식비, 간식비 포함. · 지원관, 생활관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지출이 있으면 기재	약 ()만원
2. 주거비 (월세)	보증금을 제외하고 월세로 지출한 금액 · 돈이 없어 월세를 내지 못하고 있어도 '계약한 월세액'을 기입 · 연세를 내는 경우 연세를 12개월로 나누어 기입 · 일세를 내는 경우 일세 30일의 합계값을 기입 · 월세를 내지 않는 경우 '0만원'으로 기입	약 ()만원
3. 주거관리비	· 전기료, 가스비, 상하수도 요금, 일반관리비, 주택수선비, 이사비, 복비 등 · 지원관, 생활관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지출이 있으면 기재	약 ()만원
4. 교육비	학비, 학원비, 기타교육비 등	약 ()만원
5. 통신비	전화·휴대폰 구입 및 이용요금, 인터넷 이용료, 인터넷 TV/유선방송 등	약 ()만원
6. 교통비	차량유지비(연료비, 수리비 등)나 대중교통비 등(자동차 구입비 제외)	약 ()만원
7. 오락·문화비	운동, 공연관람, 여행비, 취미활동비 등	약 ()만원
8. 비동거 가족 지원비	함께 살지 않는 부모, 자녀, 친척 등에게 지출한 현금(용돈, 생활비 등) 및 물품	약 ()만원
9. 기타 생활비	생활용품·전자기기·가구·잡화·의류·신발 구입비, 각종 세금, 기부금 등 ※ 재산 증식을 위한 지출(예: 저축)과 보험료, 부채 감소를 위한 지출(예: 대출원금 및 이자 등)은 제외	약 ()만원
10. 총 생활비	해당 기간 지출한 월 평균 생활비	약 ()만원

문28. 아래는 귀하께서 작년 조사에 응답해주신 채무 현황입니다. 작년 대비 현재 **채무(빚, 대출 등)**에 변화가 있나요?

1. 변화가 있다 →문28-2
2. 변화가 없다 →문29

문28-1. 귀하는 현재 본인이 갚아야 할 **채무(빚, 대출 등)**가 있나요?

1. 있다
2. 없다 →문29

문28-2. 채무(빚, 대출 등)가 발생한 이유와 갚아야 할 금액이 얼마인가요?

※ 갚아야 할 금액이 없는 항목에는 '0만원'으로 입력해 주세요.

채무(빚, 대출 등)가 발생한 이유	현재 갚아야 할 액수
1. 학자금(고등학교, 대학교 등의 등록금, 또는 사교육 등) 마련	약 ()만원
2. 주거비(잔월세, 관리비 등) 마련 ※ 청년전용 버팀목 대출,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등	약 ()만원
3. 생활비(식비, 교통비, 통신비 등) 마련 ※ 햇살론 유스 대출 등	약 ()만원
4. 창업 자금 마련	약 ()만원
5. 가족의 빚을 넘겨받거나 가족이 내 이름(명의)으로 진 빚	약 ()만원
6. 보이스 피싱, 명의 도용, 소액 결제 등 범죄 피해	약 ()만원
7. 위 6가지 외 나머지 채무(빚, 대출 등) ※ 주식, 채권, 가상자산(가상화폐 등) 투자를 목적으로 한 빚 포함	약 ()만원
8. 채무(빚, 대출 등) 합계	약 ()만원

문28-3. 돈을 빌린 곳은 어디인가요?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1. 은행
2. 제2금융권
3. 대부업체
4. 친구/지인
5. 기타()

문28-4.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귀하는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에 해당하나요?

1. 예
2. 아니오 →문29

문28-4-1. 귀하는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이용 한 적이 있나요?

※ **신용회복 지원제도** :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빚, 대출 등) 독촉에 시달리거나 신용불량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제도

1. 한 번도 이용한 적 없다
2. 과거에는 이용한 적이 있지만 현재 이용하지 않고 있다
3. 현재 이용하고 있다

문29. 귀하가 매달 저축, 보험, 연금 등에 지출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 저축(적금, 연금, 청약 등), 보험(실비, 자동차, 화재 등)의 월 합산액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포함
 ※ 사업장이나 제3자가 부담해주는 보험료는 제외
 ※ 저축(보험, 연금)을 하지 않는 경우 '0만원'으로 입력해 주세요.

1. 약 ()만원

문30. 귀하의 **가구 소득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현재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 본인을 포함한 가족의 합계 소득을 기준으로 선택해 주세요.

최하	←	—	—	—	—	—	—	→	최상
1	2	3	4	5	6	7	8	9	10

V. 주거

문31. 귀하는 **최근 1년간** 아래와 같은 장소에서 한 달 이상 살았던 적이 있나요?

시설종류	예	아니오
	1	2
1. 노숙 및 비숙박용 다중이용업소(PC방·만화방·찜질방 등)		
2. 쪽방		
3. 고시원		
4. 여관·여인숙		
5. 일터의 일부 공간 또는 아는 사람의 집		
6. 시설(양육시설, 그룹홈, 쉼터 등)		
7. 자립지원기관(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자립생활관, 희망다담돌센터 등)		

문32. 귀하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선택한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선 순위대로 **두 가지**를 선택해 주세요.

1. 주거비(월세 또는 보증금)가 저렴해서
2. 주택 내부 환경이 좋아서
3. 통학, 통근하기 좋은 위치여서
4. 개인공간이 보장되어서(방 크기, 1인실 등)
5. 이 지역에 가족, 친척, 친구, 지인 등 아는 사람이 있어서
6. 자연환경이 좋아서
7. 편의시설(상업시설, 의료시설, 공공기관 등)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8. 자산 가치를 고려해서
9. 기타()

문33. 귀하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점유형태는 무엇인가요?

※ 현재 살고 있는 집이 가족의 명의(이름)로 되어 있으면 **자가**로 응답해 주세요. 무상거주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1. 자가(본인이나 가족의 소유) **->문34**
2. 전세
3. 보증금 있는 월세
4.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 달방 포함)
5. 연세
6. 일세
7. 무상거주 **->문34**

문33-1. 귀하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주거비(보증금, 월세, 관리비)는 어떻게 마련했나요?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1. LH 등의 지원(주거지원통합서비스 등)
2. 자립정착금
3.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CDA)
4. 자립수당/자립지원수당
5. 주거급여
6. 자립지원관/자립생활관에서 지원
7. 금융기관에서 대출
8. 부모/가족/친척에게 빌려서
9. 민간단체에서 지원
10. 저축 또는 근로소득
11. 기타()

문34. 귀하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유형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나요?

※ 주택: 단독, 다가구, 연립, 빌라, 다세대, 상가주택 등

1. 주택 또는 아파트, 오피스텔
2. 비거주용 건물(상가, 공장, 여관 등)
3. 고시원
4. 판잣집,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5. 기숙사, 향토학사
6. 기타()

문35. 귀하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위치는 무엇인가요?

※ 복층형 주택 제일 윗층(예: 3층 주택 중 3층)에 거주하는 경우, '옥상(옥탑)'이 아닌 **지상**으로 응답해 주세요.

1. 지상
2. 반지하/지하
3. 옥상(옥탑)

문36. 귀하는 **최근 1년간** 다음의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문항	한 번도 없었다	거의 없었다	몇 번 있었다	자주 있었다
	1	2	3	4
1. 경제적 어려움으로 추운 겨울에 난방을 하지 못했던 적이 있다				
2. 경제적 어려움으로 더운 여름에 냉방을 하지 못했던 적이 있다				

문37. 귀하는 현재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아래와 같은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항목	있다	없다
	1	2
1. 2개월 이상 월세 연체(미납)		
2. 3개월 이상 공과금이나 관리비 연체(미납)		
3. 3개월 이상 주택담보대출 이자 또는 원리금 연체(미납)		
4. 이사 또는 계약 갱신에 필요한 임대보증금 부족		
5. 가구원 중 아동, 장애인 등이 있어서 집을 구하기 어려움		
6. 주택 압류, 재개발, 임대차 계약 종료 해지 등으로 집에서 쫓겨나거나 쫓겨날 위기에 처함		
7. 집주인과 수리, 관리비 문제로 갈등을 겪음		
8. 보증금이나 월세를 5% 이상 인상해 달라는 요구를 받거나, 재계약 요구를 거절당함		

문38. 귀하는 (조건이 된다면) 공동주거를 할 의향이 있나요?

※ **공동주거(share house)** : 가족이 아닌 다수가 한 집에 살면서 방으로 쓰고 거실과 욕실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거 형태(고시원 및 하숙 거주 경험 제외)

- 예
- 아니오

문39. 귀하는 더 나은 주거환경을 위해 다음의 제도를 이용한 적이 있나요?

항목	예	아니오
	1	2
1. 주거지원제도(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취약 주거지 개선 등)		
2. 청년주택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		
3. 주택금융(청년바탕목 전세대출,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 청년 보증부 월세 대출,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등)		
4. 주택마련지원(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혼희망타운, 공공자가주택, 민영주택 특별공급 등)		

문39-1. 이용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 별로 필요가 없어서
- 내 조건에 맞지 않아서
- 내용을 잘 몰라서(정보가 없어서)
- 기타()

문40. 귀하는 정부가 청년에게 지원하는 주택에 입주한 적이 있나요? 여러 번 입주한 경우 가장 최근 경험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 청년행복주택: 19~39세 미혼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
 ※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 19~39세 미혼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전용 85㎡ 이하 주택 및 오피스텔에 대해 LH 및 지방공사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
 ※ 청년 공공지원주택: 19~39세 무주택자 청년층을 대상으로 민간부문에 대한 공공지원을 통해 민간임대사업자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

1. 현재 거주하고 있거나 입주 예정이다
2. 현재는 거주하지 않지만 과거에 입주한 적이 있다 : 입주년도: ()년
3. 입주한 적이 없다 →문40-2

문40-1. 정부가 지원하는 주택은 귀하의 주거안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나요?

1. 전혀 도움이 안 된다
2. 별로 도움이 안 된다
3. 보통이다 →문41
4. 약간 도움 된다 →문41
5. 많이 도움 된다 →문41

문40-1-1.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그렇게 생각한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1. 임대료가 시세보다 저렴하지 않아서
2. 주택의 시설이나 질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3. 지원받는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서
4. 지원기관 또는 담당자의 지원이 적절하지 못해서
5. 지원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서
6. 기타()

문40-2. 정부의 주택지원사업을 알거나 참여할 생각이 있나요?

※ 참여할 의향은 있었으나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참여할 수 없었던 경우는 '알고 있지만 참여할 생각이 없다'로 응답해 주세요.

1. 알고 있고 참여할 생각이 있다
2. 알고 있지만 참여할 생각이 없다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포함)
3. 잘 모르겠다

Ⅵ. 건강 및 심리정서

문41. 귀하는 **최근 2년간** 건강검진(종합건강검진 혹은 일반건강검진 모두 해당)을 받은 적이 있나요?

1. 있다
2. 없다

문42. 귀하는 **최근 1년간** 구강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구강검진**을 받은 적이 있나요?

1. 있다
2. 없다

문43. 귀하는 식사를 하루 평균 몇 번 하나요?

1. 1번
2. 2번
3. 3번 이상

문44. 귀하의 식생활은 어떠한가요?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1. 내 식사시간은 규칙적이다				
2. 내 식사의 영양은 균형이 있다				

문45. 귀하는 **최근 1년간** 식비가 부족하여 식사량을 줄이거나 식사를 거른 적이 있나요?

1. 예
2. 아니오

문46. 귀하는 평소 건강관리를 위해 운동을 얼마나 자주 하나요?

1. 일주일에 1번 미만
2. 일주일에 1~2번 →문47
3. 일주일에 3~4번 →문47
4. 일주일에 5번 이상 →문47

문46-1. 평소에 운동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1.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
2. 적당한 장소(체육시설 등)가 없어서
3. 비용이 부담돼서
4. 나에게 맞는 운동 프로그램이 없어서
5. 건강이 좋지 않아서
6.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7. 귀찮아서
8. 같이 할 사람이 없어서
9. 기타()

문47. 귀하는 평소에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어렵거나 스마트폰 때문에 다른 일(학업이나 직장일 등)에 집중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 적이 있나요?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문48. 귀하는 자신의 삶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나요?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	-	-	보통	-	-	-	->	매우 만족한 다
0	1	2	3	4	5	6	7	8	9	10

문49. 귀하는 **지난 2주 동안**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문항	전혀 없다	며칠 동안	일주일 이상	거의 매일
	1	2	3	4
1. 매사에 흥미나 즐거움이 거의 없다				
2. 기분이 가라앉거나 우울하거나 희망이 없다고 느낀다				
3. 잠들이 어렵거나 자주 깬다 혹은 잠을 너무 많이 잔다				
4. 피곤하다고 느끼거나 기운이 거의 없다				
5. 식욕이 줄었다 혹은 너무 많이 먹는다				
6. 내 자신이 실패자로 여겨지거나 자신과 가족을 실망시켰다고 느낀다				
7. 일상적인 일(예: TV 보기 등)에 집중하기 어렵다				
8. 다른 사람들이 눈치 챌 정도로 평소보다 말과 행동이 느리다 혹은 너무 친절부절 못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다				
9.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거나 어떻게든 자해를 하려고 생각한다				

문49-1. 그런 경험 때문에 일상생활(학업, 일, 대인관계 등)에 어려움이 있나요?

1. 전혀 어렵지 않다
2. 조금 어렵다
3. 많이 어렵다
4. 매우 많이 어렵다

문50. 귀하는 다음과 같은 감정을 얼마나 자주 느끼나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드물게 그렇다	가끔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2	3	4
1. 나는 친구관계가 부족하다고 느낀다				
2. 나는 혼자라고 느낀다				
3. 나는 외로움을 느낀다				
4. 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낀다				

문50-1. '나는 다른 사람들로 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낀다'라는 감정을 느끼신지 얼마나 되었나요?

1. 6개월 미만
2. 6개월 이상~1년 미만
3. 1년 이상~2년 미만
4. 2년 이상~3년 미만
5. 3년 이상

문51. 귀하는 아는 사람들 중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기댈 수 있고 당신의 곤란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본인이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연령, 성별 등에 관계 없이 가족 및 친지, 지인, 선생님 등 모든 대상을 포함해 주세요.)

1. 있다 ()명
2. 없다 →문52

문51-1. 귀하가 힘들거나 어려울 때 의지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1. 가족(친척)
2. 지인(친구, 선후배, 직장동료 등)
3. 공공 기관(주민센터, 정부 등)
4. 민간 기관(사회복지 및 종교 시설·단체 등)
5. 기타 ()

문52. 귀하는 살아오면서 현재까지 6개월 이상 **특별한 이유(학업, 업무, 장애 및 건강문제, 출산, 육아 등)** 없이 방이나 집에서 주로 머물면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거의 맺지 않은 채 생활한 경험이 있나요?

※ 특별한 이유(학업, 업무, 건강, 출산 등 특정한 목적 또는 사유)로 인해 방 또는 집에서 주로 활동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1. 없다 →문53
2. 과거에는 경험이 있으나, 현재는 그렇지 않다 →문53
3. 현재 하고 있다

문52-1. 그 상태가 지속된 기간은 총 얼마인가요?

1. 6개월 이상~1년 미만
2. 1년 이상~3년 미만
3. 3년 이상~5년 미만
4. 5년 이상~7년 미만
5. 7년 이상

문52-2. 그 상태가 된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1. 학업중단이나 대학진학 실패로
2. 취업이 잘 되지 않아서
3. 인간관계가 힘들어서
4. 돈이 없어서
5. 게임, 인터넷에 몰입해서
6. 기타()

문53. 귀하는 **최근 1년간** 한 번이라도 자해를 한 적이 있나요?

※ 신체에 고의로 해를 가하는 행동을 했다면 **‘있다’**에 응답해 주세요.

1. 있다
2. 없다 →문54

문53-1. **최근 1년간** 자해를 한 날은 대략 며칠 정도인가요?

1. 최근 1년간 약 ()일

문54. 귀하는 **최근 1년간** 정신건강 문제로 전문가의 상담(진료)이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적이 있나요?

1. 있다
2. 없다 →문55
3. 전문가의 상담(진료)이 필요한 적이 없었다 →문55

문54-1. 전문가의 상담(진료)이 필요했지만 받지 못한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1.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정보 부족)
2. 주변에 상담(진료)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서
3. 혼자 가기 어려워서
4. 상담(진료) 비용이 부담돼서
5. 상담 받을 시간이 없어서
6. 정신의료기관(정신과, 상담기관) 등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 때문에
7. 주위의 시선이나 반대 때문에
8. 기타 ()

문55. 귀하는 **최근 1년간** 행동이나 심리·정서적인 어려움으로 약물(수면제, 신경안정제, 각성제 등)을 사용해 본 적이 있나요?

1. 있다
2. 없다 →문56

문55-1. **최근 1년간** 약물 사용 시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긴장을 풀기 위해서 또는 더 활동적이 되거나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의사의 처방 없이(처방에 따르지 않고)** 약물을 사용한 적이 있나요?

1. 있다
2. 없다

문56. 귀하는 작년 조사에서 장애 여부에 **[DB (장애여부)]** 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작년과 비교하여 현재 장애 여부에 변화가 있으신가요?

1. 있다
2. 없다 (작년과 같음) →문57

문56-1. 귀하는 현재 장애를 가지고 있나요?

1.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다 ->문57
2. 장애가 있으나 장애인 등록을 하지는 않았다
3. 장애가 있어서 장애인 등록을 하였다 ->문57

문56-2.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단수]

1. 장애인 등록 신청을 했는데 탈락해서
2. 장애인으로 등록하고 싶지 않아서
3. 장애인 등록 절차를 잘 몰라서
4. 장애인 등록을 할 만큼 심각하지 않아서
5. 기타()

문57. 귀하는 현재 **신체나 정신건강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에 어려움이 있나요?

1. 있다
2. 없다 ->문57-3

문57-1. **최근 1년간**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에 제한을 받을 정도로 앓았던 질병/질환이 있나요?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1. 외상 (골절, 피부 찢어짐 등)
2. 근골격 질환(디스크, 관절염 등)
3. 심혈관 질환(고혈압, 심장병 등)
4. 호흡기 질환(천식 등)
5. 대사성 질환(당뇨 등)
6. 뇌신경계 질환(경련, 간질 등)
7. 구강 질환(충치, 잇몸병 등)
8. 신장 질환(신부전 등)
9. 소화기 질환(위장 장애 등)
10. 정신과 질환(불안, 우울, 공황장애, 주의력결핍장애(ADHD),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
11. 시력 문제 및 안과 질환(눈병, 시력 이상 등)
12. 청각 문제 및 질환(청각 이상, 중이염 등)
13. 피부과 질환(아토피, 습진 등)
14. 기타 ()

문57-2. **최근 1년간** 위에서 말한 건강 문제에 대한 치료를 받았나요?

1. 병원 진료 후 치료 받고 있다(혹은 받았음) ->문57-3
2. 병원 진료 없이 약만 복용하거나 바르고 있다
3.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문57-2-1.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1. 병원비가 없어서(경제적 문제)
2. 시간이 없어서
3. 병원이 멀어서
4. 많이 아프지 않아서
5. 건강보험이 없어서(보험료 체납 등)
6. 병원에 가기가 두려워서
7. 몸이 불편해서(이동 문제)
8. 귀찮아서
9. 어디로 가야할 지 몰라서(정보 부족)
10. 같이 갈 사람이 없어서
11. 기타()

문57-3. 귀하는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미납 또는 연체(밀립)를 한 적이 있나요?

1. 있다
2. 없다

문58. 귀하의 평소 건강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나요?

1. 매우 나쁘다
2. 나쁘다
3. 보통이다
4. 좋다
5. 매우 좋다

VII 참여 및 사회·미래 인식

문59. 귀하는 정치·사회 문제에 관하여 다음 활동들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문항	전혀 없다	최근 1년은 아니지만 해본 적 있다	최근 1년 동안 1~2번	최근 1년 동안 3번 이상
	1	2	3	4
1. 정치·사회 문제에 대해 주변 사람과 이야기하기				
2.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온라인 게시판 등에 정치·사회 문제에 대한 의견을 올리거나 '좋아요' 누르기, 공유하기 등				
3. 시위, 집회 등에 참여하기				

문60. 귀하는 **최근 1년간** 다음과 같은 청년 활동에 참여하신 적이 있나요?

문항	한 번도 없다	1년에 1~2회	2~3개 월에 1~2회	한 달에 1~2회	1주일 에 1~2회 이상
	0	1	2	3	4
1. 중앙정부 청년 온라인 플랫폼(온라인청년센터, 청년포털 등) 접속 및 상담, 참여					
2. 지자체 청년센터(청년공간) 활동 및 프로그램					

문61. 귀하는 다음 제시된 각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문항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1. 나는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2. 나는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					
3. 나는 선거나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정치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문62. 귀하는 다음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 혹은 반대하나요?

구분	매우 반대	약간 반대	보통	약간 동의	매우 동의
	1	2	3	4	5
1. 모든 사람이 소득과 부를 평등하게 나누는 사회가 공정하다					
2. 열심히 일한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버는 사회가 공정하다					
3. 가난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조건 없이 돌보는 사회가 공정하다					
4.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특권을 누리는 사회가 공정하다					

문63. 귀하는 다음의 의견 중 어느 쪽에 더 가까운가요?

정부가 생계·복지 에 더 책임을 져야 한다	←	—	—	—	보통	—	—	—	→	본인 스스로 생계·복지 에 더 책임을 져야 한다
0	1	2	3	4	5	6	7	8	9	10

문64. 귀하는 우리 사회가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는 사회라고 느끼나요?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	—	—	—	보통	—	—	—	→	매우 신뢰한다
0	1	2	3	4	5	6	7	8	9	10

문65. 귀하는 **최근 1년간** 주위 사람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차별을 당하신 적이 있나요? 얼마나 자주 차별을 경험했나요?

	한 번도 없다	1년에 1~2회	2~3개 월에 1~2회	한 달에 1~2회	1주일에 1~2회 이상
	0	1	2	3	4
1.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2. 출신학교를 이유로					
3.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4.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다고					
5. 가정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6. 고향이나 사는 지역 때문에					
7.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8. 부모가 안계시거나 조손가정이라고, 또는 시설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9.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10. 이주배경(다문화, 북한이탈, 중도입국) 출신이라는 이유로					

문66. 귀하는 가정, 학교, 사회 등에서 자신의 인권이 얼마나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혼자 설거나, 직장 및 학교에 다니지 않는 등 아래 사항 중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다'에 표기해주세요.

항목	해당사항 없다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	존중받지 못한다	존중 받는다	매우 존중 받는다
	0	1	2	3	4
1. 가정					
2. 학교					
3. 직장					
4. 우리나라 전체					
5.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					

문67. 귀하는 자신이 바라는 미래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1. 전혀 실현할 수 없다
2. 어느 정도는 실현할 수 있지만 완벽하게는 실현할 수 없다
3. 완벽하게 실현할 수 있다

문68. 귀하가 원하는 미래를 위해 다음 각 항목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1	2	3	4
1. 결혼				
2. 자녀출산과 양육				
3. 부모의 경제력				
4. 부모의 교육수준				
5. 나의 교육수준				
6. 나의 노력				
7. 좋은 사람들을 아는 것				
8. 정부의 지원				

문69. 귀하는 향후 결혼 계획이 있나요?

1. 있다
2. 없다

문70. 귀하는 자녀를 가질 생각이 있나요?

※ 이미 자녀가 있다면 향후에 추가로 자녀를 가질 생각이 있는지 여부를 응답해 주세요.

1. 있다 → **추가문항**
2. 없다

문70-1. 자녀를 가질 생각이 없는 가장 주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1. 이미 자녀가 있어서
2. 임신이 어려워서(불임, 난임 등)
3. 자녀 양육이 힘들어서
4. 경제적으로 부담되어서
5. 지금 하는 일을 계속 하지 못할 것 같아서
6. 자녀가 살아가기 좋은 환경이 아니라서
7.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8. 기타 ()

//성실하게 끝까지 응답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문초록

본 연구는 주류 청년정책에서 소외되기 쉬운 청년집단에 대한 3년간의 협력 연구 중 제2차년도 연구의 일부분으로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이들이 지니고 있는 공통적인 취약성, 즉 시설퇴소 후 자립기반 부족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이들의 생활 실태를 면밀히 살펴보았다.

아동양육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소년보호시설 퇴소청년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가명정보 데이터 활용, 면접조사 등을 바탕으로 일반 청소년의 삶과 비교하여 소외 및 격차 현황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공공 및 민간 차원의 다양한 지원들이 이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도 확인함으로써 지원제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주류 청년정책 대상에서 이들이 소외되지 않을 수 있도록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정책의 기본 방향과 개인별 맞춤 지원을 위한 영역별 정책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의 기본 방향은 1) 청년정책으로서의 지원 정책 수립, 2) 자립준비청년 자격기준 개선, 3) 통합적이고 단계적인 개인 맞춤형 자립지원, 4) 지역 기반 지원체계 구축 및 지역 격차 해소이다. 영역별 핵심추진 과제로는 진로·고용 영역에서 지역 기반 진로지원체계 및 프로그램 제공, 산학 연계를 통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경제 영역에서 시설퇴소청년 자립(지원)수당제도 운영 개선, 관계기반 금융생활 지원제도 신설, 주거 영역에서 전세임대 지원 대상 확대, 지역 기반의 주거지원사업 추진 및 주거지원 대상 확대, 건강 영역에서 건강행동 증진 및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의 개선 및 확대, 참여 영역에서 고립·은둔 청년의 발굴을 위한 노력과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들의 당사자 활동 확대 등이 제시되었다.

ABSTRACT

This study was part of the second year of a three-year cooperative study on young adults who are prone to alienation from mainstream youth policies and conducted a study on young adults leaving welfare facilities and preparing for independent living. In particular, they closely examined their living conditions, focusing more on their common vulnerability, that is, the lack of independence resources.

The status of alienation and disparity was empirically confirmed compared to the lives of ordinary young adults based on surveys on young adults who left welfare facilities(out-of-home care, youth shelter, and youth detention center) and preparing for independent living, the use of pseudonym information data, and interviews. In addition, the importance of the support system was reminded once again by confirming that various supports at the public and private levels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ir lives. Based on the results of these studies, the basic direction of youth policy for young adults leaving welfare facilities and preparing for independent living and policy implementation tasks for individualized support were derived so that they would not be alienated from mainstream youth policy targets.

The basic direction of the policy is 1) establishing support policies as a youth policy, 2) improving qualification standards for young

adults leaving welfare facilities and preparing for independent living, 3) providing integrated, individualized step-by-step support, 4) establishing a regional-based support system, and resolving regional variations. Key tasks for each area include providing regional-based career support systems and programs, developing and distributing programs through industry-academia links, improving the independent allowance system for young adults preparing for independent living, establishing a relationship-based financial life support system, expanding the targets of lease support in the residential area, promoting regional-based housing support projects and expanding housing support targets, improving and expanding various projects to promote healthy behaviors and mental health, and expanding efforts to find isolated and hidden young adults, and expanding the activities of the person concerned.

2023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간자료 목록

기관고유과제

- 연구보고23-기본01 청소년들은 '금융'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청소년 금융이해력 수준 및 금융생활 실태 / 김지경·서정아·송현주
- 연구보고23-기본02 청소년활동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 문호영·서고운·김진호
- 연구보고23-기본03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방안 연구 / 이윤주·최용환·길정아·황현정
- 연구보고23-기본04 2023 청소년 가치관 조사 연구 / 임희진·황여정
- 연구보고23-기본05 디지털 유해환경과 청소년 위험행동 실태 연구 / 배상률·김영한·황현정
- 연구보고23-기본06 청소년의 대안교육 참여 실태 및 지원방안 / 오해섭·최홍일·송원일
- 연구보고23-기본07 청소년의 시민성 함양을 위한 정치참여 지원 방안 연구 / 최정원·이인영·박지숙·이호준
- 연구보고23-기본08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활성화 방안 연구 / 최인재·임지연·김민·강영배
- 연구보고23-기본09 보호소년 범죄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소년보호재판 및 보호처분 제도를 중심으로 / 박지수·이지연·한윤선·김혁
- 연구보고23-기본10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 분석 및 자립지원 방안 연구 / 김희진·조혜영·한지형
- 연구보고23-기본11 청소년 디지털인재를 어떻게 양성할까? / 이창호·모상현·최항섭
- 연구보고23-일반01 2023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총괄보고서 / 유민상·이경상·유성렬·이수정
- 연구보고23-일반01-01 2023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기초분석보고서 / 유민상·이경상
- 연구보고23-일반02 사회통합을 위한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정책방안연구 I / 양계민·권오영·이영신·장윤선·장인숙
- 연구보고23-일반07 2023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사업보고서 / 황진구·김윤희·정윤미
- 연구보고23-일반07-01 2023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분석보고서 / 김윤희·정윤미
- 연구보고23-일반08 2023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총괄보고서 / 신동훈·이정민·홍명기·이용해·임선아·김지혜

- 연구보고23-일반08-01 2023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기초분석보고서(1기 패널)
/ 신동훈·이정민·홍명기·이용해
- 연구보고23-일반08-02 2023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기초분석보고서(2기 패널)
/ 신동훈·이정민·홍명기·이용해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6-01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Ⅲ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3) / 김형주·김정숙·김문길·변근선·배정희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7-01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Ⅲ: 시민권과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4) 참여-총괄보고서 / 김기현·장근영·신인철·임성근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7-02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Ⅲ: 시민권과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4-01) 참여-심층분석 보고서 / 김기현·장근영·신인철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8-01 청년종합연구Ⅱ: 정책소외계층 청년 실태 및 정책개발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5) / 백혜정·김지연·김승경·김이배·노혜진·김성아·박광옥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8-02 2023년 시설퇴소청년의 생활 실태 및 정책개발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5-01) / 백혜정·김지연·김승경·노혜진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8-03 청년의 금융취약 및 정책소외 실태와 정책과제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5-02) / 김성아·김문길·나원희·한영섭·강예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8-04 발달장애청년의 정책소외 실태와 정책과제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5-03) / 박광옥·김용득·이복실·이은영·이동림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9-01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정책 진단 및 제도보완 연구Ⅱ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6) / 김경준·김영지·윤철경·이은주·이은주·임성은

수 시 과 제

- 연구보고23-수시0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학교내 설치 활성화 방안 연구 / 황진구·김윤희
- 연구보고23-수시02 미디어 속 학교폭력 양상 분석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방안 도출
/ 배상률
- 연구보고23-수시03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대응 방안 연구
/ 유민상·서고운·신동훈·이지연
- 연구보고23-수시04 청소년복지시설 설치기준 개선방안 연구 / 김영한

연구보고23-수시05

니트 청년 지원 사업의 참여자 발굴 개선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청년도전지원사업의 구직단념청년 발굴 사례를 중심으로
/ 유민상·김기현·김나영

수탁과제

< 일 반 >

- 연구보고23-수탁01 디지털시대, 디지털 문해력 개념의 확장 / 황용석·이현주·황현정
- 연구보고23-수탁02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콘텐츠 개발방안 연구
/ 강진숙·김지연·류숙
- 연구보고23-수탁03 유니세프 아동친화학교 사업 성과 연구 / 이윤주·최정원·최홍일·이수진
- 연구보고23-수탁04 글로벌 청소년리더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 연구 / 김영한
- 연구보고23-수탁05 자립준비청년 지원체계 강화방안 연구 - 사각지대 해소 및 형평성 제고를
중심으로 / 김승경·백혜정
- 연구보고23-수탁05-01 자립준비청년과 함께서기 특별위원회 정책자료집 / 김승경·백혜정
- 연구보고23-수탁06 디지털기반 인성교육 - 존중과배려 메타버스 체험학습 플랫폼 개발
/ 임지연·황여정·이미영
- 연구보고23-수탁07 디지털기반 인성교육 - 존중과배려 메타버스 체험학습 교실 - 교사용 수업활동
안내서 / 임지연·황여정·이미영
- 연구보고23-수탁08 학교-지역사회-민간연계를 통한 우수인성교육프로그램 발굴확산 사업
결과보고서 / 이창호·주예찬·이슬기
- 연구보고23-수탁09 인성교육 프로그램 비인증제 운영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김봉제·신현우·곽현석
- 연구보고23-수탁10 2023년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사업보고서
/ 김영자·김지연·서고운·이정만·최홍일
- 연구보고23-수탁10-01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 이미숙·양소현·고혜정·최진혁·한송아·문미혜·윤애영·김주아·조성윤
- 연구보고23-수탁11 2023년 자치구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영역 / 최용환, 이동성, 장혜윤, 임채홍
- 연구보고23-수탁12-01 2023년 교과 연계 인성교육 프로그램: 초등 / 최용환·김동일·임지영
- 연구보고23-수탁12-02 2023년 교과 연계 인성교육 프로그램: 중고등 / 최용환·김동일·임지영
- 연구보고23-수탁13 2023년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원 전문인력 양성 및 정책연구 결과보고서
/ 최용환·김동일·박윤수·김보경·장혜윤·임지영
- 연구보고23-수탁14 2023년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관리 보고서
/ 최용환·임지영, 서기희, 김성혜

연구보고23-수탁15	2022년 중앙정부 및 시도교육청 인성교육 추진성과 및 인성교육정책 분석평가 / 최용환·박윤수·김보경·장혜윤·김수진, 오지혜
연구보고23-수탁16	2023년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결과보고서 / 최용환·서기희·오지혜
연구보고23-수탁17	2023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 김희진·임희진·김정숙·박소영
연구보고23-수탁18	2023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김경준·황진구·김영지·모상현
연구보고23-수탁19	2023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 연구 / 서정아·조아미
연구보고23-수탁20	신 소외 청소년 발굴 및 지원방안 연구 / 서정아·조아미
연구보고23-수탁21	청소년활동 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현황 연구 / 서정아·김정율·김지수
연구보고23-수탁22	글로벌 K-청소년 국제교류사업 성과측정체계 연구 / 양계민·권오영
연구보고23-수탁23	레인보우스쿨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 / 양계민·이영신
연구보고23-수탁24	지방소멸시대 지방정부의 청년정책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 장근영·김기현·이상준·황성수·이규용·윤석천·최성은·조양진
연구보고23-수탁25	2023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김지경·송현주·김균희
연구보고23-수탁26	청소년동반자 사업운영 효율화 방안연구 / 김윤희·황진구·이상현·김태성·정윤미
연구보고23-수탁27	2023년 청년정책 성과자료 제작 / 김기현·김형주·김지민
연구보고23-수탁28	청년문제 대응 자원 조성방안 연구 / 김기현·이윤주·조양진

〈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

연구보고23-학폭01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초등학교 저학년) / 모상현·구찬동·조규복·송채원·신보람
연구보고23-학폭02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초등학교 고학년) / 모상현·구찬동·조규복·송채원·신보람
연구보고23-학폭03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중학교) / 모상현·구찬동·조규복·송채원·신보람
연구보고23-학폭04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고등학교) / 모상현·구찬동·조규복·송채원·신보람
연구보고23-학폭05	2022년 학부모용 학교폭력 예방교육 소식지 발간 모음집 / 모상현·김예원·신보람
연구보고23-학폭06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운영 안내서 / 모상현·김창겸·김예원
연구보고23-학폭07	2022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적용효과 분석 / 모상현·이경상·남지영·송채원·장원빈

연구보고23-학폭08

2022 외국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활동 사례연구 보고서
/ 모상현·남지영·장원빈

〈 학업중단예방·대안교육지원센터 〉

연구보고23-대안01

대안학교(각종학교) 운영실태조사 / 최홍일·김세광·오해섭

연구보고23-대안02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용에 관한 기초
연구 / 최인재·송원일

자 료 집

〈 세 미 나 〉

세미나23-01

다문화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세미나 (23.7.19.)

세미나23-02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MAPS) 데이터 설명회 및 방법론 특강 (23.8.24.)

세미나23-03

「한국 아동·청소년 데이터의 역사와 전망」 (23.9.12.)

〈 워크숍 〉

워크숍23-01

2022년 하반기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워크숍 (23.2.8.)

워크숍23-02

2022 하반기 학교민주시민교육 배움 공유회 (23.1.16.)

워크숍23-03

2023 꿈지락 운영 관리자 및 업무담당자 워크숍 (23.5.2.)

워크숍23-04

2023년 학생 참여 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업 및 중립성 원칙 기반 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업 시도교육청 담당자 협의회 (23.5.3.)

워크숍23-05

다문화청소년 진로교육 선도교원 양성_기본과정 (23.7.27.~7.28.)

워크숍23-06

2023년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시도교육청 업무 담당자 협의회
(23.7.19.)

워크숍23-07

2023년 어울림(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 재구조화 집필진 워크숍 참고자료
(23.8.5.)

워크숍23-08

다문화청소년 진로교육 선도교원 양성_심화과정 (23.11.2.~23.11.3.)

〈 포 럼 〉

포럼23-01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대응방안: 생애주기 시각에서의 사회적 고립 대응(23.4.25.)
포럼23-02	챗GPT 알고리즘 이해와 청소년 시민성증진을 위한 활용방안 모색 (23.7.4.)
포럼23-03	2023년 다문화 청소년 포럼: 초-중 전환기 다문화 청소년의 성장과 지원방안 (23.8.24.)
포럼23-04	보호소년 특성에 대한 이해 및 보호처분제도 개선 방향 모색 (23.8.25.)
포럼23-05	대안교육의 현재와 나아갈 방향 (23.9.20.)
포럼23-06	학교 밖 청소년 진로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협력 방안 (23.9.21.)
포럼23-07	다문화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포럼 (23.10.25.)
포럼23-08	청년종합연구 포럼: 협동연구 연구성과 보고 (23.11.14.)
포럼23-09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대응방안: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의 통합적 대응 (23.11.21.)
포럼23-10	청소년정책포럼 '도시를 만드는 아이들' (23.12.7.)

〈 콜 로 키 움 〉

콜로키움23-01	행정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명정보처리의 이해 (23.4.19.)
콜로키움23-02	2023 글로벌 청소년정책연구 제1차 콜로키움 "SDGs 시대의 청소년정책" (23.6.19.)
콜로키움23-03	2023 글로벌 청소년정책연구 제2차 콜로키움 "학습 회복(Learning Recovery)에서 교육 혁신(Education Transformation)으로: 코로나 이후 해외 교육 사업의 변화" (23.7.20.)
콜로키움23-04	2023 글로벌 청소년정책연구 제3차 콜로키움 "청소년 사이버범죄 양상 파악을 위한 연구 방법: ATLAS.ti 23을 이용한 주제 분석(원제: Using Thematic Review with ATLAS.ti 23 to Identify Patterns of Cybercrime among Youths from Literature)" (23.8.18.)
콜로키움23-05	2023 글로벌 청소년정책연구 제4차 콜로키움 "청소년과 국제개발협력: 월드비전의 전략과 사례를 중심으로" (23.8.28.)
콜로키움23-06	교육 혁신 도구로서의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방향과 현황 (23.9.18.)
콜로키움23-07	2023 글로벌 청소년정책연구 제5차 콜로키움 "세계시민의량 강화를 위한 교육공동체의 역할: 도전과 기회를 중심으로" (23.11.13.)
콜로키움23-08	2023 글로벌 청소년정책연구 제6차 콜로키움 "공존과 상생을 위한 세계시민의식" (23.12.01.)

〈 기 타 자 료 집 〉

자료23-01	2022 공교육 안팎 대안교육 이해도 제고를 위한 정책설명회 및 연수 보고서
자료23-02	2022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집
자료23-03	인성교육 재정립 및 학교인성교육 추진방향
자료23-04	학교 시민교육과 시민성 개념의 재구조화
자료23-05	민주적 학교 운영 길잡이
자료23-06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 매뉴얼
자료23-07	2023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위촉식 및 연수
자료23-08	2023년 학생참여교육 실천 프로젝트 전문가 특강 자료집
자료23-09	2023년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제안대회 자료집
자료23-10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 가이드북
자료23-11	제12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자료23-12	다문화청소년 진로교육 선도교원 양성 적응평가

학 술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34권 제1호(통권 제108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4권 제2호(통권 제109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4권 제3호(통권 제110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4권 제4호(통권 제111호)

기타 발간물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

- | | |
|------|---------------------------------------|
| 145호 |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Ⅳ: 질적패널조사를 중심으로 |
| 146호 | 전환기의 국가청소년정책 전략 연구 |
| 147호 |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정책 진단 및 제도 보완 연구 Ⅰ |
| 148호 |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구축방안 연구 Ⅱ |
| 149호 | 다양한 가족 메타버스 상담·활동·교육 플랫폼 설계구축 및 효과 연구 |
| 150호 | 메타버스의 활용경험이 청소년의 행동변화에 미치는 영향 |

〈 NYPI Bluenote 통계 〉

74호	후기청소년의 미디어 이용실태 조사결과
75호	코로나-19 시대 MZ세대의 사회성 발달 연구
76호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제5차 조사(2022년) 주요 조사결과 및 데이터 분석·활용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 자 문 · 협 력 진 (가나다 순) ◆

강 이 석 (한국인터넷정보원·AI프라이버시팀·수석)

고 희 원 (한국소년보호협회·팀장)

김 성 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빅데이터개방결합부·대리)

김 윤 중 (유플에스테이터·수석)

김 인 수 (법무부 소년보호과·사무관)

김 종 훈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빅데이터개방결합부·과장)

김 주 연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주무관)

김 진 정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빅데이터개방결합부·주임)

남 상 희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과장)

문 언 진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주무관)

박 우 석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주무관)

박 슬 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빅데이터개방결합부·대리)

송 원 섭 (인천시 청소년자립지원관·관장)

신 민 경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주무관)

신 재 연 (보건복지부 아동권리와·사무관)

양 준 혁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사무관)

◆ 자 문 · 협 력 진 (계속) ◆

- 오 재 민 (법무부 소년보호과·계장)
옥 은 택 (포유시큐리티·대표)
유 도 경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사무관)
유 정 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주무관)
이 상 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가족정책연구센터·센터장)
이 원 재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주무관)
이 항 섭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사무관)
이 혁 (법무부 소년보호과·계장)
임 대 환 (청년재단 중앙청년지원센터·센터장)
정 세 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연구위원)
제 호 영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빅데이터개방결합부·부장)
조 의 성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사무관)
채 지 현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사무관)
최 신 혜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주무관)
홍 윤 정 (사회보장정보원·주임)

협동연구총서 23-88-02
연구보고23-일반05-01

2023년 시설퇴소청년의 생활 실태 및 정책개발

인 쇄 2023년 12월 22일

발 행 2023년 12월 31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김 현 철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경성문화사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410-4 94330
979-11-5654-408-1 (세트)

2023년 시설퇴소청년의 생활 실태 및 정책개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ISBN 979-11-5654-410-4
ISBN 979-11-5654-408-1(세트)